

文化藝術論叢

第 4 輯

1992

韓國文化藝術振興院

文化發展研究所

차 례

I. 프랑스 도서 출판 및 도서관 정책의 한국적 적용/김화영

- ◇ 연구 개요
- ◇ 프랑스의 서적 출판과 유통 현황
- ◇ 프랑스의 도서관
- ◇ 도서 독서 정책 지원 및 연구
- ◇ 도서 독서 정책의 한국적 적용에 관한 건의안

II. 예술정보자료의 수집방안과 예술전문사서의 양성방안에 관한 연구/민병화 · 금혜진

- ◇ 서 론
- ◇ 예술정보자료의 수집방안
- ◇ 예술전문사서의 양성방안
- ◇ 결론 및 제언

III. 복제보상금 제도에 관한 대토론회

- ◇ 사적 복제 현황과 보상금 제도의 필요성/황적인
- ◇ 복제보상금 제도 실시 방안/이중한
- ◇ 토론 내용

IV. 21세기 문화환경의 변화와 문화전략

- ◇ 21세기의 문화전략/김용운
- ◇ 21세기를 향한 통일문화정책/권영민
- ◇ 정보화사회의 문예정보관리/김태승
- ◇ 정보화시대의 저작권과 지적 문화산업의 육성/이중한
- ◇ 미래사회의 여가생활과 문화향수/강현두
- ◇ 토론 내용

□ 부 록

1. 문화발전연구소 개발정책연구보고서 내용요약
2. 특수자료실소장 영상자료목록
3. 개정 북한 신헌법(전문)

I 프랑스 도서 출판 및 도서관 정책의 한국적 적용

연구 개요/11
프랑스의 서적 출판과 유통 현황/13
프랑스의 도서관/38
도서 독서 정책 지원 및 연구/61
도서 독서 정책의 한국적 적용에 관한 건의안/68

프랑스 도서 출판 및 도서관 정책의 한국적 적용

김 화 영 *

1. 연구 개요

1) 연구의 목적과 배경

오늘날의 사회는 점차 정보화사회로 나아가고 있으며 또한 경제 발전에 따라 보다는 삶의 질을 추구하기 위한 문화향수의 욕구가 증대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 시의 적절하고 내실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

그 같은 대응들 중 한 가지로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1) 도서의 출판과 유통,

(2) 도서의 소비(독서)를 담당하는 도서관의 역할을 어느 때 보다도 중요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의 현실은 아직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국가적 기반 시설이 극히 낙후된 상태에 있고 출판 및 도서관의 기능을 일반적인 사회 문화 생활과 능동적으로 연계시켜 활성화시키는 데는 더욱 많은 창의와 노력이 요청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현실적 요청과 관련하여 문화 선진국 중의 하나인 프랑스의 도서출판 현황 및 도서관의 시설, 운영, 나아가서는 그 나라 도서관 및 출판 정책이 현대 사회의 요청에 어떻게 창조적으로 적응해 나가고 있는지를 현지의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서 살펴보고 그 구체적인 경험과 여건들을 참고삼아 한국의 출판, 도서관 정책, 나아가서는 문화정책 일반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 고려대 교수

2) 연구의 대상과 면담자

조사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1) 서적의 출판과 유통 보급 측면, 2) 오늘날의 삶 속에서 차지하는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이라는 측면을 (조사)대상으로 한다.

가. 연구조사를 위한 방문 체류지 및 그 기간 :

프랑스 : 1991년 6월 29일~7월 31일

영 국 : 1991년 8월 1일~8월 7일

나. 방문, 견학 및 면담 내용 :

(1) 파 리

- 프랑스 문화성 도서 독서국(Direction du livre et de la lecture) 방문 담당자

면담 : François Gauthé/Yves Bergeret

- 전 도서 독서국장이며 현 프랑스 국립 도서관 건립 실무 책임자인 Jean Gatté-geneau 면담(그는 프랑스 전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공공 도서관들을 추천 소개 하였음)

- 프랑스 국립 문예원(Le Centre National des Lettres - 우리 나라 문예진흥원
에 해당) ; 사무총장 André-Marc Delocque-Foucaud 면담

- 작가의 집(La Maison des Ecrivains) 방문

- 현대 출판사료 연구소(Institut Mémoires de l'Édition contemporaine)

방문 : 연구소장 Oliver Corpet 면담

- 프랑스 문화성 조사 기획실 방문 : 실장 면담

(2) 지 방

- 코르베유-에손느 시립도서관

- 빌뢰르반 시립 도서관

- 안시 시립 도서관

- 엑스-앙-프로방스 시립 도서관
- 아를르 시립 도서관
- 아를르 국제 문학 번역자 학교
- 아비뇽 시립 도서관

2. 프랑스의 서적 출판과 유통 현황

1) 인접 선진국과의 비교 : 프랑스의 위상

1985년 통계	프랑스	영 국	서 독	미 국
서적 생산 부수(100만)	392	660	—	—
총 매출액(10억 프랑)	14	16	22	62
소매 서적 판매고(10억 프랑)	17	15	27	87

독일의 생산과 소비는 프랑스를 훨씬 능가한다.

영국은 프랑스 소비자보다 책을 훨씬 덜 산다. 그들은 도서관을 더 선호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구매력에 있어서 프랑스에 뒤진다. 그러나 영국은 서적의 해외 수출에 의하여 생산과 매출액에 있어서 프랑스를 능가한다.

미국은 서적 소비에서 프랑스의 5배로 앞선다. 그러나 인구비례(인구 1인당 서적 소비)에 따른다면 프랑스의 소비를 약간 앞지른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프랑스의 오랜 문화전통에 비추어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한 편이다. 그러나 출판은 양에 못지 않게 질과 내용이 중요한 만큼 그 다양성과 풍부함을 서적 종 수에 의하여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다.

다양성에 있어서도 프랑스는 부족한 면이 있다.

(1985)	프랑스	영 국	서 독	미 국
신간 서적 종수	16,200	41,200	35,700	43,600
책의 개념 규정	32p 이상	28p 이상	48p 이상	—
구비된 서적 종수	270,000	400,000	450,000	—

수의 산출방법에 있어서의 차이 때문에 프랑스는 이웃나라에 비하여 다소 과소평가된 편이다.

인구대비 신간서적수에 있어서 미국은 프랑스에 크게 뒤지고 있으나 신간서적이 인구수에 정비례하여 증가될 수는 없다. 매체의 영향으로 오늘날의 독자들은 동일한 서적을 읽는 경향이 있다. 인구수가 많은 나라일수록 베스트셀러의 제작부수가 매우 높아진다.

신간서적의 종수보다 구비된 서적종수가 더 의미 있다. 상품화되지 않고 있는 대다수 서적은 그 통계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이다.

각 국가의 분야별 발행부수를 비교해 보아도 프랑스는 약점 이 많다

백 분 율	프 랑 스(1985)	영 국(1984)	서 독(1985)	미 국(1985)
과학, 기술	11.2	23.2	25.3	21.7
인문과학, 종교, 철학, 법률	19.3	24.8	27.6	27.7
역 사	3.3	3.1	4.8	8.3
지리, 여행, 관광	1.7	2.8	3.8	0.9
예 술	4.1	3.6	8.0	4.3
문학일반, 비평	29.8	17.2	21.5	18.7
아동도서, 교과서, 교육	23.9	15.0	6.6	8.3
기 타	6.7	10.3	2.4	11.1
총 계	100	100	100	100

정밀과학, 인문과학에서 프랑스는 약세를 보인다. 예컨대 출판종수에 있어서 영국의 선두출판사는 옥스퍼드와 캠브리지 대학출판사이다.

문학일반에서 만회하고 있는 듯 하지만 백분율의 비교에는 문제가 있다. 비교를 위해서 에세이, 비평, 시, 모든 종류의 소설을 합치면 프랑스는 신간에 있어 4,300종, 서독은 5,900종, 미국은 7,000종이다.

도서목록의 종수에 있어서 프랑스는 분명 열세다. 그러나 종수를 늘리면 발행부수가 줄어 들 가능성이 있다

2) 독서열의 둔화

프랑스 서적계는 위기는 아니지만 정체기를 통과하고 있다.

가. 도약과 정체

60년대와 70년대는 〈영광의 20년〉이었다. 그 20년 동안에 생산 권수가 배가했고 신간 종수 역시 2배로 증가했다.

	생 산 권 수(100만권)	신 간 종 수
1961	179	5,580
1971	309	9,980
1973	311	10,090
1975	313	10,150
1977	358	11,960
1979	396	12,210
1981	365	11,640
1983	389	11,820
1985	392	13,080
1986	391	13,240

1979년에 그 절정에 달하는 이 빛나는 발전에는 3가지 원인이 있다.

(1) 국민의 구매력 증가

(2) 교육 수준의 상승 및 1946년부터 다수 출생하기 시작한 세대가 독서연령에 이르렀다.

(3) 포켓북의 출현으로 새로운 독서대중이 책에 접근(영국에서는 15년에 Penguin Book출현. 프랑스는 18년 후발이다. 그래서 그만큼 더 폭발적 인기).

독서에 큰 효과를 가져온 이 세번째 요인은 1973년경에 이르러 효력이 끝났다. 이 때부터 포켓북은 전체 생산의 1/3을 점유한다. 현재도 그 상태로 계속되고 있다.

10년이 끝나갈 무렵 제2차 석유파동으로 구매력 증가세가 둔화된 데다가 새로운 세대가 독서계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는 역할을 했다. 따라서 판매고가 줄자 출판계는 돌연 생산의 1/10을 감소시켰다. 그후 점차로 1979년의 높이를 만회한 듯 하지만 실제로는 그 이하수준에 머물고 있다. 절판된 서적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출판계는 판매부진을 신간서적의 종수 증가로 만회하고자 했다. 특히 살아남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출판종수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군소 출판사들이 그러했다. 이 같은 노력은 전체 생산을 증가시키지 못한 채 정체상태를 초래했다.

도약 뒤에 정체라는 전반적 현상은 분야에 따라 매우 다양한 경향을 보인다. 다음 표에서 보듯이 1979년은 변화곡선의 절정이다.

(1) 교과서 : 이 분야는 그 수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대중을 상대로 하는 서적이다. 1986년 큰 변화는 교과개편에 따른 것일 뿐이다.

(2) 과학 및 기술 : 1979년 이전에는 미약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그 후 정체. 프랑스

(100만권)	1974	1979	1986	변화추이 1974~1986
1) 교과서	56.7	59.9	68.9	+ 19.6%
2) 과학 및 기술	6.7	7.5	7.7	+ 14.9%
3) 인문과학, 법률, 종교	18.4	19.7	19.2	+ 4.3%
4) 문학일반	127.9	167.3	155.5	+ 21.5%
* 소설	(112.4)	(147.9)	(133.9)	+ 19.1%
* 연극, 시	(1.5)	(1.0)	(1.0)	- 33.3%
* 비평, 에세이	(2.0)	(2.5)	(3.3)	+ 65.0%
* 역사	(7.8)	(6.8)	(7.0)	- 10.3%
* 지리	(0.7)	(1.0)	(2.0)	+185.7%
* 시사	(3.5)	(8.2)	(8.3)	+137.1%
5) 백과 사전, 일반 서적	10.5	12.6	13.9	+ 32.4%
6) 미술, 호화 서적	5.7	8.8	8.6	+ 50.9%
7) 청소년물	51.6	76.1	65.3	+ 26.6%
* 책	(27.1)	(29.9)	(34.0)	+ 25.5%
* 앨범, 만화	(24.5)	(46.2)	(31.3)	+ 27.8%
8) 실용 서적, 지도	24.9	43.1	51.5	+106.8%
9) 기타	1.2	0.7	—	—
총 계	340.5	395.6	390.6	+ 28.3%

출판 중에서도 이웃나라에 비하여 약세인 분야가 정체되었으므로 과학도들이 영어 전문서적 쪽으로 몰리는 경향과 관련이 있다. 복사기술의 발전과도 무관하지 않다.

(3) 인문과학, 법률, 종교 : 인문과학 일반은 기이하게도 감소추세인 반면 법률, 종교는 약간 증가한다.

(4) 문학 일반 : 그 중에서도 소설은 중요한 분야이다. 한동안 큰 증가세를 보이다가 감소경향을 보인다. 출판계 평균 증가 추세에 못 미치는 성장이다.

* 부문별 1986년 통계 : 고전(350만부), 탐정물(2,290만부), 연애물(150만부),

〈현대〉소설(781만부 : 과학소설 제외)

변화추세에 있어서, 〈탐정소설〉이 쇠퇴기를 맞고 있는 반면 〈과학 소설〉은 40대 이하의 독자에게는 예전의 〈탐정소설〉의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증가 일로에 있었으나 근래에는 약한 후퇴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애물〉은 비약적 증가를 보이는 부문이며, 〈탐정〉, 〈연애〉로 분류된 소설들은 모두가 포켓북의 판형이다. 〈현대〉소설 역시 2/3가 포켓북이다.

〈희곡〉은 연극이라는 장르전체와 함께 약화 일로에 있는 분야이다. 대중이 연극관람을 할 경우에도 볼르바르극을 선호하는 편향을 보이고 이런 종류의 극은 독서에 적합하지 않다.

〈시〉역시 열세의 분야이다. 소련, 중동, 극동 지역과는 정반대 되는 현상이다. 자끄 프레베르는 마지막 대중 시인이라고 할 수 있다.

〈에세이〉는 크게 신장세를 보인다. 그러나 여기에는 전에 〈인문과학〉으로 분류되었던 저작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연애물〉역시 경계가 불확실한 분야로 〈시사〉와 〈역사〉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많고, 〈역사소설〉의 비약적 증가는 〈역사서적〉의 둔화와 무관하지 않다. 역사서적 중에서도 전기물은 증가하고 대학의 연구서적은 감소현상을 보인다.

〈지리〉분야의 가시적 증가는 여행기와 다큐멘타리에 힘입은 것이다. 이 분야의 성공은 〈시사〉분야의 그것과 유사하다.

(5) 사전류는 괄목할만한 증가세.

반면 대형사전의 출판업자는 데이터은행으로 변신함이 마땅하다. 장차 사용자들은 부피가 큰 사전 대신 필요시마다 〈미니텔〉로 문의하여 최신정보를 얻고자 할 가능성이 높다.

(6) 미술서적 1979년 상한점에 이르렀다. 외국 출판사와 공동 출판을 늘고 있다 (비용의 증가 때문). 미술서적 출판사는 예술가들 쪽에서 재생을 위한 작품사용권 요

구가 증가함에 따라 애로를 겪는다. 책은 작품을 널리 알리는 효과가 있음에도 예술가는 이윤을 증대시키는 기회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출판사는 고전미술 쪽으로 관심을 돌리는 경향이 있다.

(7) 청소년물 : 증가세를 보이는 분야.

이 방면 서적은 느리지만 확실하게 신장하고 있다. 앨범과 만화는 놀라운 도약을 보이다가 1985~1986년경 독자들이 포만 상태에 이르렀다. 그후 포켓판 만화 덕택으로 다시 증가세. 특히 성인용 만화는 1986년 4,600만부나 생산됐다 (시, 연극, 비평, 에세이를 모두 합친 숫자보다 더 많다.)

(8) 실용서적 시대의 마크라고 할 수 있는 분야로 지도책이 여기에 가세했다.

(1979년에 1,520만부가 1986년에 2,070만부로 증가)

(9) 카세트 녹음서적 : 이것은 문학 텍스트에 제 2의 청춘을 가져왔다. 〈여성 출판사 Ed. Des Femme〉는 이 방면의 전문가이다. 이것을 통해서 대중 속에 시가 되살아나지 않을까?

이것은 또한 어린이들을 독서로 유도하는 좋은 수단이다. Nathan출판사는 책과 이야기 테이프를 한데 묶은 〈콩트와 전설〉 시리즈를 내놓고 있다.

미국에서는 자동차 운전 중에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카세트 녹음 서적이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책의 추세는 여러 가지 대조를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한가지 제목의 책의

평균 발행 부수	1974	1986
교과서, 학습 서적	19,420	15,060
과학, 기술 서적	4,400	3,260
인문과학, 법률, 종교	5,760	4,840
소 설	22,700	19,350
역 사	9,230	9,000
시 사	10,590	12,500
백과 사전, 일반 서적	22,650	30,960
미술, 호화 서적	9,520	8,380
청소년물, 아동물	16,790	13,590
실용 서적	17,180	13,020

평균 발행 부수는 감소 추세다. 발행 종수(신간, 재판)는 전체 생산보다 증가했다.

오직 시사물과 사전류만이 전체적인 발행 부수 감소추세에서 예외를 기록하고 있다. 장기적인 추세로 보면 잘 팔리는 인기서적과 그 밖의 서적 사이의 발행 부수 차가 증가하는 경향이다. 1883년에 모파상의 <여자의 일생>은 25,000부가 팔렸는데 당시는 놀라운 실적이었다. 오늘날에는 여러 종의 책들이 100만부 이상씩 판매되고 있다.

이 같은 경향의 원인은 분명하다. 2차 대전 이전에는 연금생활자, 지방토호, 하인을 거느린 부르조아 등 독서를 생활로 삼는 대중에 존재했다. 이 계층은 유행하는 책만이 아니라 자신의 취미에 맞추어 책을 선택하여 읽을 능력과 시간의 여유가 있었다. 오늘날에는 그러한 계층이 소멸되었다. 책을 읽는 인구는 확실히 증가했지만, 직업 및 가사에 바치는 시간, 기타 여가 형태들과의 경쟁 등으로 인하여 독서에 할애할 시간이 줄어들었고 그 얼마 안 되는 독서시간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책>에 바치게 되었다. 대학인들 같은 예외를 인정할 수 있지만 대다수 독자들은 모두가 같은 책들만을 읽는다. 반면 은퇴한 계층은 충분한 시간이 있으므로 선택이 가능하지만, 통계에 따르면 젊은 시절에 익힌 독서습관은 좀처럼 변하지 않는다고 한다. 여기에 신문·방송 등의 매체가 팔리는 책만 더욱 잘 팔리게 만드는 추세를 더욱 부채질한다.

나. 독서인구의 증가와 질의 향상을 위하여

서적판매증가에 대한 낙관

- (1) 매년 구매력은 많건 적건 증가하고 있다.
- (2) 미국, 영국, 독일에서도 서적의 매출액은 증가추세다.
- (3) 프랑스의 인구의 반 이상이 일년에 1권 이하의 책을 산다는 통계가 나와 있다. 따라서 더 이상 감소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 (4) 독서능력이 없는 인구가 많은 구세대에 비하여 젊은 세대는 독서의 잠재인구에 속한다. 1986년 통계에 의하면 서적 구입의 1/4은 고등교육 이상의 교육을 받은 독자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 독자층은 전체 인구 속에서 증가 일로에 있다.

반면 비판의 이유도 없지 않다.

- (1) TV채널의 증가로 독자수와 독서시간이 감소할 수 있다.
- (2) 음반, CD에 대한 부가가치세 인하로 서적 구입비용이 그 쪽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

다. 책의 수요를 유발하기 위한 대책

- (1) 교육에 의한 책의 가치 인식의 증대
- (2) 도서관의 발전
- (3) 국민이 문학과 가까이 하도록 도와준다.
- (4) 부가가치세 인하?

(1) 교육에 의한 책의 가치 인식의 증대

㉠ 최상의 독서훈련은 교육제도이다. 학생의 독서능력 부족은 교사의 자질, 그리고 외국어인 아동의 수가 증가한 것과 관련이 있다. 예컨대 정해진 시간과 교실에서 점점 그 길이를 늘려가며 독서내용을 요약하는 훈련이 중요하다.

㉡ 국어교육용 텍스트는 발췌된 글이나 짧은 글을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작품 전체를 읽는 훈련이 필요하다.

학생들로 하여금 독서카드사용을 일반화하도록 할 것. 이것이 형식적인 독후감이나 논문보다 효과적이다.

㉢ 각종 부상으로 책을 주는 것을 장려할 수 있다. 아동들로 하여금 책을 〈소유〉하는 습관을 갖도록 한다.

(2) 도서관의 발전

도서관이 널리 발전된 국가들에서 도서관은 오늘날 서적 판매에 장애로 간주되고 있다. 그 점을 보상하기 위하여 영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도서관이 저작자들의 사회보

상제도에 재원을 보조하도록 하고 있다. 덴마크에서는 도서관이 구입하는 서적에 대하여 각 저자들에게 직접 일정한 비용을 지불한다.

그러나 프랑스는 이 같은 경쟁관계와 거리가 먼 것이 현실이다. 통계에 의하면 오히려 도서관에 등록된 이용자들이 또한 책을 가장 많이 사는 사람들이다. 요컨대 도서관은 출판사와 서점들에게 혜택을 주는 독자층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프랑스는 선진 외국에 비하여 뒤져있던 도서관을 크게 발전개선 했다. 이 같은 노력은 반드시 계속되어야 한다. 특히 학급, 학교단위 도서관의 확충이 요망된다.

(3) 국민이 문화와 가까이 하도록 도와준다.

㉠ 대다수 국민에게 문단은 난해한 세계로 여겨지고 있다. 문학행사는 파리에서만 벌어지고 있다는 인식이 없지 않다. 이런 의미에서 최근 지방에서 개최된 수많은 서적 및 독서행사들은 매우 의미 있는 반응을 얻었다.

㉡ 문학상을 수여할 때 심사위원들의 결정과 발표로 그치지만 말고 비평가들(심사위원 이외의) 사이의 공개적 토론을 유도하여 그들 각자가 자신이 선호하는 경향, 작가, 작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는 것도 효과적일 것이다. 독서의 새로운 계기와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

㉢ 저자의 사후 50년까지 보호하고 있는 저작권의 법적 대응 문제도 대중과 문학의 접근을 용이하게 한다는 시각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저작권의 보호가 오히려 출판사들로 하여금 저작권 소멸 시기까지 출판을 지연시키는 역작용을 하는 경우가 많다.

㉣ 부가 가치세의 인하?

현행 7%인 서적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재검토와 그리고 다른 선진국들의 관행과 비교연구가 필요하다. 영국, 아일랜드, 포르투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동시에 유럽 공동체 전체 상황과 상관 관계를 가지는 만큼 신중한 연구가 필요하다.

3) 프랑스 출판업계의 구조

통계에 따르면 프랑스에는 업계의 중추를 형성하는 400개 출판사가 13,000여명을 고용하고 있다. 그러나 단 1권의 책만을 낸 소규모 출판사까지 합하면 모두 5,000개에 이르며 휴면, 정체 상태인 출판사까지 합하면 10,000개에 이른다.

1986년 기준 총 매출액은 106억 프랑, 여기에 유통업(총판, 서점)과 클럽의 매출액을 가산하면 약 150억 프랑에 달한다. 그 중 3개의 재벌그룹이 전체의 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영미계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권이 복잡하게 결합되어 있으므로 비교가 어렵다. 그 쪽은 대체로 6개의 그룹이 주도하는 단일시장으로 간주할 수 있다.

독일은 프랑스와 유사하다. Bertelsmann, Holtzbrink, Springer 등 3개 그룹이 지배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프랑스에 비하여 독일의 지배적 출판사들은 보급과 판매보다는 인쇄업에 대해 더 큰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

일견 대기업 집중이 심하다는 인상을 주는 것이 프랑스 출판사들이지만 출판할 서적의 선택과 광고정책에 있어서 대기업의 자회사들과 독립부서들은 폭넓은 재량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대기업 집중 현상은 날로 심화되고 있으나 중소 출판사의 독립성을 위협하지는 않는다.

가. 대기업

(1) 아세트(Hachette) 그룹 : 인쇄물 유통업과 특정 분야 출판 (교과서, 가이드, 통속 소설)에만 한정되어 있던 이 그룹은 50년대부터 Grasset, Fayard, Stock, Lattès 등 유명 출판사들을 사들였다. 이 같은 흡수는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때 그때의 상황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1985년 아세트는 캐나다계 출판업자가 프랑스에 세운 핑크색 소설 회사인 Harlequin사 지분의 반에 참여했고, Harlequin사는 1986년에 그들의 것과 유사한 Duo총서를 Flammarion사로부터 사들였다. 이리하여 이 그룹은 저렴한 가격의 연애소설 분야에 지배적 지위를 점한다.

또 아세트사는 Editions Dupuis(벨기에 만화 출판)사 자본의 반을 매입했으나 경

영은 벨기에의 Frère그룹이 맡고 있다.

보급, 판매를 합쳐서 이 그룹의 <서적> 관계 매출액은 1986년 기준 32억 프랑으로 서 이는 프랑스에서는 1위, 유럽에서는 Bertelsmann사 다음으로 2위로 서적 업종의 전 분야를 커버하고 있으나 유일하게 <클럽> 분야에는 손을 뻗치지 못하고 있다.

(2) Presses de la Cité : 아세트사와 유사한 형성 과정을 거쳐 왔다. 서적의 수입 보급으로 출발한 이 그룹은 해방직후 탐정소설에 손을 댄 Sven Nielsen이 창립했다. 최근까지 이 그룹은 소설 분야 시장의 2/3를 점유했으나, 현재는 동업자가 아세트로 옮김에 따라 점유율은 1/2로 줄어들었다.

이 그룹은 우수한 출판사 Plon, Julliard 등을 흡수했고 1985년에는 교재 출판과 백과사전 전문의 중요 출판사인 Bordas를 사들였다. 그 후 재정 문제로 인하여 이 그룹은 Paribas재벌의 자회사가 되었다.

Bordas사는 Presses그룹에 넘어가기 전에 Dunod출판사의 대주주로 1986년 기준 5억 프랑의 매출액을 기록했었다.

1987년 Presses그룹의 지배권은 Sir James Goldsmith에게로 넘어갔다가 Compagnie Générale d'Electricité로 다시 넘어갔다. 새로운 주인은 구경영진을 고스란히 둔 채 그룹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France - Loisirs 및 Bordas사를 제외한 모든 그룹이 탐정소설의 퇴조로 인하여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수준 높은 포켓판 번역 서적으로 그 탁월성을 인정받은 Editions Christian Bourgois만이 실질적인 활약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 그룹은 또한 L'Espresso지를 자회사로 가지고 있으나 지속적인 적자를 내고 있다. 1986년 기준 이 그룹의 <서적> 관계 총 매출액은 27억 프랑(France - Loisirs 지분 포함)에 이른다.

(3) 제 3의 그룹(CEP : Compagnie Européenne de Publication) : 이 그룹은 출판이 주종이 아닌 agence Havas의 자회사로 출발했다. L'Usine Nouvelle, Le Moniteur 등 일련의 신문들을 지배하다가 뛰어난 경영에 힘입어 점차로 여러 출판사

들을 흡수했다.

㉠ Nathan : 교재 출판계의 서열 2위(아세트 다음). 아동물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Nathan사는 <호화 서적> 분야, 소프트웨어와 놀이 분야에도 세를 벌치고 있다.

㉡ Larousse : 대형 백과사전에 투입한 비용 때문에 잠시 재정곤란을 겪고 있는 유수한 출판사 라루스는 동시에 Robert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 최근에는 대중보급용 소설과 《Bouquins》 총서로 널리 알려진 Robert Laffont사를 흡수했다. Laffont은 원래 Seghers사의 모회사다. 이 그룹은 Laffont사를 매입하면서 Compagnie Luxembourgeoise de Télévision도 함께 흡수했다.

1986년 CEP그룹은 Laffont사 매출액의 반을 포함하여 <서적> 관계 총매출액 20억 프랑을 기록했다.

4) 중견 기업 : 프랑스의 중견기업 중에는 교재분야에는 비교적 열세이지만 문학일반 분야에서는 왕성한 활약상을 보여주는 유명회사들이 있다. 서적일반에 있어서는 기업 집중현상이 두드러지지만 소설이나 에세이 분야의 생산에 있어서는 덜 그렇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아래의 표는 각 중견 출판사들과 그 자회사가 출판한 종수를 나타낸다.

문 학 일 반 출 판 사	연 간 신 간 서 적 종 수
Gallimard	680
Flammarion	600
Albin Michel	430
Seuil	250
Belfond	120
Calmann - Lévy	80

비교를 위해서 말해두거니와 Hachette그룹은 1986년에 총 2,600종의 신간을 출판했다.

㉠ 1980년이래 프랑스 출판계의 생산고는 정체상태이나 갈리마르사는 15년 전에 창설된 <청소년> 부(이 파트는 회사 매출액의 1/4를 차지한다)와 <Folio> 문고 덕분에 규칙적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Folio 문고는 출판기업 분산의 좋은 예이다.

1972년 Livre de Poche(Hachette)로부터 분리 독립한 이 문고는 Livre de Poche와 충분한 경쟁상대가 된다. Gallimard는 Denoel사와 Mercure de France사의 지배주주이다. 이리하여 Gallimard는 그 문화적 질에 있어서 가히 국보급이라 하겠고 동시에 활기찬 기업체로서도 성공하고 있다.

㉠ 문학분야에서 돋보이는 Flammarion사는 자회사인 Arthaud와 Skira(스위스)사와 더불어 으뜸가는 미술서적 출판사이다. 동시에 의학서적부도 매우 중요하고, 한편 포켓판 만화를 선보이기도 했다. 매출액은 7억 5,000만 프랑을 육박. 이 중 1/3은 이 그룹의 특징이며 전통인 수많은 직영서점들에 의한 것이다.

㉡ Le Seuil사는 특히 업계에서 출판하는 책의 내용과 질, 그리고 서점들과의 빈틈 없는 인간관계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 두 가지 장점은 상대적으로 작은 회사 규모 덕분에 가능한 것이다. 매출액은 2억 5,000만 프랑 내외, 직원 수 250명 정도, 연간 신간서적 종수 250종.

㉢ 생산량은 좀 적지만 Calmann - Lévy사 역시 그 자본금 규모로 보아 중견출판사급에 속한다. 1836년 개업한 최고참 출판사.

이 중견 그룹들은 스스로 생산하는 서적을 직접 배급한다. 그 중 3개사(Gallimard, Flammarion, Le Seuil)는 자사의 포켓북 시리즈를 보유. Albin Michel(Laffont사와 동업)사는 Grand Livre du Mois(이달의 책)이라는 클럽을 운영.

문학 일반 이외에 다음과 같은 출판사들을 꼽을 수 있다.

- Dargaud

- PUF(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 Hatier(PUF와 더불어 교육서적, 교재류 서적과 만화 전문)

- Masson : 프랑스 의학 서적 시장 50% 점유

연간 800종 출판(그 중 반은 프랑스어가 아닌 외국어). 어려움에 처한 Armand Colin사를 흡수했다.

- Le Cerf : 종교서적 시장의 1/4점유(매출액 5,000만 프랑). 연간 160종의 신간

서적 출판

중견 출판사들은 대부분 가족회사들이다. Le Seuil는 자본금의 29%가 사원소유

(5) 소규모 출판사들

군소 출판사가 대거 출현했다는 사실은 역설적이면서도 대견한 현상으로, 지난 20년간의 놀라움 중의 하나다.

대표적이고 전무후무한 출판사가 Editions de Minuit사다. 15년간 파산직전 상태였지만 Samuel Beckett와 Claude Simon 두 사람의 노벨 문학상을 배출했고 Marguerite Duras로 대대적인 판매성적을 기록했다. 이 같은 성공에도 불구하고 이 출판사는 개성 있는 작업을 위하여 소규모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 José Corti : 간판작가 J. Gracq를 내놓았고 학위논문들을 출판.

– Grund : 아동물과 실용서적

– Belin

– Berger – Levrault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신생출판사들. 프랑스 출판사의 반이 1970년 이후 탄생했는데, 기업집중이 현저한 시대로 볼 때 놀라운 현상이다. 그 중 Odèle Jacob, Arlea, Rivages 등이 돋보인다.

파리가 아닌 지방 출판사로 성공한 사례

– Les Editions Ouest – France (프랑스 서부)

– Actes Sud (Arles) : 10년간에 착실한 카탈로그. 특히 외국문학(한국 문학 포함) 번역

– Fata Morgana(Montpellier)

– Editions du Rouerque : Rodez지방의 건축과 전통 전문

중견과 소규모 출판사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연간 발행 종수 100종 이상인지 이하인지를 생각할 수 있다,

범 례	연 간 신 간 서 적 종 수
Ouest-France	100
Actes Sud	80
Balland	60
Minuit	25
Fata Morgana	25
Lieu commun	25
Arlea	20
P.O.L	15
Odile Jacob	14
Bernard Barrault	12
Editions du Rouergue	6

신생 출판사의 도서비율 : 설립 후 4년이 지나 계속 활동하는 출판사의 비율은 33%를 넘지 못한다. 1974~1980사이의 신생 출판사가 1,650개 사에 달한다고 생각할 때 상당한 수확이라고 볼 수 있다.

도산 이유로는 (1) 자기 자본부족 (2) 보급망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3) 출판해 놓은 책의 종수가 빈약하기 때문에 (4) 스스로의 성공의 희생 등을 꼽을 수 있다. 군 소 출판사는 활동의 자유와 유연함, 신속함을 장점으로 꼽을 수 있다.

나. 출판의 수익성

1980년이래 업계 전체의 판매고는 정체상태를 보이지만 수익성은 보다 나은 편이었다. 약간 감소했다가 뚜렷하게 상승한 것이다. 다음 표는 국세청 자료로 회사형태의 출판사에 관련된 것이다.

	회사의 수	매 출 액 (100만프랑)	흑 자 (MF)	적 자 (MF)	순 익/ 매 출 액
1976	1,139	7,009	231	87	2,1%
1978	1,066	8,084	287	95	2,4%
1980	1,308	11,155	381	204	1,6%
1982	1,456	14,428	592	158	3,0%
1984	1,457	18,670	1,063	226	4,5%
1985	1,500	20,039	1,053	125	4,6%

이 많은 기업체들 가운데서 France - Loisirs와 Hachette SA 두 회사가 1985년 총수익의 반을 기록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아 출판계의 수익성은 4.6%로 뚜렷하게 개선되었다. 이는 특히 감원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1979년에 비해 1986년에는 14%에 해당하는 2,000여명이 줄었다.

문학일반의 출판사들은 반품의 증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데 비하여 교재용서적(교과과정의 개편에 따라), 사전류를 내는 출판사들은 그 위상이 개선되었다. 또 판매부수로 보면 소설은 평균 6,000부에 그치고 있는데 비하여 만화책은 15,000부 가량 된다. 물론 교재나 사전류는 이보다 훨씬 많다. 한편 순수문학에 속하는 소설류는 이윤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책을 내는 이유는 1) 이욕을 떠난 애호, 2) 저자가 장차 유명해지리라는 기대에서의 투자, 3) 문학상 수상의 기대, 4) 그와 같은 책의 저자명과 책제목이 회사의 도서목록에 포함됨으로써 이미지 향상에 도움된다 등등 여러 가지이다. 여기서 입은 손해는 Gallimard의 유명한 <흑색 시리즈 소설> 과 같은 대중물(그 덕분에 <백색 문고> 같은 상업성이 없는 명저들이 출판이 가능했다)에 의하여 보상되곤 한다. 오늘날에는 <흑색 시리즈> 대신에 <청소년 문고> 가 그 역할을 맡는다.

1987년의 프랑스 출판계는 불안정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상태는 아니다. 신생출판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몇몇은 보다 더 큼직한 출판사를 중심으로 무리를 이루면서 협력하여 사정을 개선하는데 성공하고 있다.

기업집중은 문제다. 지금까지는 매우 바람직한 면인 다양성을 침해하지는 않았고 또 3개의 주된 재벌그룹 역시 상당한 기동성과 적응력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머지 않아 이 세 개의 그룹이 시장을 완전히 지배해버릴 가능성이 있다. 기업 집중은 업계의 구조를 둔하게 만들어 비용의 상승을 가져오므로 역기능을 할 위험이 있다.

4)책의 경로

출판사에서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책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한다.

- (1) 통신이나 중계업자를 통한 판매 12%
- (2) 클럽 12%
- (3) 출판사의 직접판매 3%
- (4) 소매서점을 통한 판매 73%

통신이나 중계업자를 통한 판매는 특히 사전류와 애서용서적(bibliophilie)에 한

	추 가 가 격
생산	45
보급(Diffusion)	10
배송(Distribution)	10
소매상 이윤	35
책의 세전 가격	100
부가가치세	7
세후가격	107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소매서점을 통한 판매다.

오늘날 대다수의 생산물들은 상품화 비용이 생산비를 상회한다. 책도 예외는 아니다. 다음은 평균치의 계산이다.

정확히 말하면 상품화 비용에는 4가지가 포함된다.

(1) 판촉(광고 및 홍보요원의 활동) : 이것은 출판사 몫의 활동이므로 〈생산〉 가격에 포함된다.

(2) 보급 : 목록발송이나 대리인의 방문을 통하여 소매서점의 주문을 받는 일이다.

(3) 배송 : 때로는 〈보급〉에 포함되기도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보급과 분명히 구별된다. 배송은 책을 소매서점으로 보내고 대금을 청구 및 징수하며 반품을 회수하는 일이다.

(4) 끝으로 책을 판매점으로 보내는 〈수송〉

직업적인 용어에 있어서 배송(Distribution)은 소매서점의 활동을 포함하지 않는다. 보급자와 배송자는 서적의 소유자가 되지는 않지만 그들의 실제 활동은 도매업자와 유사하다.

출판(기업생산)은 기업집중현상을 보이지만 보급과 발송은 그 반대다. 1970년까지

Hachette가 적어도 문학일반 분야에서는 지배적인 위상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이 그룹이 여러 출판사들을 흡수하자 Hachette – Distribution에 의존하던 여타 출판사들이 경쟁의식을 느낀 나머지 그들 자신들의 판매망을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 보 급

서적은 연간 1,400개의 업체가 생기고 27만 종의 상품을 목록 속에 담고 있는 산업이다. 이것은 곧 그 상품의 보급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해준다. 이 상품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일은 출판사로 보나 서점으로 보나 너무 힘든 일이다.

프랑스에서는 149개의 보급 혹은 발송업체가 있다. 어떤 업체는 그 자체가 서점인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의 중요한 보급업체는 출판사를 모태로 하고 있다.

군소 출판사가 판매망을 얻자면 어느 정도의 판매실적이 보증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 배 송

배송업자는 서적을 발송하는 체인과 대금을 청구하는 체인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군소 보급업체들은 그렇게 벅찬 투자를 직접 하기 보다 큰 업체들에게 자신들이 주문 받은 것을 처리하도록 의뢰하는 쪽을 택하고 있다. 이리하여 X사에서 출판된 책이 Y사에 의하여 보급되고 Z사에 의하여 발송될 수가 있다. 그러나 그 세 가지 작업이 동일한 그룹, 혹은 동일한 회사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더 흔하다(가령 Le Seuil, Les éditeurs scolaires 같은 경우).

출판사를 토대로 한 6군데의 배송업체가 〈문학일반〉의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1984년 통계로 배송업은 다음과 같이 분할되어 있다.

업 체	시 장 점 유 율
Hachette	28%
Messagerie du Livre(Presses de la Cité)	22%
SOEIS (Gallimard)	13%
Larousse	11%
Inter- Forum	8%
Union- Diffusion (Flammanion)	6%
Nathan	6%
Bordas	5%
Seuil	2%

◦ 수 송

서적의 수송은 주기적인 불만의 요인이 되고 있다. 이 문제는 파리지역과 지방의 사정이 서로 다르다.

파리지역 : 1983년까지 보관창고에서 서점으로의 수송은 서점 쪽에 대해서 무료였다. 서점들과 4개의 대형 발송업체들간의 합의에 따라

- 수송은 발송업체가 책임진다.
- 실제비용의 반이 넘지 않는 협정요금을 서점들이 부담한다.

지방으로의 수송 : 창고에서 서점으로의 수송은 서점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

현재의 보급과 발송체계는 전반적으로 필요에 부응하고 있는 편이지만 특히 수송 분야에 있어서는 상당한 개선과 발전이 요청된다. 주문의 자동화로 인한 시간단축이 필요하다.

주문에서부터 책의 접수까지 필요한 시간을 반으로 줄이기만 한다면 전문서점들은 10~20%의 판매증가를 실현할 수가 있다.

5) 서 점 과 클 럽

서점의 전국집계는 출판사의 그것 못지 않게 정확한 숫자를 알기 어렵다. 프랑스에는 대충 25,000개소의 서적판매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경우 서적판매는 영업내용 중 부차적인 요소일 뿐이다. 총포상이 사냥관계 책을 팔고 약초판매상

이 식이요법 서적을 제공하고 요리사가 자신의 회고록을 파는 경우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세느강가의 고서점 등 수많은 소매상들은 고서나 중고서적들을 판매한다.

공식 집계에 의하면 전국에 20,000개 업체가 6만명을 고용하고 있고 그 중 4만명이 월급을 받는다 이 집계는 사무용품점과 문방구를 포함한 것이다. 1972~1981년 사이에 1/3이 증가했다. 이는 서적시장의 확장에 따른 것이지만 동시에 사무용품 수요의 신장에 힘입은 것이다.

표본추출에 의한 연구에 따르면 〈가시적인〉 서적활동을 하는 업체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질 수 있다.

대형 서점	700
소형 서점(전원 5인 이하)	7,600
중형, 주요서점(전원 5인 이상)	1,100(250인 점원 10인 이상)
	9,400

9,400개 중 2,500개만이 서적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경우이다.

가. 여러 가지 종류의 서점들

(1) 전문서점

서적 정책상 전문서점만이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런 서점들만이 FNAC과 더불어 판매부수가 적은 책들까지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객을 도와주기에 적절한 것도 이들이다. 예컨대 Le Divan(파리의 생 - 제르맹 - 데 프레 근처) 서점에서는 서적구입 고객 3인 중 한사람은 점원에게 자문을 구하고 있다.

(2) 문구상점점 서점

이 경우는 숫자상으로 더 많다(전체의 55~60%). 소도시나 대도시의 변두리 지역에서는 이들이 서적시장을 지배하고 있고, 그 중 반이 회사형식이다. 책보다 문구의 판매로 훨씬 높은 차익을 얻고 있다.

(3) 대부분 자영업체이지만 NMPPC(Nouvelles Messages de la Presse Par-

isienne)와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 농촌지역에서는 이들이 거의 시장을 독점하고 있고 따라서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흔히 서적판매는 총매출액의 10~20%에 불과하다. 여름철 휴양지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1/3까지 육박한다. 그들의 주 수입은 신문 판매이다.

(4) 백화점

백화점 속의 서점들은 다른 전문서점들과 같은 기능을 한다. 다만 진열대가 거리로 나와있지 않다는 점만이 다르다. 학교 교재는 판매하지 않는다. 가령 프랭땅백화점은 파리에서 가장 멋진 서점들 중의 하나를 그 지하실에 운영하고 있다.

(5) FNAC

FNAC(La Fédération Nationale d'Achat : 프랑스 구매연합)은 두 사람의 트로츠 키주의자가 소비자쪽에 관심을 가지고 만든 기구지만 그 이름이 갖던 원래의 취지는 오늘날 잊혀져 버리고 지금은 오직 대형백화점 중 하나를 의미할 뿐이다.

FNAC는 원래 사진으로 출발하여 1974년 3월 파리의 Rennes가에 대형의 서적판매장을 포함한 점포를 개설하고 조직적인 할인판매를 시작하여 업계에 커다란 파문을 불러 일으켰다.

오늘날은 전체 27개 점포(프랑스에 23개, 벨기에에 4개)를 가지고 있다. 총 매출액은 37억 프랑(1988년 기준)으로 그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사진	20%
전자(대중용)	37%
디스크	23%
서적	20%
	100%

책에 관련된 FNAC의 정책은 두 가지 원칙에 의거한다.

- 전문서적 및 대다수의 신간서적을 진열한 대형매장.
- 점원(비교적 수가 적다)이 개입하지 않은 셀프-서비스(젊은 고객들이 환영함).

FNAC은 서적 판매만이 아니라 그들이 조직하는 전람회, 모임 등을 통해서 그 이미지를 만든다. 프랑스 특유의 한 〈현상〉으로 부상하고 있다.

1985년 이후 Grantie mutuelles des fontionnaires가 지배 주주.

(6) 슈퍼마켓

슈퍼마켓은 특히 통속소설 판매에 주력, 경영의 편의상 그들은 도매상에서 서적을 구입한다.

나. 서적의 주문

통계에 의하면 주문의 60!~70%가 1종, 1권에 한정되고 있다. 프랑스 경제 전반에 걸쳐 유례가 없는 경우다. 더군다나 주문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서 고객을 잃게 만 든다

일반적으로 서점이 어떤 책을 한 권 더 보내달라고 요청할 때는 이미 받은 책이 동 이 나거나, 다른 고객이 같은 책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이다. 그러나 특정 고객의 요청을 받아 주문하는 경우도 있다. 1981년 8월 10일 법령은 그 경우 부대비용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있어서 서점은 주문내용을 독 축 하거나 단 한 권의 서적에 대하여 선금을 받아 입금하기를 꺼린다. 그러면서도 선금을 받지 않으면 고객이 주문만 하고 서점에 다시 오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게다가 책 이 나온 지 오래 되었거나 까다로운 전문서적인 경우 목록을 찾아보아야 하는 번거로 움이 있다. 이때 상당수의 서점들은 책이 절판되었다고 대답함으로써 귀찮은 고객을 따돌려 버린다. 이것은 책의 생존기간을 단축시키는 혐오스러운 습관이다.

이런 현상에 대응하자는 것이 Electre라는 이름의 전자 자동화 시스템이다. 이것의 목표는 2가지이다.

(1) 책의 제목, 제목의 일부분, 혹은 저자, 주제의 이름만으로 현재 구입이 가능한 저작의 필요사항을 찾아내는 수단이 된다 (현재 27만종의 제목을 저장한 정보은행 관리).

(2) 1987년 이후에는 자동주문의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

가입자는 IBM PC단말기와 디스켓, 광학연필 등 도구를 구비해야 한다. 이로써 주문의 시간, 노력,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다. 클럽(CLUB)

60년대의 주목할만한 사건은 포켓북의 놀라운 신장이었는데 비하여 근래의 큰 사건은 클럽식 서적의 비약적 신장이다. 이 분야의 총매출액은 시장의 약 1/10로 포켓북의 그것과 동일하다.

클럽에 있어서 프랑스는 유럽전체에서 평균적 지위를 충분히 유지하고 있다.

	가 입 자 수(백만)	전체 인구 대비 백분율
독 일	6.0	10%
프 랑 스	5.0	9%
영 국	2.4	4%
이 탈 리 아	1.8	3%
네 델 란 드	1.5	10%
스 위 스	1.5	23%
스 페 인	1.2	3%
오 스트 리 아	1.1	14%
벨 기 에	0.8	8%
포 르 투 갈	0.4	4%

매출 500만 프랑이란 4가구 중 1가구라는 의미가 된다. 프랑스에는 3개의 중요한 클럽이 있다.

(1) France Loisirs는 1970년에 설립되었지만 1986년에 430만 가입자와 서적만으로 15억 프랑의 매출액을 기록한 세계 최대의 클럽이다. 그 규모에도 불구하고 이는 Presse de Cité와 Bertelsmann의 공동출자회사일 뿐이다. Bertelsmann이 경영진과 상업운영방식을 결정한다.

(2) Le Grand Livre du Mois(60만 가입자, 3억 프랑 매출)는 Robert Laffont, Alain Michel, 1'Encyclopédia Universalis 등 3개 회사가 지배 주주.

(3) 〈Selection Reader's Diges〉는 회사 사업의 일부만을 클럽으로 운영한다.

라. 효과적인 판매방법

(1) 그 이름이 말해주듯 Le Grand Livre du Mois(이달의 책)는 한 달에 한 권씩의 책을 내놓는데 가입자는 1년에 최소한 4권만 사면 5권 짜의 책은 무료로 받는다.

이 책들은 일반 서점에 공급되는 같은 제목의 보통판형의 책과 동시에 출간되고 책값도 같다. 그러나 클럽의 책은 하드 커버로 제작되어 있다. 이 제도는 1981년 8월 10일의 〈책의 단일 가격제〉 법령에 비추어 볼 때 위법이라는 비판이 있을 만 하지만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없었다.

(2) France Loisirs의 경우는 두 가지에 있어서 더욱 엄격하다.

- 이 클럽의 책은 원래의 신간이 나오고 난 10개월 이후에만 나온다.

- 가입자는 2년 동안 3개월에 1권, 그러니까 일단 계약을 하고 나면 그 기간 동안 8권의 책을 사야 한다. 그 같은 경우 전체 400여종의 신간 목록 중에서 고를 수 있는데 그 400여종 중에서 1/4이 3개월에 한 번씩 새 것으로 바뀐다. 정해진 기간동안 가입자가 책을 주문하지 않으면 클럽이 1차 독촉을 하고 여전히 응답이 없으면 (12% 정도) 클럽이 임의로 선택한 책을 1권 발송한다. 그렇게 받은 책값의 지불을 거절하는 가입자는 거의 없다. 가입자는 그 1권의 책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있다.

그 대신 France Loisirs는 두 가지 편의를 제공한다.

- 클럽은 110개의 직영점과 기존서점 안에 마련된 개개의 특별코너를 유지하여 판매의 반은 이곳을 통한다. 가입자는 이렇게 하여 선택한 책을 즉시 가져올 수 있어서 우표값과 송료를 지불하는 번거로움과 비용지출을 피할 수 있다.

- 이 클럽의 책은 대략 62프랑 정도에 팔리는데 이는 같은 제목의 일반판형의 책값의 75%정도이다. 그러나 클럽의 책은 하드커버이므로 책값의 차이는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단골회원(2년 이상 거래)은 몇 권의 책에 대해서는 그 이상의 할인혜택이 된다.

지금까지 그다지 개척되지 않은 이 분야에서 France Loisirs가 급속한 성공을 거

둔 데에는 BeteIsmann사에서 물려받은 경영전략의 기민함이 작용했다. 각종 광고 외에도 저녁시간과 주말에 활약하는 550여 대리인들이 회원과 능동적으로 접촉하고 있기 때문이다.

책의 제작 내용은 경우에 따라 다르다.

- 전체 판매 부수의 5%(사전, 호화서적)는 출판사에 제작의뢰

- 30%는 출판사에 인쇄공정까지 만을 의뢰하고 합지, 제본은 클럽이 담당

- 나머지 65%는 클럽이 전공정 제작, 인쇄공정만은 흔히 임금이 싸거나 작업이 신속한 국외에서 이루어진다.

클럽에서 받는 혜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France Loisirs가 입자 중 65%가 <값이 싸기 때문> 이라고, 29%가 <자기 집에 앉아서 책을 선택할 수 있어서> 라고 응답했다. 그렇지만 -후자의 응답자가 집안에만 들어앉아 있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기꺼이 클럽직영서점이나 코너를 찾아간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클럽의 카탈로그에서 살 책을 선택한 뒤이다. 서점에는 너무 많은 책이 진열되어 있어서 선택이 어렵다. 가입자들은 특히 클럽에서 일차적인 선별을 통해 책들을 걸러주었다는 점을 편리하게 생각한다.

클럽이 불편한 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가입자 중 29%가 <선택 폭이 좁다> 고 응답하고 있다. 자연히 클럽은 대중에게 널리 보급된 책들만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마. 수지 타산이 맞는 활동

1986년 France Loisirs는 세전 이윤으로 5억 프랑을 기록했다. 이것은 전체 매출액의 25%로 이 분야에서 최고의 기록이다. 프랑스 경제 전체로 보아도 최고의 수익율이다.

이 같은 상황은 경영전략 덕분이기도 하지만 재고가 없다는 점, 대금회수조건(클럽은 출판사에 대금을 지불하기 전에 이미 책값을 회수했다)등에 그 원인이 있다.

Le Grand Livre du Mois도 앞의 경우만은 못하나 2위를 기록하고 있다. 다만 클

럽을 가동시키자면 최초의 투자 이후 본격적인 가동까지 시간을 요한다. 가입자 카드 작성이 특히 그렇다. France Loisirs는 1970년에 설립되었지만 사업의 균형이 잡히기 시작한 것은 1979년에 이르러서였다.

바. 책의 새로운 수요층 창출

흔히 서점들은 France Loisirs가 경쟁상대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클럽은 기존의 독자와는 다른 새로운 고객을 창출했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가입자 중 2%는 클럽회원이 되기 전에는 독서를 한 적이 전혀 없다고 응답, 30% 클럽에 가입한 이후, 전보다 더 많은 독서를 한다고 응답했다. 또 가입자의 22%가 노동자 계층이다. 이 점에서 볼 때 France Loisirs의 독자층은 전통적 서점의 고객과는 좀 다르다. 또 34%의 가입자가 주민 5,000명 이하의 농촌지역에 거주한다. 실제로 전통적 서적판매망에서 소외되고 있는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클럽제도는 매력 있는 활동이다.

프랑스에서 현재 적용되고 있는 제도는 상업적 성공을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보통 판형으로 팔리고 있는 어떤 신간 서적은 일반적으로 발간된 지 10개월 뒤에 클럽판으로 다시 제작됨으로서 제2의 독서대중과 만난다. 그러나 이때 출판사와 저자에게 돌아가는 수입은 좀더 낮아진다. 그리고 다시 몇 개월 후에 같은 책이 포켓북으로 다시 제작되어 제3의 독자층과 만나는데 이때 출판사, 저자가 얻는 수입의 비율이 다시 감소한다.

이 같은 흐름은 두 가지 판형이 제작되는 사이에 최소한의 시간적 간격을 의무화 하는 1981년 8월 10일 법령에 의하여 가능해졌다. 만약 일반 판형과 클럽의 하드커버가 동시에 출간된다면 독자는 후자 쪽으로 몰릴 것이다. 더군다나 책이 처음부터 포켓북으로 나온다면 출판사와 저자는 일반판형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잃게 될 것이다.

사. 클럽제도의 장래

클럽은 시장의 12%를 점한다. 그러나 놀라웠던 신장세는 2년 전부터 중단되었다. 외국의 경우도 비슷하다(독일, 미국). 아마도 중산층의 교육수준이 향상되면서 클럽에서 이탈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6) 책의 국제 관계

다른 나라 사람들 눈에 비쳐지는 한 나라의 이미지는 여러 가지 경로를 거친다. 병사들, 기계나 도구들, 관광객들 외에도 책이야말로 가장 수준 높은 요소다. 따라서 이 방면의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

1960년 프랑스의 서적수출은 수입의 2.6배였다. 이 비율은 곧 나아졌다. 1969년부터 수출입이 균형을 이루기 시작하여 지금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 현상은 프랑스어 사용인구의 감소라고 해석되는 일이 많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세 관 통 계	수 출	수 입	수출입 대비
1) 교과서	22.0	210.7	9.6
2) 과학 기술 서적	52.1	174.7	3.4
3) 인문과학, 법률, 종교	70.3	84.3	1.2
4) 일반 문학	554.2	724.6	1.3
5) 백과 전서, 사전	107.4	145.0	1.4
6) 예술 서적	83.8	23.9	0.3
7) 청소년 서적	332.2	70.4	0.2
8) 청소년을 위한 선집	56.1	14.0	0.2
9) 실용 서적	324.6	479.0	1.5
10) 외국어 서적	346.4	177.2	0.5
11) 책의 일부, 낱장	221.2	46.7	0.2
총 계	2,170.3	2,150.3	1.0

않다. 프랑스어가 유럽과 미주에서는 그 세력이 감소되었지만 아프리카와 아랍제국에서는 30년 전에 비하여 프랑스어 독서 능력을 갖춘 인구가 증가했다.

수입에 대비한 수출의 감소 이유는

- 인쇄비 절약을 위하여 국외에서 제작되는 서적의 양의 증가.
- 아프리카의 대다수 국가에서 구매력의 정체, 혹은 감소 등이다.

위의 표는 서적의 분야별 수출입 대비를 보여준다.

가. 번역

번역된 책은 모국어로 쓰여진 책 못지 않게 문화의 척도이다. 번역에 대한 통계들은 부정확한 상태이다. 여러 종류의 책을 뒤섞은 표본의 번역 종수의 통계를 따를 수 밖에 없다.

나. 프랑스어로 번역

1988년 프랑스 출판사들이 간행한 번역서는 2,867종이다.

영어로부터	—————	2,051종
독일로부터	—————	275종
이탈리아어로부터	—————	169종

나머지는 기타 31개 국어로부터 번역된 서적들이다.

문학서적만이 이미 2,071종을 차지한다. 미술, 아동물에서 그 수가 매우 많은 공동제작의 경우는 통계에 포함시키지 못했다.

다. 프랑스어 서적의 외국어 번역

앞의 것과 반대되는 경우로는 뒤늦은 유네스코 통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최근 통계가 1980년 것이다. 프랑스어로 쓰여진 책의 번역은 총 5,972종으로 앞의 것과 반대의 경우의 두 배에 해당된다. 그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스 페 인 어	1,241	네 덜 란 드 어	118
독 일 어	1,127	러 시 아 어	117
영 어	754	헝 가 리 어	82
이 태 리 어	490	폴 란 드 어	72
일 어	213	노 르 웨 이 어	54
덴 마 크 어	191	아 랍 어	44
스 웨 덴 어	157	기 타	

영어로 번역된 책이 3위에 그치고 있다. 영어사용국인 영미계통 독자가 자국어에 흥미를 갖지 않기 때문일까? 이런 경향은 계속되거나 더욱 두드러질 가능성이 있다. 미국 출판사들 안에 상당수를 차지했던 중부유럽 출신 망명자들 등 여러 개 국어를 사

용할 능력을 갖추었던 계층이 은퇴하면서 순수한 미국인 세대로 대체되고 있기 때문이다.

위의 통계를 독일의 것과 비교해보면 흥미롭다 독일에서는 1985년에도 6,012종이 독일어로 번역되어 프랑스 대비 2배를 기록했다. 원서의 언어별 통계로 보면 프랑스어 서적이 2위다.

원 어	번 역 서 적 종 수
영 어	3,906
프 랑 스 어	844
이 탈 리 아 어	192

스페인의 경우 1966년에 9,242종을 번역했는데 프랑스어 원서는 2위

원 어	번 역 서 적 종 류
영 어	4,525
프 랑 스 어	1,707
독 일 어	1,047

미국의 경우 1986년에 1,762(프랑스어로의 번역에 미달)인데 프랑스어 서적의 영어 번역의 수위

원 어	번 역 서 적 종 류
프 랑 스 어	485
독 일 어	470
러 시 아 어	185

1986년 문화성은 354종의 번역을 지원했다(전체 번역의 5~6%). 이 같은 지원은 650만 프랑의 원조, 120만 프랑의 대출에 해당한다.

전체적 상황은 다른 분야, 국가에 비하여 뒤지고 있다고 볼 수 없으나 프랑스의 위상을 더욱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

3. 프랑스의 도서관

프랑스는 현재 인구 5,500만(유럽 제4위), 면적 55만 평방킬로미터의 국가로서 1987년 기준 30,982종의 서적을 발행하고 15,300종의 정기 간행물을 펴냄으로써, 독일, 영국에 이어 유럽 제 2위를 기록하고 있다. 인구 1인당 도서관 투자 비율은 최우수국인 덴마크, 화란, 영국에는 못 미치지만, 이탈리아, 독일, 아일랜드와 함께 유럽의 평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프랑스는 유럽에서도 독서 정책에 있어서 국가의 개입이 가장 오래되고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나라이지만, 오랜 기간 동안 인접국가에 상대적으로 뒤지고 있었다. 1968년 조르주 Pompidu 총리의 요청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가 프랑스의 독서 상황이 개탄스러운 상태임을 보여주게 되자 새로운 발전 계획이 세워졌다. 1969년에서 1981년에 이르는 동안 그 계획이 실천에 옮겨져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본격적인 발전 계획과 거기에 따른 성과는 지난 10년 사이에 얻어진 것이다. 이 분야에 대한 대규모 정책이 1982년에 세워졌는데 이는 상대적인 후진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도서관을 21세기로 진입시키려는 야심에 찬 것이었다. 이는 일견 모순된 듯한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한편으로는 국가의 개입을 강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공공 도서관의 기능을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으로 분산시키자는 것이었다.

프랑스에 있어서 도서관이란 더 이상 소수의 식자들만이 접근할 수 있는 신비스럽고 엄숙한 공간이 아니다. 1987년에는 평균 1주일에 한 군데씩 새로운 도서관이 생겨났으며 이 도서관들은 과거의 도서관들과는 판이하게 다른 것이었다. 시민적 자질 함양을 원칙으로 삼았던 프랑스 대혁명 정신에 깊이 뿌리 박은 공공 도서관은 계몽주의 이념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교육전통을 이어받는 동시에 2차대전의 종결과 함께 정부가 표방해 온 문화의지를 구현하고자 한다. 그러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 힘입어 가장 확고한 공공서비스의 성공 사례들 중 하나로 손꼽히는 현대적인 <미디어 테크>가 출현하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다. 오늘날 문을 열고 있는 미디어테크는 한결같이 주민 전체 인구의 20~25%를 불러모으고 있다. 특히 안시의 도서관은

40%, 릴르본의 경우는 50%에 이른다.

지난 20년의 발전을 국가전체 차원에서 살펴볼 때, 가장 괄목할만한 현상은 재정적 수단의 강화라고 하겠는데 2년 사이에 문화성의 도서 독서국 예산이 무려 4배나 증가했다. 그 결과 1981년부터 1991년까지 10년 사이에 전국 도서관 연면적은 65만평방미터로부터 126만 평방미터로 배가했고, 시립도서관의 수는 992개였던 것이 1,532개로 늘어났으며 전산 시스템을 갖춘 도서관의 수는 40개에서 무려 그 10배인 400개로 늘어났다

1) 행정적 발전 과정

프랑스의 도서관은 오랜 중앙집권적 전통에 따라 국립도서관이 존재하고, 전국 도서관의 중앙 관리 및 행정 제도가 존속하고 있다. 그 관할별로 보면,

가. 교육성 관할 〈도서관 박물관 과학기술 정보국(DBMIST)〉이 있다. 이곳은

- 대학 도서관, 전문 기관 도서관을 거느리며
- 전국 도서관의 총괄 서비스(출판물 전산화 목록 등)를 제공하는
- 도서관 사서 및 관리자의 양성 기관이다.

나. 문화성의 〈도서 독서국(DLL)〉:

- 공공 독서
- 출판
- 저작권
- 서적 수출
- 산하의 3개 기관 관장 : (1) 국립 도서관

(2) 부르센타의 공공 정보 도서관 (BPI)

(3) 국립 문예원 (CNL)

다. 연구 기술부(과학 기술처)국립 과학 연구소(CNRS)의 〈과학 기술 정보국〉

라. 부처간 협력 : 국무총리 직할의 〈행정 문서 조정 위원회〉

마. 유럽 공동체(EC)와의 협력

2) 공공 도서관

프랑스의 독서 발전을 위해 여러 종류의 도서관들이 공동 노력하고 있다. 공공 도서관으로는 지방 단체가 관할하는 도서관, 국가 도서관, 특수 공공 도서관 등이 있다.

가. 시립 도서관(Bibliothèques Municipales)과 중앙 대여 도서관(Bibliothèques)

Centrales des Prêts)

(1) 프랑스에는 면적과 인구나 규모가 매우 상이한 3,600개의 <코뮌(Communes)>들이 있다. 그 중 일반적으로 인구 5,000명 이상인 1,500개 코뮌이 시립 도서관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들이 약 3,000만 인구를 커버한다.

1969~1973, 1982~1986년 두 차례에 걸쳐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선도 하에 시립도서관이 크게 발전했다. .

㉠ 도서관 신축

㉡ 자격을 갖춘 요원(사서 등)의 채용

㉢ 신규 구입과 현대화 - 시청각 기제의 발달과 정보화 추세가 큰 영향을 끼쳤다 : 100여 개 이상의 시립도서관이 비디오대여 및 현장참고가 가능하도록 시설을 했고 220여 개가 전산화되었다.

1991년 현재 인구 10,000명 이상의 도시 10개 중 9개는 시립 도서관을 보유하고 있다.

(2) 시 당국이 시립도서관의 예산을 정하고 직원을 모집, 채용한다.

그러나 프랑스 대혁명시 몰수 도서 등 중요한 고서 문헌들을 소장하고 있는 특정한 몇몇 도서관에는 중앙 정부(문화성의 DLL)가 기술 직원 (관장 및 사서)을 임명하며, 급료를 지급하는데 현재는 총 54개이며 이를 <지정 도서관(Bibliothèque Classée)>이라고 칭한다. 이와 관련된 인쇄 문화재의 보전, 복원 및 효율화(목록 작성, 마이크로 필름 제작)작업은 DLL이 관장하는 프로그램이다.

(3) 프랑스 전국은 100개의 <데파르트망(Départements)> (우리 나라의 도에 해당)으로 나뉘어져 있다. 파리 주변에 있는 3개의 데파르트망을 제외한 이 행정단위들 안에는 1945년 특수한 <중앙 대여 도서관(BCP)> 이 설립되어 규모가 작은 코뮌과 농촌지역을 커버한다. 지방 자치단체와 국가는 함께 협력하여 도서관의 건축, 직원, 장서 구비, 자동화 등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인 (특히 1982년 이후) 결과, 현재 전국에 96개의 BCP가 갖추어졌다. 이는 데파르트망 단위의 독서 활동의 증추가 되고 있다. 10,000명 이하의 35,178개 코뮌에 거주하는 2,800만 주민을 커버하는 것이 목적이다. 1991년까지 20개의 BCP가 추가 건립되었다.

중앙 대여 도서관의 활동은,

㉠ 독서 버스(Bibliobus)를 통한 방문 직접 대출

㉡ 시청, 협회, 기업체 등의 간이도서관에 도서, 음반, 비디오 자료 비치 : 이는 지역 도서관의 전신이 되어 장차 시립도서관이 창설되는 토대 역할을 한다.

1982년의 지방 자치와 더불어 행정 및 제도상의 변화가 왔다.

계약에 의한 협력 : - 국가와 지방간

- 국가와 교육 기관간 : 문헌을 위한 예산

1986년 1월 1일 지방 자치가 실시되면서 문화 활동 및 교육 분야의 관할이 중앙 정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었다. 이때부터 자치단체는 도서관의 시설과 운영을 주도한다. 따라서 지방 상호간의 협력과 연합이 요구되었고, 그 결과로 다음과 같은 기구가 만들어져서 활용되고 있다 .

- 프랑스 도서관 협회(ABF) : 1906년 설립, 2,200회원

- 프랑스 전문 문헌 연구가 및 사서 협회(ADBS) : 1963년 설립, 3,600회원

나. 도서관의 발전과정

1955~1965년 : 대학 도서관의 중요한 변화 발전

1969년 : 국가가 공공 도서관에 대한 지혜로운 정책을 개발

1982년 이후 : 중앙정부가 대대적인 예산지원 시작, 거기에 추가하여 각 지역의 코뮌과 데파르트망의 노력

1988~1989년 : 지방자치의 틀 속에서 공공 독서의 발전을 추구하게 되었는데 이는 완전히 새로운 현상이라고 하겠다.

- Nancy에 전국 규모의 〈문헌 센터(Centre Documentaire)〉 개원

- 대학도서관에 관한 조사 보고서

- 국립도서관에 대한 대통령의 특별한 관심

오늘의 도서관 현황은 이상과 같은 문맥 속에서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곧 문화 풍경의 변화 가능성을 예고하는 것이다.

지방 자치법은 ㉠ 시립 도서관에 대한 코뮌의 책임, ㉡ 중앙 대여 도서관의 데파르트망 이관을 확인해 주었다.

현 상황의 특징 :

㉠ 도서관 설립, 현대화 운영을 위한 시 당국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 자치 예산 속에는 특수 재원이 마련된다.

㉡ 1991년에 완공 예정인 중앙대여도서관 건설 프로그램을 국가가 계속 추진한다.

㉢ 지역 내 공공 기능과 관련된 법안 제정이 기대된다.

가장 중요한 관할권은 1986년에 각 지방 자치단체들이 넘겨받았지만 독서 발전을 위한 역할과 예산은 문화성이 계속 견지한다 (프랑스 사람 4명중 1명은 독서를 하지 않고 14%만이 도서관을 출입하는 상황은 중앙 정부의 개입을 불가피하게 만든다).

문화성은 전국적 프로그램을 알려주고 각 지역의 문화담당 부서는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지역의 대중을 위주로 한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다. 한편 국가는 문화재에 대한 책임, 인력양성, 기술적 분야의 감시와 감독, 끝으로 활동 평가에 있어서는 계속 그 권위를 유지한다.

다. 기타 공공도서관

단체 및 협회 도서관들

- 만인을 위한 문화와 도서관(Culture et Bibliothèques pour tous)

89개의 지방협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체예산과 자원봉사자 7,000여명으로 가동되는 1,500개 도서관을 운영함.

- 전국 농촌가정 연맹(Fédération nationale des Foyers ruraux) 등

기업도서관 : 1,000~3,000개소의 독서실(13%만이 유자격 사서고용)

병원 도서관 : 1,700개소의 독서실 - 공공도서관과 연계되어 발전

교도소 도서관 : 204개소(BM과 BPC와의 연계관계)

3) Paris 지역의 도서관

파리에는 역사도서관, 행정도서관 이외에 중앙도서관이 따로 없다. 1967년부터 새로운 도서관들의 설립 경향 및 청소년 분야, Discothèque(음반, 카세트 CD를 현장에서 듣거나 대여하는 곳)의 발전이 특히 현저하다. 1975년 파리시의회는 도서관 설립을 위한 지침을 결정했다. 1988년에는 파리시내에 있는 전체 56개의 도서관들을 상호 연결하는 전산망이 만들어져 총 350만권의 장서와 30만점의 사진 자료를 결합시켰다. 전체 7,500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고 대출자 수는 236,000명에 이른다.

전산망을 통하여 파리의 두개 대형 Médiathèque와 연결이 가능해졌다

A. Bibliothèque publique d'information(공공 정보 도서관 BPI)

B. Médiathèque de la Vilette(빌레트의 미디어테크)

가. 공공 정보 도서관(BPI)

1977년 퐁피두센터 내에 설립 개관하였으며 모든 대중을 상대로 한다.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며, 개가식으로 현장에서 열람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전체 252명의 직원이 서비스를 제공하며, 2,050석, 매일 평균 1,300명의 이용자가 드나들며 이는 연간 400만명에 해당한다. 장서수 40만권, 회원권 2,400명분, 음반 및 카세트 13,000

장, 필름 2,100종, 그밖에 비디오디스크로 옮기는 중에 있는 영상자료, 어학 교육 자료 다수를 보유하고 있다. 곳곳에 질문응답용 단말기(Minitel)가 설치되어 있는 이 도서관은 촉매 활동, 이용자 응접, 직원 양성 교육 등을 담당하는 전산화 도서관으로서 국립 도서관을 보충하며, 전국의 모든 미디어테크들의 모델이 되고 있다.

나. 빌레트 과학 도시의 미디어테크

1986년에 개관하였으며 과학 및 산업촌 안에 있는 12,000 평방미터의 공간이다. 과학기술성과 공업성의 공동관할이다.

4개의 전략적 단위로 구성되어 있다.

- 어린이용 미디어테크
- 대중용 미디어테크
- 전문가용 미디어테크
- 교육용 소프트웨어의 셀프서비스

220종의 소프트웨어, 20만권의 장서, 5,700종의 잡지 및 정기 간행물, 2,000점의 비디오 디스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로 과학, 기술, 공업 분야에 관한 것이다. 이는 인문 과학에 치우쳐져 있는 파리 도서관들과 균형을 이룬다.

4) 초 중 고 교 도서관 (Les bibliothèques scolaires)

학교가 독서를 습득하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에서 이 분야의 도서관들은 최근에야 발전되었다. 프랑스의 교육제도상 초등교육은 유치원과 국민학교를 포함하며, 중등교육은 중학교(Collège), 고등학교(Lycée), 직업고등학교(Lycée d'enseignement professionnelle)를 포함한다. 1987~1988년 초등 및 중등학교 학생 수는 1,300만명으로 인구의 23%에 해당한다.

도서관 종류

A. 자료수집센터 도서관실(BCD) : 초등교육

B. 자료수집정보센터(CDI) : 중등교육

C. 국립교육문화센터(CNDP) : 교사와 CDI의 자료 전문가들을 위하여 마련한 학교간 시설 140개소(26개는 지역, 67개는 데파르트망)

처음에는 학급문고였던 것이 1960년 말에 학생과 교사들을 위한 학교도서관으로 승격되었고 1972년~1973년에 신설된 학교에는 BCP나 CDI를 설치하는 것이 의무화되었다.

현재 모든 Lycée, Collège의 3/4, 직업 고등 학교 1/3이 유자격 사서를 고용한 CDI를 갖추고 있다. 1987~1988년 통계로 전국 학교 사서는 5,619명인데 이들은 대개 준교사 혹은 정교사로서 사서 연수를 받은 후 임명된다.

점차로 CDI의 중요한 공헌이 인정되기 시작했다. 이는 자료센터인 동시에 자료 수집 기술과 독자적인 조사연구방식을 습득하는 장소이며 학교의 문화공간이며 특히 외부의 공공 도서관으로 가는 정거장 역할을 한다. 따라서 교육기관을 사회의 경제 문화적 환경으로 개방하기 위하여 교육청이 재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능동적 작업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1988년 이후

- Joie pour les livres(독서의 기쁨)

- 교육 개발원

- 문화성

이주민을 위한 사회활동기금 등의 노력으로 여러 가지 모델들이 개발되었다.

CDI, BDC는 국가와 지역간의 협조만으로 발전이 가능하다.

5) 대학 도서관(BU)

1987-1988년 100만 이상의 대학생이 학교에 등록하였으며 그 중 98만명이 대학생들이고 8만명이 기술 및 상업학교생들이다. 그 중 1/3이 파리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연구, 박사 과정은 40%)

대학도서관은 1855~1886년 사이에 독일의 모델에 따라 처음 설립된 이후 1960~1975년 사이에 대학교가 4배로 팽창되면서 교육성 내에 도서관국을 설치하여 (1945) 정관을 정립하였으며 직원양성과 연수에 노력했다. 1960~1980년 사이에 오늘의 도서관모델이 정착되었다. 전국에는 42개 지방대학도서관이 있고, 파리지역에는 21개 대학도서관이 있다. 예산과 직원 부족으로 인하여 각 학과와 실험실 단위의 소형도서관이 증가 추세를 보인다.

1988년 현재 대학도서관은 장서가 1,900만권(그 중 100만권이 1810년 이전의 것이다)이고 3,145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다.

1980년대에 와서 대학도서관은 크게 개혁되었다. 체계적 정책과 현대화, 그리고 직원 연수에 힘쓴 결과 프랑스 최대의 장서 및 대출망을 형성하게 되었다. 1980년 이후 특정 분야의 중요 장서들을 대량으로 보유한 18개 도서관이 정부의 특수지원을 받는 대신 장서내용을 대중에게 고지하고 대출에 임한다.

대학 도서관은 연속간행물 전국 목록(Catalogue collectif national de publication en Serie) 및 서적 목록 계획(Projet de catalogue collectif d'ouvrages)의 토대가 되며, 목록 조합망에 가입되어 있고 국제적 목록망과 연계 관계를 맺고 있다.

자유열람과 자동화로 이용자 수를 25%에까지 끌어올렸으나 아직 예산 부족, 도서관 신축 중지, 직원수 동결로 영국, 독일에 비해 낙후된 상태이다. 현재 특별위원회에 의뢰하여 대학도서관의 개혁을 위한 연구가 진행중이다.

6) 특수 도서관

세속 및 종교 단체, 기업, 상공회의소, 학회, 박물관, 행정기관 등이 개설하고 있는 특수분야 전문도서관들이 매우 많다. 그들 상호간에는 협회 이외의 직접적 연관은 없다. 현재 전국에는 1,100개의 특수 도서관이 있다. 가까운 장래에 정보원 안내 및 접근의 전국 조직이 완료되면 그 전체 상황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정보 수집가들(Documentalistes)의 활동 분야에 따라 분류하면, 공공 분야 45%/사적 분야

22%/준 공공분야21%/협회 10%/국제분야2% 순 이다.

최근에 문을 연 특수도서관으로 중요한 것은

A. 아랍세계 연구원 미디어테크 : 1987년 개관, 장서 4만권, 정기 간행물 800종(파리의 명물 중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으며 성과가 뚜렷하다)

B. 루부르 박물관 미디어테크 : 교육자나 협회 대표들이 미술관 관람 준비용 자료를 구할 수 있다.

C. 과학기술정보연구원 (INIST : Institut de l'information scientifique et technique) : 1989년 지방도시 낭시에 개관하였으며 국립과학연구소의 두개의 중요 문헌 센터를 합친 것으로 전국적 중요성을 지닌다. 그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16,000종의 보고서, 학위논문, 학회결과 논문집, 정기간행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학제적 성격을 띠고 있다.

(2) 보급 방법의 현대화(전자화, CD-ROM, 텔렉스 등)

(3) 상업화를 목표로 한 지점을 개설하고 국제적으로 개방

7) 국립 도서관 (BN)

- 1983년에 정관을 개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 전국 문헌 생산을 집성하고 전국 참고문헌 수집 체계를 완성하기 위하여 외국문헌도 구입하여 보관했다.

- 국가 장서의 보전과 활용

- 인문과학 연구

- 국립도서관의 어떤 부서들(가령 대출센터, 국제 교환서비스 등)은 타 도서관들 전체와 상대한다.

- 전 세계 5대 도서관 중 하나인 BN은

인쇄물(서적 1,200만권, 50만 종의 정기간행물)

특수분야 : 카드 및 지도 65만점

판화 및 사진 1,500만점

원고 35만점

동전, 메달, 골동 80만점

음악 악보 200만점

음반, 시청각 자료 190만점

공연관계 : 300만점의 문헌과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

연간 10만권의 장서를 구입(그 중 4만권은 납본)하고 있으며 전체 200만종의 문헌 자료를 구입한다.

직원 1,250명(전국 도서관의 국가 공무원의 20%)

운영예산(1982~1986) : 1억 3,500만 프랑

가. 2가지의 중요 사업 목표

(1) 장서의 안전 보존

1980년이래 보존 복원 분야에서 세운 계획 :

- 보수 및 복제 아틀리에 개선
- 43, 000권의 복제
- 잡지 1,000만 페이지 복제
- 수천권의 소독 및 제본
- 종이의 산화 및 노화 방지 연구 : 연구소에 의뢰

(2) 목록의 전산화

1975년이래 BN은 자동화된 형태로 〈프랑스 서지(Bibliographie de France)〉를 펴내고 있다.

1983년에 GEAC시스템(유선 목록, 납본의 자동 관리, 독자들이 유선으로 목록에 접근)을 채택하여 1987~1988년 가동하기 시작했다

1988년 〈BN-OPAL〉이라는 명칭의 데이터베이스(전산화된 목록시스템으로 미니

텔에 연결)완료

- 60만개의 노트리스(Bibliographique)

- 40만개의 노트리스(d'autorité)

나. 문제점

(1) 너무나 많은 대중의 요청

(2) 장서의 너무나 신속한 증가로 인해 파리지역 대학도서관들의 재건이 요청된다.

이 길만이 BN을 본래의 기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줄 것이다.

(3) 면적 협소

파리 : 1986년 현재 17,000평방미터

지방 Sablé, Avignon 등 2개소

따라서 Bibliothèque de France의 방대한 계획 수립이 필요했다.

다. 프랑스 도서관(Bibliothèque de France)계획

1988년 7월 14일 대통령이 <전혀 새로운 유형의 도서관,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
의 건설을 결정하고 공표 했다. 이는 7년 재임중의 대 역사의 하나로

(1) 지식의 모든 분야를 커버한다.

(2) 정보 전달의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다.

(3) 유럽의 타 도서관들과 관계를 맺는다.

(4) 만민에게 봉사한다.

이상이 대통령의 뜻이요 수상에게 보내는 지침이다.

1989년 8월 국제심사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대통령이 건축가 Dominique Perrot의
프로젝트를 채택했다. 부지는 파리의 Tolbiac에 있는 옛 화물역 부지를 사용하기로 하
여 공사가 진행중이다. 현 국립도서관의 모든 인쇄물을 이곳으로 옮겨 올 예정이며 문
화성과 국립도서관이 협력하여 형식과 내용 전체에 관한 계획 수립과 실행을 담당한

다.

- 건축가의 야심

건물 : 유리, 돌, 나무로 된 열려진 책 모양의 4개의 탑을 광대한 풀밭 위에 세워 세
느강가에 정박한 배의 인상을 준다. 겉은 빛에 개방된 유리로 싸고 속은 나
무로 하여 서가에 진열된 책을 보호한다. 수직의 탑과 수평의 녹지, 산책로,
벤치, 가교, 카페, 공공광장으로 이루어진다. 각 층은 서고와 사무실이며 지
상 1층은 대중에게 개방된 책과의 만남의 장소이다.

책과 독서를 위한 테크놀로지 :

-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으로서의 장서

- 방대한 양의 복제본 비치

- 영상과 소리의 문헌

- 전산화에 의하여 독서정보의 편의를 돕고 원거리 정보이동이 가능

- 전국 도서목록 작성과 전산화

- 전국 및 전 유럽에 있는 모든 문헌의 위치를 전산화하여 열람가능 하도록 서비스

1995년 개관 예정

전체 7헥타르의 부지에 건평 25만 평방미터, 4개의 탑은 각각 높이 90미터, 6개층
의 사무실, 14층의 서고, 서가의 총 길이는 400Km, 전체 4,000석 규모.

라. 국립예술 도서관 건립계획

현재의 국립도서관이 옮겨가고 나면 프랑스에 필요한 예술사센터의 설립이 가능해
진다. 1992년부터 현대미술관, 장식미술 중앙연합, 국립미술학교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들을 통합할 수 있게 된다.

8) 협 력

가. 1980년대에 와서 교육성의 선도에 힘입어 전국협력기구가 개선된다.

(1) CCN(전국종합목록) : 전체 도서관 대여도서의 80%를 차지하는 연속간행물 목록으로 1984년부터 가동되고 있는데 2,600개 도서관에 분산된 19만종 잡지의 소재지를 표시해준다

(2) 도서관 간 대여체계 개선 : CADIST센터 창설로 도서관들 사이의 청구서식을 일원화하고 요금체계를 합리화하며 전달체계를 현대화한다(자료의 전자전달 장치, Fax 등). 그리고 전 유럽 상호연결 체계에 가입한다.

나. 문화성의 사업

(1) 공공도서관 간의 자동화 협력망 구축

(2) 도서관의 소프트웨어 보급

(3) 도서목록 정보의 모델 개발 : 수요에 대한 평가 측정/출판 분야와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국립도서관 및 기타 협조망의 사명과 수단을 결정하자는 것이 목표.

DLL은 (1) 지방자치에 발맞추어 협조 에이전트 설립을 권장하고 (2) 공공도서관의 전국 협력센터를 만든다

9) 인력 양성

가. 특 징

도서관 관계 직종 종사자 양성은

(1) 국가도서관 직원

(2) 공무원 기능의 도서관 직원

(3) 기타직으로 나누어진다.

앞의 두 가지 분야는 3가지 직급으로 나누어진다.

(1) 서비스직

(2) 기술직(각 직급은 각기 다른 경쟁시험과 자격증에 해당된다)

(3) 학술직

학술직(국가공무원)은 국립도서관학교(ENSB)를 졸업하여 고등사서 디플롬(DSB)을 획득한 자

기술직은 사서보 시험(CBA)에 합격한 자

지역직은 DSB, 혹은CAFB 소지자

자료조사직(Documentaliste)은 주로 IUT(초급기술대학)에서 양성한다.

1970년대 이후 지연집단이나 대학에서 정보학에 관한 관심이 확대됨에 따라 학사, 석사, 박사가 많이 배출되었다.

도서관의 증가, 새로운 첨단 기술의 충격, 문헌 정보서비스의 경제적 차원에 대한 관심의 증대를 염두에 두고 이 직종의 변화양상을 심층분석하고 그 변화에 적응할 필요가 있다.

나. 결 론

최근 10년간 프랑스는 도서관 분야에 막대한 투자를 함으로써 눈부신 발전과 개혁을 이룩했다. 다음과 같은 미래의 문화환경 변화가 예견된다.

- 대중의 요청 증가
- 보다 가까이에서 운영 관리함으로써 새 시대 도서관의 현실에 적응
- 서로 다른 유형의 도서관 상호간 불균형을 확인할 경우 심층적인 반성과 대응
- 전반적인 현대화
- 문헌 정보의 전국차원 협조체제 정립
- 직업상의 칸막이 철거

앞으로는 점점 더 프랑스 도서관의 유럽화와 국제화가 가속될 전망이므로 미국, 영국, 독일 기타 여러 나라와 장학금, 연구비, 정보교환을 통한 협조체제가 요청된다.

10) 사례 연구 : 빌뢰르반 (ville urbaine)시립 〈책, 영상, 소리의 집〉

가. 프로젝트의 탄생

1931년 시청 청사 우측에 자리잡아 처음 설립된 빌뢰르반 시립도서관은 애초에 8, 200명 시민을 위하여 설립했으므로, 협소한 공간적 사정 때문에 오늘날 12만명에 달한 시민의 수에 비한다면 질식할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

서가에 책은 가득 쌓여있지만 이용자들이 20만권의 장서에 자유롭게 접근하기에는 대여실의 공간이 너무 협소했다. 따라서 장서의 1/3정도만이 이용자의 눈앞에 진열된 것이다. 공간이 부족한 관계로 도서관 내부의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독서공간을 분할하여 사용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심지어 학교의 교실을 빌려서 청소년부의 독서공간을 제공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다.

마침내 1983년 시의 관계자들은 문화정책의 목표 제1위로 새로운 도서관 건립을 선언했다.

Villeurbanne시는 지금까지 여러 장소에 분산되어 있던 각종 서비스를 보다 넓은 공간에 통합하기 위한 도서관 이전 차원을 넘어서 론느-알프 지역 제4위 도시에 걸맞는 현신적 시설을 창조하려는 야심을 가지게 되었다.

88 지평계획(Horizon 88) : 책과 인쇄물을 중심으로 하여 영상, 음향, 그리고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매체들의 첨단기술들을 결합시킴으로써 문화교류를 촉진시키는 예외적 장소를 만든다. : 〈책과 영상과 소리의 집(La Maison du Livre de L'image et du Son)〉

책, 영상, 소리의 집이 목표로 하는 복합 미디어적 사명을 확인하면서 두 가지 요청에 부응하고자 했다.

- 다양한 미디어를 결합시킴으로써 글(책, 신문, 잡지)과 소리(콤팩트디스크)와 모든 형태의 영상(비디오카세트, 텔레마티크, 케이블, 아르토테크, 비디오디스크)의 모든 분야에서 문화 표현의 모든 수단을 이용자에게 제공한다.

- 미래의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도전에 대비한다

(1) 첫 단계

이와 같은 목표를 세운 시 당국은 1984년 1월에 건축 공모를 실시했다.

응모된 5가지 프로젝트 가운데 시의회 대표, 건축가, 서적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1) 건축적 장점 2) 도시 환경과의 조화 3) 기능적 성격에 있어서 발군의 작품인 Mario Botta의 계획을 선정했다. 1986년 6월에 기공, 1987년 말에 준공했다. 1988년 3월 〈책과 영상, 소리의 집〉 개관.

(2) 기공에서부터 준공까지

- 1983. 3. 새로운 도서관 설립계획(시당국)
- 1983. 10 : 책, 영상 소리의 집 기획연구단 구성.
- 1984. 1 : 5개 건축 프로젝트 선정 : Amaco, Benassi, Botta, Dugelay, Vandraa.
- 1984. 4 : 공모 결과 Mario Botta계획 선정.
- 1984. 7 : 전체 계획 조정.
- 1985. 2 : 시공 협의
- 1986. 2 : 문화성 장관 Jack Lang 참석 기공.
- 1988. 3 : 책, 영상, 소리의 집이 프랑수와 미테랑 대통령에 의하여 개관.

나. 현대성 · 다양성 · 개방성

1983년 빌뢰르반시의 문화정책 목표 제1위로 선정된 책, 영상, 소리의 집은 두 가지 전통에 기반을 둔 것이다.

(1) 문화전통

1933년 극히 중요한 대여 도서관 설립으로 비롯된 책과 독서 발전을 위한 시의 한결 같은 활동과 노력이 오늘에 와서 이 혁신적 개혁의 창조로 결실을 보게 된다.

(2) 건축적 전통

현대의 세계적 건축가 Mario Botta에 의하여 제안된 건축 프로젝트를 통하여 시 당국은 도시 내의 건축 문화재 유산 속에 TNP(민중극장)나 마천루 거리와 유사한 일종의 건축적 〈신호〉의 가치를 지닌 건축을 조화 있게 편입시킴으로써 도시경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했다.

책, 영상, 소리의 집의 건축은 동시에 빌뢰르반 시내의 혁신적 복합매체의 시설을 갖추어 글, 영상기술, 음향 및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매체의 첨단 기술을 결합시킴으로써 문화적 민주주의의 요청을 구체화하고자 했다. 이는 다양한 문화표현수단을 만인에게 개방함으로써만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하여 책, 영상, 소리의 집을 구성하는 50명의 팀은 주당 45시간 동안 계속적으로 개방하여 이용자가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는 개가식 공간 5,000m²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 성인용 미디어테크 : 60,000점

– 독서 및 자료 수집실 : 책, 신문, 잡지, 비디오, 론 – 알프 지역의 역사를 구성하는 CD ROM, 비디오 디스크

– 미술품 대여관(artothèque) : 현대회화 300여점 수집

– 디스크관(Discothèque) : 9,000여개 CD(모든 종류의 음악 망라)

– 청소년부 미디어테크 : 6개월에서 14세에 이르는 청소년들을 위하여 마련한 책, 사진, 문헌, 만화, 앨범, 잡지, 카세트 등.

– 전시와 정보 공간 : 프랑스 및 국외의 응용 미술 및 창작 경향을 반영하고자 하는 〈책, 영상, 소리의 집의 디자인〉 전시. 디자인의 현황 및 역사(그래픽, 생산품, 환경 등 여러 분야)의 창안들이 단행본의 책, 테마, 카탈로그, 특수문헌 형태의 전시를 통하여 제공된다.

〈문화 교환의 선택받은 장소〉로 구상되어 미래의 첨단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주목하고 수용하고자 하는 책, 영상, 소리의 집은 당연히 파리와 지방에서 앞으로 10년

동안 프랑스의 문화 풍경에 자취를 남기고자 하는 〈대사업〉 계획의 일환이다.

이는 현대성, 다양성, 개방성을 거는 도박이다. 즉 새로운 대중의 흥미와 관심을 끌고 흥미의 범위를 확대하고 새로운 표현기술에 접근하여, 도시 전체 규모의 새로운 문화적 활력이 창조되는 분화구 역할을 하는 것이 목적이다.

책, 영상, 소리의 집은 개관하면서부터 시민들의 놀라운 관심을 끌어서 1990년 현재 능동적인 23,000회원을 갖게 됨으로써 도박이 성공했음을 확인했고 마땅히 존재하는 기대에 부응하는 계획이었음이 입증되었다. 더군다나 프랑스 대혁명 200주년에 즈음 하여 민주주의와 문화는 불가분의 관계임을 증명하는 기회가 됨과 동시에 진정한 시민정신의 기초가 이러한 문화 생활에 있음을 깨닫게 했다.

다. 건물의 기능적 구성

◦ 1층

- 중앙 입구와 접수+자석식 도난 방지 시설이 갖추어진 정문
- Discotheèque - Videotheèque(CD와 Video Cassette대여)
- 「책, 소리, 그림의 집에서의 디자인」: 2개층 총 300㎡에 분산되어 국제적 차원의 디자인(그림, 제품, 환경 등)에 할애된 전시와 정보의 장소.
- 중앙 파치오의 개방된 공간은 전시갤러리와 아르토테크 쪽으로 조망할 수 있게, 디자인 공간을 끼고 도는 공공통로는 이층에서 에밀 줄라 뜰과 거대한 주차장을 연결한다.

◦ 2~3층

성인용 미디어테크로 2개층에 분산.

- 2층 전체(7만철의 문헌 설치 가능)에 걸쳐 개가식 대여실.
- 독서 및 참고문헌(신문, 잡지, 정기 간행물 기타)용의 3층. 여기에는 비디오 카세트와 비디오 디스크를 비취볼 수 있는 모니터 설치.

◦ 4층

청소년용 미디어테크(책, 앨범, 음향자료 대여)학교의 클래스들을 수용할 수 있는
창고와 작업공간 보유.

◦ 5층

médiathèque 특유의 내부 기능들을 통합

- 문헌과 서고.
- bibliobus의 재고서적(여러 동네에 분산된 대여 서비스)
- '단체 대여'부의 서고, 자료 창고.

◦ 6층

건물의 행정 및 관리

- 제본 및 도서 유지·보존 아틀리에
- 전산부
- 행정 사무실
- 경비 숙소

라. 통 계

(1) 건물면적 : 5,100m

대중 개방 면적 : 3,500m

그중(개방면적)

- 200m² arthothèque
- 150m² auditorium
- 300m² disign
- 200m² discothèque/vidéothèque

- 1,000m² médiathèque adultes

- 500m² médiathèque jeunesse

(2) 전체 250,000점의 자료

내역

- 60,000권 : 개가식, 성인용.

- 30,000권 : 개가식, 청소년.

- 360종의 잡지, 정기 간행물.

- 1,000개 대출용 비디오 : 730종 : 현장 참고.

- 300점 표구한 판화.

(3) 도서관 제1년간 40만점의 문헌 대출, 월간 5,500점

- 1989년 1년간 50만점 대출.

(4) 예산

1982년 기준 : 국가에서 1,250만 프랑의 보조를 포함하여 총 4,200만프랑(56억 7,000만원)

두 시의 1986, 1987, 1988년 예산에 각기 분산시켜서 29,500만 프랑.

마. 대중을 위해 제공하는 첨단 기술

독서의 장려, 지식의 전달이라는 도서관의 전통적 사명, 나아가서 문화적 표현의 초현대적 매체에 최대한 많은 대중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미디어테크의 기능상 기술적 선택에 치중했다.

- 전체 시설과 장서, 문헌 전체를 전산화하여 여러 가지 미디어의 참고와 대출을 용이하게.

- 이 시스템 덕분에 물질적으로 운영이 간편하고 시간절약과 보다 나은 서비스 가능

- télématique : ① poste de consultation télématique(minitel)를 건물의 여러

곳에 설치하여 매 순간 이용자는 자신이 필요한 주제나 분야의
책, 문헌이 어디에 존재하는지, 언제 참고·대출이 가능한지 알
수 있다

② Minitel la disposition du public – Telecom의 서비스.

– Informatique(전산화) : 모든 반납과 대출은 자동화.

바. 문화 여권(Passeport Culturel)제도

(1) 왜?

‘문화 통행증’은 흔히 Centre Pompidou의 〈통행증〉이나 Orsay미술관의 ‘백색
카드’럼 단일 시설에만 제한.

미술관이나 역사적 기념관을 위한 단일 〈카드〉로 제한.

1986년이래 시행해온 Nantes 〈문화 커뮤니케이션 카드〉를 제외하고는 다양한 활
동(음악, 연극, 영화, 미술관, 서점, 강연회)에 접근할 수 있는 〈복합 문화 통행증〉은
없다.

(2) 문화여권의 독창적, 혁신적 성격

1988년 3월 14일 MLIS 개관이래 Villeurbanne시 당국은 문화여권 제안.

– 문화의 민주화 수단 – 유리한 요금으로 conlume의 다양한 문화 시설과 문화활동
에 접촉하도록 함.

– 총체적 문화정책의 귀결, 시 당국의 구체적 노력(시설, 문화 기관이나 협회의 지
원)의 결과.

(3) 문화여권의 두 가지 메뉴

㉠ 성인 문화 여권

date à date : 1년 유효 개인 카드.

Villieurbanne 거주자 : 연 100프랑

타지역 거주자 : 연 200프랑

㉔ 청소년 문화 여권

date à date : 25세 미만 개인 카드.

시 민 : 연 30프랑

타지역 : 연 60프랑

(4) 문화 여권의 혜택

- 〈책, 소리, 영상의 집(MLIS)〉의 회원 등록 무료
- 시의 문화 단체가 제공하는 공연 전시회 등 특별 요금
(25~30% 할인 혹은 그 이상)
- 전시회 오프닝 초대
- 시 문화 예술 정보 제공
- Fantasio 서점에서 책5%할인

(5) 문화 여권 파트너

- MLIS와 그 분관.
- TNP
- 박물관
- 영화관 Le Zola
- Centre Léo Lagrange “Espace Ton Kin”
- Centre Léo Lagrange “51”
- Viva 3. service de téléacétique de Villeurbanne
- 국립 음악 학교
- Salle Gérard Philipe

- Théâtre de l'Iris

(6) **축매 활동**(Les animations) 국제적인 회원 포함

㉠ **wjs사회**

- Livres d'Artistes, 88년 3월 12일부터 4월 23일까지.

- Adhésifs Livres Morellet Néons, 88년 10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 Philippe Favier, 89년 1월 28일부터 3월 4일까지.

- “Autres écrits, autres hommes, littérature cosmopolite”, 89년 3월 3일부터
4월 5일까지.

- Périphéries, 89년 4월 14일부터 5월 10일까지.

- Ruedi Baur : Conception sur papier, 89년 6월 3일부터 8월 23일까지

- Eloge du papier, 89년 3월 22일부터 6월 26일까지.

- discothèque... expériences sonores d'artistes, 89년 10월 4일부터 11월 4일까

- ANTINEA A l'Ecole du désert, 89년 10월 9일부터 25일까지.

- “Kino Papier” expos, animations, ateliers, performances, 89년 12월 2일부
터 90년 2월 6일까지.

- “UNGLEE – 14 déclarations”, 90년 2월 6일부터 3월 10일까지.

- Tana Hoban “Des couleurs et des choses”, 90년 3월 7일부터 20일까지.

- Jean – Lucien Guillaume – Martine Neddam – Philippe Thomassin”, 90년 6
월 8일부터 7월 21일까지,

㉡ **공 연**

- “Le Ge1 du Matin”, d'après une nouvelle de Caproni, mise en scène de G.

Drahy et le théâtre Narration, 88. 6.

- “Travaux d'acteurs” P. Morier – Genoud 89. 6.

- Catherine Zarcate Salomon et la Raine de Saba(contes) 89. 3.

- Michel Hindenoch, conteur, 90. 1.
- Marie - Hélène Gendrin, conteuse, 90. 2.
- Manfei Obin, conteur, 90. 3.
- “Contes de Tchéhov”, lecture par Géard Guillaumat, 90. 5.

㉔ 회의, 연구 발표회, 좌담, 워크샵

- Nouvelles centralités, nouvelles périphéries à l'ère des métropoles”
- Colloque européen d'architecture, urbanisme, environnement, sociologie
1989. 4.21.
- “Le geste commémoratif” : Colloque international organisé par le Centre
de Politologie Historique 89. 4. 26~28.
- “Vous avez dit latin - grec?” avec l'ARELAL(Association Régionale des
Enseignants de Langues Ancienne de Lyon) 89. 10. 14. 토.
- Colloque national “Lectures et médiations culturelles” 90.3.28~30.

㉕ 시리즈 강연회

- “Villeurbanne et la Révolution Française”, 88년 11월, 12월.
- Les Mercredis Scientifiques”, en collaboration avec l'Institut des Sci-
ences de la Matière de l'Université LION I(Ch. Ruhla, M. Casse, G. Ars-
ac, Wieber, J. Grea...).)
- Initiation à l'art contemporain 매월 3번째 화요일.
- Christian Faure présente “Le projet culturel de Vichy” (PUL) avec Pas-
cal Ory et Christian Bromberger (89. 9.).
- “Sur les traces d'Iphigénie” en collaboration avec la Salle Gérard Philipe
(89. 11.~90.2.).
- Poésie - Rencontres(Poésie lyrique chinoise ; hommage à René Char)
- L'art des jardins de l'Antiquité au XXe siècle par Anne Wiegel(90. 5.)

㉔ 학교 기관과의 정기적 촉매 활동

- Accueil des crèches(수요일 오전).
- Accueil de classes primaires à la médiathèque jeunesse(주당 8강좌),
- Initiation à l'art contemporain à l'artothèque(주당 기본 4강좌).

㉕ 음향 자료 및 비디오 시사 시청회

- La Biennale de la Danse(vidéo - danse "Repères sur le modern danse").
- Octobre des Arts(vidéo - art "Buren Morellet Toroni Vasarely").
- La Première Biennale Européenne du Film Documentaire.
- "Littérature étrangère" écho à l'exposition Cabinet Cosmopolite Stock.
- Hommage à Bertolt Brecht : "Kuhle Wampe"(89. 4.)
- "Zoo - Vidéo"(89. 5.).
- "Vidéo - Papier"(89. 6.).
- "Vidéo mode" : histoire de la mode(89. 10.)
- "L'univers de Frédéric Chopin"(89. 12.).
- "Journée Charlie Chaplin"(89. 12.).
- "UNGLEE Vidéo"(90. 2.)
- "Buffon"(90. 3.).
- Projection des films primés à la biennale internationale du film d'architecture et d'environnement urban(1990. 4.).
- "Elvire Juvet 40"(1990. 4.).
- Séances hebdomadaires : "L'Empire des hommes", : "Le Sarcophage de l'amour"(90. 4.) ; "Le Sacre des fèves", "Benleu Ben"(SO. 5.).
- "Meurte dans un jardin anglais"(90. 5.), présentation du film de Peter Greenaway dans le cadre du "Mois des jardins".

㉖ 연 수

- En milieu scolaire : Présentation mensuelle des nouveautés “livres jeunesse”.
- Au sein de la profession : collaboration avec l'Ecole Nationale Supérieure des Bibliothécaires pour l'accueil de stagiaires.

⊙ 출 판

Publication de catalogues d'expositions, édités par la Maison du Livre, et disponibles à l'artothèque :

- Livres d'Artistes, 1988. 2.
- Adhésifs Livres Morellet Néons, 1988. 10.
- Ruedi Baur Conception sur Papier, 1989. 5.
- discothèque...expériences sonores d'artistes, 1989. 10.
- UNGLEE “14 déclaration”, 1990. 2~3.
- “Jean - Lucien Guillaume - Martine Neddard - Philippe Thomassin”, 1990. 6~7.

⊗ 디자인 활동

1990년에 창설된 〈책, 영상, 소리의 집의 디자인부〉는 디자인 분야의 계획과 그 실현들을 제시하는 것을 소명으로 삼고 있다. 산업디자인, 시각 커뮤니케이션, 가구류, 건축물, 기타 여러 가지의 응용 창작물 등이 바로 그것이다. 〈책, 영상, 소리의 집의 디자인부〉는 국제적인 디자인을 알리고 이를 보다 광범위하게 확산시킬 수 있는 발표물들을 체계적으로 조직하고 있다. 디자인의 역사와 같은 실제 사실은 논문이나 주제 발표문, 출판물들, 회의와 토론, 그리고 전문적인 자료들을 통해서 제시되고 있다.

정보와 회화 대신에, 〈책, 영상, 소리의 집의 디자인부〉는 광범위한 대중은 물론 전문가들에게도 의존하고 있다.

이제까지의 활동과 앞으로 예정된 활동

- Dieter Rams, directeur du département design de Braun, conférence,
1990. 4.
- Les Ateliers du Nord, design graphique et design industriel, Lausanne
- Suisse, Werner Jecker, Antoine Cahen, Claude Frossard, 1990. 10~12. 전
시
- Peret, design graphique, Barcelone, 90. 12~91.1.
- La Typographie hollandaise, exposition, 1991. 4~5.
- Projets refusés, qualité virtuelle, exposition, quadriennale internationale
de design, 1991. 6~8.

4. 도서 독서 정책 지원 및 연구

1) 국립 문예원 (Le Centre national des lettres : CNL)

문화성 산하의 독립기관인 국립 문예원은 우리 나라로 말하자면 문화예술진흥원에 해당하겠으나 공연예술이나 미술과는 관계없이 오로지 문예쪽에만 관련된 것이다. 문예창작을 북돋우고 수준 높은 저작의 출판을 장려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기관은 창작, 번역, 출판, 독서, 촉매활동 등 문화생활의 모든 단계에 개입한다.

1986년 3월 이후 파리의 제7구 Verneuil가 53번지에 있는 작고 화려한 Avejan성관에 자리잡고 있다. 출판사들이 밀집해 있는 거리의 중심부에 위치함으로써 문학계 직업적 인사들과 항구적이고 긴밀한 접촉이 용이하다. 이 건물의 공공용 공간은 문학과 출판계 직업인들의 만남, 토론, 전시 등에 활용된다. 동시에 문예원은 스스로 출판계의 다양한 분야에 관한 전시와 만남을 조직한다.

이사회에는 출판인, 저작자, 번역가, 서적상, 도서관장 등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그들은 이 공공기관의 정책결정에 참여한다. 이사회는 문화성의 서적 독서국(Direction du Livre et de la Lecture)국장이 대표하며, 그가 문예원의 활동 전체에 대한 책임을 맡는다. 다양한 위원회와 협력하여 각 직업인사들은 각 지원분야에 직접적으로 참가한다. 지원신청이 접수되면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보고서가 작성된다. 이 전문가들이 여러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이사회

정부 대표(6명)

- 문화성 DLL(서적 및 독서국장)
- 외무성 문화 과학 기술 협력 국장
- 경제 및 재무성 예산 국장
- 교육성 연구 국장
- 공업성 대표

- 대학성 계획, 발전 국장
- 문예계 대표
- 문인협회 이사장
- 작곡가 및 극작가 협회장
- 도서관협회장
- 출판협회장
- 서적상 조합장
- 아카데미 프랑세즈 원장
- 작가협회장
- 출판사 대표

문화부 장관이 임명한 전문가 4명

16명의 문예원 소위원회 위원장

- 작가지원위원회
- 미술위원회
- 만화위원회
- 도서관위원회
- 청소년위원회
- 유럽사상 서점위원회
- 고대문학 및 고전문학 위원회
- 과학·문예위원회
- 외국문학위원회
- 철학위원회
- 시위원회
- 잡지위원회

- 소설위원회

- 인문·사회과학위원회

- 연극위원회

- 문단생활위원회

기타 자문역(3명 : 문예원 대표 포함)

이렇게 하여 문예원은 100명의 외부인사들의 협력을 얻고 있으며 각 위원회에 소속된 150명 인사들의 작업에 의존한다. 그 결과 수백명의 작가, 번역가, 출판사 지원, 문예지에 자금지원 혹은 대출, 각종 행사 및 도서관 지원을 실현할 수 있었다(매년 3,000건 이상의 대출 혹은 지원, 1987년 경우 1억 프랑 이상의 지원예산).

가. 문예원은 다섯 가지의 중요한 일을 사명으로 하고 있다.

(1) 지원사업(연구년제, 창작기금, 격려기금지불), 혹은 연로하거나 잠정적인 어려움에 처한 저작자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통해 문예창작을 활성화한다.

(2) 출판 지원 : 미술, 장서용 서적, 고전 불문학, 외국 문학, 청소년 서적, 과학기술, 철학, 인문, 사회과학, 만화 등 분야의 저작 출판을 위하여 출판사에 대출 사업, 시, 현대연극, 연구발표논문집, 잡지 출판을 위한 지원, 시, 연극, 연구발표 논문집을 제외한 대다수의 경우 출판사에 할당한 예산지원은 1987년 경우 1,700만 프랑 상환조건의 선금지불형식.

번역가 지원(수당 혹은 장학금)과 출판인 지원(장려금 혹은 대출) - 이 경우는 외국 작품 번역에 한한다.

(3) 각종 문학행사 및 협회 활동 지원

(4) 도서관의 서적 구입 지원을 통해서 공공 독서 발전에 기여한다.

이 같은 원칙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가를 알기 위하여 1986~1987년 활동을 그 예로 살펴보자.

문예원이 기획한 행사로 1987년 6월 문예원 지원 하에 아비뇽에서 개최된 전시회 〈Le Parcours〉 (작가 앙드레 무레노에 관한 것)를 프랑스 킴튀르 방송 및 아비뇽 페스티벌 공동 제작으로 문예원 전시실에서 미리 개최했다. 또한 같은 아비뇽 페스티벌의 일환으로 국가문학상 시부문 수상자인 장 토르텔을 기리는 전시회를 개최했다.

연극 분야에서는 현대연극작품에 관한 20여 회의 만남과 토론의 모임을 가졌다.

Bailly, Vanthier, Billetdoux, Beckett, Copi, Arrafal 등의 작품이 소개되었다. 한

달에 일정한 토요일 하루를 정하여 문예원은 젊은 연극인이나 극단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작품을 소개하는 〈백지〉란 이름의 공연기회를 제공했다.

외국 문학의 경우 문예원은 문화성의 도서독서국과 협조하여 〈Belles étrangères 아름다운 이방인들〉이라는 제목의 만남을 주선했다. 번역할 작품에 대한 정보 교환, 지원금의 효율적 사용, 관계 국가와의 기존 관계에 대한 평가 등을 위한 전문가 모임이다. 1987년에는 브라질, 동독, 덴마크가 선정되었고 1988년에는 중국, 알제틴, 스페인, 포르투갈이 선정되었다.

번역료의 절약을 목표로 출판사 지원에 대한 수요는 점점 증가하고 있어서 신청내용 심사가 더욱 까다로워지고 있다. 선정은 출판계획의 독창성과 흥미, 출판사와 번역자간의 계약조건, 그리고 물론 번역의 질 등을 기준으로 한다. 배우기가 어려운 언어, 가장 덜 알려진 문학에 우선권이 주어진다. 1986, 1987년에는 《세르비아 콩트》, 체코의 밀레나 레젠스카의 《삶 Vivre》, 스와힐리어 작품인 《잔지바르의 정향나무》, 티베트어, 터키어, 중국어, 캄보디아어, 아르메니아어, 아랍어 등의 작품들이 번역지원 대상이 되었다. 문예원은 동시에 철학, 인문과학, 미술, 과학, 기술, 저작의 기술적 성격과 규모상 출판사의 과중한 부담을 요구하는 모든 분야의 저작을 번역 소개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원하고 있다.

문예원은 또한 정기간행물의 발간을 지원한다. 문예창작 잡지 뿐만 아니라 사회과학, 과학기술, 미술, 외국 문학, 철학, 청소년, 만화 등 여러 분야의 잡지도 여기에 포함 된다. 1986년의 경우 300프랑의 지원금으로 192개 잡지가 혜택을 입었다. 잡지를

외국에 보급하는 사업에도 100만 프랑을 지원했는데 발송비 부담, 문화원, 대학 등 외국구독자에 혜택을 주는 내용 등이다.

지역언어로 된 출판물도 지원대상이다. 지역언어 서적 발간, 지역언어를 프랑스로 번역, 2개 언어의 저작 발간 등을 대상으로 한다. 각 지역의 문학 및 역사적 문화재의 가치를 드높이고 젊은 계층의 지방언어 습득을 고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반면 시, 소설, 연극 등의 창작지원은 각 지역에 맡기고 있다.

도서관 지원은 서적 구입, 자료 지원의 형태로 한다. 814개 시립도서관, 63개 대학 도서관, 6개의 대형 기관도서관(교육성 관할), 95개 협회 도서관들이 1986년에 혜택을 입었다. 시와 연극 작품 구입을 위한 특수 지원이 구상중이다. 출판과 번역지원에 대하여 추가로 언급하건 데, 위에서 설명한 일반적인 범위 이외에 특수한 개입에 의한 사업도 있다.

예컨대 1984년, 명백히 공백이라고 느껴지는 분야의 출판과 재판을 장려하려는 목적으로 이제는 구할 수 없는, 그러나 필요 불가결한 저작에 대한 집중 지원을 위해 출판사들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자극했다. Hérodote, Jean Lorrain, Saint - Pol - Roux 등 문학, Adam Smith, Cuvier, Arago, Poincaré, Champollion 등 학술분야와 관련된 저작들의 발간 계획들이 이 형식의 지원을 받았다.

유사한 정신에 입각하여 문학적 중요성이 명백함에도 규모가 방대하여 출판이 어려운 계획들에 특별한 노력을 바쳤다. Hugo전집 (Robert Laffont사의 《Bouquins》 총서), 세계문학사전(Larousse) 《프랑스어 철학 저작 전서》(Fayard)등이 최근의 성과로 꼽힌다. 한편, 연구성, 교육성, 외무성과 함께 문예원이 공동으로 지원한 사업으로는 프랑스 대혁명 200주년 총서 사업을 들 수 있다. 프랑스 대혁명에 대한 오늘 의 저작 및 19세기의 위대한 사상가들의 저작들을 출판 및 복간하는 사업이다. 각 부처의 공동지원 덕분에 출판비용을 줄일 수 있고 따라서 보급이 확대되며 특히 지원을 통한 국외 보급이 용이해졌다. 기본도서, 장기간의 연구성과로 이루어진 출판물 등이 전체계획 속에 포함될 수 있다. 1987년에 이미 이 계획의 일환으로 15권이 나왔다.-

시, 연극, 외국 문학, 잡지, 지역언어, 도서관의 지원, 거대한 프로젝트 등등.

끝으로 한가지 예를 통해서 문예원 사업의 다양성을 짐작해보자. 장서용 서적 출판 지원이 그것이다. <희귀한> 책을 만들기 위하여 출판사, 작가, 화가 등이 심혈을 기울이는 전통은 한정된 발행부수, 동판화, 석판화, 세리그라피 등의 기법을 활용한 그림 제작, 고급 종이 사용, 미려한 특수 활자 사용 등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데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인하여 현재에는 위협을 받는 사업이다. 1988년 3월 문예원은 국립 도서관과 협력하여 1947년이래 이 방면의 출판물 중 가장 훌륭한 것들을 엄선하여 소개 전시했다. 대중들에게 접하기 어려운 작품들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출판사들에게 모험을 할 용기와 아이디어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의 지원은 대출이 아니라 장려금 형식을 취했다.

1988년에는 위에 열거한 지원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한편 연구 조사 활동에 역점을 두어 세 가지 중요한 사업을 수행했다.

㉠ 지금까지 부분적이고 오래된 자료가 있을 뿐인 문인들의 작업에 관한 법률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조건에 대한 분석이 3종 하나다. 이 조사는 문예 창작 지원에 대한 새롭고 심도 있는 반성의 계기가 될 것이다.

㉡ 프랑스에 있어서 서적의 물리적 보급 시스템 연구, 다른 여러 나라에서의 서적 보급 체계에 대한 연구, 다른 한편 의약품, 음반 등 다른 업종분야에서 활용하고 있는 보급 방식 연구를 특수 연구소에 의뢰하여 실시했다. 이 연구는 서적을 취급하는 업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한 반성에 유용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 세월이 지나도 파손되지 않는 특수지에 인쇄하는 실험적 작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 강구, 이는 특히 국립 도서관을 중심으로 진행중인 문화재 보존에 대한 반성과 관련이 있다.

나. 문예원의 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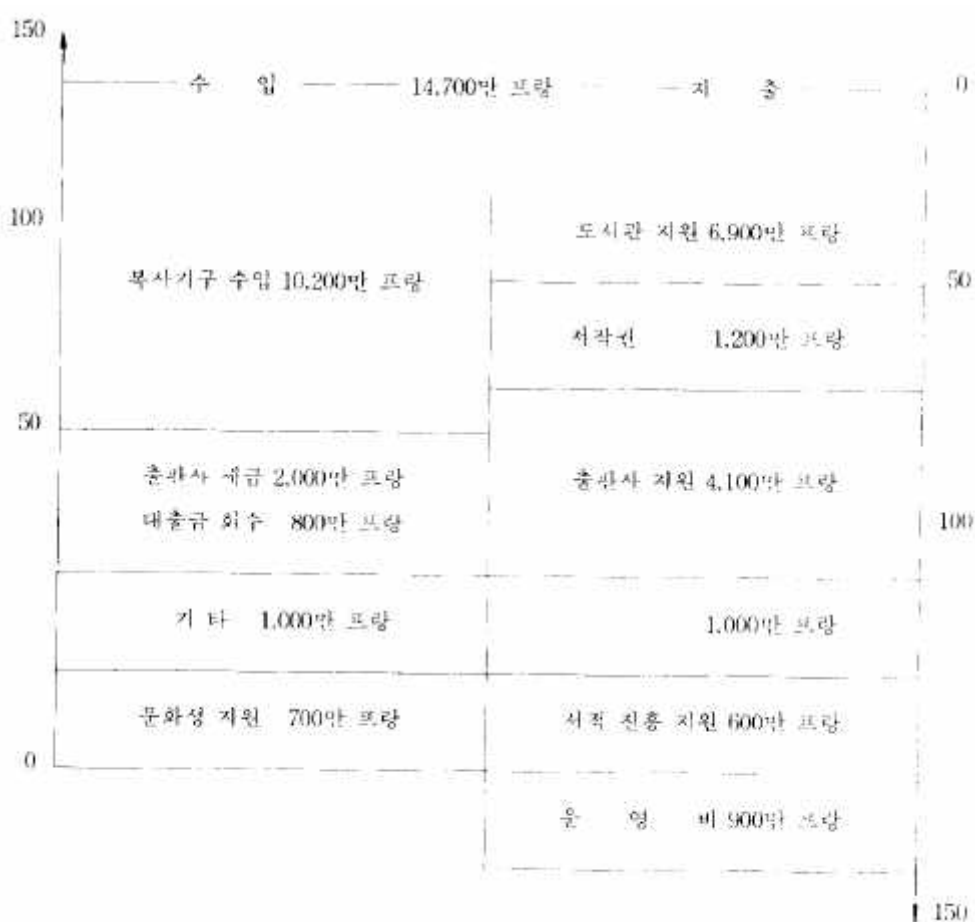
CNL의 재원은 준조세형태의 두 가지 원칙으로부터 얻어진 것이다.

(1) 서점에서 판매되는 모든 상품에 대하여 0.20%씩 부과하는 세금(오직 군소 출판사만이 예외다).

(2) 모든 종류의 복사용기계, 기구의 판매에 대하여 부과하는 3%의 세금 이 세금에 국가 지원금(1987년 1,400만 프랑) 및 출판사 대출금, 회수금이 추가된다.

1987년 전체 예산은 1억 1,400만 프랑으로 전년도비 4%인상되었다(1990년에는 1억 4,700만 프랑). 이 예산의 주된 몫인 1억 100만 프랑이 사업비(문예원 운영비는 300만 프랑, 그 중 300만 프랑은 예외적으로 전산화 사업에 투입)로 쓰였다.

1990년도 예산 분포



도서관 지원은 4,940만 프랑(전체 예산의 52%)이었으나, 1990년에는 6,900만 프랑으로 인상되었다(그 중 1,700만 프랑 이상이 대출). 저작자들은 1,200만 프랑의 혜택을 입었는데 그 중 180만 프랑이 〈작가의 집〉에 제공되었고, 나머지는 개인지원이었다. 끝으로 토론회, 행사, 잡지발행 지원금 등 문예활동비로 1,080만 프랑이 지원되었다.

1990년에 632개 출판사가 대출 및 장려금 혜택을 입었고 91개 창작지원금이 소설가, 시인, 극작가, 만화가에게 지급되었다. 그리고 인문과학 저작지원금 및 장학금 38건, 번역자 지원 17건을 기록했다. 200종 이상의 잡지들이 총액 640만 프랑의 지원금을 받았다.

2) 현대 출판 사료 연구소(IMEC : Institut Mémoires de l'édition contemporaine)

- 1989년에 설립되었다.
- 일종의 사설기관으로 문화성의 도서 독서국 및 몇몇 출판사의 지원(예산의 70% 정도)을 받는다.
- 작가나 출판인의 가족, 출판사 등과 계약을 맺어 출판 관계 문헌을 제공받는다. 그러나 가족 및 출판사가 소유권을 계속 유지한다. 경영곤란으로 도산하는 출판사의 경우 흩어지기 쉬운 문헌, 서류, 자료는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 연구소에 기증하곤 한다.
- 설립 후 2년만에 많은 문헌을 흡수 할 수 있었다.

예를 들면

- Larousse출판사의 문헌을 인수하여 전체 감사와 평가를 내리도록 의뢰 받았다.
- 노벨상 수상 작가인 사뮈엘 베케트의 원고 복사본 전체를 영국 런던 소재 베케트 재단으로부터 입수.
- 작고한 사상가 루이 알튀세르의 원고 전부, 장서 전체, 요컨대 서재 전체를 기증

받았다.

- 이때 출판 문헌이라 함은

- 1) 모든 종류의 출판관계 서류(편지, 계약서, 계산서, 메모 등)
- 2) 작가의 경우, 원고, 연구서, 노트, 원고의 복사본, 신문 스크랩, 작품, 편지, 번역 등 모두를 망라함.

- 연구소는 자료관, 도서관, 서고 등을 갖추어 문학, 사상, 출판사, 출판문화, 사회학 연구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 전시회를 개최한다.

- 출판사의 역사에 관한 문헌집, 자료집, 저서 등을 발간한다

(성공한 경우 : - Albert Camus, Céline)

- 연구의 성격을 증명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개방한다

- 직원 구성 : 전체 10명(월급제)+5~6명의 객원

(1) 행정, 관리

(2) 출판, 전시

(3) 도서관

- 연구소는 Paris 중심가(국립 문예원에서 아주 가까운 곳 : 25rue de Lille, Paris 7^e)에 위치하나 자료창고는 파리 교외에 있다.

- 이런 형태의 연구소로는 세계 최초의 경우이다

- 책의 역사, 저자의 연구에 불가결한 자료의 수집 보관 이때 국립도서관과 다른 점은 자료의 가치를 원고, 수고 등 물질 가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를 위한 가치로 본다는 점이다.

- 현재 출판사 Flammarion사의 역사를 기획 중이며 곧 출판 예정이다.

〈잡지의 역사〉(1900~1950), 〈Celine의 서한문〉, 〈출판 경제 통계집〉도 준비 중이다.

(이상 동 연구소 Olivier Corpet 원장과의 면담 내용, 1991년 7월 10일)

5. 도서 독서 정책의 한국적 적용에 관한 건의안

선진국 문화정책의 한국적 적용을 위한 이 연구에서 지극히, 그리고 우선적으로 중요한 점은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사항에서 정책의 발상을 얻어내는 것 이상으로, 프랑스와 같은 선진국은 〈경제〉 못지 않게 〈문화〉를 중요시하고 있다는 구체적 증거를 눈앞에 보면서 최고위 정책 결정자들로 하여금 〈문화〉에 역점을 두지 않은 채 선진국이 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갖게 하는 일이다.

프랑스 문화정책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바로 세부사항이 아니라 위정자들의 근본적인 〈태도〉이다. 근래의 예로 퐁피두 대통령의 직접적인 관심의 결실인 보부르 센터(일명 퐁피두 센터)의 성공 사례를 들 수 있고 그후 현대의 루이 14세라는 평을 얻고 있는 프랑수와 미테랑 대통령의 문화적 치적을 주목할 수 있다 그것은 우선 프랑스 문화성의 공식 명칭이 〈문화, 커뮤니케이션 및 대역사서 Ministère de la Culture, de la Communication et des Grands travaux〉으로 바뀐데서도 곧 짐작할 수 있다. 이 명칭은 무엇보다 먼저 문화가 오늘날에는 커뮤니케이션과 떼어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인식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특히 프랑스 대혁명 200주년을 전후하여 문화의 역사적 중흥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즉 현 대통령 재임시에 이룩한 대역사로는 우선 오르세 미술관 개관, 빌레트 과학도시, 라 데팡스의 새로운 개선문(crand Arche), 루브르 박물관의 구조개선과 관련하여 건립한 기념물 피라미드, 그리고 전세계에 전무후무한 기획인 프랑스 도서관 등을 들 수 있다. 그 뿐만이 아니다. 이 보고서에 예로 들어 보인 빌뢰르반 시립도서관(그 공식 명칭은 〈책과 영상과 소리의 집〉)은 그리 크지 않은 중도시의 지역 도서관에 불과하지만 그 역시 문화성의 〈대역사〉 기획과 발맞추어 이루어졌고 준공식에는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여 그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대통령의 문화정책에 대한 지대한 관심은 재임 중에 동일 인물(자크 랑 현 문화성 장관)을 문화성의 책임자로 2차에 걸쳐 기용함으로써 문화정책의 계속성을 유지하도록 한 것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더군다나 자크 랑 현 문화성 장관은 문화정책 모든 분야에 골고루 관심을 기울였고, 특히 그 중에서도 서적과 독서정책에 프랑스 문화정책의 근본적 위치를 할애함으로써 책과 독서가 한 나라의 문화적 힘을 강화하는 기관차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입증해 보여주었다. 책을 다른 문화와 생산물과 같은 수준에 놓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독서는 다른 평범한 문화 행위와 동렬에 놓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문화정책적 시각이 오늘의 구체적 성과를 가져오는데 원동력이 되었다는 사실을 절대로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책과 독서는 모든 문화행위의 근본이라는 인식 없이는 문화의 질을 높일 수 없다. 이 같은 인식은 구체적으로 그 예산 할당의 수치로 나타난다. 문화성이 1981년에서 1991년까지 10년 동안의 기간에 서적과 독서의 진흥을 위하여 쏟아 부은 예산은 연 평균 7억5천700만 프랑에 달한다(1991년 12월 현재 1프랑은 약 146원). 이 금액은 같은 기간에 수행된 대역사(도서관 건립 등)의 공사비를 제외한 것이다. 이 예산은 1971~1981년 사이의 10년간 연평균이 3억4천700만 프랑이었으므로 2배가 넘는 증가에 해당한다. 더군다나 1990/1991년 2년 동안에는 평균 8억3천500만 프랑이었다. 이와 같은 방대한 예산만이 가시적인 발전의 기초조건이 될 수 있다. (〈프랑스 도서관의 현황〉 참조)

특히 프랑스는 유럽 선진국들 가운데서도 상대적으로 서적과 독서정책 여건이 뒤떨어져 있었던 나라인 만큼 지난 10년간의 눈부신 문화적 성공은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특히 최근에 와서야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기 시작한, 오랜 중앙집권적 문화 관행을 지닌 나라였다는 점에서도 우리와 유사한 여건을 가지고 있어서 그 테두리 내에서 문화환경에 적응해 나가는 정책적 지혜, 혹은 실패의 사례, 문제점 등은 우리에게 한 표본이 될 것으로 믿어진다

최고정책결정자 및 정치권의 〈문화적 인식도〉와 그에 따른 예산편성을 우선적으로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은 세부적 문제와 개선방안, 건의사항 등을 앞서의 〈현상황〉 설명과 관련하여 열거하고자 한다.

1) 도서 출판 및 보급

A. 문화정책에서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보다 각 부문에 관한 현실 파악이다. 문화성내의 기획조사부(Département des études et la prospective)의 활동은 본받을 만하다. 이곳은 프랑스 문화생활의 민감한 안테나이며 전망대다. 그곳의 연구 방향은 여섯 개의 축에 의거한다.

- (1) 통계분석
- (2) 문화관계 직종의 인구 통계(취업, 인격 양성 등)
- (3) 공적, 사적 문화 재정 분석(국가, 도, 시 및 기업의 예술 지원)
- (4) 문화생산과 분배 메카니즘 연구를 위한 경제적 접근(문화 경제)
- (5) 문화실천과 태도의 사회 심리적 분석
- (6) 프랑스와 세계에 있어서 문화제도와 정책분석

이 연구결과가 집적되어 있는 문화성 문헌센터(Centre de Documentation)는 문화부 각 부문의 정책담당자가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할 장소이다. 한국에서도 이런 활동에 해당하는 장소가 어디에 있으며 그 결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대중에게 널리 홍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프랑스 문화성은 이 정보를 대부분 전산화하여 축적하고 있어서 접근이 용이하다. 이점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B. 프랑스의 문화정책이 목표로 하고 있는 3가지 원칙을 참고로 소개하고자 한다. 이 역시 우리의 요청과 크게 다르지 않다.

- (1) 창조정신의 지원(독창성 고양)
- (2) 대다수가 문화에 접근 가능하도록 한다(문화향수권).- 문화 민주주의
- (3) 문화유산을 복원 보존하고 대중이 그것에 쉽게 접근하도록 한다.

C. 출판분야에 있어서 휴대가 간편하고 가격이 저렴한 〈포켓북〉이 우리 나라에도 존재해왔으나 현재 시장에서 자취를 감추어가고 있다. 경제적인 이유라고는 하나 선진국에서는 특히 경제적으로 성공을 거두고 있는 분야인 만큼, 정책적으로 이 부분에 개입하여 회생시킬 필요가 있다. 국가의 재정지원이나 전 국가적 기획에 의하여 포켓북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기왕에 출판하여 충분히 판매된 책들 중에서 엄선하여 모든 출판사를 망라한 〈포켓 문고〉의 방대한 기획이 가능할 것이다.〉 프랑스의 Liv - re de Poche, Folio 문고 등은 출판계를 회생시키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D. 각종 사전, 백과사전 분야가 종래의 책 형태에서 전자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정보 은행으로 전환하는 일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우리 나라가 최선진국으로 부상한 부문인 통신분야와 컴퓨터를 결합할 경우 프랑스의 〈미니텔〉과 같은 것을 전국 규모로 보급시킬 수 있다. 이 분야는 단순히 시장 기능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문화부가 개입하여 지도하거나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E. 미술서적 분야는 시장이 낙후되어 있고 이미 많은 투자를 필요로 하고 있다. 거기에 겹쳐서 예술가의 작품을 사진복제 하여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때 작품의 사진복제 사용 시 생기는 판권문제에 법률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책은 예술가의 작품을 널리 알리는 효과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예술가와 출판사 사이에 정책적 중재가 요청된다.

F. 독서진흥정책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는 학생들의 독서 교육이다. 그런데 현행 입시제도야말로 씩에서부터 독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불행한 요소이다. 더군다나 책과 독서는 입시지옥으로 인하여 즐거움이나 지혜와 관련된 세계가 아니라 고통과 짐으로 인식된다. 입시제도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하기 어렵다. 대신 잠재적인 대안으로 〈카세트 녹음서적〉의 출현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와 영국

에서 크게 성공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책과 카세트 녹음을 함께 판매하고 자동차 판매와 연계시키는 방법도 있다. 운전자가 할 수 있는 독서는 카세트 녹음서적을 통해서 가능하다.

G. 독서진흥의 하나로 흔히 활용하는 것이 〈독서 감상문〉이다. 그러나 학교 교실이나 현상 모집에서 흔히 활용되는 〈감상문〉은 고정관념일 뿐 효과적인 방법이 못된다. 〈감상문〉보다는 〈독서카드〉 활용이나 점점 그 길이를 늘어 가는 〈요약〉 쪽이 실질적으로 독서에 도움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독서지도에 있어서 상투성 탈피가 요구된다.

H. 문학상을 결정할 때 몇몇 권위 있는 심사위원들이 비공개 결정과 병행하여 라디오, TV, 혹은 공개적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토론을 통한 수상자 결정과정을 거치는 것이 독자의 관심을 유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I. 서울이 아닌 지방 출판사들 몇 군데 중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을 찾아 지원할 필요가 있다.(프랑스의 지방 출판사의 예를 참고할 것)

J. 프랑스나 우리 나라나 시급한 문제는 도서유통구조의 개선 문제다. 이 역시 현대화, 자동화를 요구한다. 앞에서 설명한 프랑스의 ELECTRE시스템에 대한 구체적 검토 및 그 적용가능성을 연구해야 한다.

K. 문화부가 지원하는 책 안내지의 발간이 요청된다. 이는 단순한 서평지가 아니라 납본을 받고 있는 국립 중앙 도서관이 주도하는 출판정보지로서 일목요연하고 신속한 출판정보를 망라해야 한다.

2) 도 서 관

도서관의 증가, 질의 향상, 운영의 활성화 등에는 두 가지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 중 하나는 재정적 바탕이고 다른 하나는 도서관의 활성화를 재는 평가 기준이다. 다음은 프랑스의 도서관 정책 당국이 제시하는 평가의 기준이다.

A. 주민 1인당 얼마를 도서관에 투자할 것인가? 사회 집단 전체차원에서 잘 가동되는 도서관이 되기 위하여 필요한 투자기준은 1만명 이상의 코뮌에 있어서 1년 동안 주민 1명당 책 1권 값에 해당한다. 1987년의 예로 주민 1인당 연간 70프랑이면 훌륭한 공공 도서관을 가동시킬 수 있다.

B. 직원 : 도서관의 운영은 직원의 자질과 수가 적정해야 가능하다. 직원의 수는 (1) 독서 대중의 각 유형에 대한 실질적 관심을 기울이고, (2) 도서를 독서자에게 공급할 구입속도를 완전히 갖추며, (3) 개관시간의 길이를 충분히 유지하고, (4) 운영을 활성화하는데 결정적이다. 흔히 공공면적 100평방미터와 주민 2,000명당 직원 1명이 정상운영의 적정선이며 전문직 직원은 인구 5,000명에 1명이 적정선으로 평가된다.

다음으로 장서 통계에 의하면 인구 5,000명당 13,500권에서 인구 15만명당 27만권이 양쪽 극으로 제시될 수 있다고 한다. 장서수는 인구수와 비례하기 때문이다. 장서의 새로운 서적으로의 갱신 비율은 연간 12~15%가 적당하다. 어쨌든 도서관이 존재하자면 3,000권 이상의 장서가 최소한으로 필요하다. 또 주민 1인당 1권 꼴의 기초장서 없이는 개관이 불가능하다. 다음으로 전체장서의 연간 최저 증가 분은 능동적 독자(회원가입자) 1인당 1권 이상이어야 한다.

도서관 건물의 조건 : 성인 및 어린이를 적절한 조건에서 맞아들이고, 장서를 대출하고 능률적인 현장작업이 가능하며 음반, 비디오, 오디오 카세트 및 기타 현대적 자료 시청이 가능하고 질이 높은 활동(전람회, 강연, 영화 상영, 동화 구연)을 제공하며 직원의 기술 및 행정업무 수행이 가능한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더군다나 중앙대여도

서관일 경우 독서 버스 여러 대를 보관할 차고, 서고, 다용도 홀이 필요하다.

건물의 위치는 상업시설이 가깝고 통행이 잦은 거리, 접근이 용이하고 교통이 편리한 장소(어린이, 노약자, 지체부자유자를 위해서 매우 중요함)이어야 하며 이용자, 직원, 장서의 필요에 부응하여 경제적 운영이 보장되는 기능성이 요청될 뿐만 아니라 각 부서와 서비스 공간의 적절한 배열과 상호 연관을 유지해야 한다.

면적은 1986년 법에 의하면, 인구 25,000명 이하의 코뮌(시읍면) : 1인당 0.07 평방미터 이상, 전체 면적이 8,000평방미터 이상이면 언제나 가능하다. 시립도서관의 분관의 경우는 300평방미터 이상이며, 그 이하일 경우는 독서버스가 고정공간을 대체한다. 300~400평방미터 이하의 도서관은 관리가 곤란하다.

C. 지원금의 출처(시립 도서관)

지방 자치 예산 일반 할당금 중 특별 협력금.

여기에는 두 가지 부분이 있다.

(1) 예산의 35% - 도서관 운영 명목으로 도지사가 할당(문헌 구입, 직원 비용, 운영자금)

(2) 65% - 투자 자원

- 본, 분관 자원

- (신, 증축에 따른) 물적 장비 구입

- 전산화

- 장서 조건 개선

3) 결 론

여러 곳의 성공적인 프랑스 도서관 사례를 현장 방문하고 얻은 결론은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이다.

A. 오늘날의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보관하고 대출하는 〈도서관〉 으로서는 그 기능을 다할 수 없다. 책 이외에도 영상이나, 음향 자료의 접근이 가능한 미디어테크로 전환해야 하고 또 새로 설립해야 한다. 특히 새로운 세대가 실질적인 미디어테크 이용자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B. 도서관의 모든 도서는 공개된 개가식이어야 한다. 창고 속에 감추어진 도서는 지식의 부패일 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서 너무 멀다. 이제 선진국 도서관 중 개가식이 아닌 곳은 없다. 이와 함께 도서관은 도시 생활 속에 〈열려진〉 공간이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C. 각 도시에서 도서관 〈건물〉은 가장 눈에 잘 띄고 새롭고 독창적이며 현대적이어야 한다(빌퇴르반과 안시 도서관 사진 참조). 도서관 건물은 그 도시 문화의 〈기호〉가 되어야 한다. 특히 청소년을 도서관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건물의 아름다움과 기능이 지극히 중요하다. 대부분 건축은 현상 모집에 의존하고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건축가의 업적을 널리 홍보한다.

D. 도서관의 위치는 상업지역과 인근의 문화 시설(문화관, 극장, 식당, 공회당, 시청, 학교 등)과 연계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E. 도서관과 학교의 연계활동이 중요하다. 시립도서관을 학교건물의 일부와 연결하여 사용하는 것도 능률적이다. 교사용 휴게실과 도서관 사서용 휴게실이 공동이어서 양측간이 서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업무의 연결이 가능해 질 수 있다.

F. 도서관에 새로운 계층(어린이, 노인층)을 맞아들이기 위하여 영국식의 대형도서(눈이 어두운 노년층을 위하여 활자크기를 2~3배 이상으로 키운 서적)를 제작 비

치하고 카세트 녹음도서(장애자 및 독서 속도가 극단적으로 느린 계층)를 대량 제작하여 대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G. 각 도서관간의 〈협력〉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정책당국자가 효율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분야이다. 오늘의 요구에 부응하자면 20년 전 보다 오늘날에는 3배 이상의 문헌구입이 요구된다. 장래 20년간은 그 이상일 것이다 그러나 어느 도서관도 그 같은 재정적 여유는 없다. 따라서 현재 혹은 잠재적 요구에 부응하자면 도서관 상호간의 협력이 필수이다.

협력 분야는 다음과 같다.

(1) 각 도서관이 갖추고 있는 모든 종류의 문헌에 대한 서지 정보에 서로간 접근이 가능케 한다.

(2) 문헌 자체에 접근이 가능케 한다.

(3) 보존, 제거, 보급에 필요한 물적, 장비적, 기술적 분야에 공동 대응한다.

여기에 필수적인 것이 〈전산화〉 작업이며 전국 공공도서관 장서 및 문헌자료 총목록의 입력작업, 대학도서관 장서목록 입력서비스이다. 이렇게 되면 이용자는 어느 지역 어느 도서관이든 편리한 곳에서 도서를 신청하고 반납하는 것이 가능해 진다. 이때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도 있다.

H. 도서관의 지역적 기능 : 지역 도서관, 특히 시립 도서관은 그 지역 특유의 역사, 지리, 정치, 사회, 경제 각 분야의 문헌이 다량으로 심도 있게 갖추어진 장소이어야 한다. (지역의 특성)을 살린 도서관이 되도록 〈지역정보센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 지역문화의 정체성(identity)의 강조가 필요하다.

II. 예술정보자료의 수집방안과 예술전문사서의 양성방안에 관한 연구

서	론/79
예술정보자료의 수집방안	/80
예술전문사서의 양성방안	/90
결론 및 제언	/97

예술정보자료의 수집방안과 예술전문사서의 양성방안에 관한 연구

민 병 화 *
금 혜 진 **

1. 서 론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인간의 삶은 물질적·정신적 풍요가 좋은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윤택하게 된다. 우리 나라는 이제까지 물질적 풍요를 위한 경제성장에 절대적 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노력한 결과 세계로부터 주목받을 만큼 상당한 수준의 경제발전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정신문화의 양과 질은 상대적으로 정체되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근래에 와서는 '3-D현상'이니 '한국병'과 같은 조기 선진국 병폐가 나타나 문화적 위기를 실감케 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여러 병폐를 치유하고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도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곧 다가오는 21세기는 사회적 변화와 기술의 발달이 더욱 가속화되고 새로운 문화적 요구 역시 폭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나라는 예술전문도서관의 설치와 정비에 대한 인식이 희박하고 정책적 배려가 뒤따르지 못해 예술전문도서관의 시설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선진국의 사례를 연구하여 국내외 예술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예술전문도서관을 속히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예술전문자료관은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문화예술관련정보를 첨단 정보 매체에 입력시켜 놓고 일반인들에게 갖가지 예술정보를 제공하게 될 때 더 많은 일반 국민이 이러한 시설을 통해 예술의 대체적 감상의 기회를 향유하게 되고, 또 국제화 시대의 예술분야 종사자들은 그들에게 필요한 정보 자료에 쉽게 접근

* 본원 연구원

** 이화여대 대학원

할 수 있어 총체적으로 보다 성숙한 문화 사회로의 진일보가 이루어 질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예술자료관의 설립취지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제 문제들 가운데 국내외에 산재되어 있는 예술관련정보를 어떤 방법으로 수집 운영할 것인지, 또 예술자료관에 적합한 자료담당요원을 어떻게 확보하고 훈련시켜야 할 것인가에 대해 앞서가는 선진국의 실례를 조사·연구함으로써 우리 실정에 맞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이 연구의 목적을 두고자 한다.

2. 예술정보자료의 수집방안

1) 예술정보자료의 유형

예술의 형식은 형태학적으로 공간예술, 시간예술, 시·공간예술로 나눌 수 있다. 공간예술은 회화, 그래픽, 조각, 건축, 응용예술 등의 조형예술이며 시간예술은 문학, 음악 등의 언어예술이고 시·공간예술은 연극, 무용 등의 극예술로 분류된다. 이와 같은 예술의 분류는 편의적인 것이지 절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 각각의 장르들은 상호 통합, 보완적인 관계에 의한 학제적인 성격을 띠는 것이 특징이다.

여기에서는 예술정보자료의 특성을 감안하여 일반적인 도서 형태를 제외한 예술자료의 종류를 예술의 각 장르별로 살펴보기로 한다.

가. 박 물 관

우리 나라는 전문박물관의 성격을 가진 역사박물관, 미술박물관(주로 미술관), 과학박물관이 설립 운영되고 있다 이들 박물관들은 관계 자료의 실물, 표본, 모사, 모형, 사진, 필름, 녹음자료 등이 매우 다양한 형태로 소장되어 있으며 자료의 복제가 불가능한 것이 많다는 것이 특징이다

나. 음 악

음악은 성악, 기악, 작곡으로 크게 구분되며 이는 다시 국악, 양악으로 구분된다.

음악자료 형태는 악보와 녹음자료가 주종을 이루며 각종 악기도 중요한 자료로 분류된다. 음악활동은 작곡-연주-감상의 3단계가 되풀이되는데 이 때 악보는 작곡가와 연주자의 매개체 역할을 담당하고 녹음자료는 연주자와 감상자 사이를 이어주고 있다. 악보의 유형은 이용목적에 따라 연주용과 학습용의 두 범주로 나눌 수 있으며 연주용 악보는 다시 총보(fullscore)와 파트보(parts)로 대별된다. 녹음자료는 수록 매체에 따라 소리 또는 소리와 영상이 함께 실린 것이 있다.

다. 문 학

문학관련자료는 일반적인 도서형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언급은 생략하겠다.

라. 미 술

미술분야에는 다양한 예술류가 포함되는데 회화, 판화, 서예, 조각, 공예, 사진 등을 꼽을 수가 있다. 정보의 기록매체가 실물 외에도 사진, 슬라이드, 필름, 비디오디스크, 비디오테이프 등 다양하며 이들이 실물과 함께 혹은 실물의 대체정보로 이용되기도 한다. 이외에 전시회의 팸플렛이나 포스터 등의 자료도 미술분야의 중요한 정보원이 된다.

마. 디자인

디자인은 건축디자인, 시각디자인, 공업디자인, 의상디자인 등을 포함하고 있다. 디자인 관련자료는 박물관정보의 자료형태와 비슷하여 실물, 표본, 모사, 모형, 도표, 사진, 필름 등이 있다.

바. 연 극

연극은 언어극, 뮤지컬, 창극, 마당극, 인형극 등 다양하다. 연극자료의 종류별 특

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본 : 문학의 형태로서 분만 아니라 특정 연극작품의 연구의 근거로서도 중요성을 갖는다. 공연의 바탕이 되는 대본은 한 작품이 한 권에, 또는 희곡선집 중의 일부로 출판될 수 있으나 공연을 위해 즉흥적으로 만들어져 공연이 끝난 후에는 소실되는 경우가 많다.

-연출기록 : 연극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연습과정과 공연과정에 필요한 모든 진행사항을 명시한 연출대본, 연출노트, 무대감독노트 등을 말한다.

-도면 : 무대미술가의 그림과 의상 및 장치디자인 등의 도면이 있다.

-고증자료 : 의상이나 무대장치가 여기에 속한다.

-포스터, 프로그램 : 공연자체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그 공연의 기획의도 및 홍보활동을 알려준다.

-사진 : 작품의 분장과 의상을 갖춘 배역사진, 공연장면 등의 사진이 있다.

-모형 : 특정작품의 무대모습을 구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모형으로 제작한 자료가 있다.

-절취자료 : 당시 극계의 동향, 특정 작품에 대한 평가, 극단 및 연극인들의 활동에 관한 신문이나 잡지의 기사가 있다.

사. 무 용

무용은 한국무용, 발레, 현대무용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무용정보자료는 연극정보와 비슷하나 차이점은 대본 대신 악보와 연주행위가 있다는 것이다. 무용정보는 음악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그만큼 복잡해진다.

아. 영 화

영화는 장편영화(극영화)와 단편영화(비극영화)로 나뉘지며 단편영화는 내용에 따라 오락, 다큐멘터리, 교육영화로 세분된다. 영화정보의 자료형태로는 필름, 스틸, 포

스터, 전단, 시나리오, 비디오테이프 등이 있다.

2) 예술정보자료의 수집

자료의 수집은 예술자료관이 수행해 나가는 일차적인 작업이 되며 다른 어떤 기능보다 선행되어야 할 중요한 업무이다. 자료관의 정리기능이나 열람기능, 참고기능의 체제가 아무리 잘 되어있다 할지라도 이들 기능은 수집된 자료의 범위를 초월할 수는 없는 것으로서 자료관의 가치는 자료의 수집여하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가. 자료수집시 고려사항

자료관이 수집·수장해야 할 자료에 대한 이론으로 이용자의 요구에 기준을 두어야 한다는 이론과 자료의 질적인 가치에 기준을 두어야 한다는 이론이 있다. 자료의 가치이론은 이용자로부터의 요구가 없더라도 영원한 가치가 있는 자료는 선정·수장되어야 하며 이러한 자료들은 언제든지 이용자의 요구를 만족시킬 것이라는 가설에 바탕을 두고 있다. 미국 국회도서관의 Prints and Photographs Collection은 처음 부서를 설치할 때인 1898년 당시에, 수집되는 자료의 중요성은 다음 세대에 의해서만이 판단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입수되는 자료는 모두 보존하도록 하는 수서정책을 폈다. 예술자료관도 국내 문화예술자료의 총괄센타로서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자료의 가치면을 고려하여 포괄적인 수서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자료의 가치와 이용자의 요구를 적절하게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자료 수집을 하기 위해서는 자료수집을 담당할 사서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즉, 주제분야에 대한 지식이 그 분야 전문가 이상으로 깊어야 하고 주제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이들 자료가 어떠한 경위를 통하여 생산 또는 제작되는가를 잘 알아야 하고 입수해야 할 자료를 선정하는데 필요한 방법들에 관해서도 잘 알아야 한다. 또한 선정된 자료의 존재여부 및 소재를 파악하여 어떻게 입수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 서영순은 연극분야에서 자료수집을 잘 하기 위해서는 사서가 연극인들에 대해 잘 알아야 하고

연극계의 동향에 항상 관심을 가져야 하며 자료 선정에 도움을 줄만한 전문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한다. Krummel도 이용자와 수집가로부터 도움을 요청하는 음악사서의 능력이 음악분야의 자료수집에 중요한 관건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자료수집을 하기에 앞서 능력 있는 자료수집 담당사서를 확보하는 것 외에도 자료를 합법적으로 입수할 수 있는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즉 자료를 제공해줄 수 있는 개인이나 기관이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수서정책과 보존 계획이 세워져야 하는데 이러한 정책과 절차가 있음으로써 자료의 입수가 수월해지며 자료의 소유권에 대한 오해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수집될 자료를 안전하고 영구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물리적인 조건과 장기적인 보존 계획이 먼저 수립되어야 한다. 1992년 미국의 유명한 무용 영화 배우인 Verdon은 국회도서관의 필름, 비디오, 인쇄자료의 보존 기술에 대한 신뢰와 미국 국회도서관의 명성 때문에 자신과 자신의 남편인 Bob Fosse의 공연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국회도서관에 기증하게 되었다고 기증 동기를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실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자료 보존을 위한 모든 조건이 완비되었을 때만이 예술자료관은 개인이나 단체의 기증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전문적인 자료 선정을 위해서는 자료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하는데 미술의 경우에 큐레이터, 박물관장, 미술사학자, 미술애호가, 수집가, 미술평론가, 미술가, 미술인협회대리인, 지역사회의 향토문화에 지대한 업적을 남긴 인사와 미술전문사서가 구성위원이 될 수 있다.

나. 자료수집방안

자료관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자료와 이용자의 요구에 적합한 자료들은 (1) 구입, (2) 기증, (3) 교환, (4) 납본 등에 의해 입수, 수장된다.

각 수집방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다.

(1)구 입

자료관의 설립초기에는 다량의 자료를 구입해야 하는데, 악보를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일반도서와는 달리 음악전문 대행사를 통하거나 출판사로부터 직접 구입해야 한다. 일부는 출판사를 통해서는 구입할 수 없고 작곡자나 특정 단체를 통해야만 얻을 수 있다. 더욱이 소량으로 출판된 악보는 쉽게 절판되어 복사물이나 대여로 이용해야 한다. 따라서 악보 공급자에 대한 정보를 잘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하며 보다 적극적인 수서 활동이 요구된다.

(2)기 증

자료의 기증은 대체로 단체나 개인의 기증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루어진다. 기증의 유형은 의뢰에 의한 것과 상대방으로부터 임의기증에 의한 것으로 구분된다.

예술정보자료 중 정부기관, 학회, 연구단체, 공연단체, 대학의 간행물, 개인이 자비로 출판 또는 제작한 간행물이나 작품 등에는 유가판매자료 이상의 귀중한 자료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이들 자료들은 비매품으로서 무상으로 배포되며 일반 시판을 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예술관련자료의 수집은 기증에 많이 의존하게 되며 그렇기 때문에 자료수집을 위한 적극적인 기증 유치활동을 펴야 할 것이다.

* 수증 유치방안

영국의 The National Film Archive의 경우, 스틸과 포스터는 영화제작사, 영화사업과 관계된 개인, 협회 등을 통해 직접 입수하고 있는데 오래 동안 쌓아온 상호간의 신뢰감에 의해 이러한 입수가 가능했다고 한다. 즉 일단 입수된 자료는 안전하게 보호된다는 확신감을 기증자에게 주었으며 기증자가 필요로 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복사본을 이용할 수 있게 편의를 제공해 준다는 합의하에 많은 자료를 유치·확보할 수 있다.

한편 예술정보자료 중 수집이 가장 곤란한 자료는 공연프로그램, 연극대본, 포스터, 미술팝플렛 등의 비정형자료(printed ephemeral)이다. 여기에 대해 Makepeace는 비정형자료의 경우, 무엇이 출판되는지, 어디로부터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

가 부족하기 때문에 완전한 컬렉션을 제공하기는 어려우므로 계속해서 가능한 자료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자료가 있는 곳에 즉시 가서 입수해 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신속한 입수가 특히 중요한 이유는 첫째, 자료선택의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기 때문이며, 둘째, 비정형자료는 전시나 공연이 끝난 후에는 쉽게 소실 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체될 경우 그 수집이 어렵거나 비싼 대가를 치르고 구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비정형자료의 수집은 거의 기증에 의존하게 되는데 기증을 고무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강연 : 지역사회 모임에 가서 비정형자료의 중요성에 대해 강연함으로써 강연을 들은 개인들은 자신이 이미 갖고 있는 자료나 앞으로 모여질 자료를 버리는 대신에 예술자료관으로 보내게 된다.

-매체이용 : 지역라디오나 TV를 통해서 자료관의 자료에 대해서 소개하고 비정형자료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자료관으로 보내달라고 방송할 수 있다. 이외에 신문과 정기간행물을 이용할 수도 있다.

비정형자료를 기증 받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비정형자료는 금전적 가치보다는 그것에 포함된 정보에 의해 가치를 갖게 된다는 개념을 기증자에게 이해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자료를 기증 받기 위해서는 예술자료관에 대한 호소력 있는 PR이 수집노력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사용해서 예술자료관의 수서정책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자료입수를 위해 도와줄 것을 활발하게 알려야 한다. 예술관련 인사나 일반인들이 자료보존의 중요성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것이다.

Calder도 기증 행위가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일반인이 깨닫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기증된 자료들이 어떤 식으로 보존되고 연구에 이용되는지를 알림으로써 자료를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으며 귀중한 정보로서 가치 있게 사용된다는

것을 기증자에게 인식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Evans는 기증을 유도하기 위해서 기증자를 기념하여 기증자의 이름을 딴 컬렉션을 설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된다고 하였다.

미국 국회도서관의 Music Division의 경우, 미래의 역사가들이 한 장소에서 현 시대의 뛰어난 작곡가의 자필악보를 한 장소에서 볼 수 있게 하려는 취지에서 작곡가들에게 자필악보 기증하도록 설득시킨 결과 많은 작곡가들이 자필악보를 기증하였다. 이외에 예술관계자료를 포함한 Special Collection이 있는 국회도서관의 각 부서에는 기증에 의한 자료수집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증자를 기념한 컬렉션들이 전체 서고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기증자들은 국회도서관의 오랜 명성에 힘입어 자신의 기증행위가 명예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한편 전문협회나 학회의 자료를 입수할 경우 원본 기증을 원하지 않을 때는 복사본을 예술자료관에서 입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된다. 특정협회나 기관에서 소유하고 있는 자료 중에는 외부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것도 있는데, 이러한 문의자가 있을 경우 예술자료관에 의뢰할 수 있어 외부이용자들의 불편함과 원자료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증 행위가 협회입장에서도 이익이라는 사실을 이해시키는 것도 기증을 유도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기증의 기회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방법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이나 문화예술단체에서 일방적으로 기증하는 자료 이외의 자료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갖고 이들 단체의 활동상황을 잘 파악한다.

둘째, 관련학회나 단체의 세미나, 심포지움, 워크숍, 공연, 전시 등의 개최일시, 장소, 내용들을 면밀히 파악한 후 즉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이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다.

셋째, 국내외 문화예술 관련단체의 회원으로 가입함으로써 이들의 각종 활동에 참여하고 이들의 생산자료를 계속적으로 입수한다.

넷째, 문화예술분야의 자료수장가, 수집가나 은퇴한 예술인, 교수 등을 상대로 이들의 수장자료 및 개인문고의 수증유치활동을 벌인다.

덧붙여서 자료의 수증이 이루어진 다음에 수증의 추후관리로서 특정한 자료를 계속해서 기증하는 곳에는 안부나 연하장 등의 예장을 보내거나 자료관의 각종 행사에 초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개인의 소장품이나 장서, 특수한 기념문고를 기증받았을 때는 별도의 현금으로 사례할 수 있으며 기념패나 트로피 등에 기증사실을 기록하여 사례할 수도 있다.

(3) 교 환

본 자료관이 필요로 하는 자료가 어느 기관이나 단체에서 나오는 비매품일 경우 이는 교환의 방법에 의하여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예술관련 자료관들은 서로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뜻에서 각 자료관의 생산자료나 복사본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료, 또는 확보가 용이한 자료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상호교환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교환업무는 국내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국외의 자료를 입수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이용되어야 한다. 교환 방법은 자료수집을 위한 상호간의 편리를 도모하는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어느 면에서는 구입보다 효과적이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자료수집의 방편이 된다.

교환대상기관의 선정은 문화예술과 관련된 국내외의 정부기관, 예술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단체, 학회, 연구단체 등을 망라하여 그 기관의 권위, 활동상황, 생산자료실적, 자료의 수준, 이용도 등을 조사, 평가하여 그 대상처를 결정하고 교환협정을 체결하게 된다.

교환의 방법은 그 형태에 따라 포괄교환과 선택교환으로 구분되며 선택교환은 다시 등가교환(price by price), 등량교환(piece by piece), 건별교환(item by item)으로 세분된다.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포괄교환 : 각 기관이나 단체와의 상호협정에 의하여 아무 조건 없이 각자가 생산한 자료나 교환을 위한 자료를 포괄적으로 상호 교환하는 것으로서 자료의 생산량 등이 비슷한 규모의 기관간에 이루어질 수 있다.

- 선택교환 : 포괄교환과는 달리 각 교환기관 자체가 상대기관과 합의하여 원하는 자료를 교환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때에 교환상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기준으로 삼는다.
- 등가교환 : 상호교환기증을 자료의 가격에 두는 방법으로 교환자료를 가격으로 미리 산정 하여 교환한다. 등가교환은 유가자료나 외국기관과 자료를 교환할 때 채택하는 방법이다.
- 등량교환 : 자료의 발송수량과 수령되는 수량을 상호 협의하여 가격에 구애치 않고 다만 수량에만 교환의 기준을 두는 방법이다.
- 건별교환 : 교환의 기준을 가격이나 수량에 관계없이 교환 회수에 두고 상호편의에 의하여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건별로 교환을 실시한다.

연극의 경우 외국의 연극도서관 또는 연구소와 상호교환협정을 맺음으로써 중요한 자료를 입수할 수 있고 아울러 우리 연극을 알릴 수 있다. 구체적으로 국제연극도서관·박물관협회(SIBMAS)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다른 나라의 연극도서관과 교류할 수 있으며 국제극예술협회(ITI)를 통해서도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4) 납 본

납본에 의한 수집이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관에 자료를 입수하는 것으로서 저작권의 보호와 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하여 국가기관 자료관으로 하여금 수집능을 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외국의 납본상황을 시청각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의 경우 국회도서관이 가장 광범위하게 예술관계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데 수집 초기에는 제작자들의 기증에 의존하여 자료를 수집했기 때문에 그 양이 매우 적었으나, 저작권법에 의하여 각 개인이 국회도서관의 저작권 사무실에 있는 출판부에 책이나 음반 2매와 10달러를 보내면 저작자의 생존기간 동안은 물론 사후 50년까지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되면서 국회도서관은 이들 자료를 비교적 누락 없이 수집할

수 있게 되었다. 실제로 국회도서관의 Prints and Photographs Collection은 대부분의 자료를 저작권에 의한 기탁을 통해 입수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필름의 경우 1958년과 1967년에 제정된 공공기록법령(Public Records Act)에 의해 정부나 이와 관련된 기관에서 제작되는 필름은 공공기록사무소(Public Record Office)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평가를 거친 필름은 군대에 관계되는 것은 대영전쟁박물관(Imperial War Museum)에, 그 외의 것은 대영필름연구소(British Film Institute)의 하부조직인 국립필름보존소(National Film Archive)로 이관시키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강제성을 띠는 법적인 제재가 없기 때문에 국립필름보존소는 영화필름의 연도별 수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녹음 자료의 경우 대영녹음자료연구소(British Institute of Recorded Sound)에서 주로 관리하고 있는데 수집을 대부분 기증에 의존하고 있으며 영국 방송사(BBC)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자료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또한 각 방송국들로부터 개별프로그램을 보존해주는 대가로 보존비를 받고 있는데 이 또한 법적인 납본 의무제도가 없어 완벽한 수집이 어려운 상태이다.

구소련에서는 필름, 사진, 녹음자료를 보존하기 위한 보존체제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일찍부터 강제성을 띤 국가차원의 중앙집중적 보존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미 70년 전인 1918년 6월 1일 레닌(Lenin)은 영화필름, 사진, 음성기록물을 포함한 모든 시청각 기록물이 인민을 위하여 보존, 사용되어야 할 국가재산임을 소비에트 정부포고령으로 선포하였으며 이들 자료의 재조직을 위하여 국립기록보존소 중앙집중관리의 원칙을 제정하였고 1919년에는 영화와 사진 제작물의 국유화에 따른 수집과 보존 법안 근거를 마련하여 1920년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그후 제작일로부터 5년이 지난 1926년 2월 6일, 사진과 영화기록물은 의무적으로 국립통합보존소에 납본해야 하는 법령이 제정되었는데 이를 토대로 1930년에는 영화 및 사진 기록물 국가중앙보존소(Central State Archive of Cinematographic and Photographic Documents : CGAKFD SSSR)이, 1932년에는 녹음자료 국가중앙보존소(Central State Archive

of Sound Recordings : CGAZ SSSR)가 설치되었으며 추가로 1980년 승인된 국가 기록물에 관한 법령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이와 같이 구소련에서는 영화필름, 뉴스필름이나 비디오 테이프, 녹음자료 중에서 수집, 보존되어야 할 자료를 영화, 텔레비전 스튜디오, 정부의 문화성, 사진사 및 신문사 등의 미리 지정된 기관의 리스트와 자료의 주제에 의해 선별하여 결정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는 1975년 7월 30일에 통과된 법령에 의하여 프랑스 국내에서 재생을 위해 판매, 배포, 대여, 처분 또는 공개된 것이면 음반, 사진, 35밀리 이상의 기록 영화를 제외한 영화작품, 녹음물 및 정화 또는 움직이는 영상기록물은 모두 납본하도록 되어 있고 납본의 의무가 있는 제작자나 발행자는 이들을 판매, 배포, 대여하기 전에 한질을 국립도서관에 납본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립도서관에서 납본받는 자료 가운데 필름의 경우는 CNC(Centre Nationale de la Cinematographie)의 필름기록보관소에, 비디오 녹화 작품은 INA(Institut National de L'Audiovisu)에 각각 분산되어 위임 보관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국립중앙도서관의 비도서자료실에서는 주로 상업적으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시청각자료를 수집하고 있어 미국의 국회도서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도서관의 경우는 대한출판문화협회를 통해 납본 받고 있어 수집에 별문제가 없으나 시청각자료는 일원화된 기구가 없기 때문에 수서과 직원이 직접 수집에 나서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다가 1988년 8월에 개정된 도서관법 시행령 개정령 제19조에 의하여 도서관은 물론 그 외에 지도, 음반, 비디오 자료, 슬라이드, 전산자료 중 테이프 및 디스크, 마이크로 형태 중 창작된 자료는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도록 그 범위와 종류를 확대하였다. 그러나 제작자들 사이에 납본 제도에 대한 홍보가 아직 미비하고 납본이 업무규정이라고는 하지만 이를 어겼을 경우 경미하나마 과태료를 징수하게 되어 있어 제작자의 적극적인 납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문공부에 등록된 150여개의 음반 제작자와 직접적인 개별접촉을 통해 비디오 자료와 오디오 자료를 납본 받고 있

는데 개개의 제작자에게 매년 다시 연락을 취해야만 수집이 가능하며 납본을 받는 2부 중 1부에 대해서는 실비를 지불하고 있다. 현재 과거에 제작한 자료까지 소급하여 납본을 받고 있으나 그 자료의 양은 전체 제작량의 절반을 밑도는 수준이다.

3. 예술전문사서의 양성방안

1) 예술자료관 운영요원의 자격요건

예술자료관이 예술분야의 전문도서관이라는 점에서 예술자료관의 관장과 전문사서는 일반 대학 또는 공공도서관에서 근무할 때와는 달리 예술의 각분야에 대한 폭넓은 지식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예술자료관의 운영요원에게 요구되는 능력과 이러한 능력을 갖춘 요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을 외국의 사례를 통해 알아봄으로써 우리 실정에 맞는 적용방법을 모색해보려 한다.

가. 요구되는 능력

유럽에서는 예술전문도서관의 관장은 음악학과 도서관학의 학위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나 우리 나라의 경우는 두 분야를 동시에 전공한 전문 경영인이 거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두 분야 중 한 분야를 전공한 사람이 예술자료관의 관장이 될 수밖에 없다.

관리의 종합적인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각종 자료관이나 도서관의 책임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할 수 있으나 예술자료관의 관장은 예술분야의 동향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정보학이나 도서관학을 전공한 전문사서보다는 전반적인 예술활동에 대해 폭넓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서 기획, 행정 능력과 프로그램분야에 대한 이해가 깊은 사람이 예술자료관장으로 더 적합할 것이다. 그리고 자료분야의 기술적인 문제는 전문사서의 도움으로 해결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전체적인 자료관의 경영이 예술분야 전문인에 의해 이루어지더라도 예술자료관의

실제 업무는 도서관적 서비스법을 알고 있는 전문사서가 수행해야 할 것이다. 예술분야의 전문사서가 자료관에서 수행해야 할 업무는 도서관의 필요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자료의 선정, 참고봉사 및 이용자 접촉과 교육으로 대별할 수 있다.

먼저, 자료선정 업무는 자료관의 핵심체인 자료를 구성하는 기초작업으로 예술전문사서의 가장 중요한 업무이다. 전문사서는 주제학문의 전문용어, 주요 연구활동과 자료에 관한 지식 및 이용자와의 접촉을 근거로 하여 자료수집을 위한 적합한 정책과 우선 순위를 결정하게 된다.

둘째, 참고봉사 업무에는 자료조사, 각종 서지의 작성, 주제자료 이용을 위한 안내서의 작성, 상호대차, 각종 형태의 자료에 대한 현황주지봉사, 연구결과의 분석 및 평가, 그리고 자료의 전달까지 포함된다. 전문사서는 전문자료, 서지도구, 그리고 이용자 사이에서 평가, 해설 및 자문의 역할을 통하여 완벽한 정보의 중계인으로 활동한다.

셋째, 이용자 접촉과 교육업무로서 이용자와의 정기적인 접촉을 통하여 정보수요자의 요구와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자료 수집, 참고봉사, 기타의 자료관 업무에 반영하도록 자료관 경영자측에 권고하는 동시에 이용자에게 도서관의 정책과 문제점을 이해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이용자가 전문연구자료에 접근하여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이용법을 강의 지도해야 한다.

이외의 활동으로 이용자와의 접촉의 결과로 얻은 지식을 예술자료의 주제분석과정에 적절히 반영하여 예술분야 자료의 검색을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도서관의 의사결정과 정책 수립을 다루는 운영에 참가해야 한다.

이와 같이 다양하고 전문적인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예술자료관의 사서는 특별한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대표적으로 미술과 음악분야의 전문사서에 요구되는 능력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Marco는 미술전문사서에게는 미술에 대한 주제배경, 외국어 지식, 도서관학 지식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첫째, 미술에 대한 지식으로는 미술사, 미술분야의 이론적·기술적인 용어, 미술품

의 창조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지식을 소유함으로써 인쇄자료, 녹음자료, 사진 등의 미술관련 자료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

둘째, 도서관학 지식으로는 도서관학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 중 미술분야와 관계되는 내용을 특히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것들로는 미술분야의 정보원, 비도서 자료에 강조점을 둔 목록, 분류기술과 도서관 업무와 관계가 있는 컴퓨터의 이용, 정보검색의 이용, 미술관계 전문 서지 등이 있다.

셋째, 외국어에 대한 해독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미술분야의 정보가 특정 언어군에만 집중되어 있지 않으며, 다른 학문에서 국제공용어로 통하고 있는 영어의 경우도 미술분야에서는 결코 공용어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어 이외의 독어나 불어의 해독능력이 요구된다.

노문자는 근·현대미술사에 대한 지식과 판화나 판화의 역사, 기법에 대한 정통한 지식, 서예, 도자기에 대한 다각적인 관심, 그 외 일반적인 미술품의 질에 대한 감각(sense)등이 미술전문사서에게 요구된다고 하였다. 또한 자료관의 대외적인 홍보, 이용자와의 관계, 이용자의 요구파악, 예술가와의 접촉, 비이용자(non-user)와 잠재적 이용자(potential user)의 예술감각을 일깨워주고, 자극, 개발시키고 권장하는 것이 예술자료관의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교육에 의해 얻을 수 있는 전문지식 외에 적극적으로 다방면에 관심을 가진, 창조력 있고 추진력이 강한 사서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한편 Marco는 음악전문사서에게 요구되는 능력도 제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음악주제에 관한 요구조건으로는 악보와 음반을 해석하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하고 음악사, 음악이론에 관한 지식, 음악연구의 현재의 경향과 음악과 관련된 인물에 대한 지식 등이 요구된다.

둘째, 서지적인면(bibliothecal demands)으로는 도서관학의 교과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주제에 관한 지식을 포함하되 음악 서지와 관련된 사항을 중점적으로 잘 알아야 하고, 인쇄 출판에 대한 역사와 현황을 음악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음

악정보원, 음반, 사진, 슬라이드와 같은 자료의 분류·목록기술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하고 컴퓨터를 도서관 업무와 정보검색에 적용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 또한 세계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음악의 정보원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한다.

셋째, 이상에서 제시한 것 외에 부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조건은 다양하며 또 중요하다. 음악과 관련된 사회적·문화적·역사적인 배경에 관한 지식이 필요하고 독일어, 불어, 이탈리아어는 기본지식으로 갖추어야 한다.

나. 예술분야 전문사서의 교육배경

이와 같이 예술분야 전문사서에게 요구되는 다양한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예술분야의 도서관은 이러한 교육배경을 가진 사서가 예술분야 전문사서로서 활동하고 있다.

실제로 ARLIS/NA(The Art Libraries Society /Nor America)는 1983년에 출판된 “Standards for Art Libraries and Fine Arts Slide Collections” 에서 미술직원의 교육조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미술전문사서는 도서관학의 석사소지자이어야 하며

둘째, 영어 이외에 독일어, 불어, 이탈리아어 중 적어도 2개국 언어에 대한 해독능력이 필요하며

셋째, 미술사, 디자인, 건축, 인문학에서 학사과정을 이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 주제에 대한 능력과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넷째, 지속적인 교육을 위해 미술관련 조직이나 도서관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즉 미술전문사서의 교육조건으로서 대학과정에서 미술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도서관학을 전공할 것과 외국어 해독능력이 있을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음악전문사서의 교육조건으로 독일은 3년의 정사서과정을 수료한 후에 6개월 동안 음악에 관계되는 2차 교육과정을 마쳐야 하며, 정규과정 3년 동안의 이수과목에서도 가

능한 음악관계자료 중심으로 참고봉사, 자료선정, 목록 등을 이수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다. 이외에도 음악전문사서는 적어도 한 종의 악기를 다룰 줄 알아야 한다.

미국은 도서관학교가 주로 음악전문사서의 훈련을 맡고 있다. 미국도서관협회가 인가한 도서관학교의 교과과정을 보면 음악사서직을 위한 과목을 개설한 곳이 많지 않고 인문서지 과목에서 간단하게 다루는 정도이다. 그러나 대개의 음악전문사서는 음악 주제 배경을 도서관학교에 들어오기 전에 학부과정에서 획득하기 때문에 도서관학교에서는 비도서자료에 관한 과목을 선택하고 제한된 시간에 가능한 한 넓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실습을 통하여 배출하고 있다.

Ludden은 음악전문사서를 위한 최상의 교육배경은 음악전공과 두개 언어의 부전공을 4년제 대학에서 이수한 후 음악서지와 비도서자료, 음악도서관 경영과 관계된 코스가 있는 도서관학 대학원을 다니면서 음악도서관에서 인턴십을 가지는 것이라고 하였다.

실제 유럽의 규모가 큰 도서관의 음악부서의 사서는 대부분 음악사 학위증과 도서관학 학위증을 동시에 갖고 있다. 특히 이태리에서는 음악전문사서를 위한 까다로운 자격 시험을 실시하고 있는데 시험과목은 일반문화, 라틴어, 두 가지 현대언어, 음악과 음악의 역사, 작곡법, 음악고문서학, 도서관학의 일반개념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음악의 경우에도 학부과정에서 음악을 전공할 것과 대학원 과정에서 도서관학을 전공하고 아울러 두 가지 정도의 언어해독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2) 예술전문사서의 양성방안

가. 관내교육의 필요성

위에서 제시한 것처럼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일찍이 예술전문사서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그 자격요건을 정하였고 자격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교육과정이 개설되어 예술전문사서가 배출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주제전문사서에 대한 인식이 미비하여 도서관학 교과과정에 예술분야의 정보서비스를 다룬 교과과정을 개설한

곳도 없으며 도서관학과가 학부과정에 있기 때문에 도서관학과가 대학원 과정에 있는 미국처럼 예술분야를 전공한 후 도서관학을 전공하는 경우도 거의 없다. 그렇다고 도서관학을 전공한 사람이 대학원 과정에서 예술분야를 전공하는 경우도 극히 드물다. 따라서 예술자료관의 직원으로 도서관학만을 이수한 일반사서나 예술분야의 전공자밖에 확보할 수 없다.

Jones는 주제전문사서를 길러내는 구체적인 방안이 없을 때는 도서관 자체적인 교육을 통해 전문사서를 양성해야 한다고 하였다. 미국에서도 공식적인 교육기관에서 예술분야의 전문사서를 배출하지 못할 때인 1965년, 뉴욕공공도서관의 Picture Collection에서는 주제전문사서를 양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새로 채용된 직원들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2시간씩 60시간의 세미나로 자체교육을 실시하여 그 컬렉션에 적합한 사서를 확보하였다. 또한 Nemcheck는 미국의 연극전문사서가 없을 때에 도서관학과에서 연극전문사서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연극도서관협회나 연극도서관에서 연극전문사서를 위한 교육을 먼저 시작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더구나 예술전문사서에 대한 수요가 극히 적은 우리 나라의 현실에서 미래의 수요에 대비하여 대학의 도서관학과가 학부학생이나 대학원학생을 위한 예술분야의 전문프로그램을 설치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미 여러 분야의 전문도서관들이 주제전문사서를 확보하기 위해서 기존 인력을 훈련시켜야 한다는 점을 실감하고 있으며 예술자료관의 경우 특히 이 문제에 대해 스스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미 예술자료관에 고용된 사서나 새롭게 채용될 사서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예술전문사서로 양성시키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교육은 예술분야의 전문봉사를 위한 도서관학적 방법의 재훈련과 동시에 예술분야에 관한 체계적인 학문적 연구를 포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산발적인 교육의 기회보다는 장기간의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예술자료관에서 예술전문사서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할 경우에 직원들의 이전의 경험(경력 또는 교육배경)과 자료관에서 요구되는 능력을 고려하여 교육 계획을 짜되 교육내용, 교육방법에 대해 구체적이고 세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나. 교육내용

구체적인 교육내용을 구상하기에 앞서 외국의 예술전문사서의 교과과정을 살펴 보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미시간대학의 도서관학교에서는 음악관계서지 코스를 하나 개설하였는데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 음악에 관한 책과 정기간행물 조사
- 음악프린팅, 저작권, 출판의 역사 및 과정
- 악보와 녹음자료에 관한 서지
- 음악역사와 조직에 대한 개관

한편 시카고대학의 도서관학 대학원이 제공한 교육프로그램은 도서관학 훈련과 음악 관련 훈련이 가장 적절하게 조화된 프로그램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그 교과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음악역사와 음악서지에 관한 3코스
- 음악학 이론, 인문과학, 언어, 대학 내 음악도서관의 업무경험으로 구성된 4코스
- 음악에 강조점을 둔 일반도서관학 과목 등

총 18코스로 2년에 완성하도록 되어 있다. 특이한 사항은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전에 학생 개인의 음악주제 지식을 평가하여 그 결과 적절한 주제지식을 가졌다면 음악서지를 제외한 음악코스의 일부분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미술분야의 경우 ARLIS/NA Education Committee는 미술전문사서를 위한 도서관학 교과과정으로 도서관학 일반코스, 미술전문직을 위한 배경지식 및 미술전문정보서비스를 위한 코스, 미술이론코스를 추천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도서관과 정보서비스실무에 관한 핵심코스 : 참고봉사/경영/지식의 조직
- ② 미술전문직을 위한 배경지식 : 미술자료와 서비스/아카이브자료, 사본, 희귀본
자료/비도서매체(시청각매체)/유지와 보존/목록, 색인, 초록/연구방법론
- ③ 주제관계지식 : 정보자료와 서비스/미술서지/미술자료 서비스의 관리/미술
사서직에 관한 독서, 연구, 실습
- ④ 미술, 시각커뮤니케이션 또는 미술관학의 역사

이러한 추천에 기초하여 현재 미국의 도서관학교 중 미술전문사서를 위한 코스를
개설하고 있는 곳의 일반적인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술 또는 미술관도서관 코스에서 비도서자료를 포함한 미술출판물의 제작과
배포, 도서관 자료의 수서·조직·유지, 미술도서관과 시각아카이브의 일반 경영문제
를 다루고 있으며

둘째, 시각자료 코스에서는 슬라이드와 사진자료의 정보원, 선정, 처리, 보존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셋째, 미술서지 코스에서는 미술서지조직과 서비스, 미술사와 미술이론에 강조점을
둔 미술연구 방법론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으며

넷째, 미술과 시각자료에 대한 독서와 연구로 구성된 코스가 있으며

다섯째, 미술도서관이나 시각자료실에서 실습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연극전문사서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으로 미국에서 최초로 연극도서관협회
(TAL)의 후원으로 1959년 여름동안 콜롬비아대학내에서 실시된 워크샵의 교육내용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연극도서관과 연극사서직의 역사
- ② 연극컬렉션의 문제
- ③ 도서관 외부기관에 존재하는 정보원에 대한 지식
- ④ 연극분야의 서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

⑤ 프로그램, 사진, 프린트, 클리핑, 원화, 포스터와 같은 비도서자료의 타입과 그 이용, 목록, 보관, 서비스 등의 문제

이러한 간단한 워크샵 형태 외에 연극전문사서직을 위한 장기간의 교육이 실시되었다. 1975년, 연극도서관 운영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훈련받은 직원의 부족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오면서 1976~77년 1년 동안 플로리다주립대학의 도서관학과와 연극학과가 연극전문사서직을 위한 합동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이제까지 미국의 도서관학교에서 실시하였던 예술분야 사서직을 위한 교육과정을 알아보았다. 예술자료관 자체적으로 예술전문사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경우, 미국의 도서관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위와 같은 교과과정을 모델로 삼되 아래와 같은 내용도 교육과정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첫째, 예술전문사서직이 일반 사서와 어떤 면에서 다른지를 교육시켜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예술자료관이 수행할 특별한 기능과 이용자들에게 제공할 서비스에 대한 소개가 있어야 하며 자료관에서 관리할 다양한 유형의 미디어와 그 이용방식에 대한 교육과 예술자료관의 전반적인 업무 및 상세한 업무내용까지를 교육내용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자료관의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알리기 위한 홍보 방법과 다양한 이용자 계층에 따른 서비스 태도에 대한 교육이 있어야 할 것이다.

다. 교육방법

교육방법의 구상을 위해서는 인력의 단기수급이라는 차원에서 전문도서관내에서 직원교육을 실시했다는 점에서 우리와 비슷한 입장에 있는 멕시코의 Cuernavaca 전기 연구소의 교육방법을 살펴보는 것이 유용하리라 생각된다.

채용된 사서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기연구소의 교육은 오리엔테이션, 워크샵, 실무교육, 외부기관의 견학 및 실습, 도서관직원의 관장 하에 대학원생을 참여시켜 진행하는 프로젝트의 실시의 5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오리엔테이션 단계에서는 교육대상

자들에게 프로그램의 목적과 기여를 소개하고 워크숍과 세미나에서 전문가를 초청하여 강연을 들었으며 실무교육의 단계에서는 실제업무를 실시하고 외부기관의 견학과 실습에 멕시코 내의 기관뿐만 아니라 해외기관의 견학도 포함시켰다. 마지막으로 도서관 이용자 교육과 장서개발과 연관된 프로젝트에 대학원생을 참여시켜 진행하였고 영어 등의 외국어교육 또한 이 단계에서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이러한 직원 교육방법을 예술자료관의 전문사서 교육에 적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4. 결론 및 제언

이제까지 급변하는 정보화, 국제화 시대에 대비한 예술정보자료의 효율적인 수집방안과 예술전문사서의 체계적인 양성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관련 문헌을 통해 살펴보았다.

등 연구에서 우리가 취할 제 방안에 대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예술정보자료의 수집은 포괄적이며 체계적인 수서정책을 중심으로 한 자료입수계획과 아울러 예술분야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감안하여 해당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예술자료관의 핵심업무 중 하나인 자료선정과 운영방식에 대한 조언을 자료관 사서들의 자율적인 능력이 배양될 때까지 계속 받도록 해야할 것이다. 특히 자료수집 방안으로서 재정의 확보와 필요한 법 제정을 토대로 구입, 기증, 교환, 납본의 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되 예술정보자료는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것보다는 비매품이 많기 때문에 구입 외의 방법에 각별한 노력이 요청된다.

국내에 있는 예술자료의 경우에는 기증방법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생존 예술인과 사망 예술인의 경우에는 그 후손들 그리고 예술 관련 기관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도록 해야 하며 이들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예술자료관에 기탁함으로써 사회적 명성을 얻는 동시에 귀중한 자료를 안전하게 보존, 문화 창달에 공헌할 수 있다는 자부심과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한다. 따라서 다양한 홍보전략을 통해

서 자료의 보존기관으로서, 기증자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보자료 센타로서의 예술자료관의 신뢰를 구축시켜 자료를 소장한 기관이나 개인이 자료를 자발적으로 기증하도록 동기화시켜야 한다.

국외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각 분야별 예술 전문도서관이나 관련 연구소의 자료실과 자료교환협정을 체결하고 국제적인 협회에 가입하여 외국자료를 체계적으로 입수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바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내 예술자료의 수집과 정비가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체계적인 자료의 수집상 가장 쉽게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납본의 경우 현행 납본 제도하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만이 국내에서 발행된 도서 및 기타 간행물을 납본 받는 것으로 제정되어 있는 바 본 자료관도 국가를 대표하는 예술자료관으로서 국내에서 출판·제작되는 문화·예술 관계자료를 납본 수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적, 행정적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첫째, 예술자료관에 대한 문화예술 관계자료의 납본규정을 입법절차를 밟아 법률로 정한다. 둘째, 현재 문화공보부는 행정체계 차원에서 ‘언론기본법’, ‘출판사 및 인쇄소 등록에 관한 법률’, ‘음반제작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납본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 제도가 적용되는 자료들을 예술자료관에서 납본 받아 보관하고 이용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행정협조를 구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연극분야의 비정형자료의 경우 공연윤리위원회가 1989년 1월 공연에 대한 사전심의제를 폐지할 때까지 서울지역에서 공연된 모든 연극작품의 심의를 위하여 대본, 포스터, 광고지, 선전용 사진 등을 납본 받았다. 이렇게 납본된 자료들은 1987년까지 수집된 대본 중 각 1부가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자료관으로 이관되어 어느 정도 일괄적인 수집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사전심의제가 폐지되면서 이러한 자료의 수집이 사실상 어려워졌는데 이는 연극의 심사를 위해서만 자료가 납본·수집되었기 때문에 연극관련 자료의 수집도 자연히 중단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연극분야의 연구와 정보원으로서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극관련자료를 납본 받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

이와 같은 방법들을 통해 예술관계자료를 최대한 수집하되 이미 다른 기관이나 도서관에 있는 자료의 경우 온라인 종합목록을 작성하여 자료의 소재정보에 이용자가 쉽게 접근하도록 해야 하며 아울러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외부(국내 또는 국외)의 자료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러한 종합 예술자료관의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면 적합한 운영요원(사서)의 확보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예술분야의 주요 연구자료를 파악하고 이용자와의 접촉을 통하여 수요에 관한 정확한 판단을 자료관의 선정, 수서, 정리, 참고업무에 반영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주제전문사서의 능력이 예술자료관의 운영요원에게 요구된다.

예술분야의 주제전문사서는 외국의 사례에서와 같이 예술의 각 분야에 대한 주제 지식이 상당히 갖추어져 있어야 할 것이며 주제봉사를 위한 도서관학적 지식과 아울러 예술정보가 수록된 다양한 매체에 대한 지식, 그리고 2개국어 이상의 주요 외국어 해독능력을 갖춘 인재를 확보하도록 한다.

이와 같은 능력을 갖춘 전문사서를 확보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이러한 전문사서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역시 현재 국내대학의 도서관학과에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술자료관은 일단 도서관학을 전공하고 예술에 관심 있는 자를 직원으로 채용하여 자체적으로 요원양성을 위한 관내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예술관련 주제전문사서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은 앞에서 제시한 외국의 선행사례를 적절히 참고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체계적으로 계획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강현두, 김문환, 이두영, 강준혁, 김철수(1987), 「예술의 전당 자료관 운영 및 활동 프로그램 개발 기본계획 연구」.

구자영(1979), “주제전문사서의 양성을 위한 교육”, 도서관학 제6집, pp.37 - 51

김경진(1987), “특수도서관 사서의 계속교육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김태승, 최석두, 이상현, 백태현(1990), 「국가문화예술 정보시스템 설계 및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노문자(1986), “예술품도서관(아르토텍)”, 도협회보, 27, pp.10 - 30.

서영순(1988), “연극도서관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이두영(1991), “문화예술관계 자료관의 특성”, 도서관 46권, pp.5 - 23.

이민정(1990), “약보자료의 관리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정진호(1989), “음악도서관의 전문봉사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주영주(1989), 「국가기록물로서의 시청각자료」

Bradley, Carol June(1973), Reader in Music Librarianship, Washington D.C.

: Microcard Editions Books.

Breitenbach, Edgar(1960), “Picture Research at the Library of Congress”,

Special Libraries, 51, pp.281 - 87.

Evans, Hilary(1980), Picture Librananship, New York : Clive Bingley Ltd.

Harrison, Helen P. (ed.)(1981), Picture Librarianship, Phoenix : ORYX

PRESS

Jones, L.S.& Sarah S.G.(1986), Art Libraries, New York : Academic Press

- Jones. Malcoln(1979), Music Librarianship, London : Clive Bingley Ltd.
- Larsen, John C.(1975), "Education of fine Arts/Music Librarians". Library Trends, 23, pp.533 – 39.
- Ludden, Bennet(1966), "The Plant, Personnel, and Budget, "Manual of Music Librarianship(ed.), Carol Hune Bradley : The Music Library Association, pp.7 – 13.
- Makepeace, C.E.(1985), Ephemera, Vermont : Gower.
- Melville, Annette(1981), Special Collections in the Library of Congress, Washington D.C. : of Congress.
- Nemchek, Loe R.(1980), "Education for Theater Librarianship" Journal of Education for Librarianship, 21, pp.49 – 62.
- Pacey, Philip(1977), Art Library Manual, London : Bowker.
- Pacey, Philip(ed.)(1985), A Reader in Art Librarianship, New York : IFLA.
- Ritzenthaler, Mary Lynn, Gerald J, Munoff & Margery S. Long(1984), Administration of Photographic Collections, Chicago :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 Rokdenetx, Annemarie(1992), "Career documentation : LC receives Bob Fosse/Gwen Verdon collection," LC INFORMATION BULLETIN, 51, pp.204 – 205.
- Spivake, Harold(1960), "The Music Division of the Library of Congress", Library Trends, 8, pp.566 – 73.

III. 복제보상금 제도에 관한 대토론회

사적 복제 현황과 보상금 제도의 필요성/105
복제보상금 제도 실시 방안/113
토론 내용/126

사적복제 현황과 보상금 제도의 필요성

황 적 인 *

1. 사적 복제 현황

기기별로 사적 복제현황을 비교표로 보면 다음과 같다.

복사기 현황¹⁾

구분 \ 국가	독일(1983)	스위스(1984)	한 국
설 치 대 수	92만대	10만대	153,700대 (1984 ~ 88까지 누계)
복 사 기 수	255억매	60억매	92억매(1년간)
대당 연간평균 복사기기	28,000매	60,000매	
인구1인당 복제매수	420매 (서독인구 6,105만명)	920매 (총 인구는 650만명)	
총복사기기중 10%를 무단복사	25억매		18억매(1년간)

녹음 · 녹화기 보급률²⁾

구분 \ 국별	녹음기 (1983년 당시)	녹화기 (1980) (1990추정)
영 국	73%	10% 85%
네덜란드	67%	10% 85%
프 랑 스	62%	10% 85%
서 독	69%	10% 85%
일 본	77.9%(1978) 90.3%(1990)	2.3%(1978) 84.9%
한 국	1,600만대(1988) 가구당 1.5대 (총가구수는 1,050만가구)	41.0% 250만대, 4가구에 1대

* 서울 법대 교수,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총무이사

1) 허희성, <복제기기의 현황과 저작권 보호>, 「계간 저작권」 8호, 44면 : <사적 복제에 대한 부과금제도 연구>, 87면

2) 앞의 책

추정기기·기계 부과금³⁾

1DM494원(1992. 6. 현재)

	독일, 개당부과금	원 화	한국, 판매량(1990)	추정부과금
복 사 기 (분당 13~35매)	100 DM	49,400원	58,730 (5년 누계 222,330)	29억원
녹 음 기	2.5 DM	1,235원	189만대	23억 3천만원
녹 화 기	18 DM	8,892원	111만대	98억 7천만원
녹음 테이프(1시간당)	0.12매	59원	9,519만개	56억 7천만원
녹화 테이프(1시간당)	0.17매	84원	3,547만개	29억 8천만원

1) 복사기에 의한 사적 복제

우리 나라에서 현재 복사기의 가동대수는 약 222,000대로 추산되고 있다.⁴⁾ 이것은 1991년 현재 과거 5년간 국내에서 시판된 복사기의 수량이다. 1987년 일본에서는 복사기 1대당 연간 6,600매를 복사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이 계산에 의하면 우리 나라에서는 연간 약 14억매를 복사한 것이 된다(222,330대×6,600매). 이들 복사물 중 최소한 20%는 서적·잡지·신문 등 저작권 보호를 받을 저작물의 복사라고 보면 우리나라에서 연간 약 2억 8천만 매의 복사물이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복사 1매당 저작권자·출판권자의 손실을 약 13원으로 보면 연간 36억 4천만원의 손실을 입은 결과가 된다.

복사기에 대해서는 기기부과금이외에 운용자부과금이 있다. 이것은 복사점에서 저작권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이다.

2) 녹음·녹화기에 의한 사적 복제

가. 보급률

우리 나라의 녹화기 보급률은 41.0%이며 보급대수는 499만 대이다.⁵⁾

3) 허희성, <복제기기의 현황과 저작권 보호>, 「계간 저작권」, 1989년 겨울호(8호) 47면 이하

4) <사적 복제에 대한 부과금제도 연구>, 87면 이하

5) 앞의 책, 89면

1988년말 현재 인구는 4,200백만명, 가구수는 1,050만 가구이므로 이것을 가구수로 나누면 0.47대로 약 2가구에 한 가구는 녹화기를 가지고 있다는 결과가 된다.

또한 녹음기의 보급율은 가구당 1.5대, 약 1,600만대라고 한다.

나. 연간출하량

녹음기의 1990년도 국내판매량은 189만대이며, 녹화기는 111만대다⁶⁾ (총 출하량 중 90%가 수출이고, 국내판매량(내수)은 10%이다).

녹음용 공테이프의 1990년도 국내 판매량은 9,519만개이고, 녹화용 공테이프의 국내판매량은 3,547만개이다.

2. 보수청구권제도의 필요성

복제보상금제도 또는 부과금제도(Levy System) 내지는 보수청구권제도는 1989년 6월 「계간 저작권」에서 소개되고, 동년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서 작성·발표한 저작권법개정안 제27조의 2에서 부과금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1990년 11월 16일 동 위원회에서 부과금제도에 관한 심포지움이 개최되었다.

보상금제도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1) 국제협약의 준수

베른협약 제9조 2항은 「저작물의 복제를 인정하는 권능은 동맹국의 입법에 유보된다. 그러나 그와 같은 복제가 당해 저작물의 통상이용을 방해할 수 없고, 또한 그 저작물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아무리 국내법으로 저작권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저작물을 통상 이용 하는 것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되고, 또한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쳐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런데 복사기·녹음·녹화기의 대량 보급은 저작물의 통상의 이용에 지

6) 앞의 책 90, 91면

장을 주는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작권의 정당한 이익을 해치므로 권리의 보호와 이용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 헌법상 근거

저작권은 사권(私權)이다. 저작권법 제1조는 저작권의 보호와 공정한 이용의 도모를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6절에서는 저작재산권의 제한을, 특히 제27조에서는 「사적 이용의 복제」를 허용하고 있다. 저작권은 국민의 문화생활과 관련이 있으므로 다른 일반적인 사권과는 달리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제한은 가능하나, 헌법 제23조 제3항은 반드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제37조 제2항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3) 저작권법 27조의 취지

현행 저작권법 제27조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면 녹음 녹화는 주로 가정에서 하며, 복사도 주로 학생들이 한 두 장씩 사적 이용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저작자나 출판업자 등의 동의 없이 또 무료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폐쇄적인 범위 내에서 한 장씩 또는 한 개씩 복제하는 것은 양적으로 대단히 영세한 이용이므로 거기에까지 권리행사를 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으며 또한 타당성이 있는가, 경제적 불이익을 줘서 되겠는가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저작권법 제27조는 사적 이용을 자유로 하고 있는 것이다.

35년 전인 1957년에 공포되었던 저작권법 제64조 1호는 「기계적 또는 화학적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복제하는 것」을 비침해행위로서 허용하고 있었다. 당시에는 녹음기·복사기도 없었으므로 타인의 저작물을 복사한다면 수서 정도였을 것이기 때문에 「기계적 또는 화학적 방법에 의하지 않는 복제는 허용되었으나 오늘날에는 복사기도 고성능이 되고 속도가 빠를 뿐만 아니라 정부기관, 대학, 회사 등 도처에 비치되어 있고 복사점에서는 제본까지 해주고, 그 원가는 서점에서 사는 책값의 반값이며, 또

한 전자제품도 DAT(Digital Audio Taperecorder), MD(Mini Disc), DCC(Digital Compact Cassette)등이 새로 생산되고 보급되며 상업적으로 녹음을 해주고 있으므로 책과 음반을 만드는데는 많은 원가가 드는데 반하여 판매는 되지 않게 되었다.」

원래 저작권법이란 권리의 보호와 이용간의 이익조정을 하기 위한 것인데, 이익조정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금지권도 갖는 허락에 걸리게 하는 방법이며, 둘째는 금지는 할 수 없지만 일정한 경제적 대가는 받을 수 있는 경우, 셋째는 금지도하지 않고 또한 경제적인 대가도 받지 않은, 전혀 자유로운 경우 등 3종류의 이익조정 방법이 있는 것이다.

둘째의 경우, 즉 금지는 하지 않고, 즉 이용을 인정하면서 경제적인 대가를 확보하는 방법이 앞으로는 증가할 것이다.

저작권법 제16조~21조에도 권리의 종류가 열거되어 있는데, 거기에 추가하여 한 형태의 권리로서 「보수청구권」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보수청구권이란 제22조 이하에 의하여 권리제한을 받는데 대한 일종의 대가 내지는 보상이다. 다시 말하면 제27조에 의하여 복제권이 제한을 받은 보상조치로서 보수청구권을 생각할 수 있으며, 보수청구권은 곧 복제권제한에 대한 보상으로서 이해할 수 있다. 제27조 이외에 같은 성질의 것으로서 제23조는 저작물이 교과서에 게재될 때에도 우리 나라에서도 보상금을 주지 않으나 일본법 제33조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4) 보상금 지급의 무자

보상금제도 도입에 있어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저작권·출판권 사용료 내지는 보상금을 복사기·녹음기·VCR 등의 사용자(소비자)가 지급할 것인지 왜 전자기기의 생산자가 지급하는가 이다.

바로 이점에 관하여 1971년 독일 녹음기제조업자들이 독일 저작권법(개정전) 제53조 5항이 독일 기본법 위반이라고 제소한 데 대하여, “녹음·녹화기가 시장에 나도는 것으로 인하여 전자기기사용자(User)와 권리자간의 이익의 충돌이 생긴다. 사적 복

제를 가능하게 하는 기기를 시장에 내놓음으로써 생산자는 이익을 얻는다는 의미에서, 사용자와 권리자의 이익을 조정하기 위하여 그 사이에 생산자가 들어가는 것이 합리적이며, 생산자가 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⁷⁾라는 연방헌법 재판소의 판결이 있었다.

그리하여 보상금제도에 있어서 첫 번째 특색은 보수의 지급책임과 지급의무가 분리된다는 데 있다. 즉 사적 녹음·녹화를 하는 것은 개개의 이용자(User)인데, 이 이용자가 권리자에게 직접 돈을 내지 않고 이를 중개하는 생산자가 권리자에게 저작권사용료를 내는 것이다. 이것은 책을 구입할 때 책값에 인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생산자가 보수금을 내는 것은 일종의 원천징수(Pay out source)이다. 실제로 녹음·녹화는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러한 개인의 실제상의 복제행위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권리처리의 방법으로서 녹음·녹화기기 또는 공테이프에 일정한 보수를 얹어서 권리처리를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금제도의 도입은 생산자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고 저작권법 제27조의 2를 신설하여 복사기에 의해 복제를 하거나 사적 녹음·녹화를 하는 자는 저작권자·출판권자 등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더라도, 저작권단체가 일일이 개개의 가정에 가서 보수를 징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보상조치가 실효성이 있기 위해서는 저작자와 그 사용자 사이에 생산자의 협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보상금제도의 첫 번째 특색이다.

보상금제도의 두 번째 특색은 기기·기재를 구입할 때 한번만 포괄적 처리를 하는 것이다. 보통 저작권의 사용료는 이용의 실태에 따라, 즉 이용의 회수에 따라, 또는 이용의 양에 따라 각각 권리행사를 하게 된다. 그러나 보상금제도에 있어서는 기기·기재를 구입할 때 저작권사용료를 한번만 지급하는 것이다. 그 기기를 써서 그후 몇 번 녹음하든 간에 1회만 지급한다. 따라서 그 기기를 사서 한번 녹음하는 사람이나 100번 녹음하는 사람이나 똑같은 액수를 지불하고 끝내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7) <사적 복제에 대한 부과금제도 연구>, 97, 98면

포괄적 처리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타인의 저작물을 녹음·녹화한 실태에 관계 없이 일종의 의제적인 처리를 한다. 가령 회사에서 공테이프를 사서 회화녹화의 녹음용으로 쓴다 하더라도 사용료를 내게 된다. 그러므로 실제로 타인의 저작물을 녹음·녹화를 하거나 하지 않는 것과는 무관한 것이 이 제도의 두 번째 특색이다.

5) 보상금의 대상

왜 공테이프를 대상으로 하는가에 관하여도 공테이프쪽이 기기보다는 실제로 저작물을 복제하는 빈도를 충실히 반영하기 때문이다. 기기는 한번 사면 그 기계를 써서 몇 번이나 복제하는지 알 수 없지만, 공테이프인 경우에는 대개 복사하려고 할 때 구입하기 때문에 공테이프 두개가 없으면 녹음·녹화는 할 수 없으므로, 또한 생산자와 사용자의 부담을 생각하면 적게, 넓게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기 때문에 양쪽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6) 공통 목적에 사용

저작권제도는 이권의 보호에 바탕을 두고 있다. 사권이라면 권리사용의 대가를 각각 권리자에 귀속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보상금제도는 권리자가 이해할 것을 전제로 하여, 기기나 테이프로부터 받은 보수의 일부를, 권리자에게 분배하지 않고 권리자의 공통이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프랑스에서는 보상금의 25%를 문화적 목적에 사용하고, 오스트리아에서는 51%를 사회적·문화적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보상금의 징수방법이 포괄적이기 때문에 공통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외국에서도 보상금의 일부를 공통목적에 사용하지만 반드시 그 사용내역을 일반국민에 알리고 있다.

3. 결 론

1. 우리 나라에서 보상금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근거와 그에 대한 사건은 다음과 같다.

① 기기의 사용은 소비자가 하는데 왜 생산자가 저작권사용료를 부담하는가 이다. 이에 대한 반대 근거도 상술하였다.

② 보상금제도는 준조세이다. 그러나 보상금의 성격은 본질적으로 저작권사용료이며, 저작권사용료는 저작자나 저작권이용자에 대한 노임이나 보수이지 전혀 준조세적 성질을 갖는 것이 아니다. 우리 나라에 저작자는 약 3만명 정도인데 이들의 보수는 극히 열악하고 대부분이 영세하다.⁸⁾ 소설가의 한달 평균수입이 40만원이라고 한다(원고지 1매 3,000원). 반면에 전자기기생산회사는 이들 기기의 생산으로 막대한 이익을 올리고 있다.

③ 전자기기에 보상금을 부과하면 국제경쟁력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외국에 수출하는 복사기·녹음기·녹화기에 대해서는 저작권사용료를 면제하고 있으므로 부과금과 국제경쟁력은 무관하다.

④ 보상금을 부과하면 물가가 상승한다는 것이다. 물론 5%의 부과금을 부과하면 물가가 그만큼 영향을 받게 되겠지만 저작권 등의 노임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물가를 억제한다는 것은 무리이다.

2. 보상금제도는 1965년 독일에서 최초로 채택된 이래 현재 유럽을 위시하여 전세계 많은 국가에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현재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17개국).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것으로 생각된다.

① 기기·기재부과금은 대상 기기의 5%이므로 비교적 그 비율이 낮다.

② 저작자 등을 지원할 필요성은 크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지금까지 농촌과 교육에 가장 적게 투자하였다. 달리 재원을 마련할 길이 없고 보상금을 저작자들에게 분배해 주면 창작의 큰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들을 지원함으로써 과학 문화의 발달을 촉진할 수 있다. 또한 국가적으로 보아 문화 향상을 위하여 보상금을 문화적 사

8) 자료집 문인원고료, 「조선일보」 1992. 5. 20자 참조

회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③ 보상금을 부담하는 측은 대체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계층이다 따라서 부과금제도는 이들 계층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는다.

복제보상금 제도 실시방안

이 중 한 *

1. 저작물의 사적 복제와 저작권자의 보호

1) 사적 복제의 개념

현행 저작권법 제27조는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의 복제를 흔히 ‘사적 복제’ 또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라고 한다.

저작물의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는 개인적으로 또는 사적 장소인 가정 및 이와 동일시 할 수 있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복제를 허용한 것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저작(권)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①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할 것, ② 개인적 또는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에서의 이용을 위한 복제일 것, ③ 이용자 본인에 의한 복제일 것 등을 요건으로 한다.

2) 사적 복제의 경제적인 영향

복제기술이 다양화되고 동시에 그 보급이 일반화되어 있는 오늘날,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는 저작자의 권리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정도로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법문상의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는 것만으로는 저작(권)의 정당한 이익을 보장해 줄 수 없는 현실이 되고 말았으며, 더구나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화되리라는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위원. 공연전시 분과위원장.

것은 자명한 일이다.

저작물의 사적 복제로 인한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 상실을 방지하고 기존의 저작권제도를 유지시키는 동시에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와 일반공중이 향유하게 되는 혜택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려는 노력은 세계 각국의 저작권계가 안고 있는 현대적 과제가 되고 말았으며, 그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복제보상금 제도이다.

3) 사적 복제에 대한 대응책 - 복제보상금 제도 (Levy System)

가. 보상금제도의 의의

저작물의 사적 복제는 그 전체적인 규모에서 볼 때 기대가능 했던 구매를 대체하게 되고, 이는 그만큼 저작권자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그러나 사적 복제와 관련된 저작물의 이용은 가정에서 신속하고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것이니 만큼 그 자체를 제한하거나 금지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우며, 설사 사적 복제를 저작의 배타적인 권리가 미치는 것으로 저작권제도를 개선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는 사적 복제에 대한 책임추궁이 곤란하다.

복제보상금 제도는 바로 이 같은 이율배반적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이다. 즉, 복제보상제란 사적 복제의 수단이 될 수 있는 복사기, 녹음·녹화기, 녹음·녹화용 공테이프 등에 일정금액을 부과하여 그 징수된 재원을 저작권자에게 분배하거나 문화기금으로 활용함으로써 저작물의 사적 복제로 인한 권리자의 손실을 보전하는 제도를 말한다.

나. 복제보상금의 법적 성격

복제보상금 제도가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복제기술의 발달에 따라 대량의 사적 복제가 가능해졌으며 이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저작(권)자의 경제적인 이득이 감소하게 되었다는 현실적인 이유가 내재되어 있다. 즉, 보상금의 법적 성격은 일반 재산권의 제한에 있어서 정당한 보상이 지급되어야 하는 경우와 동일한 차원에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다. 보상금의 청구범위

원칙적으로 보상금이란 사적 복제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저작물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개개인을 대상으로 보상금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아니하고는 개개의 이용자들로부터 부과금을 징수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각국의 입법례를 보더라도 사적 복제에 이용되는 복제수단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를 대상으로 그 복제수단의 생산가격에 일정액을 부과함으로써 결국은 이용자들에게 전가시키는 우회적인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사적 복제를 위하여 이용하는 복제수단으로는 복사기, 복사용지, 녹음기, 녹화기, 녹음·녹화용 테이프 등을 들 수 있다. 부과금의 법적 성격을 재산권의 제한에 따른 보상금으로 이해한다면, 이 모든 복제수단에 대하여 부과금이 징수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 구체적인 범위에 있어서는 입법례마다 상이하다.

라. 사진복사(Photocopying)와 복제권집중관리단체

전자복사기의 보급이 녹음·녹화기처럼 일반국민(가정)에까지 널리 보급되어 있지 않은 오늘날의 현실을 감안할 때, 출판물 등의 사진복사는 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복사가계의 힘을 빌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전자복사기에 의한 출판물 등의 복제는 진정한 의미의 사적 복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다.

출판물 등의 사진 복사에 대응하는 각국의 태도를 보더라도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저작권자들의 허락을 받아 사용료를 지급해야만 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그 구체적인 권리행사에 있어서는 개개의 권리자들이 개별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복제권집중관리단체(Reproduction Right Organization)에 위임하고 있다. 미국의 Copyright Clear-

ance Center, **캐나다의** Canadian Reprography Collective, **프랑스의** Centre Français du Copyright, **노르웨이의** Kopinor, **스위스의** Pro Litteris 등 **약20여개국에** 이러한 목적을 지닌 단체가 설립되어 있다.

2. 복제보상금 제도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1) 보상금제도 도입국가 현황

보상금제도를 최초로 도입한 나라는 독일이지만 그 구체적인 모습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1991년 현재 보상금제도를 도입한 국가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보상금제도의 도입 국가

나 라 명	도 입 년 도	근 거 법 률	징 수 대 상
노 르 웨 이	1981년	세 법	녹음·녹화기/ 녹음·녹화용 공테이프
독 일	1965년	저 작 권 법	복사기·복사점/ 녹음·녹화기 녹음·녹화용 공테이프 (1985년 개정법으로 추가)
불 가 리 아	1991년	저 작 권 법	녹음·녹화용 공테이프
스 웨 덴	1982년	세 법	녹음·녹화용 공테이프
스 페 인	1987년	지적재산권법	복사기·녹음·녹화기 녹음·녹화용 공테이프
아 이 슬 랜 드	1984년	저 작 권 법	녹음·녹화기/ 녹음·녹화용 공테이프
오스트레일리아	1989년	저 작 권 법	녹음·녹화용 공테이프
오 스 트 리 아	1980년	저 작 권 법	녹음·녹화용 공테이프
체코슬로바키아	1991년	저 작 권 법	녹음·녹화용 공테이프
콩 고	1982년	저 작 권 법	녹음·녹화용 공테이프
포 르 투 갈	1985년	저 작 권 법	녹음·녹화기/ 녹음·녹화용 공테이프
네 덜 란 드	1989년	저 작 권 법	녹음·녹화용 공테이프
프 랑 스	1976년 1985년	세 법 저 작 권 법	복사기 녹음·녹화용 공테이프
핀 란 드	1984년	저 작 권 법	녹음·녹화용 공테이프
형 가 리	1981년	저 작 권 법	녹음·녹화용 공테이프

위 현황을 보면 현재 보상금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들은 크게 녹음·녹화용 공테이프, 녹음·녹화기기, 복사기 등을 징수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가운데 출판물의 사적복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복사기 또는 복사점을 징수대상으로 하고 있는 나라는 독일, 스페인, 프랑스 등에 불과하며, 더구나 프랑스는 저작권법이 아닌 세법을 근거로 하고 있다.

사적인 녹음·녹화에 대하여 보상금제도를 도입한 나라라 하더라도 녹음·녹화기기보다는 녹음용 공테이프를 주된 징수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현재 보상금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에도 그러하다.

몇 국가의 경우를 좀더 자세히 보자면 다음과 같다.

2) 독일의 보상금 제도

독일의 1985년 저작권법 제53조는 저작물의 사적 사용 및 기타 자체적 사용을 위한 복제를 허용하는 한편, 제54조에서는 그러한 사적인 사용에 대하여 저작자가 녹음·녹화용 기기와 공테이프, 복사기 등의 생산자 또는 수입자 및 복사점에 대해 일정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으며, 그 보상금액에 관해서는 동법 별표에서 정하고 있다. 그 별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독일에서의 보상금 내역

I. 사적 녹음·녹화에 대한 보상금			
1. 녹음기	1대당	2.5DM	
2. 녹화기	1대당	18.00DM	
3. 녹음용 공테이프(1시간용)	1개당	0.12DM	
4. 녹화용 공테이프(1시간용)	1개당	0.17DM	
5. 기능상 테이프를 요하지 아니하는 녹음기 및 녹화기는	제1호와 제2호 금액의 2배		

II. 사적 사진복사에 대한 보상금			
1. 복사기에 대하여 분당 복제기능 매수가	2	12매인 복사기는	75DM
	13	35매인 복사기는	100DM
	36	70매인 복사기는	150DM
	71매 이상인	복사기는	600DM
2. A4크기의 복사물에 대하여			
교육목적 하에서 주정부가 교과서로 허가한 도서의 사진복사	1매당	0.05DM, 기타의 모든	
사진 복사		0.02DM	
3. 컬러사진복사기 및 컬러사진복사물은	이상의 2배		
4. 위 금액은 기타의 유사한 사진복사에	준용된다.		

1985년 법 제54조 8항은 보상금청구권은 “오직 관리단체를 통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적 녹음·녹화에 대해서는 1963년에 설립된 ZPU(Zentralstell für Private Überspielungsrechte ; 사적복제권센타)가 그러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ZPU의 업무는 모두 GEMA(음악저작권협회)에게 위탁되어 있어 징수분 배사무는 모두 GEMA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ZPU는 징수한 보상금에서 7%의 징수분배수수료를 공제한 후 일정비율에 의거하여 해당 권리자단체에게 분배하며, ZPU로부터 일정금액을 분배받은 각각의 권리자 단체는 그 금액을 스스로 정한 분배규정에 의거하여 회원인 권리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분배한다.

사적 사진복사와 관련된 보상금은 복사기와 복사기 운용자를 대상으로 하며, 그 징수·분배업무를 담당하는 단체는 어문저작권관리협회(VG-WO-RT)이다.

복사기에 대한 부과금은 그 생산량이나 수입량을 기준으로 하여 제54조에 관한 저작권법의 별표규정에 따라 징수하기 때문에 징수에 별 어려움은 없으나, 복사기 운용자에 대한 부과금의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진다. 즉 동 별표에는 복사기 운용자에 대한 부과금으로 A4크기의 사진복사 1매당 0.02또는 0.05DM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개개의 복사기 운영점에서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복사량을 정확하게 산정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실제운용에 있어서는 복사기의 성능과 복사기 운영점의 위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포괄적으로 산정 하여 징수하고 있다.

사적 사진복사에 대한 운용자 부과금의 내역

구 분	복 사 점			복사점이 아닌 곳
	A급(대학 근처)	B급	C급(대학없는 곳)	
분당 2 12매	72DM	54DM	36DM	36DM
13 70매	288	215	144	60
70매 이상	345	259	173	144

동협회의 분배규정 제3조에 따르면, 저작자와 출판사의 분배비율은 5:5, 번역자는 저작자의 몫의 50%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다. 또한 저작자는 저술된 책 및 그 출판회수에 비례하여 보상금을 지급 받는다.

3) 프랑스의 보상금제도

프랑스의 1985년 저작권법은 제3장 제31조~제37조에서 음반 및 비디오그램의 사적 녹음·녹화에 관한 보상금의 근거규정을 두는 한편, 제4장 제38조~제44조에서 보상금징수단체에 대한 관련규정을 두고 있다.

보상금은 녹음·녹화용 공테이프만을 대상으로 저작자와 실연자 및 음반·비디오 제작자 등이 녹음·녹화용의 공테이프의 생산자 또는 수입자에게 청구하게 된다. 현재 보상금은 녹음용 공테이프(1시간용)는 개당 150프랑, 녹화용 공테이프(1시간용)는 개당 2.25프랑이다.

보상금의 징수와 분배사무를 위하여 녹음용 공테이프의 경우에는 SORECOP(société pour la Remuneration de la Copie Privée sonore), 녹화용 공테이프에 대해서는 COPIE FRANCE가 설립되어 있다.

1985년 법은 사적 복제에 대한 총보상금의 25%, 상업용 음반의 2차 사용에 대한 총보상금(1985년 법 제22조)의 50%를 창작과 공연활동의 촉진, 예술가의 육성 등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1985년 법 제38조 ⑤항). 이에 따라 FCEMS(음악의 창작 및 보급을 위한 기금)가 설립되고, FCEMS는 음악의 창작과 공연 및 예술가 육성을 위하여 지원하는 한편 음반 등의 제작자와 음악의 국외보급을 위해서도 지원하고 있다.

4) 오스트리아의 보상금제도

오스트리아의 1980년 저작권법은 사적 이용이 예상되는 녹음·녹화용 공테이프에 대하여 즉 판매를 목적으로 그러한 공테이프를 최초로 국내에 배포하는 생산자 또는 수입자는 저작자 등에게 일정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42조 ⑤항).

공테이프의 생산자나 수입자로부터 일정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자신의 작품이 방송되거나 또는 판매용 음반이나 판매용 비디오 테이프에 고정되어 있는 저작자(1980년 법 제42조 ⑤항), 실연자(동법 제69조 ③항), 사진촬영자(동법 제74

조 ⑦항) 및 음반제작자(동법 제76조 ④항) 등의 권리이지만, 그러한 권리를 현실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국가가 지정하는 징수단체이어야 한다(동법 제42조 ⑥항).

1987년 현재 징수단체로서 Austro-Mechana가 지정되어 있으며, 테이프 1개당 보상은 녹음용 공테이프(1시간용)는 1.60실링, 녹화용 공테이프(1시간용)은 3.0실링이다.

Austro-Mechana는 징수한 보상금에서 7%의 관리수수료를 공제하고 남은 잔액을 각 분야별 권리자단체에게 분배한다. 각 권리자단체들은 상호간의 합의에 의하여 분배율을 결정하게 된다.

1980년 개정법 제2조 ⑥항과 1986년 개정법 제1조 ③항은 각 관리 단체로 하여금 단체의 회원과 그 가족을 위한 사회적 문화적 목적의 복지제도를 설정하고 그러한 용도로 전체 보상금의 절반 이상을 사용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용도는 다음과 같다.

사회적 , 문화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보상금의 용도

사회적 목적	원로회원, 회원의 미망인 및 유자녀에 대한 원조 회원 및 그 가족의 질병·사고에 대한 보조 의료보험, 법률상담비에 대한 보조 등
문화적 보조	청소년연기자에 대한 장학금, 공연경비 및 악기구입 지원, 문화적으로 가치있는 서적, 악보 음반 및 비디오 출판 원조 등

5) 미국과 일본의 동향

가. 미국의 동향

미국 저작권법 제106조는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복제물이나 음반을 제작하는 행위” 등을 저작권자의 배타적인 권리로 선언하는 동시에, 제107조에서는 비평·사·사·보도·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fair use)은 제10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침해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에서의 보상금제도는 바로 제107조에 규정하고 있는 「공정한 이용」의 개념에 사적 복제가 포함되는지의 여부와 관련하여 논의되어 왔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저작자 또는 저작자단체들은 사적 복제로 인하여 자신들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실태조사와 함께 입법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도 꾸준히 추진해 왔다. 그러나 생산자·유통업자·소비자들에 의한 반대에 부딪혀 번번히 실패하였고, 더욱이 'VTR에 의한 가정에서의 복제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된다'고 판시한 1984년의 Betamax판결은 미국에서 보상금 제도의 도입을 지연시키는 장애물이 되었다.

Betamax판결 이후 저작자단체들은 방향을 전환하여 사적 녹음에 대해서만 보상을 요구하게 된다. 특히 최근에는 종전의 아날로그식 녹음방식에서 한 단계 발전한 디지털 녹음기의 출현과 함께, 그것의 제조·판매를 금지하기 위한 저작권침해소송이 1990년 7월 뉴욕남부지구 연방지방법원에 제기되기도 하였다.

1991년에는 관련 당사자들간의 오랜 논쟁도 마침내 타협을 보게 되며 그 타협의 결과 가정내녹음법(안)이 의회에 제출되기에 이르렀다.

나. 일본의 동향

일본 저작권법 제30조는 “저작권의 목적이 되는 저작물을 개인적으로 또는 가정 내 기타 이에 준 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복제하는 때에는 그 사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공중사용을 위하여 설치된 자동복제기기(복제기능이 있으며 그 에 관한 장치의 전부 또는 주요한 부분이 자동화되어 있는 기기를 말한다)를 이용 하여 복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함으로써 일정한 조건하에서 이루어 지는 저작물의 사적 복제를 적법한 것으로 허용하고 있다.

현대적인 복제기술의 발달 및 그에 따른 대량의 복제행위로 인하여 저작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그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요구하게 되는 상황은 일본에서도 예외일 수는 없었다. 197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일본에서의 움직임은 복제의 유형에 따라 크게 2가지의 방법이 논의되어 왔다. 주로 학교나 도서관 또는 영업적인 복사가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출판물 등의 사진복사는 제30조의 사적 복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보다 더 일반적이기 때문에 미국의 CCC와 유사한 집중관리단체의 설립을 추진

하였고, 마침내 이러한 노력은 1991년 4월 「저작자·출판자복제권집중처리센타」가 정식 발족됨으로써 결실을 보게 되었다.

음반이나 영상저작물의 사적 녹음·녹화에 대해서는 그러한 사적 복제의 허용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요구하는 보상금제도의 도입 주장이 제기되었다. 조만간 입법적인 차원에서의 해결이 예상된다.

3. 우리 나라에서의 사적 복제 현황과 보상금제도의 도입효과

•출판물 등의 사진복사 현황에 대한 추정

1991년까지 국내에서 시판된 복사기의 수량에 대한 연도별 추이와 1987년의 일본에서의 출판물 복사실태 결과를 유추하여 국내에서의 연간 총복사량과 이로 인한 저작권자 등의 손실을 계산하면 각각 14.67억매와 190.7억원에 이른다.

•사적 녹음·녹화 현황에 대한 추정

사진복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적 녹음·녹화의 실태에 관해 지금까지 국내에서 실제적인 조사가 이루어진 바가 없으나 VTR이나 컬러 TV의 국내보급율이 선진국의 경우와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적 녹음·녹화의 형태도 이들 국가와 비슷한 양상을 보일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보상금제도의 국내 도입효과

보상금의 징수대상을 어느 범위까지 확대하느냐에 따라 그 제도의 효과에서도 많은 차이가 날 것이다. 다만 현재의 국내 여건 하에서 독일식의 보상금제도를 도입할 경우 저작권자 등에게 환원될 수 있는 보상금 총액은 연간 3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상금제도 도입시의 보상금 추정액

(단위 : 천개, 천대, 백만원)

연도	녹음용테이프 (0.12DM)		녹화용테이프 (0.17DM)		녹음기 (2.5DM)		VTR (180DM)		복사기 (100DM)		운용자부과금 (144DM)		연간 합계 금액
	판매량	보상금액	판매량	보상금액	판매액	보상금액	판매량	보상금액	판매량	보상금액	보급대수	보상금액	
1988	186,444	10,515	27,547	2,201	4,578	5,379	956	8,088	28,470	1,338	100,000	6,768	34,289
1989	109,624	6,138	30,595	2,445	3,987	4,685	1,260	10,660	36,130	1,698	108,500	7,343	33,014
1990	95,190	5,369	35,466	2,834	1,890	2,220	1,108	9,374	58,730	2,760	156,330	10,580	33,137

4. 보상금제도의 입법화 방안

보상금제도의 도입에 있어서 사전에 검토해야 할 사항은 i) 보상금 청구의 범위, ii) 보상금 청구권자, iii) 징수된 재원의 관리 및 분배, iv) 문화적·사회적 목적으로의 사용여부 선택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현재 각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보상금제도는 그 보상금의 청구범위에 따라 대개 3가지 유형이 있으나, 어문저작물 등의 저작권자와 음악저작물 등의 저작권자와의 형평을 고려할 때 녹음·녹화기기 및 공테이프와 사진복사기까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넓은 범위의 보상금제도를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보상금을 결정하는 방식에는 정액제와 정률제의 2가지 방식이 이용되고 있는 바, 정액제는 물가의 등락이 심한 국가에서는 현실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경우에는 정률제가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보상금제도를 통하여 징수된 재원의 일부를 국가의 문화기금으로 전용할 수 있는 가는 국가별 선택의 문제이다. 외국의 일반적인 예에 따라 20%내지 50%정도를 문화기금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보상금제도의 따른 보상금은 조세와 같이 법률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강제징수 되는 것이지만, 국가기관이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의 법정기관이나 권리자단체에서 징수·분배하는 경우가 보통이며, 이 경우 징수·분배기관은 그 징수와 분배업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액에서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있다. 수수료 비율에 대해서는 국가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7% 내지 10%이내이며, 우리 나라에서도 이 정도의 수준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점을 감안하여 보상금제도를 우리 나라에 도입할 경우 그 구체적인 입법안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 현행 독일저작권법 제53조와 제54조의 예에 따라 우리의 현행 저작권 법 제27조를 개정하여 사적 이용을 위하여 복제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제한적으로 명시하며,

- 제27조의 2를 신설하여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대해서도 복제기기의 제작자와 수입자에게 그 기기의 시중판매가격에서 5%미만의 일정률의 금액을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방송사업자 제외)에게 보상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 제27조 3에서는 위와 같은 보상청구권은 권리자가 개별적으로 행사할 수 없고 관련단체나 특정기관을 통해서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상금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 내지 징수·분배를 담당할 기관의 지정과 징수·분배업무에 따른 수수료율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방식의 입법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5. 문예진흥과 보상금제도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의 문화부문 사업계획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재원의 규모는 이 계획의 완료 년도인 1996년까지 총 13,000억원 정도에 이르며, 이 가운데 문예진흥기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부분은 전체 규모의 약 7.6%인 896억원 정도이다.

보상금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상당수의 나라에서 보상금의 일부를 공통의 문화기금으로 활용하고 있는 바, 총 보상금에서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공제하는 비율의 정도는 각국의 상황에 따라 상이하다. 그 구체적인 비율은 다음과 같다.

보상금을 문화기금으로 활용하고 있는 입법례

국 가 명	공 제 율	용 도
오스트리아	총금액의 51%	권리자의 사회보장제도, 일반문화적 목적
프 랑 스	25%	창작과 공연활동의 촉진, 예술가 육성
호 주	15%	음악산업의 진흥과 지원
스 페 인	29%	신예작가 및 신실연자의 양성
핀 란 드	2/3	단체 공통의 목적
아이슬랜드	15%	음반 등의 출판지원

현재 우리의 경제적인 여건 하에서 독일식의 보상금제도를 도입할 경우 징수 가능한 보상금의 규모를 약 300억원 상회로 추정할 때 이러한 재원으로부터 공통의 문화목적

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금의 규모는 프랑스의 경우처럼 25%를 공제할 경우에는 연간 약 80억원, 오스트리아처럼 51%를 공제할 때에는 연간 약 170억원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과거 3년간의 추정규모는 다음과 같다.

보상금제도를 통하여 확보 가능한 문화기금의 규모

(단위 백만원)

년도	예상보상금	51%를 공제하는 경우	25%를 공제하는 경우
1988	34,289	17,487	8,572
1989	33,014	16,837	8,254
1990	33,137	16,900	8,284

이와 같은 규모의 재원은 문예진흥기금의 안정적 확보는 물론 국민문화육구에 부응하는 문화적 조성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토 론 내 용

〈참 석 자〉

사회 김문화(국민대 교수)	신현낙(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사무국장)
발제 황적인(서울대 교수)	임정수(한국음반협회 회장)
이중한(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의원)	김정숙(한국소비자연맹 기획실장)
토론 이정민(서울대 교수, 문예학술저작권협회이사)	이관석(한국방송작가협회 이사)
박재린(전자공업진흥회 이사)	양영준(변호사)
김석완(한국음악저작권협회 지도위원)	최연호(문예학술저작권협회 연구원)
이두영(한국출판문화협회 사무국장)	김수열(주식회사 신도리코)
박주태(상공부 전자기기과장)	이용권(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
윤희창(문화부 문화정책기획관)	

김문환 : 좋은 발표를 해주신 황적인 교수와 이중한 위원에게 감사드린다.

황적인 교수의 발표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 나라도 복제기기가 많이 보급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금제도의 도입을 위한 여건이 성숙되어 있다. 보상금을 부과할 경우에 약 200억원 이상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수준이 세계적으로 15번째 정도 되는 우리 나라가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16번째 내지 18번째로 도입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이제는 국제적으로도 도입할 시기가 되었다고 본다. 보상금제도의 근거로서는 베른협약이나, 세계저작권협약 이외에도 우리 나라 헌법에도 충분한 근거가 있다.

또한 보상금제도 도입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도 이 제도가 행정편의적인 발상이 아니며, 국제경쟁력 약화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고, 오히려 궁극적으로는 산업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므로 문화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요지의 발표를 하셨다.

이중한 위원의 발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앞으로 저작권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확대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 도서관에서 행해지는 복사의 경우 1회당 복사량을 50매 정도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15개 국가들의 사례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특히 독일에서는 1965년 녹음기에 이 제도를 적용한 것을 시작으로 1984년에는 VTR, 공테이프, 복사기, 복사점까지 부과금 징수대상을 확대하였다. 또한 징수된 보상금의 최소 15%에서 최대 51%까지를 공공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1984년의 Betamax 사건 때문에 이 제도의 도입이 다소 늦어지기는 했지만 최근에는 도입을 위한 강력한 움직임이 있고 1991년에 연방회의에 의안이 상정되었다. 일본의 경우에는 5년 전부터 도입을 위한 준비가 시작되었고 조사결과, 도입에 찬성하는 비율이 과반수를 넘었으며, 작년에 보상금 관리집중단체를 설립한 것을 보면 빠르면 올해 중에 이 제도가 도입될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이 제도를 도입한다면 복사기의 경우 약 190억원, 녹음·녹화 기까지 확대할 경우 약 300억원 정도가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입법화 방안을 보면, 청구범위는 가능한 한 넓게 하고, 청구권자는 저작권자로 설정한다. 또한 재원관리 분배를 위해 7~10%정도의 관리수수료를 징수하며, 그 중 약25%정도를 문화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서는 저작권법 제27조를 개정하고, 제27조의 2와 3을 신설하여 앞에서 제시한 내용을 삽입하자는 주장을 하였다.

이중한 위원은 이 제도에 관해 가장 깊이 연구를 하신 분으로서 최근에 이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문예진흥원에 제출하였다. 오늘은 이 보고서의 내용을 정리하여 발표하기로 하였는데 시간관계상 상세히 발표하지 못한 것은 유감으로 생각한다.

인간은 명예와 이익을 위해 생활하는 것처럼 보인다. 오늘 이 토론회의 내용도 결국은 한쪽에서 돈을 받아 다른 쪽에서 사용하자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한 사례는 외국에도 많이 찾아볼 수 있으며 그것은 문화발전을 목적으로 한

다. 오늘 토론이 자칫 이익 위주로 흘러갈 위험도 있으므로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토론을 진행해주기 바란다.

이정민 : 발표자 두 분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인은 여기에 몇 가지 보충설명을 하겠다

본인이 학계의 일원으로서 토론자로 참석했기 때문에 우선 학교쪽의 상황을 말하겠다. 학교는 특성상 저작권에 대한 침해가 많은 현장이다. 학생들이 교재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특히 원전의 경우)에는 부득이 복제가 필요하고, 교수들은 책을 저술하는 저작권자이지만 책을 쓰기 위한 많은 책의 구입부담 때문에 역시 복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학교는 사적 복제와 저작자가 함께 존재하는 특수한 현장이라고 하겠다,

우리 나라에서 사적복사가 얼마나 많이 행해지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우선 저작권법에서 전권(全卷)복사가 허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현행법에 의하면 사적 복사에 대해 보상금을 내야 할 의무가 없으며, 사적 복사가 불법일 수도 없는 상태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사적복제의 규모가 엄청나서 저작권자들의 피해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다.

미국의 경우, 교수가 여러 사람의 논문을 모아 교재를 만들어 그것을 복제해서 학생들과 나눠 쓰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그럴 경우에도 한 학기만 사용할 수 있다 든가, 한 사람의 논문을 2편 이상 한꺼번에 실을 수 없다는 등의 여러 가지 법적 제한이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전권 복사를 허용한다는 조항은 사적 복제의 수량을 증가시키는 결과는 낳는다. 그러므로 저작권 침해 가능성에 대해서 법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저작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기기 제작사측의 반론도 근거가 있다. 즉 불법복제 방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저작권 침해의 개연성을 이유로 사전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보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가 하는 주장이다. 그러나 실제로 행해지고 있는

사적 복제의 양으로 보면 보상금제도는 당연히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생산자, 테이프 생산업자와의 협의를 거쳐서 보상금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방송의 경우만 보더라도 저작권료 협상은 수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신설되는 부담에 대한 업계쪽의 반대도 충분히 예상된다. 즉 협상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법제화를 통해서라도 저작권 보호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본인은 이 제도 도입에 찬성한다.

소비자 단체 쪽에서는 기기나 테이프의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이 제도에 반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불량제품, 저질제품이 범람할 때 소비자단체들이 겪는 곤혹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저작권 단체와 힘을 합쳐서 저작권을 보호함으로써 저질복제품의 범람을 막고 양질의 저작품이 제대로 유통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박재원 : 먼저 토론자로 초청된 전자기기 제조업체 쪽에서 불참하게 된 것에 대하여 사과하며, 그 사유를 말씀드리고자 한다.

업계에서는 지난 6월 3일 이 토론회에 대해서 정부를 통해 전해 듣고 이 토론회에서 우리의 입장을 명백히 밝히고자 그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회합을 가진 바 있다. 그러나 기업은 제품을 개발, 생산, 판매하는 것이 본연의 기능이고, 또 최근에는 경영이 매우 어려운 형편이다. 그런데 이 토론회에 대한 업계측의 준비기간은 10여 일에 불과했으며, 이것은 주최측의 공문발송일로 부터는 채 한달이 안 되는 기간이었다. 이러한 준비기간으로는 전문가들과의 공정한 토론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었다. 즉 토론결과가 왜곡될지도 모른다고 우려되어 주최측에 3개월 정도의 준비기간을 가진 후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하자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주최측에서는 연기가 불가능하다고 하였으며 업계측의 의견은 별도로 개진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회신하였다.

오늘은 업계의 주장을 4가지 정도로 요약하여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말하겠다.

첫째는 제도 자체의 합리성에 관한 것이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앞으로 연구를 통하여 보강할 계획이다. 우선 업계에서도 문화발전이나 저작권 보호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 문제에 대하여 협조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 본인의 의견만으로는 준비가 부족하므로 문예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의 보고서를 중심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 보고서 25페이지를 보면 ‘이 제도의 도입 목적은 저작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되어 있다.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에는 불법 무단복제 행위나 그 물품의 규제가 중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해서 세계 21개국이 시행하고 있는 복제권 집중관리단체 육성이라든지 저작권 보호관리기구의 설립 및 그 기능의 강화, 불법 복제방지 시스템 등을 개발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부과금 제도의 경우, 현재 많은 국가들이 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적 복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그것도 사적 복제 행위나 물품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복제가능성을 전제로 전 복제기기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점은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예를 들어 공테이프의 판매 비율을 보면, 전문업체 60%, 소비자30%, 기타 10%이다 전문업체로 공급되는 대부분의 테이프는 저작자에 대해서 이중의 댓가를 지불하는 셈인데 그것이 제도상 합리적인가 하는 것이다. 다른 예를 들면 특정인이 복제기를 소유한다고 해서 반드시 사적복제를 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가 하는 것과, 또 여기에 일률적으로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처럼 도입시 사전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즉 우리 나라에서 복제 기기를 통한 사적 복제 행위가 어느 정도 행해지고 있는지를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신문에서는 이 제도가 정기국회를 통해서 연내 입법화된다고 하며, 또 이 제도가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그 목적이 문예진흥기금 확대라는 주장도 있다.

둘째로는 외국의 사례를 들어서 이 제도의 도입을 주장한 의견에 대한 반대 의견이다.

이 보고서의 1/3이상이 외국의 사례를 통해 이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유럽지역의 15개국만 이 제도를 도입했으며, 나머지 미국, 일본, 영국등 대부분의 국가가 아직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아울러 미국은 10년 이상, 일본은 20년 가까이 저작권 보호 측면에서 이 제도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으나, 소비자, 생산자의 반대로 인해 지금까지 실현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된다.

‘World Electronics Data Book’이라는 세계 전자공업시장 데이터의 최근 호를 보면 독일의 경우, 89년 가전제품 생산액은 총 36억불인데 이 중에 32억불이 수출이고 국내에는 4억불만 판매하고 있다고 한다. 즉 가전제품 전체 마켓의 8%만 국내 생산자의 몫이고 나머지 92%는 45억불에 해당하는 수입품이다. 따라서 독일은 수입품에 대해 이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이 제도의 실행에 있어서도 소비자를 통해 국내 생산자로부터 징수되어야 하는 부분을 기업 스스로 지불하게 되어 있어서 생산자는 여기에 관심이 없다고 한다.

특히 VTR, 복사기 등의 경우 본 제도를 시행중인 15개국 중 4개국에서만 국내 생산이 가능하며 나머지 11개국에서는 국내에서 생산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들 국가의 경우는 거의 전량을 공급하고 있는 일본이나 우리나라와는 여건이 다르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세번째로는 제조업의 현재 경영 상태로 보면 수입여건이 아니라는 것이다. VTR, 녹음기, 복사기, 자기테이프 등 전자산업은 작년에 202억불을 수출함으로써 전체 수출의 4/1이 넘는 28%를 담당하고 있어, 고용증대, 국가경제 발전 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3년 동안은 수출이 저조하고 내수침체, 판매부진, 재고누적으로 인하여 매출액 순이익률이 90년도의 1.0%였던 것이 91년도에는 사상 최저

수준인 0.3%에 이르러 사상 최대의 경영난을 겪고 있다. 비교적 건실하다는 상장기업 중에서도 중원전자, 영태전자, 백산전자 등 테이프, 레코드를 생산하는 중견기업들이 모두 도산하여 현재 모두 63개소가 도산한 형편이다. 실제로 중소녹음기 생산업체를 이 토론회에 참여시키기 위하여 접촉해 본 결과, 40여개에 달하던 업체들이 모두 도산하여 지금은 하나도 남아 있지 않았다.

제조업계에서 대신 걷어서 주거나 세금형식으로 내는 돈은 폐기물 예치금, 직업훈련 분담금 등 모두 12종에 달한다. 우리 업계가 이렇게 어려운 상태에서 이 제도를 도입한다면, 기업의 복제기기 판매부진은 심화될 것이고, 자금부담의 가중, 신제품 개발 지연 등이 뒤따라서 현재 기업들의 도산은 불을 붙인 듯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또한 현재 제조경쟁력 강화를 무엇보다도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보고 기술개발이나 내수 창출 등에 지원정책을 펴 나가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와 반대되는 정책을 시행한다면 정부 정책의 신뢰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된다.

마지막으로 복제기기 이용 측면에서의 내용 검토이다.

원래 녹음기나 VTR, 복사기 등은 이른바 그 제품들의 순기능이 있다. 그 순기능이 그 동안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산업사회의 사무생산성 향상, 그로 인한 저작권의 가치를 높이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 이를 통해 산업계가 문화계 발전에 기여하기도 했으며 문화계측에서 산업계를 지원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 제도를 시행하면 가격인상이 불가피하고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들은 구매를 꺼리게 된다. 결과적으로 제품의 이용이 저조하게 되고 그러면 문화예술진흥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 수 없다.

결론적으로 이 제도의 법리적 합리성에 관해서 살펴보자면 미국과 일본이 상당기간 동안 왜 이 제도를 도입하지 못했는지에 대해 상당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우리 업계와 공동으로 이 제도에 관한 토론회를 다시

한번 개최할 것을 주최측에 제안한다.

김석완 : 황적인 교수와 이중한 위원께서 복제보상금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그 도입 방안을 상세하게 설명해주셨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추가 설명은 필요 없으리라 생각된다.

부과금제도 또는 복제보상금제도라는 것은 개인이 사적인 사용을 위해 작성한 복제물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대가로 받는 사용료로 국제사회에서 인정되고 있다. 이것은 권리자에게 다소나마 권리를 환원하자는 취지이다. 그러므로 보상금은 권리자에게 우선 분배되어야 하며, 그 다음으로는 권리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와 저작자의 창작, 양성,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원조 기관이 공통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전체 부과금의 25%정도를 할당하자는 것이 원래의 취지이다. 이런 문제를 감안해 본다면 두 분의 주제 발로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 찬성한다.

복제보상금 제도를 도입하려면 보상금을 부담할 제조자측과의 합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일본과 미국에서 이 제도의 도입이 지연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일본에서는 약 15년간 이 문제를 놓고 논란을 벌여 왔으며, 현재 문화청과 관리자 그리고 제조업자들이 “복제보상금제도 도입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협의를 거쳐서 보상금제도 도입범위를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디지털 오디오테이프, 레코드, 미니디스크, DDC 이 세 종류만 대상으로 삼고, 그 배분에 있어서는 일본의 음악저작권협회에 3%, 실연자 단체와 음반제작협회에 각각 32%로 배분률을 결정하였다. 미국에서는 금년 안에 입법화 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기에 대해서 3%, 자재(공테이프)에 대해서는 4.1%로 복제보상금의 범위를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가 이 제도를 도입하는데 있어서 배분에 대한 잡음과 의견충돌이 생겨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므로 원만한 복제보상금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이해 관계자들이 서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그것을 문화부에서 주관함으로써 벌어질 수

있는 모든 충돌을 미리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복제보상금 제도를 도입했다 하더라도 그 배분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때까지는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도입을 원만하고 신속하게 하기 위한 도입준비협의체 구성을 주최측이나 문화부측에 제안한다.

보상금은 우리 나라 세법상 마땅히 과세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부과금 제도를 도입하되 비과세라는 명문규정을 반드시 삽입해야 한다. 이 문제는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부딪치고 있는 문제로서, 저작권협회측에서 저작권협회 즉 집중관리단체의 운영을 위해 문화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징수하고 있는 수수료(연간 70억원의 저작권 사용료에 대한)에 대해 국세청에서는 세금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복제보상금제도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복제보상금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먼저 보상금은 비과세라는 조항을 반드시 삽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두영 : 출판계에서는 부과금제도가 반드시 도입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출판계에서는 87년 현행 저작권법이 개정될 당시부터 지금까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부과금제도와 집중관리기구의 설치문제를 건의한 바 있다. 저작권자나 출판사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복사·복제의 폭과 그 규모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의 도입이 시급한 실정이다.

과거에는 복사기기를 통해서만 저작권의 침해가 이루어질 뿐이었는데 근래에 와서는 음반이나 녹음테이프, VTR 등이 책과 혼합되는 이른바 출판물의 미디어믹스 현상이 증대되면서 그 피해의 폭이 음반이나 VTR까지 확대되고 있다.

복사기에 의한 복제행위에 있어서도 저작권법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적법적인 복사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기보다는 오히려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가 더 많다. 원래 저작권법 제 27조의 입법취지는 자기가 소유한 기기를 이용해 필요한

내용을 복사하는 것에 한정되어 있다. 그런데 현재 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대부분 복사점이나 회사, 연구소, 학교도서관이다.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본래적인 기능인 열람봉사 보다는 오히려 복사서비스 기능이 더 큰 형편이다.

또한 복사 대상 도서들도 발행 부수가 적은 과학기술도서나 학술서 쪽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문의 출판행위가 침해될 우려를 안고 있다. 복사기로 인한 출판계의 피해는 엄청나다고 할 수 있다. 사실상 금년 1월에는 국제복제권기구연맹을 초청해서 세미나를 열어 부과금제도와 집중관리기구 설립에 대한 문제들을 제기해온 바 있다.

메이커가 부과금을 부담하는 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이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는 결과가 되고 부과금의 액수를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출판계의 입장에서 보건대 부과금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현재 저작권법에 판면권을 신설해서 출판물의 기획이나 편집제작에 기여한 출판사의 창작성을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한다. 왜냐하면 복사행위에 의한 침해행위를 발견한다 해도 출판업자 단독으로 보상의 조치를 강구하기는 어렵고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보다 쉽게 권리보호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판면권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김석완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도입 과정에서 사전에 분배기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하겠다.

박주태 : 업계와 전자공업진흥회의 의견을 종합하여 말씀드리겠다. 먼저 정부의 한 부서로서 문화발전을 위한 문화부의 시책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최대한 협조자세를 견지하겠다.

첫째로, 외국의 경우는 우리 나라와 산업구조가 전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전반적인 전자기기산업을 살펴보면 세계 전자기기시장의 60% 이상을 일본이 차지하고 있고 우리는 기껏해야 5~15%정도를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우리 나라의 경우 전체 생산량의 60%를 해외에 수출하고 있는데 그 점에서는 일본과 대만이 우리와 비슷하다. 이렇게 보았을 때 우리와 비슷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의 사례가 중요하다.

유럽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전자제품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거나, 일본이 현지 에 공장을 설립해 시장을 점유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도 유럽 각국에 10여개 업체가 진출하고 있다. 작년에 우리 나라의 전자제품 수출이 상당히 감소된 원인 도 EC지역에 대한 수출이 40%나 줄었기 때문이다. 유럽에서는 자국 산업이 살아남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11개 품목의 제품에 대해 덤핑 판정을 내리거나 물량이나 가격에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로 인하여 우리 나라와 일본은 많은 피해를 입었다. 만약 우리 나라가 유럽처럼 복사기나 각종 제품의 수입이 월등히 많다면 당연히 수입업자에 대해 부과금을 부과해서 국가의 이익을 도 모해야 할 것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최근 3년간 임금이 100%이상 증가하였으며, 그로 인해 순 이익은 감소하였다. 예를 들어 VTR 한대를 수출하면 순이익은 6~8천원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보상금 5%라는 것은 매우 큰 금액인 것이다. 또한 VTR의 경우 작년 일년동안 621억원의 로열티(후발특허료)를 지불하였다. 우리 나라는 수출형 산업구조이다. 최근에는 산업여건이 어려워 거의 이익을 남기지 않고 수출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내수에서라도 이익이 보장되어야 전체산업에서 생산자의 이익이 보장되는 것인데, 만약에 내수에서도 이익이 생기지 않는다면 결국 그 산업은 점점 더 쇠약해져서 설 곳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일본의 소니는 캠코더 한 품목으로 만으로 55억불을 수출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는 5만여개의 품목을 합쳐도 수출이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아직도 산업이 영세하다 그러므로 3만여명의 저작권자를 보호해서 문예진흥을 창달하자는 취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이지만, 이 제도의 시행이 전자

산업에 크게 영향을 끼쳐 불특정한 다수에게 부담을 주게 된다면 이 제는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 즉 방법상의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 비슷한 사례를 들면, 자동차나 총포를 팔 때 그것이 사고나 인체에 위험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판매단계에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는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가정용 VTR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나라 중 수출하는 나라가 과연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도 검토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의 VTR가정 보급률은 약40% 정도 되는데, 보급률이 70%가 넘는 미국, 일본 등도 이 제도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가정에서 테이프를 복제하려면 VTR이 두 대 이상 있어야 하는데 실제로 두 대 이상 소유한 가정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이다.

복사기도 마찬가지 경우이다. 사실 우리 나라에서는 1년에 6만여대의 복사기가 생산되는데 대개 학교, 면사무소, 공공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 성능면에서도 일본에 비하면 상당히 뒤떨어지는 수준이다. 그런데 외국에서도 징수하지 않는 부담금을 징수해서 산업을 취약하게 만든다면 그것이 저작권자에게나 국민소비자에게 득이 되느냐 하는 것이다.

문예진흥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사치품에 특별소비세를 부과해 문예진흥기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더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DAT, DCC, 미니디스크 등의 디지털기기들은 이와는 다른 경우이다. 이러한 기기들은 복사한 것의 음질이 원음에 가깝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서도 복사를 허용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기기들은 별로 보급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일본은 이것을 검토 중에 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기술적인 문제이다. 마이크로비전시스템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시그널을 원본에 한번 주입시키면 절대로 복사가 되지 않는 장치이다. 그래서 일본이나 미국도 영화 필름이나 비디오테이프필름, 카세트테이프 필름에 마이크로 비전시스템을 설치하여 이중으로 복제가 이루어질 수 없게 하는 시스템을 보편화하고 있다. 이러할 경우 이 법이 제정되어 사적 복

제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복제부담금을 징수한다면 소비자나 국민들의 여론이 어떠하겠느냐는 것이다.

그러므로 법을 제정할 때에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고 많은 사람이 지키기 쉬워야 한다. 사적 복제가 증가한다고 해서 사적 복제를 허용하면서 한편으로 보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가 하는 것과 사적 복제와 비사적 복제와의 관계를 어떻게 법적으로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이 제도는 산업이 잘 되고 있는 시기라면 성금의 형식이든 조세 형식이든 상관없이 협조하겠으나, 시기적으로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형편이고—단적인 예로 음식점에 가서 맥주 한잔을 하고 대리운전자를 고용해도 하루 2~3만원을 준다. 그러나 공장의 여성근로자는 하루 1만 3천원을 받고 있어 근로자를 구하기가 어려운 것이 공장의 현실이다—외국근로자들까지 수입해서 인력을 충당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과연 우리 수출산업체인 제조업체에 이런 부담을 주는 제도가 합목적적인가, 또한 시기적으로 적절한가, 이것을 입법화 했을 때 사람들 간에 장기적인 공감대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이다.

R&D자금조성에 애로를 겪고 있는 상공부 입장에서는 문예진흥기금 조성으로 인해 똑같이 애로를 겪고 있는 문화부의 입장을 공감하며,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준조세에 포함시켜서 함께 징수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조화를 이룰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환경문제도 비슷한 경우이다.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부담금이 부과되지만 환경문제는 이해관계나 피해영역이 모든 국민에 공통적이어서 폭넓은 공감대와 타당성이 확보되어 있다. 그러나 복제보상금은 3만명의 저작권자의 이익을 위해서 도입하는 것이므로 환경문제와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가능하면 제도 도입에 대해 좀더 심사숙고해서 우리 나라와 상황이

비슷한 국가들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발전 지향적이고 우리 나라의 현실에 맞는 제도를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윤희창 : 최근 신문에서 부과금이나 복제보상금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 먼저 용어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해야 할 것이다. 독일의 저작권자들은 이 제도가 부과금(levy)이 아니라 보상금(compensation)이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앞으로 이 제도에 관한 문제를 접근함에 있어 부과금제도의 개념이 아니라 당연히 지불해야 할 보상금제도라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부과금제도가 아니라 보상금제도라는 용어를 사용해 주기 바란다.

상공부의 박주태 과장께서 보상금제도의 도입에 반대하는 이유로 우리 나라의 산업구조가 유럽과는 다르다는 것과, 현재 복제기기 업계의 여건이 어렵다는 것, 그리고 우리 나라 복제기술 수준이 뒤떨어진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여기에 대해 본인도 동감한다. 이 제도가 부과금제도라면 당연히 이렇게 어려운 여건에서 실행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부과금제도라기 보다는 저작자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보상금제도이기 때문에—업계의 어려운 현황을 참작해야 하겠지만—시행을 해야 한다.

또한 보상금제도를 시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작자들만을 보호하기 위해 사적 복제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복제기기 산업계가 큰 타격을 입게 된다. 따라서 적은 금액의 복제보상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예를 들면 일본의 저작권법은 고속자동복제기를 이용한 복제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 법률에 이러한 제도를 도입한다면 복사기 제조업체가 더 많은 손실을 입게 될 것이다. 이런 종류의 자동복사기를 이용한 복사를 제한하는 대신에 이 복사기에 대해서 보상금을 부과하는 것이 오히려 산업발전이나 문화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미국과 일본의 예를 들어 반대하였는데 만약 미국이나 일본이 올해 안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고 이들 국가를 따라 우리 나라도 이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게 된다면 업계에서 호응해 줄 것인지 의문이다.

이 제도 도입과 관련해서 최근 언론에서는 상반되는 입장을 가진 기사들이 보도되고 있다. 하나는 경제부에서 복제기업계를 대변해서 쓴 것이고, 다른 하나는 문화부 기자들이 문화부 내지는 저작자 입장에서 쓴 기사들이다. 이 기사들을 보면, 현재 국내 복제기기 산업들이 대부분 재벌기업이지만 예술 부문에 투자나 지원이 극히 저조한 상태이며, 이러한 현실에서는 보상금 제도의 시행보다는 지원제도 내지 조세제도가 더 합리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말 이것이 합리적이며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복제 보상금을 부과할 경우에 단기적으로는 기업에 손해가 될 지 모르지만, 보상금 자체가 문화예술계의 창작 부문에 투자되어 문화예술의 창작이 풍부해진다면 그와 더불어 복제기기의 수요도 증대될 것이므로 장기적으로는 복제기기 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복제보상금의 부과 방안에 관해서는, 복사기, 녹음테이프, 녹화기, 오디오 및 비디오 공테이프를 부과대상에 모두 포함시키자는 것과, 정액제 보다는 정률제로 하자는 것에 대해 동감이다. 그리고 부과율을 5%이내로 하는 것 보다는 현재의 복제기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도입단계에서는 1%이내로 결정하여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전자공업진흥회에서는 앞으로 다시 한번 토론회를 갖자고 제안했는데, 개정안이 만들어질 때 개정안을 가지고 공청회를 개최해야 할 것이므로 그 때 저작권계와 복사 산업계가 다시 한번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저작권계와 복제산업계가 서로 상대방의 사정을 너무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므로 이러한 토론회 자체가 상호간의 이해를 높여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 올해 당장 저작권법을 시행한다고 해도 이러한 상호 이해를 통해서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신현낙 : 복제보상금제도의 의의나 필요성 또는 법적 취지나 근거에 대해서는 황적인 교수와 이중한 위원이 상세하게 주제발표를 해주셔서 잘 이해하였으리라 생각되며 본인도 역시 이에 동감한다. 또한 윤희창 국장이 말씀하신 대로 용어에 있어서 복제 보상금 제도가 타당하다는 말에 전적으로 동감이다.

황적인 교수는 복사기로 인한 보상금이 190억, 녹음, 녹화기로 인한 보상금이 300억 정도라고 추정하였다. 그러나 본인은 그러한 금액보다도 녹음·녹화 회수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다. 사실상 녹음·녹화기라고 하는 것은 녹음하고 녹화하기 위한 기기이다. 녹음·녹화하지 않는 기기는 녹음·녹화기기가 아니다. 박재린 이사는 집에서 녹음을 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4개의 TV채널 중에 비슷한 내용을 방송할 때에는 자연히 한쪽 채널의 방송을 보면서 다른 채널의 방송을 녹화하게 된다. 그런 면에서 녹음·녹화기는 누구나 사용한다고 보아야 한다.

문예진흥원에서 발표한 사적 복제에 대한 부과금제도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국내에 보급된 녹음기는 약 1,600만대, 녹화기는 500만대, 녹음용 테이프는 9,500만개, 녹화용 테이프는 3,500만개라고 한다. 일본의 저작권심의회에서 나온 보고서에 의하면—물론 일본과 우리 나라가 모두 같다고는 할 수 없지만 문화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비슷하다고 생각된다.—개인적으로 녹음을 하는 회수가 월 1회 정도가 30.8%, 일주일에 1회 정도가 19.8%, 일주일에 1~2회가 15%, 또 녹화에 있어서는 월 1회 정도가 19.9%, 주1회가 23.4%, 주 2~3회가 23.3%를 차지하고 있다. 심지어는 거의 매일 녹화를 한다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이를 근거로 계산해보면 1년 동안 녹음은 약 5억회 이상, 녹화는 약 2억회 이상을 실시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것은 그만큼 저작권자들이 그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는 말이 된다.

반대론자들이 말씀하신 경쟁력 약화나 물가상승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득력이 있으며 본인도 동감이다. 단지 상공부의 박주태 과장이나 박재린 이사는 이

변 복제 보상금제도를 시행하는 목적이 마치 문예진흥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것에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겠다.

사실상 복제보상금은 그 권리가 권리자에게 있는 것이다. 공공기금으로의 사용은 권리자가 받을 보상금 중에서 우리 나라 문예진흥을 위해서 권리자들이 오히려 일부를 내놓는 것이다. 그 이유는 문예진흥기금이 우리 나라 문예진흥을 위해 투자되는 것이므로 문화예술이 발전되면 그 혜택이 권리자들에게 가장 크게 돌아가기 때문인 것이다.

결론적으로 저작권을 사용했을 때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저작권 개념에 대한 인식이 매우 필요하다는 것과,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우리 나라의 문화발전을 이룩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다. 그러한 측면에서 앞으로 제작자측에서도 이 점에 대해 인식하고 이 제도 도입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었으면 한다.

임정수 : 보상금제도의 필요성은 많은 분들이 좋은 말씀을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본인은 음반업계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한다.

최근 일본의 소니사에서 미국의 콜롬비아 레코드사를 현금 20억불에 매수해서 큰 화재를 불러일으킨 적이 있다. 일본이 미국의 레코드사를 매수한 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일본에서 DAT를 미국에 수출하려고 했을 때 미국에서는 DAT가 원음과 똑같은 재생을 하기 때문에 그 기기가 도입되면 레코드가 팔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콜롬비아사(CBS)가 주동이 되어 DAT기기에 수입금지 입법을 제정하였다. 그래서 소니는 미국시장에 공략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즉 하드웨어(녹음기) 판매로 인해 미국의 소프트웨어(레코드)업계에 당하는 손실을 미국이 아닌 소니사에서 감수하겠다고 미국을 설득하여 그 규제를 풀려고 한 것이다. 이것은 하드웨어 산업과 소프트웨어 산업은 그 크기로 보았을 때 비교도 되지 않으며, 하드웨어를 위해서는 소프트웨어를 희생시킬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반면에 독일에서는 이미 20년 전에 보상금제도를 실시했는데, 이것은 소프트웨어가 발전되어야 하드웨어도 발전된다는 논리를 전제한 것이며 이런 면에서 독일은 향후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 신문들을 보면서 이 제도를 입법화하는 일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

일각에서는 보상금을 준조세나 목적세로 생각하고 있는데 앞에서도 여러분들이 말씀한 바와 같이 분명히 이 제도는 문예진흥기금을 조성하려는 것이 아니고 권리자에 대한 당연한 보상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또한 88올림픽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단순한 운동경기가 아니라 문화올림픽이라는 말을 남겼듯이 문화발전을 위한 문예진흥기금을 조성하는 데에는 하드웨어든 소프트웨어든 상관없이 인색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이탈리아, 로마 등을 보자. 그 문화적 자산이 얼마나 방대하며, 또 그로 인해 세계적으로 얼마나 명성을 떨치고 있는가. 후손들이 조상을 잘 두었기 때문에 그 문화재를 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하고 국위를 선양하고 있는 것이다.

박재린 이사는 우리 나라의 경우, 현재 해적판에 대한 처리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사적 복제에 대한 보상금제도를 먼저 도입할 수 있는가 라고 하였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황적인 교수께서 상세히 말씀해 주셨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그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김성숙 : 결국 보상금을 부담하는 것은 소비자인데 소비자 측에서는 본인 혼자 토론자로 참석했기 때문에 무척 부담스럽다.

보상금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이것을 부인할 생각은 전혀 없다. 이 제도는 당연히 언젠가는 도입되어야 하며 소비자도 그 점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다고 본다. 문제는 방법상의 문제이다. 누구인지 알지도 못하는 불특정한 소비자들이 복제기기를 이용하여 복제를 했다고 해서 모든 소비자가 그것을 구입할 때마다 원천징수의 형식으로 보상금을 지불해야

만 하는 것에 대해 소비자의 이해를 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소비자가 보상금을 지불해야 하는 것만이 능사일 수는 없다. 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했을 때, 우선은 불공평하게 전체 소비자가 부담을 해야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부당하다는 것이다.

또한 보상금액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어느 분은 정률제 5%라고 했고 어느 분은 1%라고도 했으며, 문화부의 윤희창 국장은 복제기기를 제조하는 회사들은 재벌들이기 때문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보상금을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소비자이며, 소비자는 녹음테이프를 한개 살 때 59원, 녹화테이프를 한개 살 때마다 124원, 게다가 이것을 한번만 내는 것이 아니고 매번 구입할 때마다 부담해야 하는데 이것은 복제기기의 생산업체와는 무관하게 소비자에게는 큰 부담이 되며, 따라서 소비자에게 대단한 저항감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다.

또한 조성된 보상금을 가지고 그것이 몇 퍼센트이든지 상관없이 문화기금으로 활용한다는 점에 대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분명히 소비자는 저작권자에 대해서 불법적인 복제, 즉 사적 복제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불을 했는데 그 일부를 전혀 다른 성격인 문화기금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결국 소비자에게 문화기금을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문제가 있다.

어떤 분께서는, 그것이 관리자가 문예진흥기금으로 자진해서 내놓는 성격의 것이며 문화기금을 전제로 보상금을 징수하는 것은 전혀 아니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렇다면 지금 현 시점에서는 문화기금이란 말이 거론되어서는 안 된다. 이 제도가 복제보상금이라는 이름 하에 시행되고 있고 그것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분명히 보상금 형식으로 마무리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나중에 저작권자들로 구성된 어떤 공통의 기구를 통해서 문화기금으로 재활용한다는 것은 추후의 문제이며 별개의 문제이다.

저작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비자가 복제보상금을 부담하는 것이고, 사실상 메이커는 중간매개 역할을 할뿐이므로, 결국 저작권자와 소비자가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보상금을 지불하는 대신 그 반대급부로 소비자는 문화지식, 정보, 문화용품 등에 대해서 소비자의 주장을 내세우거나 저작권자의 책임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우리의 현실상 아직 요원한 이야기이며 소비자단체에서도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다. 즉 보상금을 매개로 한 저작자와 소비자간의 책임과 권리에 따르는 문제에서 소비자는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테이프를 하나 샀을 때 그 테이프의 품질이나 내용—외설, 폭력 등—이 소비자의 양식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크래임을 제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보상금제도를 도입할 때는 이러한 것에 대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전국민이 관계되어 있어 공감대가 형성된 환경문제와는 달리 보상금제도는 3만여명에 해당하는 저작권자의 이익을 보상해주기 위해서라는 상공부 박주태 과장의 말씀대로, 물론 그들의 권리도 보호되어야 하지만 이것에 대해 모든 국민, 모든 소비자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후에 이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관석 : 이중한 위원이 발표하신 자료의 외국 사례를 보면, 복사기를 보상금 부과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는 나라는 소수이지만 녹음·녹화기는 거의 모든 나라가 그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 이유는 복제기능 때문이다. 녹화기를 소유하고서도 복사기능을 이용하지 않는 것은 개인적인 문제이며, 그것은 녹화기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방송작가협회에서 저작권 위탁관리업을 하면서 절실히 느끼는 것은 관리업 무의 재정난이다. 예를 들면 작년에 저작권 문제로 방송사와 논란이 있어서 광고 한가지를 만들면서도 매우 어려운 경우를 겪었다. 현재 우리 나라는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낮기 때문에 제도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저작권 위탁관리단체

가 해야 할 일이 대단히 많고 또 자금도 대단히 필요한 실정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보상금제도는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를 허용하고 있는 현행 저작권법 27조에는 사적 이용에 대한 당위성만 규정되어 있을 뿐 저작자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다. 복제기는 예상 못할 정도로 급격히 발달하고 있고, 복제 이용수단도 갈수록 간편해지고 있다. 따라서 녹음·녹화는 무제한으로 가능하게 되었고 개인소장도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 종합유선방송이 본격화되어 직접위성방송 시대가 다가오고, 고품위 TV가 개발되면 녹화복제의 이용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판매용 비디오테이프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켜 저작자에게 불이익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 소비자는 문화향수의 이익을 얻게 되는데 저작자에게는 그 이익을 향유할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불만이 생길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저작권법 제27조는 반드시 보완되어서 문명발달의 이익이 저작자에게도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들이 녹음·녹화기를 이용해서 녹음·녹화하는 내용은 일종의 저작물이라 할 수 있으므로 여기에 대해서 약간의 보상금을 지불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또 도덕적인 측면에서도 옳다고 생각한다. 다만 우리가 이 제도를 도입하여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즉 외국의 예에 의거해서만 방안을 마련할 것이 아니라 우리 나라 실정과 관계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검토된 후에 입법화 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이 토론회도 소비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토론회가 자주 개최되어야 할 것이다.

양영준 : 법률적인 측면에서 의견을 말하겠습니다.

저작권법의 내용을 보면 저작권법은 통상적으로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저작물 이용자의 이용 기회를 도모하고자

하는 두 가지 상충되는 목적을 잘 조화시키려 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현재 우리 나라 저작권법 제1조에 법의 목적을 명시하면서,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는 것을 그 법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데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저작권 보호나 저작권법의 발전추세를 살펴보면 과거의 저작물 이용 형태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을 때에도 저작권자에 대한 제도적 보호장치가 비교적 미흡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저작물의 이용 형태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었고 다른 사람이 저작물을 복사하기가 어려웠으므로 저작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여러 가지 법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별로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 저작물의 이용 형태가 새로와짐에 따라 저작권의 내용이 확대되어가고 있다. 예컨대 비디오테이프를 대여해 주기 때문에 저작권자들에게 대여권을 인정하자는 논의가 있는데 이것은 저작권 확장의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과거에 비해 복제기기가 발전함에 따라서 저작물의 복제가 점점 더 용이해졌고,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의 보호 내용을 강화하는 장치들이 계속 저작권법 내용에 추가되는 추세에 있는 것이다. 저작권법 침해에 대한 벌칙을 강화한다든지 손해배상을 했을 때 침해 부수를 일정부수로 추정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보호장치를 강화해 온 것 등이 그 예라고 하겠다.

이런 관점에서 현재 저작권법 하에서 저작물 이용자가 저작물을 복제하는 형태를 보면 황적인 교수께서 적절하게 분류한대로 대충 3가지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대부분의 복제의 경우에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서 모든 저작물이 복제의 허락을 요구하는 형태이다. 이것은 원칙적으로 저작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저작물의 복제에 관한 권리를 저작권자가 독점적으로 행사하기 때문에 모든 저작물의 복사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원칙

이다.

둘째, 이용자의 이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대신 저작권자에게 일정한 보상을 해야 하는 유형이 있다. 현행 저작권법에 의하면 비검인정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서 복사를 하는 것이 이 유형에 해당한다.

셋째, 저작권자의 허락도 필요가 없고 보상도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논의하고 있는 사적 복제가 바로 그 유형이다. 사적 복제를 이와 같은 유형으로 규정한 취지는 첫째, 과거에는 사적복제의 양이 미미해서 저작권자에 대한 실질적인 침해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고, 둘째, 개인적 복제의 경우에 대개 손으로 써서 복제를 하거나 사진을 찍는 등 복제의 수단이 불량했기 때문에 복제물의 질이 오늘에 비해 현저히 뒤떨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질적인 면이나 양적인 면에 있어서 사적 복제는 저작권자에 대해 별로 침해가 되지 않았으며 또 경제적으로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었다는 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최근에는 사적 복제의 양 자체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또 사적 복제물의 질 또한 향상되고 있다. 따라서 사적 복제에 의한 저작권자의 경제적인 손실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양적으로도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적 복제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이다.

우선 사적 복제에 대한 규제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나타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실행방법은 모든 복제물 이용자를 찾아다니면서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일 것이다. 그렇지만 모든 가정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차선택으로 복제기기 또는 복제의 재료를 제공한 하드웨어 생산업자에게 부과금을 징수하는 제도가 가능하다. 이것이 현재 논의되고 있는 부과금 또는 복제보상금제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복제를 행하는 사람이 아닌 생산자가 과연 부과금을 부담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와 복제의 개연성만 있을 뿐 실제로 복제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 이것을 부과해야 하는가 하는, 제도 자체의 합리성에 관한 논의가 있었는데 원칙적인 면에서는 여기에 대해 동감한다. 다만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저작권자를 보호하고 이용자의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면 보상금제도는 최선의 제도라고 할 수는 없지만 차선의 제도로 개발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또 한가지는 국제적인 추세로 볼 때 저작권의 보호는 계속 강화되는 추세에 있고, 독일을 비롯한 유럽 각국에서 이 제도를 실행하고 있으며, 또 미국이나 일본에서 이 제도가 곧 실행될 것이라는 점들을 고려할 때, 우리 나라에서도 이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는 것은 필연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다만 도입의 구체적인 시기라든지 도입범위에 대해서는 좀더 진지한 연구와 토론이 필요하다고 본다.

제도 자체를 도입해야 한다는 명제를 인정한다면 오늘 이와 같은 토론회가 관련업체와 소비자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토론의 장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가지 덧붙인다면 김석완 지도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산자측에서는 저작권자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저작권자측에서는 생산자의 입장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호간 토론과 대화의 장을 마련해서 이 제도에 대한 도입 범위를 좀더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즉 복제기기와 복제 재료 양쪽에 모두 부과금을 부과할 것인지, 어느 한쪽에만 부과할 것인지 하는 문제가 있다. 구체적인 부과대상에 있어서는 전자공업진흥회에서 지적한대로 비디오 제작사에 공테이프가 공급될 때 그 테이프는 사적 복제를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이것은 보상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 등의 구체적인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본다.

이중한 : 보상금제도 도입을 위해서 관련 당사간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자리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동감한다. 그 자리는 이런 토론회가 아니라 워크숍 형태가 바람직하며, 이런 토론회를 통해서 상호간의 이해의 폭이 넓어지리라 생각된다.

이 토론회에서 보상금제도 도입에 대해 서로 반대 의견이 강하게 대립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데 실제로 이것은 상호간의 이해가 부족한 데서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면 문예진흥에 대해서 기업에서는 자금을 지원하는 차원으로 생각하는데 오늘날 기업이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기술력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예술적 창조력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기업의 성장과 문화는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또 한가지는 독일에서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이 무역장벽을 높여 국내산업을 보호하자는 취지라고 말씀 하셨는데, 현재 자국산업 보호는 무역 장벽을 통해서가 아니라 지식소유권의 보호와 강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황적인 : 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의견에 대한 개인적인 반응을 간단히 말하겠다.

첫째,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선 불법복제를 단속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지 보상금제도를 도입해야 하는가 라는 의견에 대한 반론이다. 보상금은 저작자가 당연히 받아야 할 보수이므로 저작자가 불법적으로 빼앗긴 불법복제에 대한 문제는 이와는 다른 차원이며, 가난한 저작자의 한사람으로서 이런 논리가 제기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

둘째, 미국과 일본의 경우 제도 도입이 지연되고 있는 것에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것이므로 그 이유를 조사해 보아야 한다는 것에 대한 반론이다. 원래 법제로는 국가별로 그 환경이 상당히 다르다. 일본과 미국은 저작권에 대해 포괄적인 계약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복사량이 많은 도서관 등에 대해 권리자 단체(미국 CCC, 일본 저작권관리 집중단체)가 개별계약을 채택하고 있다. 이것은

독일식의 기기부과금이나 운용자부과금과는 다르다. 개인적인 판단으로 보건
대, 우리 나라의 여건은 미국보다는 독일과 비슷하며, 입법 방식에 있어서는 독
일식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셋째, 복제기기를 소유하고서도 실제 복사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에
대한 반론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신현낙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동감이
다.

넷째, 순이익이 거의 없는 어려운 상황에서 보상금부과가 어려운 상황을 가
중 시킬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소박한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보상금을 부담하
는 것은 소비자이므로 업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다. 또한 법률적
인 측면에서도 여건이 아무리 어렵고, 권리자의 수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정
당한 보수(노임)는 당연히 지불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섯째, 보상금을 공통 목적의 문화기금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반론이다.
현재 공익자금을 조성하여 그 일부를 문화에 투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비판의 시각도 있지만 그로 인해 국가는 일반예산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수행
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보상금 중 일부를 문화기금으로 활
용 하는 것은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일본이 세계적인 경제 대국으로 발전한 근저에는 교육과 저작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인식과 투자가 있었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교육에 대한 투
자가 아주 미약할 뿐더러 문화에 대한 투자는 더욱 더 비중이 낮다. 본인은 이
두 가지에 대한 투자가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 본다. 그러므로 여건이 어렵더라
도 지금 당장 이에 대한 투자를 시작해야 한다.

최연호 : 오늘 이 토론회는 보상금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그 도입에 따르는 기술적인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라고 생각된다. 두 가지 질문을 하겠다.

우선 윤희창 국장께서는 부과금이 아니라 당연히 받아야 할 보상금이라는
용어가 타당하다고 했는데, 당연히 받아야 한다는 근거가 무엇인가, 그것이 입

법론적인지 해석론적인지 하는 점을 묻고 싶다.

그 다음으로 이중한 위원에게 질문하겠다. 보상금 부과의 근거로서 세법과 저작권법이 있다고 하였는데 그 차이점에 대해 설명해 주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도입에 반대하는 편에서는 보상금제도가 수출경쟁력이나 국내 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말씀하셨는데 보상금제도는 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즉 저작권법상 내국민대우의 원칙이 있으므로 아무런 관련이 없다.

김수열 : 문화부문의 예산이 0.23%라는 것을 본인은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들었다.

문화부문에 대한 투자를 높여야 한다는 점에서는 보상금제도 도입에 대해 개인적으로 찬성한다. 그러나 운영 측면에서 보상금제도의 부과, 징수, 배분 등의 관리를 국가 등의 공공기관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자리에서 발표된 대로 저작자단체 등을 통해서 관리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중간 수수료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실제로 저작자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아주 작아진다.

또한 저작자들도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좀 더 기울여 주었으면 한다. 우리 나라에서도 특허법이나 저작권법을 통해서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고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러한 법을 통한 소송이 행해지고 있는 경우는 저작권 침해의 양에 비해서 매우 적은 편이다

이용권 : 토론 과정에서 저작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결여된 부분이 있어 이를 설명 하고자 한다.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사권이므로 사권 침해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상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보상금을 환경부담금이나 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와 결부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소비자의 부담과 공감대 형성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고, 사권 침해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상을 하는 것이 법률상이나 사회정의상 형평에 맞는 것이다.

또한 지식소유권 분야 중 공업소유권은 로열티를 통해 보호되고 있으며, 이

로열티를 결국 소비자가 부담하고 기업에서 지불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저항이 없으면서 보다 근본적으로 보호해야 할 저작권에 대해서는 왜 반대를 하고 또 이것을 이유로 제도 도입을 반대하는지 의문스럽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부과금에 대한 저항감은 합리적인 것이 아니며, 단지 저작권에 대한 인식의 결여와 지금까지 부담하지 않던 것에 대한 신규부담으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물론 도입 시기와 세부방안은 문화정책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김문환 : 더 토론을 하실 분이 많겠지만 예정된 시간이 지났고 당장 이 자리에서 합의를 도출하는 것도 어려우므로 여기에서 토론회를 마치고자 한다.

사회자의 입장에서 오늘 토론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의 경제여건이 어렵긴 하지만 보상금제도가 도입될 필요는 있는데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한 것 같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안과 시기 등은 앞으로 더 논의가 되어야 하며, 여러분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토론회가 아닌 워크숍이나 협의체를 통해 관련 당사간의 이해와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 토론회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게 되어 미안하게 생각하며, 오랜 시간 동안 진지하게 토론에 참석해 경청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IV. 21세기 문화환경의 변화와 문화전략

21세기의 문화전략/151
21세기를 향한 통일문화정책/159
정보화사회의 문예정보관리/173
정보화시대의 저작권과 지적 문화산업의 육성/182
미래사회의 여가생활과 문화향수/190
토론 내용/195

21세기 문화전략 - 사람답게, 사회답게, 나라답게 -

김 용 윤*

1. 서 론

우리는 전 세대로부터 물려받은 많은 유산과 어제까지의 적폐(積弊)를 함께 지닌 채 내일을 맞이한다. 한국민족의 문화유산과 원형을 내일의 현실에 적응할 수 있도록 승화시키고 지난날의 타성은 투철한 철학정신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민족원형은 처음 민족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조상들이 겪은 평균적 체험 속에서 이루어졌다. 민족어가 대대로 이어져온 것처럼 민족원형도 선대로부터 다음대로 이어져 간다. 전통문화는 원형의 기반 위에서 형성되었고 동시에 각 시대마다 새로운 환경에 대한 어울림을 요청 받는다. 원형에는 우열이 없다. 다만 원형이 자각적으로 시대적 상황에 맞게 승화됨으로써 역사는 긍정적인 기능과 의미를 지닌다. 위대한 정신적 지도자는 역사적 전환기에 스스로의 전통 또는 원형을 비판하고 시대적 상황에 맞게 그것을 승화시킬 것을 시도하며 민족차원의 반성을 촉구하고 미래 전망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소크라테스의 철학정신, 프로테스탄트의 종교개혁이 그 보기라 할 수 있다.

한민족의 기본 사회는 벼농사와 더불어 형성되었고, 초기의 벼농사 마을의 본질적 구조는 그 후에도 거의 변함없이 최근까지 이어져 왔다. 한국 마을은 얇은 산기슭에 혈연중심으로 구성되었고 매우 독립성이 강했다. 농사는 인위적인 수리시설 보다는 주로 자연풍토 조건에 크게 의존하는 천수답이 중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민족의 원형은 정서적, 자연주의적인 동시에 안으로의 응집력과 밖에 대한 배타심이 강하다. 한국의 강의 모습이 홍수 아니면 가뭄의 백사장인 것처럼, 격심한 변혁기에는 ‘단심

* 한양대 교수

가'의 정신세계가 공존했었다.

미래는 원형과 시대적 상황의 긴장관계 속에서 전개된다. 원형사관은 결정론이 아니다. 원형은 변함이 없으나 그 시대의 사조에 어울릴 수 있도록 국민이 스스로의 의지로 승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시대상황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것은 타락의 원인이 된다. 이것이 바로 근대화와 더불어 나타난 우리 시대의 병인이기도 한 것이다.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민족은 모두 좌절을 체험했다. 인도의 세포이 반란, 중국의 의화단사건, 최근에 있었던 이란의 원리주의운동은 한결같이 인류사의 흐름을 외면한 채 좌절되었다.

우리는 스스로 원형의 실체를 파악하고 다가오는 세상의 실상을 똑바로 응시할 수 있는 용기를 지녀야 한다.

2. 정보화 시대

새로운 시대는 정보화라는 형용사를 갖는다.

정보란, '일의 진행에 있어서 그 선택의 폭을 넓히고 결정의 동기를 제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보의 범람으로 문화현상의 다양화와 가치관의 다극화가 이루어진다. 인간성에 대해서도 현대는 획일화된 인간정보다는 주관이 뚜렷하고 개성 있으며 문화적 감각이 풍부한 인간을 바라고 있다. 또한 정보화는 정보의 가치가 높아짐을 뜻한다.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가 중요해진다. 풍요로움은 지혜에서 생산된다는 현실이 행복의 기준을 바꾸어 놓았다. 즉, 나라의 발전은 '잘 살아보세'의 물질적 구호가 아닌, 국민적 차원의 교양과 학습에 의해 결정된다. 질 높은 문화가 국력이며, 물건보다는 정서와 정보(정보적 요소)를 더 찾게 된다. 이제 우리의 구호는 「보람있게(사람답게)」로 바뀌어져야 한다.

넓은 선택 폭을 갖게 되는 정보화는 경직화된 이데올로기보다는 원형에 기반을 둔 개성이 강한 문화를 희구하며 이질적 문화와 끊임없이 접촉을 갖게 되므로 원형의 표현에 보편성이 요청된다. 정보화, 국제화, 이데올로기의 종언, 문화민족주의 현상이

동일선상에서 어울리게 된다.

3. 원형 시대

‘이데올로기의 종언’은 정보하의 진행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온갖 정보가 교차하는 가운데 인위적인 이데올로기는 그 존재의의를 잃었다. 경직화된 이데올로기보다는 보편성을 지닌 원활한 사고가 요청되는 것이다. 타민족의 이질적인 민족원형이 정보매체를 타고 곧바로 우리에게 전달된다. 국제화는 곧 이질의 민족원형을 스스로의 것과 공존시키며, 그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민족간의 분쟁을 일으킨다. 빠른 정보전달은 저마다의 민족에게 선택의 폭을 넓히게 되고 그 종류 속에서 단위 민족은 스스로의 원형을 자각한다. 여기서 ‘정보화→국제화=이데올로기의 종언→원형의 자각→민족분쟁 또는 민족 공존’이라는 방정식이 성립한다. 저마다의 민족원형은 그 역사, 언어만큼이나 특수하며 독자적이기에 소박한 상태 그대로 원형을 내세울 때 거의 본능과도 같은 불합리하고 충동적인 행동을 유발케 한다. 현재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분쟁은 모두가 원형을 원색상태로 노출시키는데서 비롯된 것이다.

한국인의 원형에 내재하는 〈하여가(何如歌)〉와 〈단심가(丹心歌)〉의 세계는 새로운 차원으로 승화되어야 한다. 변혁이 아닌 개혁(옛 그릇에 새 술을 담는 술기)의 의지를 지녀야 한다. 지나친 이상의 추구와 될 대로 되라는 식의 극단적인 사고는 국제사회에서 통용될 수 없다. 최근에 우리 주변에서 있었던 몇 가지의 보기들 든다면 LA에서 있었던 흑인폭동이 있다. 타인에 대한 이해부족, 그리고 너무나도 솔직한 감정표시가 그 원인이 되기도 했다. 우리는 필요하다면 김일성과도 자리를 같이하며 손도 잡아야 한다. 민족 정의의 이상을 현실 속에서 살리면서 먼 미래를 척도로 삼아 타협할 줄 아는 큰 시야를 지닌 지혜가 요망된다. 〈하여가〉는 무자각적인 현실타협이 되지만, 〈단심가〉의 정신세계는 어떤 타협도 거부하고 싹쓸이적인 사고를 유발하기 쉽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국내적으로도 해방이후 정치사에서 여러 번 나타난 현상으로서 국제

화 사회에서는 매우 불리한 심성인 것이다.

4. 인간답게

산업사회의 미학은 대량생산과 규격화에 있었다. 우리 주변에 갑자기 대형공업단지, 대형백화점, 대형음식점, 대형아파트단지, 대형대학이 출현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정보화 사회는 대형규격적인 산업사회의 가치관을 탈피, 소형다종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진다. 학교는 전문화, 특수화, 다양화되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 공해·환경오염·자원고갈 현상은 대형보다는 소형을 개발하여 에너지의 소모를 되도록 억제하는 경향이 될 것이다. 이에 맞추어 관리적·계량적·조직적 인간보다는 개성적이고 교양이 높은 인간형이 요망된다. KS마크로 상징되는 인간보다도 창조적인 개성 지닌 인간이 우선시 될 것이다. 따라서 저마다 사람이 지닌 창조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기관이 필요하다.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인간적 요소를 완전히 무시한 사무엘슨(Samuelson)의 계량경제학이 주도해왔으나, 금년의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는 인간의 행동을 경제학 분야에서 반영한 개리 베커였다. 가장 추상적인 성격을 지닌 수학에서도 이 풍조는 나타난다. 한 세대 전까지만 해도 수학을 '구조와 작용'의 학문이라고 믿은 냉엄한 불바키(Burbaki)의 학풍이 주류였다. 그러나 이제 인간적 요소를 주목하는 퍼지(Fuzzy)이론이 크게 주목되어 가고 있다.

5. 사회답게

대도시보다는 개성 있는 문화도시, 교육도시가 나타나야 할 것이며, 정보전달수단과 대중교통수단의 발달이 그것을 가능케 할 수 있다. 획일적·중앙 집중적 경향이 억제되어야 한다. 사회는 수많은 사람의 모임이므로 그 질서가 관권과 법만으로는 유지될 수 없다. 실제 대형범죄는 대부분이 시민의 제보로 해결되었음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악을 고발할 선을 권장하는 것은 자율적이라야 한다. 하지만 자율성은 옛 마을

의 정서 그대로가 아니라 합리적 정신에 크게 의존하게 된다. 아테네 사회가 궤변자에 의해 타락한 사실을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특히 권력자의 궤변은 크게 경계되어야 한다. 원래 권력은 폭력화되기 쉽고 그것이 궤변으로 미화될 때는 불합리성이 일방통행 한다. ‘탁 치니까 억하고 죽었다’, ‘부정선거를 해도 낙선했으니 부정선거가 아니다’ 등의 권력자의 궤변이 시민윤리에 과연 어떠한 영향을 주겠는가. 시민정신은 자신이 목격한 악을 고발할 때 나타난다. 이는 고자질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선거부정의 고발은 분명히 시민정신의 발로이며 애국적 견지에서도 권장되어야 한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단심가〉와 〈하여가〉의 대립처럼 신바람을 내는 심성과 쉽게 집단적인 자학을 하는 심성은 종이의 앞뒷면과도 같이 일체화되어 있다. 이 신바람을 오래도록 유지하게 하는 길은 민족의 목표를 정하고 국민적 공감대가 지성을 뒷받침하게 하는 데 있다. 따라서 권력의 궤변은 없어져야만 한다.

6. 국제적 환경

자본주의란 국제관계이다. 시장원리를 채택하면 필연적으로 시장확대가 가속화되어 국제화가 될 수밖에 없다. 고도의 국제적 공존사회가 지구규모로 인식되어 가고 있다. 한반도의 분단도 이 흐름에 따라 국제적 관심사로 부상되었다.

이제 기업이 생각하는 소비자는 지구시민이며, 상품은 생산국의 국명보다는 상표로 선택되고 소비자와 기업은 무국적화 되어 있다. ‘상표는 귀중한 정보다’라는 사실이 빠르게 현실화되고 있고, 자본·상품·인재·정보·기업이 국경을 넘나들게 되었다. 그러기에 문화적 수준이 그대로 국력인 셈이다.

인쇄혁명이 공업사회를 만들고 그것이 국민국가를 형성하게 했다. 새로운 정보화 사회는 국제화 사회의 물결 속에 소수의 기능적 집단의 구성을 가져온다. 결과적으로 각 나라는 부족을 단위로 한 것 같은 여러 집단으로 구성된 구조가 될 것이다. 이러한 국제환경과 한국인의 원형이 어울릴지 큰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7. 세계사의 흐름과 국민의식

농업시대는 한국의 원형이 적절하게 기능 했다. 투철한 마을의식은 자율성이 강한 사회를 구성했으며 세계에서 그 유례가 없는 의병운동을 일으킨 바도 있다. 심지어 당시 일본의 지식인들까지도 학문으로 인재를 뽑고 무력을 멀리하는 한국을 부러워했을 정도였다. 하지만 근대화는 산업사회를 가져오면서 국민국가를 요청하게 되었고, 한국은 마을적 의식을 전혀 바꾸지 않고 근대화를 맞이함으로써 식민지화되고 만다. 문벌과 향당 중심의 사고는 국민국가의 윤리와 상반된다. 해방이후에도 그러한 의식에 대해서 반성한 적이 없었다. 조선시대, 식민지시대의 연장선상에서 그대로 근대국민국가의 건설을 시도하였으며, 심지어 오늘날까지 그 의식은 불식되지 않았다. 대통령은 왕, 고급관리는 벼슬아치, 고등고시는 과거, 권력자는 양반이라는 식의 단일한 도식이 국민의 무의식 속에 잠재하게 되었다. 대학도 옛 서원(書院)으로 여겨 향벌, 학벌이 따져진다.

우리 나라의 역대 대통령들은 망명, 암살, 은둔이라는 식으로 쓰러린 좌절을 맛보았다. 국민국가인 '대한민국'호의 선장이 마치 시골 나룻배의 사공처럼 '팔을 안으로 굽히다가' 당한 좌절이다. 각 대학의 게시판에는 고등학교 동창회를 알리는 소식으로 가득하다. 조선시대(농업시대)의 미학은 출세를 하면 고향친척과 그 영광을 나누는 일이었다. 그래서 이도령도 장원급제하여 맨 먼저 한 일이 고향에 내려가 자기 아내(춘향이)를 구하는 일이었다. 국제화는 산업화이며 국민국가를 요청하는데, 우리의 의식은 여전히 조선시대와 다름이 없다.

국민국가의 건설에는 지도자의 숭선수범과 희생정신, 즉 책무의식(Noblesse Oblige)이 필수적이다. 팔을 안으로 굽히는 지도자를 물리치는 일을 언제나 의병적 의식으로 일어난 학생데모가 선포한 것도 시대착오라고 할 수 있다. 정보화시대는 국제화를 촉진하고 새로운 유형의 국가형태와 국민의식을 기대하는데, 우리의 의식이 아직도 조선시대에 머물러 있으므로 '한국의 병'을 낳게 된 것이다.

마을의 정서가 그대로 거대한 도시사회에 어울릴 수는 없다. 그간 한국교육은 거의

일제시대의 기본 틀에서 벗어난 바가 없다. 해방이 되자 일제시대의 교육을 그대로 이어 받았고 거기에 미국식 교육제도가 다소 가미되었다. 교육의 목적은 오직 명문대학의 입시에 있었으며 대학은 각종 자격시험(고등고시, 의사, 회계사)에 주력을 했다. 인간성의 함양과 다양한 적응력을 기르는 교육에는 거의 관심이 없다. 적극적으로 현대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국민의식의 고양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이다.

8. 나라답게 만들자

중앙집권적 경향은 전통사회의 특징이다. ‘말은 제주도로, 사람은 서울로’라는 말이 생겼을 정도로 우리의 생활범위는 서울과 마을(고향) 밖에 없다. 군사정치는 더욱 더 중앙집권을 강조했고, 교육으로부터 심지어 윤리문제까지 거의 모든 것이 권력·정치적으로 해결된다고 믿었다. 그리하여 사회 각 조직이 자율성을 상실하게 되었다. ‘한국병’의 증세는 사회 곳곳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세계 제일의 자동차 사고율, 범죄 증가율, 성폭행과 낙태율, 알콜 소비율, 특히 4, 5십대 남성의 사망율은 일본의 2배나 된다는 통계가 있다. 마을의 정서는 사라졌고 자율신경은 마비되었는데 정치권력은 국민적 윤리를 함양시키기는커녕, 온갖 비리로 악영향만을 뿌리고 있다. 어린이 날, 아버지 날, 스승의 날 등은 상업화되어 소비만을 조장할 뿐, 진정으로 선대에 대한 존경이나 다음 세대들을 위한 준비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한국의 미래는 이러한 지난날의 악폐를 청산하고 정보화사회에 어울리는 인간형을 구축하는데 있다. 우선 전세대의 악폐를 불식하고 공업사회의 적폐가 청산되어야 한다. 이는 결코 정치에만 기대할 수는 없고, 종교혁명과도 같은 정열이 뒷받침되는 국민 차원의 ‘의식혁명’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이것이 국제사회에서 대접받는 나라가 될 수 있는 길인 것이다.

9. 한국인의 가능성

마을적인 한국인의 원형은 현재 상황에 어울릴 가능성을 얼마든지 지니고 있다. 한민족은 세계에서 가장 균질적이라고 한다. 인구가 7천만이나 되는 나라 가운데 한국처럼 하나의 언어, 하나의 인종, 하나의 원형을 지닌 민족은 없다. 성씨(姓氏)도 260개 정도 밖에 없다. 또한 교육열이 세계 제일이다. 곧잘 신바람도 낼 수 있다.

한국인은 1960년대 이후 계속 경제성장을 해 온 체험도 가지고 있다. 이것은 한국인의 강한 생애적(生愛的) 기질과 균질성, 높은 교육열을 시대 흐름에 제대로 적용할 때 나타난 것이다. 정보화시대에는 적응력이 빠른 민족이 성공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한민족은 앞으로 효율적으로 적합한 민족이라 할 수 있다. 그때그때 주어진 상황에 잘 적응하는 기질, 평등적·자율적·마을적 의식·강한 순발력 등은 미래에 많은 가능성을 안고 있다.

새시대의 변혁의 문턱에 서 있는 세대는 후세의 눈으로 보면 분명 엄청나게 큰 문제의 핵심에 접근해 있는데도 그것을 전혀 의식하지 못할 때가 있다. 현재 우리 사회에 수많은 갈등과 모순이 있다고는 해도 한편으로 우리는 유사 이래 최대의 호기를 맞이하고 있다. 세계사의 흐름은 한국의 분단을 해소하고 한국의 평화가 세계사적인 문제해결의 관건임을 인식하고 있음은 특기할만하다.

10. 나라의 사랑

나라사랑의 방법도 시대마다 다르다. 이제 오늘날의 다양한 사회에서 '의병'양식으로 나라사랑을 할 수는 없다. 오히려 의병정신으로 지킨 나라이기에 그 후손은 자신이 선 자리에서 현실적으로 일해야 할 것이다. 곧 저마다의 직업에 대한 사명감이나 애국적인 행위는 추상적인 큰 외침보다는, 정치·학문·경제·기업·예술 등의 각 분야에서 열심히 헌신적으로 일하는 것이다. 시대적 상황 아래서 과거의 적폐를 청산하는 강한 국민적 의지와 지도자의 헌신적 노력(Noblesse Oblige), 그리고 지식인의 투철한 철학정신만이 한국병을 하루빨리 치유하고 국제사회에서 어울려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 줄 것이다.

21세기를 향한 통일문화정책

- 남북한 문화통합과 민족공동체 문화의 확립 -

권영민*

1. 문제의 제기

1980년대 후반부터 활발하게 이루어진 남북한의 대화는 〈남북 기본합의서〉의 채택과 부문별 교류협력에 대한 부속합의서를 이끌어냄으로써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반세기에 가까운 남북한 대립과 갈등의 시대를 청산하고, 정치·군사·경제·문화 등의 모든 부문에서 교류와 협력의 가능성을 열어 놓게 된 것이다. 문화예술의 영역에서도 남북 교류라는 가장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과제를 놓고 실질적인 남북한 문화 예술교류의 실현을 위해 여러 방면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문화예술의 교류를 위한 문화예술인의 상호방문, 문화예술 작품의 공동기획 제작, 문화예술에 대한 공동 조사 연구, 남북한 통합 국어사전 편찬 등의 과제가 구체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을 본다. 이 모든 제안들은 아직 그 실천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도 많지만, 궁극적으로 민족문화의 통합을 위한 노력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의 문화는 기반과 제도, 방법과 성격, 지표와 이념 등에서 엄청난 격차를 보이고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 문화 건설을 목표로 하여 집단성의 이념에 근거한 ‘인민의 문화’를 강조해 왔다. 남한의 문화는 이와는 달리 자유주의적인 원칙에 따라 표현론적 요건과 가치론적 요건을 개인의 취향에 의해 조절하는 개인성의 문화가 발전해 온 셈이다. 이 같은 심각한 이질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문화예술의 교류는 남북 대화가 시작된 지난 1970년대 초부터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추진되어 왔다. 통일원의 자료에 의하면, 최근의 고위급회담이 진전을 보게되기 전인 지난 1989년 말까지 북한

* 서울대 교수

에서 제의해 온 문화예술 분야의 접촉 요구는 모두 117회이며, 265건으로 나와 있다. 이러한 통계는 남한이 북한에 대하여 제의한 접촉요구보다 무려 열 배가 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단순히 통계적인 차이만을 생각한다면 북한측이 훨씬 더 남북문화교류에 열의를 갖고 있는 것처럼 인식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북한의 제의를 자세히 검토해 보면, 그것이 단순한 문화예술분야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할 수 있다. 우선 대부분의 제의가 책임 있는 당국자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 문제가 된다. 북한의 문화예술은 엄격한 당의 통제를 받고 있으며, 당의 정책을 따라 그 실천 자체가 집단적으로 조직화되고 있다. 그런데 대남 제의의 대부분이 김일성에 의해 제기된 12건을 제외하고는 하급조직단체 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 일체의 개별적인 의사 표명이 불가능한 북한 사회의 특성을 생각할 때, 이러한 형태가 믿음직스럽지 않은 것은 물론이다. 특히 북한의 교류제이는 남한 문화예술의 특정분야 또는 특정단체를 선택적으로 지정하여 상대를 정해놓고 있어서, 오히려 그 제의 자체로 남한의 문화예술계가 겪었던 체제 : 반체제 문화의 내부적인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듯한 느낌마저 갖게 되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이 제의들은 거의 남한 사회의 혼란기에 이루어짐으로써, 실천불가능을 전제한 방법임을 쉽게 알 수 있다.

1980년대 후반 이후 북방정책이 추진되면서, 정부에서는 남북한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1990년 8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통일원에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두어 남북교류문제를 조정·심의할 수 있는 지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면서 〈문화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남북한 문화교류의 원칙〉을 다섯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발표한 바 있다. 첫째, 분단 이전의 민족전통문화의 우선 교류, 둘째, 승부 및 경쟁적 분야의 배제, 셋째, 전통문화의 원형을 변형, 훼손한 표현방법 지양, 넷째, 쉽고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 다섯째, 공동실행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경주 등의 원칙이 그것이다.

남북한 문화예술 교류를 위해 마련된 이 같은 제도적인 장치와 교류 방안은 기본적인

으로 민족문화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문화 분야의 과제를 해결한다는 목표에 따라 구상된 것이다. 남북 문화예술 교류문제를 정부의 단일 창구를 통해 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든지, 비정치적·이념적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상호주의원칙의 개방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교섭과 준비의 혼란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최근 제8차 남북한 고위급회담의 성과로서 남북한 불가침선언과 공동합의서의 채택에 이어 남북화해 불가침 교류협력 부속합의서를 발표함으로써, 남북 문화교류 문제는 실질적인 교류 협력방안이 모색됨과 동시에 그 구체적인 실현을 눈앞에 두게 되었다. 부속합의서의 남북교류 협력부문을 보면, 문화의 영역에서 교육·문화·예술·체육·신문·방송·출판분야의 교류협력을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있다. 그리고 각 분야별로 정보자료의 상호교환, 기술협력, 인사교류, 공동 연구조사 및 편찬사업 추진, 저작권의 보호, 국제적인 대외활동의 상호협조 등의 구체적인 작업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합의내용의 실천을 위해 남북 사회문화교류 공동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제도적 지원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남북 문화교류 사업의 실천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제 남북한의 문화교류는 각 분야별로 추진사업을 결정하고 그 절차를 상호합의에 의해 결정한다면 곧바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기반이 이룩된 셈이다. 앞으로 남북 사회문화교류 공동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운영되느냐에 따라 남북 문화교류는 새로운 민족공동체의 문화를 확립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의 문화교류는 민족의식의 동질적 기반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하여 분단의 장벽을 극복하고 남북한의 통일을 이루는 데까지 지속적으로 전개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위해 적극적인 통일문화정책을 구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 글은 남북한의 통일과 민족공동체 문화의 확립을 목표로 21세기를 향한 우리의 통일문화정책을 새롭게 제안하고자 하는 데에 목표를 둔다. 우선 북한문화의 전반적인 특징을 남한의 문화와 대비시켜 검토하고, 이러한 남북문화의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남북 문화의 통합을 위해 필요한 통일문화정책의 기본적 성격을 규정하게 될 것

이다. 이 글에서 제시하게 될 통일문화정책의 핵심은 남북한 문화통합의 모델구축과 그 실천방안이 라고 하겠다.

2. 북한문화의 성격과 문화예술정책

북한의 문화가 변모해온 과정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논의해 볼 수 있다. 북한사회 내부의 변화과정과 문화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고, 당의 문예정책 변화를 문화의 변모과정과 연관시켜 볼 수도 있다.

북한에서는 문화예술이 북한의 사회적 변동과 관련하여 대개 네 단계의 변화과정을 거쳐온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첫째, 평화적 조국건설기(1945~1950), 둘째, 조국해방전쟁기(1950~1953), 셋째, 전후 복구건설과 사회주의 기초건설을 위한 투쟁기(1953~1960), 넷째, 사회주의의 전면적 건설과 완전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투쟁기(1960년대 이후)가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단계의 설정은 북한 사회의 역사발전 단계를 그들 나름의 방법과 관점에 의해 구획해 놓은 것으로서, 대부분의 문화예술 관계 문헌이 비슷한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예술 방면의 본질적인 속성을 염두에 둘 경우, 북한의 문화예술은 1960년대 중반을 분수령으로 하여 그 양상이 크게 바뀌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1960년대 중반 이전에는 사회주의 이념의 문화예술적 실천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면, 196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부터는 주체의 문예운동이 폭넓게 전개되어왔다고 할 것이다. 말하자면 196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문화예술은 김일성의 주체사상에 의해 그 개념과 본질과 가치를 새롭게 규정하게 되었으며, 주체사상에 입자한 새로운 지향을 드러내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북한의 문화가 해방 이후 어떻게 변모되고 있는가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주체사상의 성립을 중요한 분기점으로 하여 주체사상 이전의 문화와 주체사상 이후의 문화를 구분해 보는 것이 좋다.

북한의 문화예술은 해방 직후부터 1960년대 초반까지 사회주의이념의 계몽을 위해 당과 인민에게 복무해 왔다. 해방 직후의 사회적인 혼란과 격동으로부터 6·25전쟁,

그리고 전후의 사회복구작업을 벌이기까지 북한 사회는 사회주의체제를 확립하고 그 기초 위에서 사회주의 문화를 건설해 나가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예술은 북한사회의 체제 확립과 그 이념적 정비를 위해 일종의 선동적 무기로 이용되었다. 문화예술인들은 당의 정책에 따라 조직 동원되었고 사회주의이념으로 무장하도록 요구되었다. 그리고 사회주의 문화의 건설을 목표로 하는 당의 문예정책에 따라 사회주의의 이념을 계몽하고 선전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서 북한의 문화예술은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미학적인 원칙을 일종의 창작적 슬로건으로 내세웠고 당과 인민의 문화가 되고자 했다.

그런데 이 같은 사회주의 문화예술운동은 1960년대 중반에서부터 그 방향이 바뀌기 시작하였다. 당의 유일사상체제가 확립되었고, 뒤이어 김일성의 주체사상이 내세워지면서, 주체사상에 입각한 문학예술이 새롭게 강조되었던 것이다. 주체의 문예이론에서는 김일성의 행적 자체가 혁명 전통의 규범이며 사회주의적 전형으로 내세워지고 있기 때문에, 당의 유일사상인 수령의 혁명이념을 기리는 것으로 주체 문학예술의 꽃을 피워야 한다는 주장이 일반화되고 있다. 물론 이것은 김일성 독재체제를 합리화하고 김일성을 영웅화하는 데에 목표를 둔 것임은 논의의 여지조차 없다.

결국, 북한의 문화예술은 사회주의이념을 예술적으로 실천하고자 했던 1960년대 초반까지의 경향을 하나의 단위로 묶을 수 있으며, 1960년대 중반 이후 김일성의 주체사상에 의해 그 개념과 가치가 새롭게 규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사회주의이념의 예술적 실천에서 주체사상의 신봉으로 북한의 문학예술의 근본 목표가 바뀌어졌다고 할 것이다. 북한의 문학예술은 주체사상의 등장과 함께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의 미학적 원칙보다 주체사상에 입각한 혁명성의 이념을 더욱 강조하게 되었음은 물론이다.

주체사상에 근거한 북한의 사회주의 문화건설의 기본방향은 첫째, 주체적인 문화의 건설, 둘째, 노동계급적 문화의 건설로 규정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주의 문화건설의 기본방향은 당의 영도에 의해 그대로 실천된다. 근로 인민대중을 문화의 참다

운 주인으로 만들고 그들의 창조적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 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조선노동당의 문예정책은 「우리 당의 문예정책」(사회과학출판사, 1973)이 라든지 「사회주의문화건설론」(사회과학출판사, 1985) 등을 참조할 경우, 두 가지의 기본적인 전제조건이 제시되어 있다. 그 하나는 문예의 본질과 가치에 대한 사회주의적 개념의 규정이며, 다른 하나는 문예정책의 근본 목표에 대한 규정이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의식의 한 형태란 상부구조의 개념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문화예술이 인간의 사상과 의식 발전에 강력한 작용을 하고 있음을 중시하기 때문에, 당이 문화예술을 바르게 발전시켜야만 혁명과 건설을 이룰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이 같은 태도는 문학예술의 사회적 효용성과 기능성을 강조하는 이념주의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문예정책의 근본 목표는 제국주의적 사상문화의 침투를 막고, 김일성의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혁명 위업에 힘있게 복무하는 혁명적 문예의 발전을 추구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근본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 조선노동당은 끊임없이 문화예술인들을 동원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주의적 문화예술의 성격과 임무, 그 발전 방향과 창작방법, 작가·예술가의 창작 역량을 키우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문예에 대한 당의 정책적 요구를 규정해 놓고 있다.

북한의 조선노동당이 내세우고 있는 문예정책의 첫머리에는 당이 의도하고 있는 북한 문예의 성격과 임무가 제시되어 있다. 북한의 문학예술은 반드시 조선노동당의 노선과 정책에 의거하여 창작되어야 하며, 혁명 발전의 매 시기에 당의 정책을 높은 예술성을 가지고 진실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그리고 당대의 가장 절실한 사회·정치적 문제들에 예술적 해명을 줌으로써 당의 유일사상, 김일성의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고 혁명화·노동계급화의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여 당의 정책을 관철시키는 데서 선봉이 되어야 한다. 이 같은 문예의 임무는 주체적인 입장에서 사회주의적 문화예술의 본질을 규정해 놓은 것으로 선전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면의 요구를 포함하고 있다. 그 하나는 대내적인 면에서 문화예술을 철저히 당에 예속시키며 당

의 요구에 의해 통제한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문예의 차원에서 사회주의적인 사상의 강요를 통해 일체의 자유주의적·제국주의적 사상 문화의 침투 확산을 방지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에서는 사회주의적 예술의 당성·인민성·계급성의 원칙을 철저히 내세우면서 자연주의, 부르조아적 사상, 유교적 전통사상, 형식주의 등의 모든 문예적 경향을 거부하며, 오직 김일성의 혁명사상에 입각한 혁명적 문예의 창조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조선노동당이 밝히고 있는 문예정책의 두 번째 단계는 사회주의적 문화예술의 발전방향이다. 그들은 민족문화 유산을 시대의 요구에 맞게 비판적으로 계승하여 사회주의적 문화예술이 민족적 바탕 위에서 발전될 수 있도록 사회주의적 내용과 민족적 문예형식의 결합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는 주체의 문예이론에서 이미 검토된 바 있듯이, 김일성의 주체사상으로 요약되는 당의 정책노선과 김일성의 항일 투쟁을 미화시킨 혁명적 문예의 형식을 본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그대로 드러내 놓고 있는 셈이다. 북한의 조선노동당이 민족적 문예형식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물론 혁명과 건설이 민족국가 단위로 진행되고 있다는 역사적 특수성을 내세우기 위한 것이지만, 주체적인 입장에서 문예의 내용과 형식을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 그리고 바로 이 같은 방법에 의해 민족문화의 유산을 주체사상으로 왜곡하고 그 동질성을 계급혁명의 논리에 의해 훼손시켜 오고 있음도 사실이다.

북한의 문예정책에서 세 번째로 중요시되고 있는 것은 창작방법을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로 규정하고, 이에 의거하여 모든 문화예술이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취향에 맞는 사상예술성을 실현하도록 한다는 원칙이다.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는 혁명적인 내용, 계급적인 내용을 자기 나라 인민이 좋아하고 그들의 정서와 취향에 맞는 민족적 형식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존중한다.

그러나 실제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의 창작방법은 사회주의 예술 미학이 추구하는 전형의 창조와 총체성의 획득과는 상관없이 김일성의 혁명사상과 그 투쟁의 과정을 형성화하기 위해 동원될 뿐이다. 북한의 문화예술이 궁극적으로 도모하고자 하는 것

은 당과 인민의 수령인 김일성의 혁명역사와 그 영도력을 훌륭하게 형상화하는 것 뿐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문예정책의 네 번째 원칙은 문화예술을 대중적 기반 위에서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문화예술을 대중의 집체적 지혜와 힘에 의해 창조해 나가야 한다는 김일성의 교시를 그대로 정책방향에 적용시킨 이 조항은 문화예술이 인민대중을 위해 복무한다는 원칙과 다를 바가 없다.

북한의 문예정책의 다섯 번째 원칙은 모든 작가·예술인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무장시키고 혁명화·노동계급화 한다는 것이다. 작가·예술인들의 이념적 무장은 혁명적인 작가 예술인만이 문화예술을 통해서 인민대중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개조하며, 노동자 농민출신의 작가 예술인들을 양성하여 이른바 〈붉은 문예전사〉로 키우고 있는 것이다. 해방 직후에는 조국 건설에 있어서의 문화전선의 투사로 작가·예술인들이 동원되었으며, 6·25전쟁 당시에는 전쟁의 승리와 민족 해방의 과업을 완수한다는 목표 아래 문학예술인들을 선전원으로 이용하였다. 전후 복구사업을 〈천리마 운동〉으로 미화시키면서 혁명적 문예작품의 창작에 문화예술인들이 참여하도록 강요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북한 당국은 문화예술인들의 개인적 창작활동을 일체 허용하지 않고 오직 당의 정책과 김일성에게 충직한 문화예술인들만을 양성해 온 것이다.

북한의 문예정책에서 볼 수 있는 위와 같은 다섯 가지 원칙은 모두 공통적으로 당과 수령의 혁명사상에 대한 추종만을 강요하는 요건들로 채워져 있다. 그러므로 모든 예술가들의 예술 창작 활동이나 문예 활동의 자율적인 참여는 철저하게 규제하고 있는 대신에, 작가·예술인들의 동원, 인민대중의 조직을 통해 집단적으로 김일성 혁명사상의 위대성에 대한 찬양과 개인의 영웅화 작업에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북의 문예정책이 혁명적 이념의 구현을 위해 문예활동의 집단적 통제를 통해서만 그 권위를 인정받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북한의 문예정책의 근본적인 목표는 김일성의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혁명 위업에 힘있게 복무하는 혁명적 문화예술의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제국주의

적 사상 문화의 침투를 철저히 배격하고, 모든 문학가들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무장시키며 혁명화, 노동계급화 한다는 것이 전제조건으로 내세워지고 있다. 그리고 조선노동당은 문학가들을 조직 동원하여, 사회주의적 문학예술의 성격과 임무, 그 발전방향과 창작방법들에 대한 당의 정책적 요구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문예정책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건은 모든 문학예술이 반드시 당의 노선과 정책에 의거하여 창작되어야 하며, 혁명 발전의 매 시기에 당의 정책을 높은 예술성을 가지고 진실하게 반영해야 한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당대의 가장 절실한 사회정치적 문제들에 대해 예술적 해명을 줌으로써 당의 유일사상인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인민 대중을 무장시키고 노동계급화의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여 당의 정책을 관철시키는 데 선봉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은 문학예술을 철저하게 당에 예속시키고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과 찬양을 위해 문학예술을 동원하며, 사회주의적 이념과 수령의 혁명사상을 강조함으로써 일체의 자유주의적, 제국주의적 사상 문화의 침투를 방지 한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이처럼 북한의 문학예술이 당의 정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은 사회주의적 문학예술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지만, 북한 문학은 주체사상에 기초한 문예이론을 통해 이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원칙과 결합시킨 주체의 문예이론은 문학예술에서 당의 유일사상 체제를 확립하는 문제를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문학예술에서 당의 유일사상 체제를 철저히 세우기 위해서는 수령에 의해 이룩된 혁명적 문예전통을 전면적으로 계승 발전시키며, 문학예술사업에 대한 당의 영도를 확고히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학예술을 통해 당의 유일사상을 구현한다는 것은 예술적 형상에 의해 당의 유일사상인 수령의 혁명사상과 그에 기초한 당의 노선과 정책을 정확히 반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문학예술은 김일성의 혁명사상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철저히 구현하고 인민 대중을 공산주의 세계관으로 무장시키는 데 적극적으로 이바지하는 혁명적인 문학예술로 고정된다.

그런데 이러한 김일성의 혁명사상을 바탕으로 당의 유일사상 체계를 문학예술에 철저히 확립하기 위하여 혁명적 문예전통을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김일성의 항일 혁명 투쟁 시기에 그 영도 아래에서 창작되었다고 하는 항일 혁명문학의 예술을 주체적인 민족적 문예형식의 전형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도 이와 관련된다. 이 작품들이 지니고 있는 사상적·예술적 가치를 계승 발전시켜 나아가는 길이 혁명적 문예전통을 계승하는 것이며,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문학예술에서 철저히 세우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문학에서 주체의 문예이론을 통해 표방하고 있는 주체성이니 민족적 형식이니 하는 문예적 민족주의의 요건은 모두 김일성의 혁명사상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받들기 위해 만들어낸 것이라고 할 것이다. 문예상의 모든 민족적인 것이 김일성적인 것으로 통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근거가 된다. 김일성의 지시가 문예이론이 되고, 김일성의 사상이 문예사상이 되고, 김일성의 행적이 가장 위대한 문예의 소재가 되고, 김일성 자신이 곧 위대한 예술가로 등장하고 있는 동안, 북한의 문학은 김일성주의의 테두리에 갇혀 있게 된 것이다.

3. 통일문화정책의 기본방향과 문화통합의 모델

1) 통일문화정책의 기본방향

남북한의 문화예술 교류와 문화통합이라는 구체적인 과제의 실천을 눈앞에 두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북한 문화예술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로 접근해야 할 것인가, 분단 상황과 문화예술의 의미가 어떠한 것인가를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남북한의 문화통합과 새로운 민족공동체 문화의 확립을 목표로 하는 우리의 통일 문화정책도 북한의 문화예술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전제로 한다. 북한의 문화예술에서 민족문화의 동질성을 따진다는 것은 남한의 '한국문화'와 북한의 '조선문화'가 남과 북으로 분열되어 공존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경우에만 가능해진다. 분단시대의 문화라는 하나의 시대적 단위개념 속에서 분단의 민족사적 모순을 배경으로 성립된 북한문화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북한의 문화를 문화예술의 한 부분으로 인정할 경우에는 분단시대 문화의 논리적 범주와 성격을 확립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문화의 본질과 그 목표를 새로운 시각에서 재검토하고 그에 대한 논리의 새로운 전환을 시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분단시대 문화예술에서 요구되는 논리의 전환은 무엇보다도 먼저 문화라는 것에 대한 본질적인 인식의 전환을 필요로 한다. 문화에 대한 본질적인 인식의 전환이란, 문화예술이 무엇인가라는 기본적인 질문에서부터 시작된다. 북한에서는 문화를 철저하게 이념적 가치에 종속시킨 채, 문예를 사상혁명의 무기로 내세우고 있다. 이와 반대로 남한에서는 문화예술의 자율성이 강조된다. 그러므로 남북한의 문화예술이 이념성의 배제 여부를 놓고 상호 배타적인 경향을 드러내면서 이질화되고 양극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배제론의 관점은 분단상황에서 빚어진 남북한 문예의 이념적 편향을 뜻하는 것이며, 분단의식 그 자체의 문화예술적 반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문화예술이 분단의 상황에 대응하고 그 정신적인 극복을 지향해야 한다고 할 경우, 이러한 편향된 배제론적 관점을 먼저 극복해야 한다. 분단상황 아래 남북한의 문화예술

에서 배제론적 관점이 노정하고 있는 이분법적 논리와 그 극단적인 배타 성향은 문화 예술에 대한 접근법 자체를 통합론적인 관점으로 전환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 문예에 대한 통합론적인 관점은 문화예술이라는 현상을 사회적인 문화현상으로 폭넓게 이해한다는 개념의 확대를 전제로 한다. 문화예술을 지적 탐구의 대상으로서만 취급해서는 안되며, 심미적인 요건이나 이념적 속성에 얽매어 편협한 논리로 문화예술을 해석해서도 안 된다. 문화예술은 시대의 삶과 정신을 바라보는 하나의 시각이며, 그 시각은 유동적 문예현상의 전체적인 흐름을 조망할 수 있는 포괄성을 유지해야 한다. 문예적 순수주의가 역사적 현상을 외면하기 쉽고, 문예의 이념주의가 그 이념성으로 말미암아 문예의 역동성을 고정시킬 우려가 있음을 생각한다면, 분단시대 문화예술의 새로운 인식을 통해 문화예술과 시대를 동시에 문제삼는 통합적인 의식의 지평을 열어 나가야 할 것이다. 통일 문화정책의 기본적인 방향도 이러한 통합주의적 관점에 의해 조정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남북한의 문화예술을 분단시대 문화예술이라는 하나의 단위개념으로 포괄하기 위해서는 문예본질론에 대한 전환만이 아니라 문화사적 관점의 전환도 필요하다. 분단 상황 아래에서 남북한의 문화예술의 위상을 문화사적인 차원에서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문화사의 전체적인 흐름을 어떻게 인식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당면문제로 제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의 현대문화사는 19세기 이후 왜곡된 근대화의 과정 자체가 말해주듯이 이른바 〈불연속적 관점〉이라 할 수 있는 〈단절론〉의 관점에서 그 범주와 체계가 규정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분단시대 문화예술에 대한 논의는 문화의 연속성을 전제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단절론의 입장에서 분단문화를 생각할 경우, 민족분단 이후의 문화예술은 통일시대 문화예술에 대한 전망을 포함하여 문화사적 전체성과는 관계없는 부분성 또는 지역성 의미로 한정될 우려조차 없지 않다.

분단시대 문화예술의 극복을 위해서 문화사에 대한 단절적인 시각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은 문화사의 총체성의 확립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 흐름을 민족적인 시각에

서 인식해야 한다는 주장과도 맞물려 있다. 한국의 문화예술이 보여주고 있는 관습과 장치는 서구의 모방이나 이식이 아니라, 민족의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 역사적인 가치는 언제나 민족의 삶과 그 요구에 의해 결정되었으며, 외래적인 것은 토착화의 단계를 거치면서 우리의 것이 되었고, 전통적인 것은 새로운 시대적 변혁에 따라 근대화의 과정을 거친 것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정신사적인 인식이 문예의 지향과 연결된다는 것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전체성의 원칙을 외면한 채 상황성의 논리에 집착해 온 단절론의 반복적인 모습이 극복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요구라고 할 것이다. 새로운 통일 문화정책은 보편성의 원칙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앞서 제시한 통합주의적 태도와 함께 전통주의의 관점을 지켜 나갈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2) 남북 문화통합의 모델

남북한의 문화교류와 문화통합은 분단시대의 이질화된 남북문화를 대상으로 한다. 이미 앞에서 논의한 바 있듯이 오늘의 문화예술이 어느 정도 범위까지 배제론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으며, 전통주의에 입각하여 민족공동체 문화의 이상을 어떻게 확립할 수 있을 것인가가 우선적인 과제가 된다.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을 기초로 이데올로기의 문제에 얼마나 탄력성 있게 대응하느냐 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북한의 폐쇄적인 이념이 어느 정도까지 그 자체 내에서 개방성을 추구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하며, 민족문화의 총체적인 의미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를 고려해야 한다.

남북한의 경우는 이념적 대결구조를 반세기 이상 지속시켜오고 있기 때문에, 문화라는 말 자체가 지시하고 있는 의미도 새롭게 규정해 둘 필요가 있다. 문화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의 함의를 드러낸다. 하나는 관념론적인 것에 기초하고 있는 예술, 학문, 종교 등의 지적 기반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삶의 질서 전체를 통괄하는 유물론적인 기반을 뜻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두 가지 차원의 개념이 별개의 개념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문화는 이 두 가지를 모두 포괄하여 삶

의 방식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문화라는 것을 인간의 삶의 방식 전체라는 개념으로 규정할 때, 문화적 현상은 인간의 내적인 정신적 요구와 삶의 사회화 과정을 통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내적인 정신적 요구란 민족적인 전통이나 종교적인 이념 그리고 인간 내면의 세계와 연관되는 정신적 요구를 모두 포함한다. 삶의 사회화 과정은 정치 경제적 질서와 그 제도적 요건이 중요하다.

남북한 문화는 문화형성의 주체가 바로 우리 민족이라는 단일성에 근거하여 그 공통적인 기반을 확보하고 있다. 문화의 본질이며 수단이 되기도 하는 언어도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기도 하지만 한국어라는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한의 문화는 분단시대를 거쳐오는 동안 정치 경제적 질서의 대립에 의해 그 성격이 변화된다. 이데올로기의 차이에 따라 문화를 각기 다르게 해석하고 서로 다른 이념적 지표를 문화를 통해 추구함으로써 남북문화의 이질화가 초래된 것이다. 남북한의 문화에는 동일한 기반을 이루는 것도 있고 이질화된 요소도 적지 않기 때문에, 문화 통합을 위해 그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는 일이 필요하다.

남북한의 문화 통합이란 남북한의 정치 사회적 통합과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라는 우리의 통일 방안에 맞춰 남북한 문화 통합의 방법도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 남북 문화의 통합이란 무엇보다도 먼저 문화의 내적 형성에 기여하는 요소들, 이를테면 언어, 관습, 민족성 등의 공통적 기반을 철저히 연구하여 그 동일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문화의 사회화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사회 경제적 제도와 정치적 이념의 요구 등에 따른 이질적인 요소가 명확하게 인식되어야 한다. 물론 남북한의 정치·사회·경제·군사적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문화의 통합도 함께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지만 문화라는 것 자체가 삶의 전체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남북한의 이질화된 문화현상을 극복하기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다. 특히 문화통합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통일 문화정책의 핵심적인 요건이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두 개의 서로 다른 문화의 통합 과정을 설명하는 분석의 틀에는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다. 그 하나는 지배모델이며, 다른 하나는 상호의존모델이라는 것이다.

지배모델의 가장 현실적인 사례는 동서독의 통합을 보는 서구사회의 관점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서구 사회에서는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서방체제의 우월성을 동독의 폐쇄적인 사회주의체제의 몰락과 대비시키고 있다. 동독의 붕괴와 함께 사회주의적 문화제도가 동독에서 모두 무너지고 새로운 서구적인 문화의 지배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한의 경우에도 이 같은 모델을 예견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실제로 북한사회가 처해 있는 경제적인 난국을 생각한다면 이러한 모델과 같은 방식의 남북 문화통합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가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다. 지배모델은 어느 일방의 붕괴 또는 몰락을 전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합의 과정 자체에서 야기되는 갈등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할 경우에 엄청난 혼란을 감당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최근 독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혼란과 동서독인들 사이의 갈등은 지배모델에 의한 문화 통합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결과라고 할 것이다

남북한의 문화통합은 상호의존모델을 따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문화통합이라는 말 자체도 두 개의 서로 다른 문화의 상호관련성에 기초한 통합을 함축하고 있다. 남북한은 대립과 경쟁 속에서 이질적인 사회체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대립을 지양하고 체제 경쟁을 종식시킬 경우 남북한의 문화가 반드시 정치적·이념적 논리에 따라 양분되지는 않을 것이다. 문화의 본질적인 속성에 따라 서로 침투하고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남북한의 모든 사람들이 요구하는 새로운 가치를 형성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남북한의 문화통합이 상호의존모델에 의해 새로운 민족공동체 문화의 확립으로 이어진다면, 그것은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의 통합주의적 정신과도 잘 부합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문화 통합의 과정은 상당히 장기적인 전망을 요구한다. 남북한의 평화공존과 협조체제에 기반 하여 상호교류가 이루어지면, 갈등과 혼란을 극소화한

상호의존적 문화 통합의 가능성이 열리게 될 것이다. 한민족 공동체 문화의 확립이라는 것도 이러한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 통일문화정책의 실천 방안

남북문화교류와 민족공동체 문화의 확립을 위해서는 앞서 논의한 대로 북한 문화에 대한 접근방법과 태도의 일대 전환이 요청된다. 그리고 문화 통합의 상호의존 모델을 상정하고, 새로운 관점과 태도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남북 문화의 통합을 목표로 하는 통일 문화정책의 실천방안은 첫째, 문화적 공동기반의 재확립, 둘째, 남북문화 교류사업의 단계적인 실천, 셋째, 남북한 문화통합을 위한 제도의 개혁, 넷째, 남북한 문화통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 갈 수 있는 민간 기구의 설립 등을 들 수 있다.

남북한이 문화통합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선 먼저 문화적 공통기반을 재확립 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 작업은 남북 문화의 동질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일차적인 목적을 위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일이다. 여기서 문화의 기초를 이루는 언어의 동질성 회복이 최우선의 과제로 제기된다. 남북한의 언어를 통합, 정리하여 문화의 동질적인 공통기반을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문화적 관습과 제도의 통합을 위해 문화의 영역에서 문제가 되는 사회제도와 관습의 격차를 조사 정리해야 한다. 이러한 조사 정리 작업은 이념적인 가치나 요구로부터 자유로운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문화적 수준의 우열을 따지거나 가치의 유무를 문제삼아서는 안 된다. 남북한의 동질적 문화 기반 확보를 위한 기초 조사 작업을 토대로 남북한 문화의 실상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이루어진 후에는 남북문화교류의 단계적 실천이 이루어져야 한다.

남북한 문화교류 사업은 자료정리의 단계에서 기초적인 자료의 교환이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며, 이에 기초하여 문화적 동질성의 요건을 확보하기 위한 상호교류의 가능성이 타진되어야 한다. 남북 문화예술 교류과정에서 확인된 것처럼 이질화된 문화 예술의 특성을 강조할 경우에는 오히려 불필요한 경쟁의식과 대립만을 조장할 가능

성이 크다, 문화적으로 동질적인 요건을 더욱 확대 발전시키고, 이질적인 것들은 극복 지양해 나가는 노력이 강조되어야만 문화통합의 가능성이 열릴 것이다. 이를 위해서 남북한 공동의 문화예술행사 개최, 전통문화예술 공동연구와 연구내용의 교류 등이 추진되어야 한다.

남북한 전통문화 유산의 교류는 문화의 동질적 기반 확보, 상호이해의 증진에 목적이 있지만, 교류의 확대를 거쳐 공동체 문화의 확립을 위한 본격적인 제도의 통합, 이념의 통합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남북문화의 이질화를 낳게 한 제도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이러한 제도개혁은 남북한이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남북문화 통합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것들을 조사하고 그 개혁의 방향을 일치시켜 나가야만 성공할 수 있다.

남북한은 문화교류 추진, 제도 개혁, 이념 통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민간 공동협의체로서 〈남북한 문화교류센터〉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남북한 문화교류센터〉는 문화의 각 영역에서 협력단체로서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 공동위원회의 협의사항을 민간부문에서 실천하는 조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문화영역 자체가 갖는 자율적인 속성과 그 다양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이 같은 민간조직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물론 여기서는 남북한 당국이 각각 민족문화의 통합이라는 대승적 차원의 과제를 위해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특히 문화통합은 정치·사회·경제·군사 등의 제반 분야에 걸친 교류와 통합의 과정과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꾸준한 노력과 인내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정부는 북한의 문화예술에 대한 실상의 파악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개방을 꾀해야 하며, 문화 예술인들은 객관적으로 북한의 문화예술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작업을 조속히 진행하면서 본격적인 교류방안을 논의하고 민족공동체 문화의 확립이라는 당면 과제를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남북한의 문화통합은 궁극적으로 한민족공동체 문화의 확립을 목표로 한다. 이제 남북한의 대화가 정상적인 채널을 유지하게 되었으므로, 남북한의 교류가 더욱 활발

해지면 우선 문화통합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한국민족이 하나가 되기 위한 진정한 문화통합이 이루어져야만 민족공동체의 확립이 가능할 것이다.

정보화사회의 문예정보관리

김 태 승*

1. 서 론

「기술에는 한계가 없지만 인간의 상상력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할 정도로 고도 첨단과학기술이 창출해내는 앞으로의 세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세계가 될 것이다. 미국의 시사주간지 U.S.News & World Report('83.5.일자)가 창간 50주년을 기념하여 발간한 “앞으로의 50년”이라는 특집기사에는 향후 50년 즉 2033년까지 일어날 첨단기술을 다음과 같이 예측하고 있다.

인간이 달을 영구적으로 식민지화하고, 3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해상도시, 인조인간의 출현, 지진을 사전에 방지하는 기술, 핵 융합 발전, 우주로부터의 전력공급 등 기적같이 느껴지는 일들이 여러 과학자들에 의해 실제로 실현될 것이라고 한다.

정보사회나 정보화사회도 기술적 기반구조와 사회적 기반구조를 확보하고 이제는 고도정보사회 형성을 추진하고 있다. 광섬유 도입에 의한 대용량 통신회선망, 음성·부호·영화상 등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통합적이고도 경제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ISDN의 보급 등은 영·화상, 음성 정보가 주종을 이루는 우리 문화예술정보를 원활히 유통시키는데 더할 수 없는 활력소가 되고 있다. 이에 고도화정보사회를 구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정보관리분야에 부과된 기술적, 사회적 기반구조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정보의 현실을 분석하고 그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 경기대 교수

2. 현 황

1) 문화예술 정보

- (1) 박물관 정보 : 종합박물관, 전문박물관(역사·미술·과학 등)
- (2) 음악 정보 : 악보, 악기, 녹음자료
- (3) 문학 정보 : 서지정보와 유사작품의 키워드 선정 시 표제의 무관성
- (4) 미술 정보 : 회화, 판화, 서예, 조각, 공예, 사진 등
- (5) 디자인 정보 : 건축, 시각, 공업, 의상디자인 등
- (6) 연극 정보 : 언어극, 뮤지컬, 창극, 마당극, 인형극 등

대본, 연출기록, 도면, 포스터, 고증자료 등의 정보

- (7) 무용 정보 : 한국무용, 발레, 현대무용
- (8) 영화 정보 : 액세스 포인트의 결정문제(스탭과 캐스트 등)
- (9) 연예 정보 : 연주(성악, 기악), 연기, 창작 등 포함

2) 관련 정보 보유기관

- (1) 국공립 도서관
- (2) 대학 도서관
- (3) 문화부 관련기관

국립국악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 현대미술관, 문화재관리국, 한국국제교류재단, 독립기념관, 문예진흥원, 한국영상자료원, 예술의 전당, 국립중앙극장, 공연윤리위원회

3) 보유정보의 수량(관련기관 소장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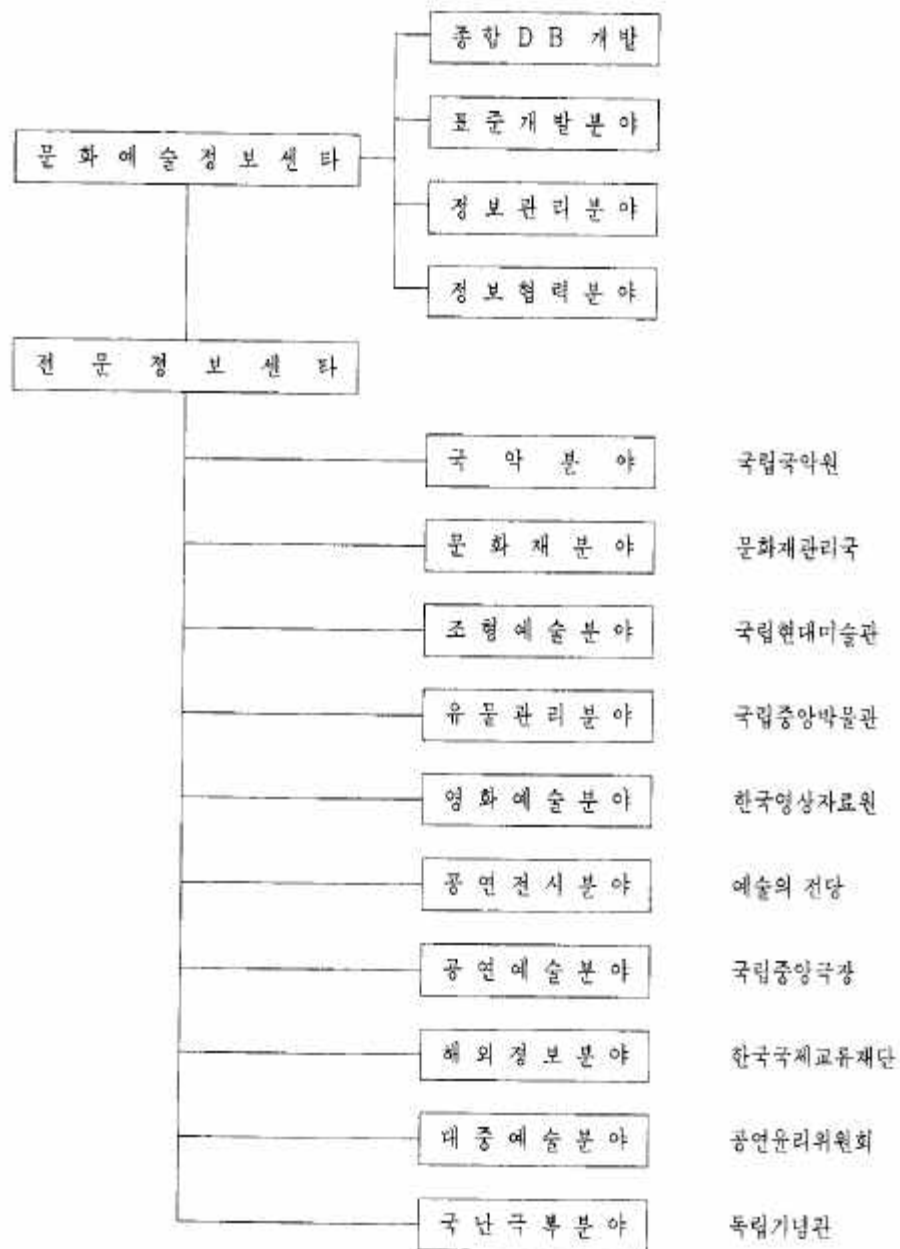
종 류	단 위	총 보 유 량	보유기관수
도서류	권	98,314	10
음악정보	점	547,647	6
영·화상자료	점	100,104	10
포스터, 전단류	점	23,913	5
실물	점	246,114	4
대본류	권	20,926	4
연속간행물	종	1,032	4
색인류	권	14,300	2
설계도면	권	365	2
총람류	권	82,823	5

4) 관리대상 정보의 종류

정보의 종류	세 부 내 용
도서류	단행본, 학위논문, 논문집, 보고서
음악류	악보, 고악보, 녹음테이프, 카세트, 카트리지, cd- Audio
영·화상류	슬라이드, 비디오테이프, 사진·스크랩북, 영화필름, 마이크로 필름, 사진원판
포스터, 전단류	포스터, 팸플렛, 전시회카드, 공연프로그램, 전단
실물	유물(도자기, 회화, 금속공예품 등), 무구, 유품 및 그 복제품, 소장작품, 인쇄 및 필사본 서화류, 악기
연속간행물	연속간행물, 동인지
대본류	연극대본, 영화대본, 시나리오
색인류	영화 워크시트, 기사색인
설계도면	문화재 설계도면, 무대 디자인대장, 의상소품 디자인 대장
총람류	개인 및 단체정보, 문화재 정보, 주소록, 회원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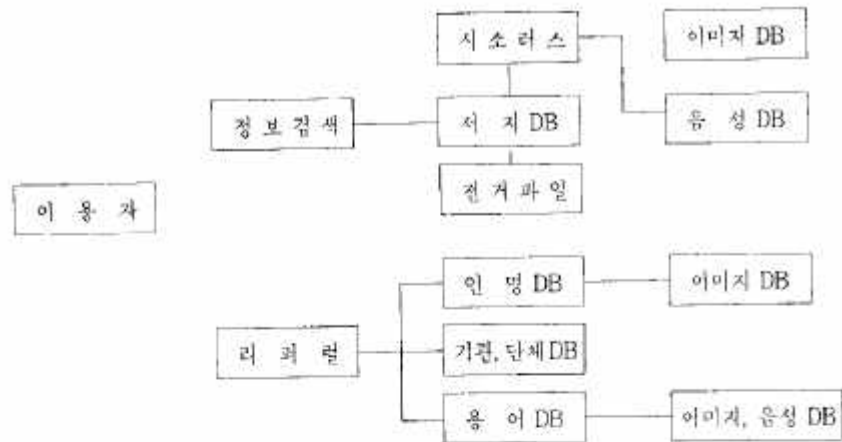
3. 문화정보 관리

1) 전담기구와 전문정보의 분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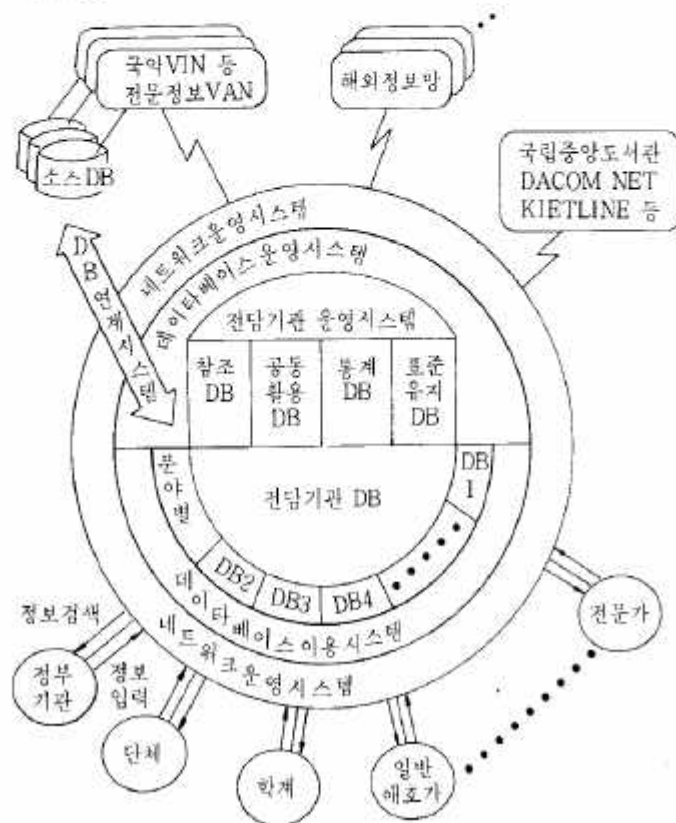


2) 데이터 베이스 구축

가. 데이터 베이스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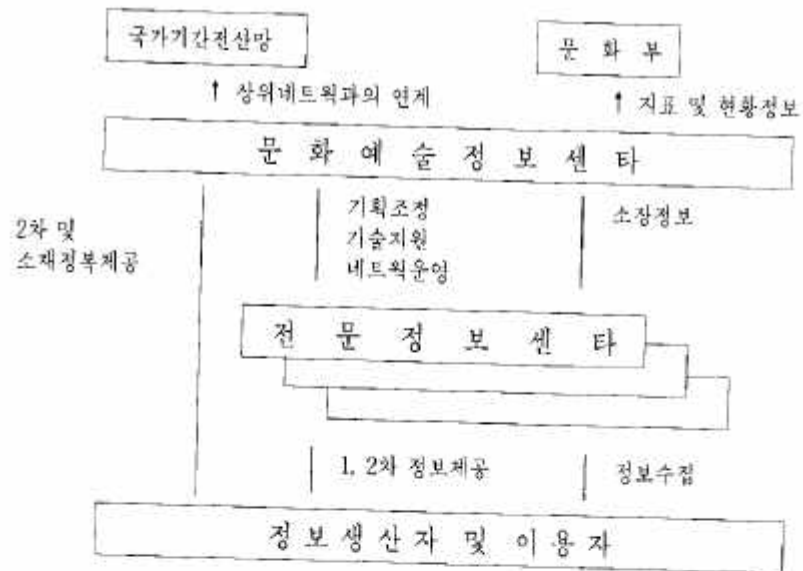


나. DB운영시스템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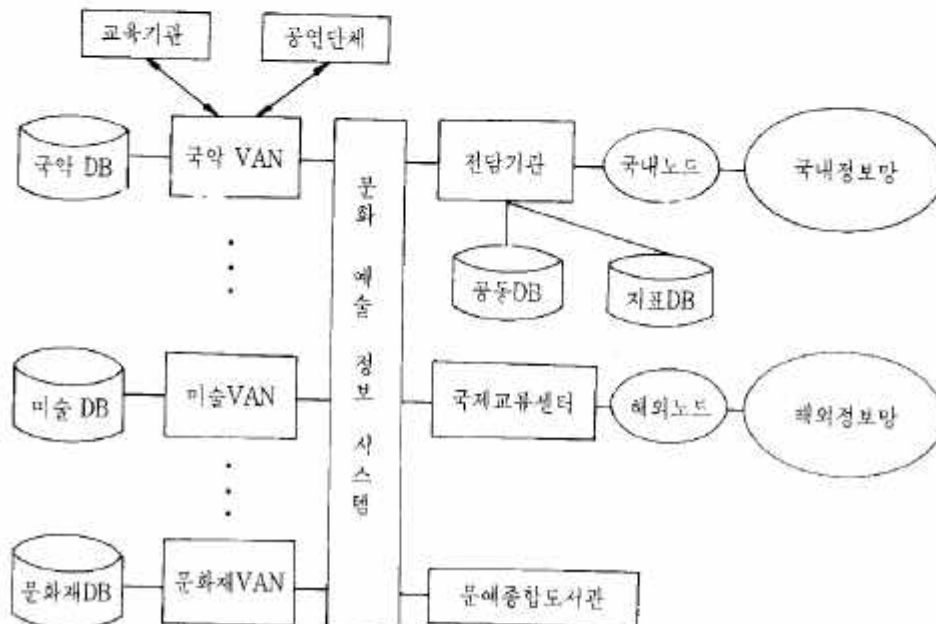


3) 네트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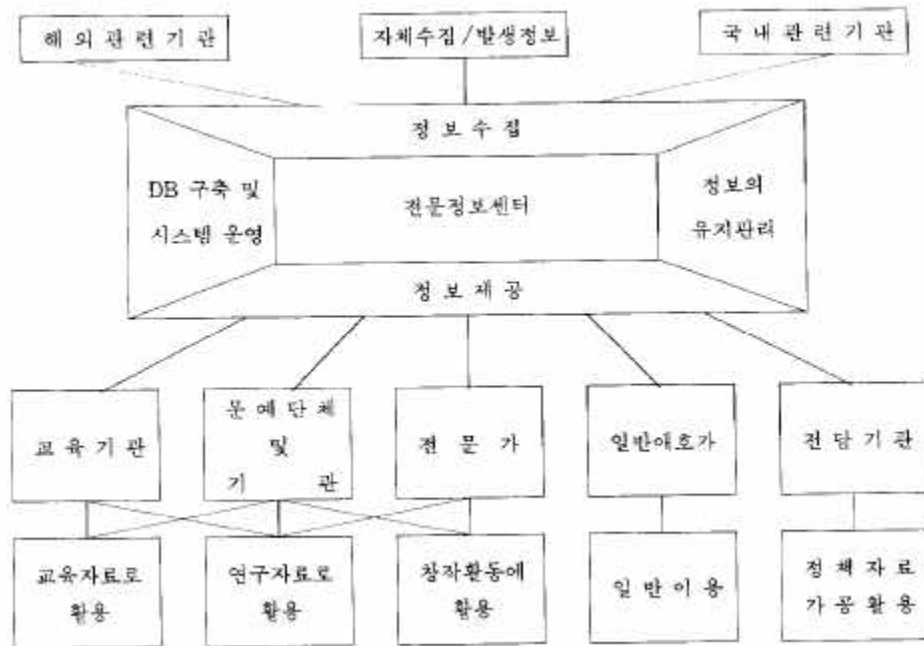
가. 단계별 네트워크 개념



나. 종합정보시스템



다. 기능적 측면의 네트워크



4) 정보처리기술

(1) 다큐멘테이션의 표준화

MARC의 포맷과 품, 용어사전, 시소러스 등의 개발

(2) 정보처리 시스템의 표준화

기기 간의 호환성, 문자코드체계의 통일, OS 및 통신프로콜의 통일

- 참여기관들의 공동보조

(3) 정보처리 및 보급에 있어서 영·화상 및 음성 등 다중매체(Multimedia)처리

기술의 응용이 필수적이며 전문정보 VAN의 중심으로서 양방향, 정보전송기능을 가져야 한다.

(4) DVI(Digital Video Interactive), (CD-ROM XA(Extended Architecture) 등 Multimedia처리 기법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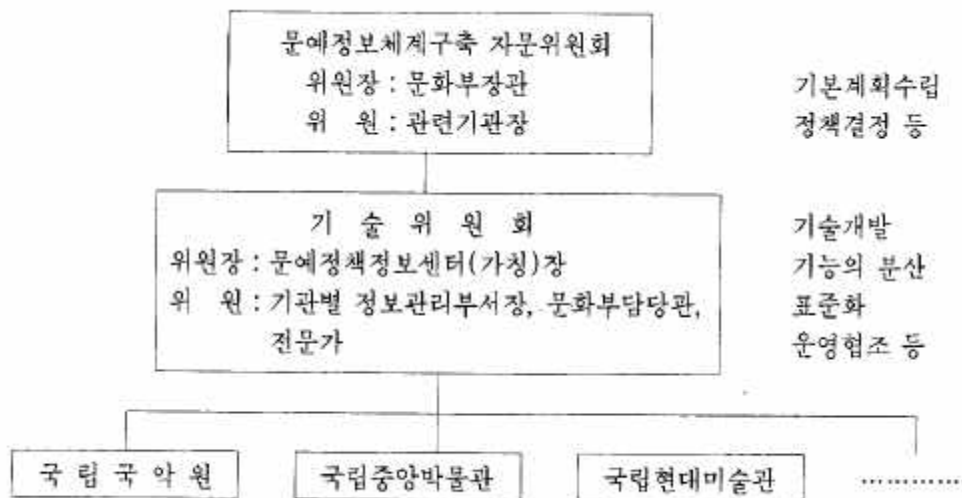
(5) ISDN을 이용한 문예정보의 전국적 유통

5) 정보관리정책

가. 국가 5대 기간 전산망에 반영 : 장비, 인력, 예산확보

- (1) 행정망
- (2) 금융망
- (3) 교육연구망
- (4) 무역망
- (5) 국방망
- (6) 문예망

나. 문예정보체제 구축 자문위, 기술위의 설치



4. 결론 및 제언

1) 전담기구의 설치

- 문예정보의 국가적 관리
-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
- 전문정보센터의 협조, 지원, 조정

○ 각종 기술개발 및 표준화

- 2) 국가 5대 기간전산망에 반영
- 3)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문화예술의 다양한 장르를 감안하여 문자정보, 음성정보, 영화정보 등으로 구분 설계하여야 한다.
- 4) 문예정보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의 유지와 보수를 위하여 계속적 사후관리가 요청되며 정보관리 전문인력의 확보와 교육훈련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5) 관련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개의 정보가 문화유산으로서 유일성이 있음을 감안 하여 매체별 영구보존기능을 확보하여야 한다(Archives).
- 6) 문예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초기단계의 추진사업을 즉각 착수하여야 한다.

○ 문화예술분야 시소러스 개발

○ 영화상 정보처리 시범시스템 개발

정보화시대의 저작권과 지적 문화산업의 육성

이 중 한*

1. 전 제

이 글은 미래의 전망을 전제로 하고 있다. 특히 전자매체의 멀티미디어화와 이를 통한 삶의 양식의 변화, 그리고 삶의 증진을 통한 문화의 산업화시대를 가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망의 일부는 이미 확인할 수 있을 만큼 현실화되고 있는 것도 있다. 따라서 이 변화의 양식을 먼저 정리해야만 논의의 체계적 접근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의 선택과 인식에 필요한 장을 뛰어넘어, 우선 전략적 항목들을 논하는 것이 이 글에 부여된 임무이다 따라서 배경적 설명은 삭제될 수밖에 없고, 문화상황에 대한 인식의 개념들 역시 특별한 주석 없이 쓰이게 될 것이다. 또한 제한된 시간의 논의임으로 필자의 관점에 의한 우선 순위로 과제별, 항목별 언급을 할 수밖에 없음을 미리 밝힌다.

2. 정보화시대의 저작권의 변화양상

- 일본 저작권심의회(Copyright Council)는 최근(92년 3월) 지난 1년간 특별위원회가 심의한 일본 저작권제도상의 당면과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그 대응 방안을 검토했다.

- 1) 전자출판의 전망과 저작자 등의 권리
- 2) 미디어의 복합화와 저작자 등의 권리

* 서울신문 논설위원

- 3) 영화의 2차적 이용에 따른 실연가의 권리
- 4) 영화의 2차적 이용에 따른 영화감독 등의 권리
- 5) 음악저작물의 재생연구에 관한 권리
- 6) 사진저작물의 보호기간 연장

- '92년 6월에 시행된 대만의 개정저작권법에도 중요한 변화가 수렴되었다. 무엇 보다 보호되는 저작물의 항목이 명문으로 확대되어, 「어문 · 음악 · 연극 · 무용 · 순수미술 · 사진 · 그래픽 디자인 · 건축 디자인 · 비디오 · 오디오 ·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표기되었다.

- WIPO의 전문가위원회는 92년 7월 회의에서 음반제작자의 보호에 관한 모델법안의 문안을 수정 정리했다. 음악을 담은 테이프, 레코드, CD들의 무단복제가 지나치게 만연하고 모든 국가들이 법적 수단을 강화해서 이 침해를 보호해야 한다는 데 회의에 참가했던 35개국 전원이 의견을 통일했다. 이 자리에서 스위스는 자국 내에서 CD의 무단복제가 15%정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공개하는 자료를 내놓아, 복제에 대한 그 동안의 자국의 엄폐적 태도에 전환적 자극을 주었다.

이러한 진전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최근 급속한 정보의 디지털화 처리기술의 발달에 수반하여 나타나고 있는 전자매체와 그 이용수단의 변화가 저작권의 양상자체를 변화시킬 뿐 아니라 운용전반에 새로운 형식이 요구되는 단계에 왔음을 증거 하는 것이다.

전자출판 · CD-ROM · CDI(Interactive)에 이르러 있는 통칭 멀티미디어는 문자 · 영상 · 음향저작물의 통합화만을 실현시키는 것이 아니라, 저작물의 축적 · 가공 · 송신 · 전시 · 상영의 이용방법까지를 혁명적으로 통합하며, 이에 대한 개개인의 사적 사용을 가능하게 해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의 저작권과제는

- 1) 멀티미디어 · 소프트웨어 등의 보호의 이상적인 상태
- 2) 멀티미디어로 된 통합적 저작물의 이용과 저작권, 저작자 인격권, 저작인접권과

의 관계

- 3) 멀티미디어 등의 저작물의 이용과 권리제한 규정과의 관계
- 4) 멀티미디어의 발달에 대응하는 권리처리의 이상적 상태 등을 적절히 정리하고 규정하는데 있다.

3. 정보화시대 문화의 변화양상

한 사회를 지배하는 문화예술과 그 양식은 사회적 기호와 사회의 기능에 반영되며, 또한 이 반영에 의하여 생산규모가 결정된다.

지나간 시대에 있어서 예술의 향유가 특정계급에 속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또 그렇게 형성되어진 부분이 있었던 것도 바로 모든 수용자가 평균적으로 그것을 수용할만한 기호나 기능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보화시대는 무엇보다도 이 수용의 기능을 혁신적으로 활성화하고 평균화시켜 준다. 동시에 전달기능으로서의 매체이긴 하지만 그 전달의 질을 고품위화함으로써 보편적인 문화감수성 향상에도 현저한 영향을 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보통사람들의 문화감수성의 향상은 또한 문화의 산업화에 극적인 변화를 주고 있다. 이제까지 자본주의하에서의 「문화사업」은 질적으로 낮은 내용물들을 대량으로 유통시켜 대중을 타락시킨다는 측면에서 주로 비난을 대상의 되었다. 이러한 비난의 시각에서 문화산업의 집중화현상도 부정적 지적을 받는 항목이었다.

그러나 매체의 변화에 따라 문화사업체는 복합기업이 될 수밖에 없는 입지가 새롭게 조성되었다. EMI의 경우 레코드·영화관·영화배급·각종 레저업·TV·프로그램 제작 등으로 확대되어 온 것은 이들 사업이 그 자체로서 분리되기가 어렵게 되었다는 외적 여건에서 연유하는 것이다. 이제는 비디오그램까지 연계되었고 컴퓨터 프로그램들은 기능적으로 이 모든 항목에 합류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CATV도 자연스럽게 합세된다.

기술적 발전으로 인해 이미 우리는 TV프로그램을 굳이 방영시간에 볼 필요가 없

게 되었다. 따라서 문화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제조자가 어떤 복합기업이냐를 따질 필요 없이 단지 자신이 필요한 부분을 보다 양질의 제품으로 골라서 자신이 수용하고 싶은 시간에 수용할 만큼 하면 되는 새로운 양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조건에서는 대량생산, 대량보급으로 설명되던 문화산업의 개념 또한 수정될 수밖에 없다. 문화산업 역시 여타 산업과 마찬가지로 산업적 규모의 생산이기는 하지만 소량다품종 생산체제로 그 내용을 전신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문화상품의 질적 향상과 다양화는 문화의 수요가 일반 생필품만큼이나 산업적으로 경제가치가 있다는 새로운 단계의 독립적 산업화를 뜻하는 셈이 된다.

이 때문에 실제로 문화를 설명하는 방법도 바뀌고 있다. 예를 들어보자.

- 클리블랜드의 플레이하우스 스퀘어센터(Play House Square Center)는 3대 극단이 근거지로 삼고 있는데 이 지역 경제의 약 3천 5백만 달러 규모의 경제를 창출 한다.

- 로스엔젤레스 상공회의소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예술이 로스엔젤레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50억 달러 이상이다.

- 영국에서는 예술분야가 1백 70억 달러 규모의 산업인데 이는 영국 자동차산업의 규모와 맞먹는 것이며 관광산업분야 소득의 27%는 예술분야에 직접 기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표현의 접근은 또 「이제 사람들이 도시로 와서 살고 싶도록 만드는 생활양식 중에서 교향악단은 공항이나 프로야구팀 만큼이나 중요하다는 사실로 존재하게 되었고, 또 이렇게 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라고 견해에까지 이르게 하고 있다.

문화사업은 이제 문화로서의 산업이 되어가고 있고, 이는 또 관광산업의 중심에 있기도하다. 1990년 암스텔담의 반 고흐전은 1백 50만장의 전시회 입장권을 모두 국외에서 판매했다. 두 달에 불과한 전시기간에 이 정도의 입장권을 팔 수 있으므로 고흐전 입장권은 마치 영화관처럼 두 시간씩 시간까지 제한한 티켓이 되었고, 늦게 온 사람에게 대해서는 입장을 거절할 수 있는 조건까지 붙였었다. 1백 50만명을 끌어들이는 규

모든 새로운 문화수요지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문화산업일 수밖에 없다.

이를 보다 자세히 본다면 다음과 같이 이해하게 된다.

정책에 의해 질적 문화감수성을 가진 보통사람들이 늘어나고, 그 감각을 또한 매체들이 자극하고 충전시킴으로써 이제는 권유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수요증대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 문화적으로 새로운 삶의 형식이 되고 있다. 이 현상을 산업적 측면으로 볼 때 〈문화전체의 자원화〉라는 표현도 나오고 있다.

4. 새로운 문제들

이러한 변화와 새로운 구조들, 조건들은 크게 보아 사람들의 평균적인 삶의 수준을 물리적인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감성적인 차원에서도 향상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간과해서 안 되는 중요한 것은 수용능력이라는 부분이다 더 낮은 차원에서 보자면 이용능력부터 문제가 된다. 정보의 양과 정보의 사용은 실제로 필요 이상으로 발전될 수 있다. 그러나 필요한 것을 필요한 만큼 필요할 때 사용하는 능력이 없는 한 정보의 양은 본질적으로 그 많음과 적음이 무의미한 것이다.

매체의 기능별 발전도 마찬가지이다. 고품질 TV나 비디오 등의 영상적 발전 역시 보다 좋은 화면을 욕구하는 수용능력에 의해서만 그 효용이 생긴다. 이를 통한 미적 감수성의 증진은 그러므로 욕구에 비례한다. 느낌의 능력을 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개인적 욕구가 없을 때는 이러한 기능적 발전의 양상 자체가 특별한 가치를 갖는 것이 아니다.

나라별·지역별 생활조건과 문화적 풍토를 크게 바꿀 수 있다는 측면에서 문화산업을 볼 때에는 그 발전의 잠재력 뿐 아니라 이에 따르는 여러 위험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문화산업은 뛰어난 문화적 업적과 만나는 기회를 늘림으로서 인간의 상상력과 지식의 범위를 넓혀줄 뿐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집단 사이의 교류를 촉진함으로써 개

개의 문화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 하지만 문화산업은 개인의 창조성을 키우기보다 문화소모 풍조를 부추기는 경향도 있으며, 이것은 문화생활을 눈에 띄게 타락시킬 수 있다는 측면도 갖고 있다. 현실을 거부하는 게으름을 바탕으로 일종의 문화적 도피주의도 만들 수 있다.

통신위성의 발전은 문화산업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누구나 자신이 원하면 세계 어느 곳에서 이루어지는 문화프로그램이든 자신의 집 안방에서 수용할 수 있게 생활조건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 경우 모든 나라가 똑같이 부딪치게 되는 어려움은 외국문화의 영향을 제한하는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문화가치에 바탕을 둔 스스로의 문화산업을 발전시키고, 개인과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창조적으로 참여하도록 북돋워주며, 민족예술가들이 상업적 생산 및 그 보급채널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다.

문화의 산업화가 관광산업과 연계되는 부문에서는, 건축물을 비롯한 문화유산의 보존에도 위험은 생긴다. 이는 대기오염을 비롯한 도시화·산업화의 과정에서 이미 문제를 가지고 있다. 문화유산들은 관광산업의 확대로 빠르게 손상될 수 있어서 문화재들의 불법거래를 확대시킬 수도 있다.

개발도상국에 있어 문화의 위기를 주로 전통과 현대성, 시골과 도시의 대립, 또는 이러한 이분법에서 생겨나는 갈등에서 찾는 관점이 있다. 이렇게 되면 도시적인 것 즉 산업 과학기술 전자공학 등이 곧 현대적인 것이며, 시골적인 것 즉 영세농업이나 경제적 후진성들이 곧 전통적인 것이 되어 버리는 기이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전통이란 말 자체가 평화와 안정, 공동체의 삶과 같은 이미지를 갖게 되고 현대성이란 또 마치 급속한 변화와 불안전, 인간의 고립을 떠올리게 한다. 이미 도시화와 산업화가 시골 공동체가 간직하고 있는 전통 속에 구현된 가치들의 조화를 깨트렸다는 점에서는 이 관점이 맞을 수도 있다.

그러나 정보화 시대의 구조는 준거적 틀에 있어 시골과 도시를 혁명적으로 구분할 필요조차 없게 할 수 있다. 시골에 살든 도시에 살든 개개인의 생활은 시골적 안정성

과 도시적 혼돈과 고독을 다같이 잃을 수도, 피할 수 없이 겪어야 하게도 될 것이다.

이 맥락에서 문화식민화라는 개념도 확대 될 수 있다. DB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형식의 다국적 통합연계 체제는 새로운 문화의 세력화일 뿐 아니라 문화 식민지 형태와 유사한 모습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도 자국적 문화의 주체성 문제는 심각한 현안이 된다. 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 사람들의 평균적인 감수성이 향상된다면, 그 평균적 기준은 어느 지역, 어느 문화를 기준으로 한 것인지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역사적으로 중심문화와 주변문화의 논의를 해온 바 있으나, 정보사회에서의 이 논의는 더욱 현실적으로 눈에 띄게 드러나는 문제일 수 있다.

이는 기술적 발전의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5. 주체적 문화발전을 위한 과제들

이러한 과제들을 고려하며 21세기를 준비하는 주체적 문화발전전략 수립에는 다음과 같은 과제항목들을 중시하여 다루어야 할 것이다.

1) 무엇보다 국민 개개인의 문화수용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들이 새로운 커리큘럼으로 만들어지고 이를 사회교육과정에 투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을 때 새로운 거대산업일 수 있는 문화산업구조에서 창조적 참여만이 아니라 수용적 참여도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고, 이는 새로운 문화후진성을 겪어야 하는 현실을 만들 것이다.

2) 문화수용능력의 핵심이 되는 문화감수성은 자국 문화적 전통문화 감수성에 기초한 것이 되도록 하는 세심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전통적 공동체 문화감수성이 크게 훼손되어 있다는 맹점을 갖고 있다.

3) 산업적 측면에서 앞으로 경쟁 내용은 〈누가 최상의 상품을 만들 수 있느냐〉에 있다고 본다. 이러한 질적 경쟁은 문화와 문화의 산업화에도 똑같은 과제이다. 세계가 동시에 열려 있을 때, 그리고 개개인이 동시적 선택을 할 때, 가장 뛰어난 것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은 논의가 불필요한 대답이다. 이 경우 우리의 문화내용 중 전

통 소재들을 포함하여 어느 것이 세계적으로 가장 탁월한 특수성을 가진 것이냐가 유일한 관건이다. 따라서 우리 문화의 특수성을 세계적인 보편성을 획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작업이 보다 시급히 그리고 진지하게 진전되어야 한다.

4) 저작권 성립과 그 보호 역시 이 기반 위에서 현실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다. 저작권은 세분화되며 또한 보다 강력히 내세워지게 되는 새로운 산업항목이다. 그러나 자신의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는 내용물 자체가 빈약할 때 저작권의 확립은 타인의 저작권만을 더 잘 보호해 주는 결과를 먼저 낳게 될 것이다.

이 모순을 극복하는 대안으로서도 사적 복제에 대한 저작권 부과금제도(Levy System)의 도입은 시급한 과제일 수 있다. 이 제도는 뉴미디어에 대한 저작권보호의 접근일 뿐 아니라 이 제도를 통해 문화진흥기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면적 합리성을 갖고 있다.

5) 정보화 사회에 있어 강한 문화와 약한 문화의 격차는 하드웨어에서 보다 소프트웨어에서 더 커지게 되어 있다. 자국적 소프트웨어가 개발되지 않을 때 정보화 사회의 수용자는 단지 강한 문화의 수용자일 뿐 아니라 강한 문화의 능동적 전달자가 되어 진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문화유산의 다양한 요소들을 정보화 사회의 문화언어로 전환해야 한다.

특히 구비전승과 언어, 신앙과 신화, 무용과 음악 등 무형문화의 요소들을 발굴, 정리할 뿐 아니라 세련화·양식화를 통해서 세계적 정보체계 속에 동등하게 투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예컨대 DB에 들어 있지 않은 자료는 DB 체계의 문화 속에서는 사라지는 문화이다. 뿐만 아니라 DB에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수용자에 의해 선택되어 사용되지 않는 한 역시 사라지는 문화이다.

6) 매체의 변화, 산업의 변화에 따른 새 장르들의 저작권 확립은 우선적으로 정책적 지원 대상이 되어야 한다. 특히 세분된 접근이 필요하다. 예컨대 디자인 분야의 한 부분으로서 문자디자인이 있는데, 문자디자인에서도 한글디자인 그리고 한글디자인에서도 컴퓨터용 한글디자인이 무엇보다 시급한 것일 수 있다.

이와 같은 줄기에서 문화영역자료들의 DB화에 있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저작권 성립은 제도적으로 주요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 또한 세분된 저작권 관리단체의 설립과 운영을 도와야 한다.

7) 올드미디어시대의 전형적인 문화산업들, 영화·출판들은 뉴미디어와 복합됨으로써 더 잘 국제화될 수 있는 조건하에 놓여질 것이나, 이 점에 있어서 우리의 문화 상황은 특별한 입장을 갖고 있다. 예컨대 영화는 낮은 문화내용이 더 잘 숙련되어 있다. 이는 창조자나 수용자가 같은 형국이다. 따라서 비디오 시장의 국제화에 있어 한국영화의 수출은 진출 가능성을 갖고 있으나 높은 문화 시장성을 갖고 있지는 않다.

출판은 언어의 조건 때문에 출판내용물 자체가 수출입에 특별한 문화적 득실차를 갖게 되지는 않을 것이나, 기능적 도서들, 즉 참고서나 사전류들에 있어 전자출판의 영역에서 상당한 국내적 손실을 입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대응도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다.

8) 문화유통의 문제는 별도로 우려할 만하다. 현재 우리의 문화유통은 대표적 출판·비디어 등에 있어 대단히 협소하며 단순화된 유통채널로 유지되고 있다. 이 때문에 좋은 문화는 전면 차단되는 기현상까지 빚고 있다. 이 점에 있어 문화의 개방화는 유통채널의 외국자본화라는 난제에 봉착할 수 있다. 이미 영화와 비디오에서 직배라는 이름으로 이 문제가 대두되어 있다. 그러나 컴퓨터 DB채널에서는 직배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따라서 문화예술장르별로 공급체계를 어떻게 조직하고 관리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정책적·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

미래사회의 여가생활과 문화향수

강 현 두*

노동시간의 단축에 따라 생겨나는 새로운 여가의 문제는 미래의 문제일 뿐 아니라 현재에 이미 우리가 당면한 문제이다. 사람들은 늘어난 여가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또 국가는 대중의 여가에 대하여 어떤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가. 여가는 단지 자유로우며 비어있는 시간의 문제만은 아니다.

1. 여 가

여가의 개념은 역사적으로 분명치 않다. 인간 생활의 최고 목표로서 완전한 자율인이 되기 위한 스스로의 관심의 시간, 충족·지식획득의 시간을 의미하는가 하면, 이 보다 한정적이고 축소된 의미로서 ‘기분풀이’라든지 ‘유한계급’이란 말과 같은 뜻으로 사용되었다.

일반적으로 여가는 노동과 대조되는 개념이다. 따라서 여가는 노동과 놀이가 구분되면서 생겨났다. 물론 원시사회에는 그러한 개념이 없었을 것이다. 현대사회로 들어오면서 사회발전에 따라 특권계급과 함께 출현한 유한계급의 성장과 함께 나타났다. 서양에서는 귀족, 동양에서는 선비계층이 누렸던 특권에서 여가가 생겨났다. 이는 사회의 상층계급이 물질적 욕구와 필요에 따른 스스로의 육체노동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신분을 획득하였고 그로부터 정신적 만족을 주는 활동을 할 수 있는 신분을 소유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여가를 귀족주의의 고상한 여가라고 한다. 과거의 많은 찬란한 문화예술이 이러한 여가의 산물이고 현재 고급 문화예술은 이러한 귀족주의적인 고상한 여가에 의한 예술전통과 맥을 같이한다.

* 서울대 교수

역사적으로 예술의 패트론은 예술가로 하여금 귀족주의적 여가를 갖도록 해주는 지원이었다. 사라진 현대의 문화예술은 대중의 지지로 지원을 받는 대중예술로 발전되거나 아니면 현대의 문화예술애호재단이나 정부의 예술지원에 의존하게 된다.

지금까지 우리 나라의 문예진흥정책과 문화정책은 대체적으로 이 같은 문화예술의 지원 정책이었다고 하겠다. 고급 문화는 창작자 지향 문화(Creator - Oriented Culture)이기 때문에 국가의 문화예술 지원은 창작자에 대한 지원이 되며 이러한 지원책이 또한 문예진흥원을 통한 우리 나라의 문화정책의 성격이었다.

대중의 지지와 지원을 받는 대중문화예술의 창작은 상업적 활동을 하는 일반 경제 기구에 맡겨져 단순히 시장논리에 의해 지배됨으로써 국가의 문화정책에서는 벗어나 있었다.

2. 대중 여가 (Mass Leisure)

여가의 성격은 새로운 변화를 맞이한다. 산업화로 인한 생활수준의 향상, 테크놀로지의 발달로 과거 소수의 사람들만이 누렸던 여가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되고 이와 함께 여가 활동의 기회가 확대되었다. 늘어나는 여가는 문화적 욕구로 표현되어 이러한 대중여가시대에 들어선 선진국에서는 고급 문화예술의 대중적 수용이 진행되어 이른바 토를러가 말하는 바 문화폭증현상이 나타났다.

우리 나라도 70년대부터 대중여가시대에 돌입하고 있다. 21세기에 이르면 본격적 대중여가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견된다. 따라서 대중여가에 대한 국가정책이 시급한 시점에 있다.

대중여가 사회학자 라라비(Larrabee)와 메이어손(Meyersohn)은 「대중여가 (Mass Leisure)」라는 책에서 대중여가와 대중문화는 동의어라고 선언하였다. 역사적으로 보아도 현대의 대중문화는 대중여가와 함께 나타났다. 대중여가와 대중문화는 개념상으로 구분할 수 없을 만큼 밀접한 것이다. 대중여가정책은 곧 대중문화정책인 것이다. 대중문화가 팽배해지는 사회적 분위기의 밑바닥에는 이러한 대중여가의 사회

으로 이행되는 사회과정이 자리잡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의 문화정책에는 대중문화정책이 빠져있다. 오로지 '고급문화정책'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다.

3. 수용자 지향적 문화정책

고급문화가 창작자 지향의 문화라면 대중문화는 수용자 지향의 문화이다. 오래 동안 우리 나라 정치문화는 엘리트주의적이요, 권위주의적이었고 그러한 전통속에서 문화예술에 대한 인식은 엘리트지향적이었고, '권위주의적'이었다 해도 과장된 표현이 아닐 것이다. 문화정책이 문화예술의 대중적 수용의 편에 있었다기 보다는 예술가의 창작의 편에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것이 퍼블릭(Public)으로 돌아가는 시대이다. 정치는 국민으로, 경제는 소비자로, 매스미디어는 미디어 수용자로 돌아가야 하는 시대이다. 바야흐로 '수용자'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자연히 문화의 문제도 곧 수용자의 문제가 되어야 하고 문화의 정책은 문화 수용자를 염두에 둔 정책이어야 할 것이다. 수용자 지향의 문화정책에 필요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한 국가의 문화정책이라면 국민의 문화향수권이 다른 어떤 것 보다도 존중되어야 하는 시대이다. 이것이 민주화되는 시대적 요청에 부합되는 문화정책이다. 이와 같이 대중문화는 한 사회의 중심적 문화이고 대중의 생활문화이며, 국가적으로도 대중문화는 사회문제(Social Problems)의 원인이거나 사회문제 자체로 여겨져 왔다.

이 같은 인식 하에 우리의 대중문화는 육성되지 못하고 외국의 대중문화가 지배하는 형국에 이르렀으며 앞으로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따라서 21세기의 문화를 위해서 우리는 대중문화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바로 잡아야 한다.

4. 대중매체의 문화적 기능

대중여가와 대중문화가 동의어가 되듯 대중문화는 대중매체와 거의 동의어가 되었다. 왜냐하면 현대의 대중문화는 대중매체를 떠나서 상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고령기 때문에 대중문화는 매체문화(Mass Mediated Culture)라고 일컬어진다. 이 같이 대중문화를 운반하는 것이 매스미디어일 뿐 아니라 매스미디어 자체가 현대의 문화를 이루는 상황에서 매스미디어는 대중여가의 표현수단이며 또 문화의 수용수단이다.

매스미디어 중에서 전파 미디어나 영상 미디어는 가장 대표적인 현대의 대중문화의 매체이고 대중여가의 수단이다. 이러한 현대 대중문화의 성격은 한국의 대중문화에서는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한국 대중문화는 거의 매체문화 자체이기 때문이다. 경제기획원의 사회지표조사나 문예진흥원의 문화발전연구소의 보고서에 나타난 것을 보면 한국인의 여가활동의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항목이 텔레비전 시청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에서 조사한 한국 근로 청소년의 문화생활 조사에서도 가장 많은 문화수용 항목은 대중문화이고 그 다음 텔레비전, 비디오, 영화 순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영상문화, 매체문화가 한국의 대중문화, 대중여가에 얼마나 큰 몫을 하는지를 짐작케 한다.

그런데 우리는 매스미디어, 특히 라디오, 텔레비전, CATV 등의 미디어의 문화예술적 가치를 과소평가 하거나 외면하고 있다. 현대의 가장 강력한 문화의 전달 매체이며 표현매체를 기업의 상업적 활동에만 맡겨두거나 아니면 정부정책의 홍보기관인 공보처의 공보활동정책에 문화매체가 맡겨져 있다.

방송의 공보적, 광고적, 상업적 기능이 없지 않으나 방송커뮤니케이션의 문명적 성격은 ‘문화성’에 있는 것이다 그것은 지금까지 책과 같은 인쇄매체가 문명적으로 그러했던 것과 같다. 정부도 사회도 텔레비전, CATV, VTR 등 새로운 전자미디어를 문화미디어로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방송이 문화매체로 인식될 때 방송정책, 미디어정책이 문화정책으로 연결되며, 방송정책이 문화정책으로 연결될 때 비로소 국민을 위한 대중적인 문화정책이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국민의 문화향수권을 존중하는, 문화를 위한 민주적 정책을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는 길인 것이다.

5. 뉴미디어 시대의 문화정책

앞으로 세계는 더욱 국제화되고 개방화될 것이다. 국제적으로 개방된 사회에서는 물리적 국경은 의미가 없어질 것이다. 문화와 예술이 넘나드는 그런 시대에 처하게 된다.

또 문화는 더욱 국제화되고 산업화된다. 이른바 문화산업의 시대를 맞게 된다. 세계의 문화산업이 내놓은 '문화상품'이 국제적으로 유통되는 국제적 문화커뮤니케이션 시대가 도래한다. 문화산업은 매스미디어 문화정책의 주요문제이고 대중문화의 중요 정책으로 대두된다. 문화가 어떻게 생산되고 유통되며 소비되고 또 재생산되는가는 이미 문화부의 차원을 넘어서서 국가 경제적 차원의 문제로 확대될 수 있고 국가 외교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 따라서 문화산업적 차원에서 문화는 문화부나 공보처 뿐 아니라 정부 부처의 전체 활동과 관련되어 있다.

이제 국가의 매스미디어 문화행정은 좀더 확대되고 재검토되어야 할 지 모른다. 국제화 시대, 개방화 시대에 대비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다국적성을 띤 초국가적 매스미디어 산업이 우리의 대중문화를 지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음반산업, 출판산업, 미디어산업, 영화산업, 광고산업, 텔레비전산업 등 주요한 다국적 미디어산업이 우리의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이미 우주방송시대는 시작되었고 우리의 하늘에서 일본의 문화의 비, 중국의 문화의 비가 이 땅에 내리고 있다. 일본의 대중예술, 홍콩의 대중예술, 소련의 대중예술이 이 땅에 쏟아져 내려올 때 우리의 문화적 정체성은 어떻게 될 것인가. 매우 우려되는 앞날의 문화상황이다.

이에 대비하여 1995년 우리도 무궁화호를 띄운다고 한다. 그러나 무궁화호에서 어떤 문화를 내보낼 것인가, 과연 우리는 우주방송을 할만큼의 소프트웨어를 갖추고 있는가. 불행하게도 우리의 문화정책은 21세기의 미디어 문화를 위한 문화산업을 육성하지 못한 채 새로운 미디어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CATV의 시대를 눈앞에 두고 CATV의 하드웨어는 준비되어 있지만 소프트웨어는 그렇지 못하다. 또한 이미 DBS의 하드웨어는 계획하고 있지만 그 소프트웨어에 대한 대책은 연구되지 않고 있다. 다만 CATV, DBS를 통해 채널만 늘리는 격이다. 소프트

웨어 없는 채널의 신설과 증가, 이는 물 없는 사막에 수도 파이프를 묻고 거기에 수도
꼭지를 다는 격이다. 수도꼭지를 틀어도 물은 안 나온다. 결국 저수지를 파고 외국산
물을 부어야 할 것이다. 이는 외국의 문화를 수입함을 의미하고 외국의 문화의 물을 마
시게 됨을 의미한다. 그래서 21세기는 외래문화가 더욱 범람할 우려가 없지 않다.

지금까지 뉴미디어는 체신부의 주도하에 주로 하드웨어에 대한 정책만 있어 왔다.
CATV, DBS 등의 계획은 문화적 측면에서의 고려였다기 보다는 경제적 측면에서
고려해 계획한 인상이 짙다. 그러나 소프트웨어의 정책이 수반되지 않는 미디어의 하
드웨어정책은 문화의 종속을 심화시켜 반문화의 결과를 낳는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체신부, 공보처 등의 하드웨어의 미디어정책과 문화부의 문화정책이 함께 통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토 론 내 용

〈참 석 자〉

사 회 : 한상복(서울대 교수)	토 론 : 김경웅(통일연수원 교수)
발 제 : 권영민(서울대 교수)	이기성(동국대 교수)
김태승(경기대 교수)	백승길(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연구위원)
이중한(서울신문 논설위원)	전석호(중앙대 교수)
강현두(서울대 교수)	

□ 제 1주 제 : 21세기를 향한 통일문화정책

한상복 : 권영민 교수께서는 우선 남북한 문화의 이질화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러한 이질화를 극복하기 위한 통일문화정책의 기본방향에 대한 두가지의 접근법, 즉 통합주의적인 접근법과 정통주의적인 접근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또한 그러한 문화 통합의 모델로 서독식의 일방지배적인 모델이 아닌 상호의존적인 새로운 공동체의 모델을 제시하시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세가지 방안으로 민족문화의 동질적인 기반확립,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문화교류사업의 실시, 제도적·이념적 장치의 개혁이 필요하며, 이것은 민간차원의 교류협업체 구성을 통해 실천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다. 여기에 대해서 연수원에 계신 김경웅 교수께서 말씀해 주시겠다.

김경웅 : 본인은 정부와 관련된 정책을 연구하고 실행에 옮기는 일을 하고 있지만 오늘 이 분야에 대한 권영민 교수의 견해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한 가지 덧붙이자면 통일정책의 한 분야인 문화부문에 정부가 접근해가는 방식 역시 상호의존적인 경향을 띠고 있다고 본다. 한편 우리가 원하던 원하지 않은 간에 북한체제의 변화에 대해 다양한 각도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비예측적인 지배모델이 자리잡게 되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단계별, 사태별 대체계획 등이 사안별로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어쨌든 권영민 교수께서 오늘 모델을 제시함

으로써 이 분야에 대한 이론적인 토대가 보다 확고히 다져지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본다.

그 동안 남북간의 교류협력분과위원회에서 진행해온 10여 차례 회의의 의사록에 의거하여 남북대화 과정을 살펴보면, 남쪽에서는 문화교류가 정치선전의 장이 되지 않도록 하면서 정부당국에서 보증, 지원하는 경우를 우선으로 하여 실행 가능한 분야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 확대해 가는 방향이었다. 반면 북쪽에서는 행사성 문화교류와 다소 정치적 색채를 띤 경우를 주장해 왔다. 따라서 문화교류협력분야와 관련된 교류합의서가 채택됐음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으로 문화교류가 추진되고 협력사업이 이루어지는 데에는 많은 난관이 있다고 본다. 더구나 핵문제 등 현재 당면한 정치적 문제들을 고려할 때 실현가능성이 희박할 것이 라는 의견들도 있다.

권영민 교수의 논문을 보면, 남북간에는 상당한 이질성이 있지만 여러 가지 기본합의서가 채택되고 앞으로 예견되는 여러 가지 통합 노력에 비추어보면 비교적 낙관적이라고 하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북한은 문화와 관련된 모든 것이 동원적인 관점, 즉 대중동원이나 군중노선, 군중운동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전개되고 있다. 북한에서 발행된 조선중앙연감이나 조선영화연감 등을 보면 한해의 관람객수가 3천만명에서 4천만명 정도라고 한다. 약 2천만명 정도의 북한 인구에 견주어 보았을 때 3천만이나 4천만명은 엄청난 수치이고, 이것은 문화를 향수 하는 측면이라기보다는 어떠한 행사에 동원된다는 측면이 강한 것이다. 따라서 이렇게 완고한 북한의 문화적 입장을 어떻게 우리가 효율적으로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고 변화를 유도해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정책적인 관점에서 제일 중요한 측면이라고 본다.

권영민 교수는 논문에서 문화사적인 관점의 전환이라는 아주 광범위한 시각에서 말씀해주셨는데 우리문화에 대한 비판이나 발전적 대안 등도 같이 병행해서 다루어지면 보다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 제 2주제 : 정보화사회의 문예정보관리

한상복 : 21세기 미래에 다가올 정보화사회에 있어서는 문화예술도 문화예술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과 밀접하게 연관된 정보관리 유통이 필요한 것 같다. 지금까지는 과학재단에서 사실상 과학기술만 연구를 해왔지만 문화예술계에서 새로 개발된 과학기술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에 관한 연구도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미래사회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과제가 되리라 생각된다. 그러면 이 주제에 대해 동국대학교에서 전자출판학을 전공하시는 이기성 교수께서 말씀해 주시겠다.

이기성 : 본인은 소개해 주신대로 전자출판학을 전공했다. 앞에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특히 기간전산망에 문예망을 추가하자는 의견에 본인도 찬성한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본인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컴퓨터로 테이타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가 개발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어떠한 문제점이 생긴다는 점이다.

사실상 문화사업 혹은 문화에 종사하는 사람과 컴퓨터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컴퓨터에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다. 그런데 어느 한쪽이 맞고 다른 한쪽이 틀리다면 금방 해결이 될 수 있겠지만 사실상 양쪽의 견해가 다 맞기 때문에 애매하게 피해를 보는 것은 실제 사용자들이다. 예를 들어 코드간에 문자가 통일되어야 한다거나, OS간에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할 경우를 보자. 문화를 보존하는 글자라는 것을 컴퓨터에서는 코드라고 하는데, 출판이나 인쇄, 신문에서는 한글 전체와 상용한자의 코드를 필요로 한다. 또한 그 코드는 한글의 특성에 맞아야 할뿐만 아니라 통일에 대비해 연변에서 쓰는 사투리까지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글이 모두 표현되고 한글의 특성에 적합하며 통일에도 대비한 한글코드를 원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을 과기처나 전산처 입장에서 보면 코드의 효율성이 우선시 된다. 즉 길이가 일정하고 짧을 수록 좋다. 그리고 신속성이 있어야 하고

특수한 사람 몇 명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대중성이 있을수록 좋은 것이다. 따라서 전산쪽에서는 효율성, 신속성, 대중성을 이야기한다. 예를 들어 대중성이라고 하면, 일반인이 사용하는 한글코드는 조금이면 되므로 그 밖의 것은 국어학자나 출판사, 신문사에서 별도로 사용하라는 것이다. 그래야 데이터베이스나 정보교환의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이다. 즉 그 접근방식에 있어서 전산계와 출판계의 입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한다.

또한 많은 양의 정보를 컴퓨터를 통해 찾을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출판이나 연극, 영화, 문헌정보 쪽에서는 사용자가 찾기 쉽고 전문가도 만족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것을 원하는데 반해서, 전산쪽에서는 작은 용량에 다량의 정보를 저장할 수 있고 보편타당성이 있는 쪽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한다. 따라서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다. 여기서 어떻게 선택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것은 우리가 도서관을 커다랗게 지어놓고는 책이 얼마 안 되는 경우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도서관 시설도 크지만 그 안에 책을 꽉 채워 넣는 것을 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마찬가지로이다. 현재 컴퓨터계에서는 TV처럼 쉬운 컴퓨터를 만들겠다고 하고 오디오계에서는 컴퓨터의 기능을 갖춘 TV를 만들겠다고 하여 서로 경쟁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CD-ROM이니 CD-XA 등이 나왔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더라도 CDI쪽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앞서 발표한 결론 부분에서 그 전체적인 개념에 대해서는 본인도 동감한다. 그것을 간단하게 네 가지로 정리해 보겠다. 정보화시대가 되었다 하더라도 전산 전문가가 기존의 문화행위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그것을 도와줄 뿐이다. 따라서 문화부문의 전문가가 주체가 되어 전문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 가령 문예진흥원에서 어떤 일을 할 때 문화부문에서 2명, 전산부문에서 8명이 참석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문화부문에서 10명 모두 참석해서 우리의 안은 이러하니까 전산부문에서는 이

렇게 만들어 주시오라고 부탁하는 형식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둘째, 책이라면 지금까지는 종이책이 주가 되었는데 이제는 카세트테이프나 CD, 디스크책 등 책의 종류가 상당히 다양해졌고 전자책, 디스크책, 화면책 등은 멀티미디어화 되어 가고 있다. 그러므로 도서목록에 서지사항만 넣을 것이 아니라 멀티미디어로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다.

셋째, 데이터베이스 구축용 코드, 한글코드 KS가 금년 10월 8일에 바뀌었다. 한글코드가 바뀜으로서 한글이 표현할 수 있는 것의 범위가 상당히 넓어졌다. 그런데 데이터 통신망은 아직까지도 5년 전에 제작된 KS규격에 의해서 구축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의 통신망이나 데이터베이스에 글자를 넣으면 한글 중에 80%가 없어지고 20%밖에 표현이 안 된다. 그러나 이번 10월 15일에 공업진흥청에서 새로 발표한 KSC 5601의 규격에 맞추면 모든 한글이 표현되며, 통신망에서 한글이 중간에 없어지는 일도 없게 되므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때는 반드시 새로 규정된 KS규격에 맞추는 것이 좋을 것이다. 기존의 데이터는 코드 전환인 가능하므로 그렇게 하면 출판사나 인쇄소, 도서관 등 전세계 어느 곳에서든 한글을 사용할 때 한글이 안나오거나 글자가 바뀌는 일은 없게 된다. 이상으로 간단히 마치겠다.

□ 제 3주제 : 정보화시대의 저작권과 지적 문화산업의 육성

한상복 : 저작권이나 저작소유권, 문화산업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익숙해지고 또 심각하게 논의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이것은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특히 통신위성이 발달함으로써 정보화사회가 되고 국제교류가 빈번해져 문화유통이 신속해짐에 따라 최근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본다. 그럴수록 우리문화의 고유성과 세계문화의 보편성을 어떻게 조화시켜 서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자기것을 지키며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다. 이 주제 발표에 대해서는 유네스코 한국 위원회 위원으로 계시고 문화계에 오랫동안 계셨으며 한국뿐만 아니라 국제문화계에 오래 동안 몸담아오신 백승길 선생께서 말씀해 주시겠다.

백승길 : 지금 이중한 선생의 발표를 들었는데 이렇게 간결하고 명쾌하게 진술하기도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중한 선생이 말씀하신 분야의 저작권문제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 외에도 실제로 우리 발등에 떨어진 문제들이 많이 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86년도에 우르과이에서 무역과 관한 회담인 우르과이라운드 GATT 협정이 이루어졌다. GATT란 원래 공정무역을 감시하는 제도인데 여기에는 무역과 관계된 지적소유권문제도 관련되어 있다. 우리 나라의 반도체 회사에 대해 불공정 거래 예비판정을 내린 적이 있는데 그것도 이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현재 저작권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기구로서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라는 기구가 있다. 유네스코에는 선진국 위주로 되어있는 베른조약을 완화해서 만든 Universal Cooperated Covention 이라는 기구가 있다. 또한 산업소유재산권에 관한 파리협약(Paris Convention for Industrial Property)이라는 기구도 있다. 이 세계의 기구가 대개 지적 소유권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미국을 위시한 GATT 중심의 나라들은 특히 개발도상국가들에게 심한 압력을 가하고 있고 그 압력에서 벗어나기가 힘든 형편이다. 특히 우리 나라가 그러하다.

환경문제로 리오에 다녀온 우리 정부 대표 이야기를 들어보면, 현재 우리는 개도국도 우리편이 아니고 선진국도 우리편이 아닌 고립무원의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 우르과이 라운드가 타결될 경우, 저작권에도 최혜국 대우라는 것이 생긴다. 무역관행에서는 예컨대 미국이 중국에 대해 인권문제를 가지고 최혜국 대우를 철회하느니 안 하느니 하는 문제가 있다. 만약에 최혜국 대우를 철회한다고 하면 어떤 나라든지 무역전쟁에서 건드릴 수 없다. 그런데 우르과이라운드가 타결되면 저작권에도 최혜국 대우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아마 우리도 조만간 베른협약에 가입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것 같다. 왜냐하면 현재 우르과이라운드에 포함된 무역에 관계된 지적소유권 문제와 베른협약과는 동질의 표리관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 나라의 삼성, 현대, 금성이 미국에서 취소를 당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 우리도 베른협약 가입을 서둘러야 된다고 본다.

그 밖에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현재 많은 나라에서 저작권에 관한 교육이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인식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학교를 통해 그것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 현재 정보화사회의 문화사업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많은 나라에서는 이러한 시대에 대비해 미디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가 현재 매체세계에서 살고 있지만 이 매체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도 88년 혹은 89년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미디어 전문가들을 통해 미디어 교육에 대한 회의를 한번 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교육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문화교육이다. 김용운 교수의 말씀대로 우리의 교육은 실제로 과거제도와 같은 교육, 즉 출세를 위한 교육이다. 이러한 교육시스템 하에서는 이중한 선생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시대에 도저히 적응할 수가 없

다. 유네스코에서는 지난달 제네바에서 문화가 교육에 공헌하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국제회의를 했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선진국에서는 문화전문인이 반 이상 참석했는데 우리 나라와 같은 후진국에서는 문화전문인이 아닌 교육자들이 참석했다. 현재와 같은 커리큘럼을 가지고서는 이중한 선생이 말씀하신 시대에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다. 그러므로 앞으로 미디어 교육, 문화교육을 병행해서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

□ 제 4주 제 : 미래 사회의 여가생활과 문화향수

한상복 : 지금까지 강현두 선생께서-현대사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대중문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 대중여가는 대중문화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수용자 중심의 대중문화정책은 결핍되어 있다. 그러나 그것은 앞서 이중한 선생께서 말씀하신 문화산업과도 관련되어 미디어 산업과도 직결된 것이므로 미래를 대비해서 정책을 옳바로 세워야 한다. 이 주제에 대하여 중대 신문방송학과에서 특히 뉴미디어를 전공하시는 전석호 교수께서 말씀해 주시겠다.

전석호 : 문화와 여가의 관계는 학자에 따라서는 거의 동일시 할 정도로 관계가 깊다. 또한 문화의 구성과 생성은 곧 여가에서 출발한다고 할 정도로 연관성이 많다. 그런데 문화라는 말을 할 때 실제 우리사회의 공무원들이 문화라는 개념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혹은 일상생활적인 차원에서 문화를 여가와 관련시키고 있는가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다.

3년 전에 개인적으로 문화취향과 매스미디어에 대한 연구를 한 적이 있는데 이 때 미디어를 뒤에 놓고 그에 앞서서 문화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국적으로 무작위 대상의 성인들을 조사해 본 적이 있다. 그 중에서 생각나는 한 두 가지 설문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생활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관건이 무엇인가, 즉 우선적인 고려사항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해보았다. 미리 답을 준 것이 아니고

질문에 자유로이 응답할 수 있도록 한 후 그것을 집계해 그 순서를 보았더니 첫 번째가 가정문제, 두 번째가 건강문제, 세 번째가 직장문제, 네 번째가 인간관계, 그리고 다섯 번째가 문화였다. 그 외에 잡다한 대답도 있었지만 이 자리와 연관시켜 본다면 보통 사람들에게 있어서 문화라는 개념은 상당히 하위개념이었다.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문화의 중요성, 문화의 역사성이 민족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등의 논의와는 달리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는 문화라는 개념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지 않음을 금방 알 수 있었다.

우회적으로 문화행위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알려주거나 제시한 다음, 어떻게 만족하는가, 이러저러한 문화행위를 하고 있는가 하는 식으로 접근했을 때에도 역시 상식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알다시피 우리도 주말이나 연휴에 문화생활이나 여가생활을 즐기기 위해 집을 떠나 어떤 공간을 찾거나 하지만 도시화로 인한 교통난과 우리 나라 영토의 한계, 돈과 시설의 부족 등으로 인해 실상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 많은 인구에 비해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 비좁은 여건을 뚫고 괴로운 여가 또는 문화를 즐기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강현두 교수의 말씀처럼 결국 반의도적으로 미디어로 돌아 가게 된다. 그것이 제일 편하기 때문이다. 앉아서 볼 수 있고 쉽게 빌릴 수도 있다. 현재 비디오만큼 편하게 우리들의 시간을 점령하는 매체는 없다. 문화와 여가라는 차원에서 미디어가 차지하고 있는 시간적 규모와, 반드시 학술적일 필요는 없지만 미디어가 제공하는 문화 조성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인식적 차원에서 볼 때 우리 나라와 같은 상황에서 미디어와 여가는 확실히 깊은 관련이 있다.

이런 것들로 미루어 보아 문화의 산성비라고 볼 수 있는 파라볼라 안테나를 통한 홍콩 및 일본의 7개 채널을 우리가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가용성이라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원하기만 하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미디어가 가질 수 있는 문화적 안일감도 있다. 위험하게 밤에 도시를 나다니는 것이 아

나라 가족들과 함께 건전한 영상매체를 통해 영상문화를 향유한다면 바람직한 것일 것이다.

그러나 CATV나 DBS가 생길 정도면 앞으로 우리 나라 문화의 시간적, 공간적,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인식적 차원에서 미디어가 차지하는 효과는 틀림 없이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미디어에 대한 인지도 중요하지만 이 기회를 통해서 한번 더 미디어에 대한 우리의 정책적, 사회적인 관심을 부각시켜야 될 때라고 본다.

특히 소위 뉴미디어라는 것이 실제로 다가오고 있다. 계약대로라면 내년에는 CATV가 생겨 채널이 10개정도 더 생기고 방송사도 10개 정도로 늘어날 것이다. 그렇다면 KBS, MBC, SBS 등 3개 채널에 대해 신문의 문화면에서 비판 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미디어가 우리에게 아주 가까이 근접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 전개될 때 이들에 대한 우리의 공적, 사적 인식조성은 되어있는가.

이 자리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매스미디어, 넓게는 문화의 문제가 국민들에게만 캠페인을 벌여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국가가 정책적 차원에서 빨리 미디어 정책을 펴든가 교육적 차원에서 그 주도권을 정부가 쥐어야 한다. 국민들한테만 줄 잘 서라, 차 끼어 들기 하지 말아라, TV보지 말아라 해서 안 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뉴미디어가 실현되면 채널이 많아지게 되어 있다. 따라서 국가차원에서 미디어의 중요성 및 앞으로 늘어날 미디어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미디어 환경에 대한 실질적인 주도권을 체계적으로 취해서 대중문화, 여가, 뉴미디어와의 상관관계를 체계적으로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종 합 토 론

한상복 : 지금까지 4개의 주제 발표와 지정토론이 있었다. 가능하면 이 자리에 참석하

신 여러분들과 함께 토론하기 위해 종합토론시간을 많이 남겼다. 지금까지 청취하신 주제나 토론내용에 대해서 논평이나 질의를 하시면 여기 계신 발표자나 토론자들에게서 그에 대한 응답을 하도록 하겠다. 우선 제 4주제와 관련해서 강현두 선생께서 보충해서 말씀해 주시겠다.

강현두 : 조금 과장해서 말하자면 정보화시대 또는 대중매체시대에는 과거의 고급문화는 거의 사라지고 모두 대중문화화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또 그렇게 될 때 아마 사회성원의 문화수준이 높아질 것이고, 문화적으로도 상당히 민주적인 사회가 될 것이다. 그런데 대중문화에 대한 유죄판결을 보류하자는 제안을 하고 싶다. 사실 대중문화는 사형언도를 받았다. 그런데 대중문화 모두가 범죄자라고 할 수 없으며 건전한 시민문화로서의 대중문화도 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고 내린 유죄판결을 거두고 대중문화를 긍정적으로 보아야만 본인의 제안이 시작될 것이다.

이중한 : 본인은 보통사람들의 문화감수성이 질적으로 향상되었다는 것을 이야기 했고, '평균적인 향상'이라는 표현을 썼다.

이런 예가 있다. 1970년 미국에는 A급 실내악단만이 모인 미국실내악협회의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회원수는 20개에 불과했다. 그런데 10년 뒤인 1980년에는 그 수가 576개로 늘어났다. 10년 사이에 실내악단이 20개에서 576개로 증가된 것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대중문화와 보통사람의 문화적 감수성을 알 수 있다. 10년 사이에 CD가 공급되어 집에 앉아서 개인적으로 편하게 음악을 듣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실내악을 연주하는 현장으로 갔다는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첫째, 보통사람들의 음악적 감수성이 증진되어 레코드판의 음질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직접 연주하는 현장에서 듣는 것을 진짜로 듣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하는 관점이 있다.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현대사회로 올수록 사람들은 오히려 여러 사람이 모

이는 집합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즉 일은 혼자서 하지만 쉬는 시간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어한다. 따라서 극장은 계속 살아있는 것이고, 음악회 역시 계속 늘어난다고 설명한다. 이런 측면들이 복합되어 구체적인 사실을 만들어 낸 것이다. 그래서 미국의 청중은 실내악단 20개를 지원할 수 있는 청중에서 576개를 지원할 수 있는 청중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예는 정보사회의 결과물이 평균적인 수준을 바꿀 뿐이지 고급 문화를 완전히 말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는, 그냥 내버려둬도 20개의 실내악단을 576개로 늘어나게 만드는 청중으로 성장하는 것인가, 또 누구나 내버려둬도 일하는 시간에는 혼자 일하고 쉬는 시간에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 인간적으로 살고 싶어하는가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은 것이다. 결국 이 새로운 시대의 생활조건과 매체 조건에 맞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과 감성을 사회적으로 다시 교육하는 수 밖에 없으며,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백승길 선생께서 말씀하신 문화교육이라는 개념이 어떤 새로운 예술적 감상법을 가르쳐주는 것은 아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문화교육이라는 것은 새로운 변화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을 말한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우리 나라처럼 문화감수성이 약한 사회에서는 전자제품이 생기면 전자오락을 하고 비디오가 생기면 포르노를 보는 식이다. 더 상승될 수 있는 매체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은 사회구조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이다. 따라서 단순히 고급문화, 대중문화라는 개념상의 상대적 비교가 아니라, 정보화사회의 전체적인 매체구조 속에서 전적으로 새로이 살아가는 방법을 찾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한상복 : 통일문화정책에 대해서 권영민 선생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문화와 우리 문화는 상당히 이질화되어 왔다. 우선 생활 양식이 그러하고, 또 이념이나 제

도 등이 그러하다. 이 기회에 이런 문제를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대중문화라든가 미디어 등과 연결시켜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북한은 차치하고라도 연변에서 온 사람들의 경우만 보더라도 그들이 지금 우리 나라에 와서 우리 문화를 접하고 나서 어떤 거부감도 느낄 것이고 별세계에 온 듯한 느낌도 가지리라고 생각 된다. 하물며 남북이 통일되어 특히 문화의 통일을 추구한다고 할 때 어떠한 것을 고려해야 될 것인가, 또 우리의 생활양식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고 본다. 여기에 대해서 권영민 선생이나 김경웅 선생께서 말씀해 주시길 바란다.

김경웅 : 사실 현재 북한의 문화는 현실정책적인 측면에서 보면 비관적인 시각으로 흐르는 측면이 강한 것이 사실이다. 이를테면 올해 1월 3일에 김정일 담화라는 중요한 담화가 발표되었는데, 만약 그들이 그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면 북한 주민들에게는 물론이고 외부에 그 정확한 내용을 제때에 공포해야 될텐데 심지어는 북한 내에서도 약 한달이 지난 2월 4일자 방송에 '중요한 담화를 발표하겠습니다.'라고 하고 하루종일 그것을 방송했다. 그래서 우리측에서는 처음에 상당히 긴장했었지만 사실 내용상으로 아주 새로운 것은 아니었고 기존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었다.

그 내용 중에, '우리는 문화일반으로부터 사상을 분리해내고'라는 말이 있었다. 그런데 이 말은 문화와 사상이 떨어져 있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사상을 문화의 위에 올려놓는, 즉 사상성을 더욱더 강화하는 논리였다. 이런 기본 논리 하에 이루어지는 북한에서의 담화는 문화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실제 정책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기준이 되는 척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정책을 적용시키는데 있어서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다. 지금 본인이 기준이 되는 척도를 말씀드렸지만, 회담 중 양쪽에서 하는 이야기를 보면 실제로 우리와 타협하는 과정이나 북쪽에서 제안하는 내용에 제약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면이 있다는 것을 추가로 말씀드리고자 한다

뉴미디어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오히려 오늘 여기에 와서 상당히 많은 공부를 한 입장이다. 단지 본인이 알기로는 북한에서도 뉴미디어, 전자나 컴퓨터에 대한 관심이 많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성과도 올리고 있다고 한다.

권영민 : 남북한의 문화교류, 남북한 문화의 대비적인 성격을 생각해 볼 때 주목해야 될 아주 특이한 변화가 있다. 북한 문화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변화하고 있고 또 북한이 남한의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도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경우에는 사회주의 문화가 부르조아 문화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는 점을 해방 직후부터 60년대 초까지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말하자면 북한이 추구하고 있는 사회주의 국가건설과 사회주의 문화건설이라고 하는 주요 정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남한사회보다도 모든 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다. 그래서 문화적으로 사회주의 보다 훨씬 더 저급한 상태에 놓여있는 남조선을 빨리 해방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공공연하게 등장했던 것이다.

그런데 60년대 중반 이후에 한국이 산업화과정을 겪으면서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사회적으로 안정되면서 체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면에서 북한 보다 우위를 점하게 되면서, 북한은 문화의 우위성에 대한 논의를 70년대 이후에 이르러서는 그만두었다. 50~60년대만 해도 북한의 책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사회주의 문화의 우월성이라는 논의를 70년대 이후에 북한의 책에서 찾아볼 수가 없다.

북한은 70년대 이후 남한의 문화를 비판함에 있어서 사회주의 문화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남한의 문화가 정통성 또는 민족문화의 전통성을 전혀 갖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주로 시비 걸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80년대 이후에 북한은 남한의 문화에 대해 논의한 많은 글들을 공개적으로 발로 했다. 지난 85년 남북적십자회담 당시에 예술단의 교류가 이루어져 우리가 북

한에서 공연을 했고 북한공연단이 서울에 와서 공연을 했다. 그 때 북한 사람들은 남한예술단의 공개적인 평양공연을 보고 난 후, 많은 예술전문가들이 모여서 좌담을 하고 그것을 보고서로 제출했다. 그 내용을 보면 문화적 가치 우월성의 문제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남한의 문화가 철저히 부르조아 문화에 의해서 민족적 정통성을 왜곡하고 있고 서양의 저급한 문화에 물들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70년대 이후에 북한사회에서는 그들이 이야기하는 소위 주체의 이념에 근거를 두고 남북한 중 어느 쪽에서 문화적 정통성을 갖고 있는가 하는 방향으로 문화에 대한 모든 논의를 진행시켜 남한의 문화에 대응해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에는 70년대 이후에 이르러서야 자본주의 체제하에 성립된 남한의 자유주의적 문화가 북한문화 보다 우위에 있다는 논쟁이 이루어 졌기 때문에 서로 코드가 맞지 않았던 것이다. 이것이 항상 문화교류에 문제가 되었다. 그 쪽 사람들은 정통성 있는 그들의 문화를 내놓겠다고 하고 우리는 가장 개선적인 문화를 내놓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둘 사이의 충돌이 야기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앞으로의 문화교류가 이런 식으로 계속된다면 결코 간단하지 않은 작업이 될 것이고 많은 난관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문화교류에 합의한 이상 이제는 우리가 북한에게 보여줄 것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요구하는 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좋은 예를 들자면, 우리간 내년을 책의 해로 정했는데 북한의 도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우리는 전혀 모른다. 북한이 1년에 간행하는 책은 모두 200종 안 밖이다. 그것은 우리 나라의 대형 출판사가 1년에 간행하는 책의 종류수와 비슷한 정도의 소량이다. 그런데 그것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몇 년도 출판물 총목록이라는 이름 하에 조그만 책자로 발간한다. 또한 그 책자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고 또 소량 소품종화 하여 다량으로 간행, 배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을 우리는 잘 모르고 있다. 내년 책의 해에 우리가 남북한 출판계를 잘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필요에 따라 북한의 책을 많이 요구해야 한다. 자랑하기 위한 끊임없는 경쟁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계속 요구하면서 접근하는 방법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남북문화의 우위성을 이야기할 경우 본인이 늘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북한문화에 대해서도 배울 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 배울 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이 자랑하는 주체성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문화적 정통성이라는 긍정적인 개념으로 이해한다면,—물론 북한에서는 주체성이나 정통성이라는 개념이 김일성주의로 인해 모두 왜곡되기는 했지만—사실 해방 이후에 우리는 너무 개방된 외래문화의 물결 속에서 정통적인 민족문화가 있는지 없는 조차 모를 정도로 혼란을 거듭해왔던 것이 사실이므로 우리가 북한을 생각해서 우리의 문화정책, 혹은 문화의 전체적인 방향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이런 식의 상호의존적 모델로 문화적 교류가 가능해진다면 수준이 어느 정도 평준화될 수 있고, 남북문화의 통합가능성도 모색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또한 남북한의 갑작스러운 제도적 통합에 대비하여 문화의 영역에서는 상당히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남북한의 상호 이해를 증진할 수 있는 진정한 교류방안이 단계적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상복 : 권영민 선생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일방적으로 우리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그쪽에다 요구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쪽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러할 것이므로 그 문제에 대해 기본적으로 갈등이 생길 것이다. 통일문화에 대해서도 그러할 것이고 조금 전에 제 2주제에서 말씀하신 문화정보처리의 경우에도 그러할 것이다. 문화생산자 즉 문화창작을 하는 사람이나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입력

처리해서 관리를 할 경우에 사용자의 문화와 기술간에 갈등이 생길 수 있다.

이기성 선생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미디어 산업계에서 만들어 보내주는 대중문화를 수용자 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받게 된다. 이런 점에 있어서도 갈등이 있을 것 같다. 미디어 산업이 이끄는 방향으로 대중은 일방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와 관련해서 강현두 선생께서 말씀해 주시겠다.

강현두 : 권영민 선생께서 말씀하신 남북한의 통일문화에 대해서 미디어 측면에서 본인의 생각을 보충해서 말씀드리겠다.

언젠가 우리 나라에서는 뉴키즈언더블럭 현상으로 사회가 떠들썩한 적이 있다. 물론 일차적으로는 공연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조금 넓게 생각해 보면 그것은 새로운 현상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새로운 세대의 문화라고 볼 수도 있고 미디어 측면에서 보자면 미디어 문화가 수반하는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다.

미디어는 언제나 새로운 사고, 새로운 행동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새로운 스타일의 사람들이 만들어지는데, 또한 사회변화에 따라 거기에 맞는 미디어가 있어야 된다. 미디어가 고정되어 있으면 사회는 변화할 수가 없다. 사회가 변화할 경우에 거기에 적절한 미디어를 쓰지 않는다면 그 사회는 제대로 기능할 수 없게 된다. 또 새로운 미디어가 나오면 사회구조도 거기에 맞게 바뀌게 된다. 이렇게 변화해 온 것이 인류역사라고 볼 수 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디어는 개방적 미디어이다. 개방적 미디어 하에서는 폐쇄적 사회가 존재할 수 없다. 어느 사회나 발전하기 위해서는 발전에 상응하는 미디어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 미디어를 수용해야 되고, 그것이 새로운 미디어로 자리잡는다. 새로운 미디어가 나오면 새로운 종류의 인간이 탄생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본인은 북한에서도 새로운 종류의 인간, 개방적 인간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본다.

그런데 우리는 대개 올드미디어의 범위에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 것 같다. 왜냐하면 현재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들이 모두 올드미디어 세대이기 때문에

자연히 올드미디어의 논리로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북한이 많은 저항을 하고 있지만 그들 역시 전파시대, 전자 미디어의 시대로 갈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현대사회 시스템은 움직여지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간적인 차이는 있을 테지만 그곳에도 남한과 같은 새로운—우리에게는 뉴미디어가 아니지만—미디어 시대가 올 것이다.

미디어 자체는 고유한 특성과 문법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는 미디어 룰을 따르지 않을 수 없다. 알다시피 텔레비전은 움직이는 매체이다. 그런데 텔레비전에서 가만히 서서 노래부른다면 얼마나 우습겠는가. 움직여야 되고 춤도 추게 되는데 그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이로 인해 선비문화에 비견될 정도로 조용한 우리의 문화가 흔들리게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민일 것이다. 가만히 앉아서 사색할 수 없고 움직여야 한다. 옛날 같은 문화는 존재할 수가 없게 된 것이다. 또 칼라 TV를 보자. 색채가 과장되기 마련이며 은은한 빛깔이 아닌 현란한 빛깔이 등장하게 된다. 미디어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이며 또 그것이 문화를 만들어 낼 것이다. 그와 같은 새로운 미디어를 북한도 거역할 수가 없을 것이고, 그러한 변화에 따라 자연히 비슷한 종류의 인간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본다. 길게 본다면 남북한이 미디어 걸쳐라는 면에서는 동질화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인의 생각이다.

김태승 : 문화예술정보를 정보시스템이라고 한다. 시스템을 설계할 때 고려해야 되는 사항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USER-REQUIREMENT이다. 즉 이용자의 요구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철저히 서브웨이해서 시스템 설계를 하게 되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한다.

가령 서울에 있는 화물을 부산이나 광주로 보내려 할 때, 고속도로를 거쳐야 하는 것처럼 데이터베이스는 온라인 네트워크나 망을 거쳐야 한다. 또 아주 성능이 좋은 컴퓨터는 화물트럭에 비유될 수 있을 것이다. 짐을 옮길 수 있는 운반수단과 시골까지 완전히 포장되어있는 원활한 도로망이 문화예술정보 이

용자들의 관심이다. 데이타베이스, 문화예술정보라는 것은 그와 같은 망과 원활한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실어 날라야 하는 짐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과기처나 정부에서 망과 트럭을 도입하고 성능을 향상시키는데 급급했다. 도로도 닦았고 화물트럭도 좋은 것으로 바꾸었는데 이제 실어 나를 짐, 즉 데이타베이스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문화예술분야의 각 장르별로 고유의 정보를 입력시키고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해서 그와 같은 혜택을 각 지역이나 분야, 계층에 구애됨이 없이 원활하게 유통시켜야 하는 것이 정보관리의 목적인 것이다.

이중한 : 본인은 논문에서 눈에 보이는 한도 내에서의 전망만을 다뤘는데 사실은 보이지 않는 전망 중에 다루고 싶었던 것이 한가지 있었다. 뉴미디어에 대해 대개 간단히 하이테크와 하이터치라는 이야기를 한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하드웨어를 만들어 놓아도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 하이터치란 사람들이 사용하는 측면을 말한다. 아무리 컴퓨터 기술이 발전해도 장사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 그것은 하이터치의 측면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컨대 IBM에서는 기술적 발전단계에 있는 제품을 3,000개쯤 창고에 처박아두고 있다는 것이 정식자료에 나타나 있는데, 13,000개는 하이터치에 막힌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이테크는 하이터치를 공략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은 컴퓨터의 사용절차를 아주 귀찮아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하이터치의 문제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 막대한 인원들이 매달려 있고 그래서 터치스크린이란 것이 개발되었다. 또한 아직 판매되지 않고 있지만 컴퓨터의 복잡한 사용절차를 거치고 않고도 리모콘으로 컴퓨터 전체를 조종할 수 있는 것이 현재 개발되어 있다. 비디오가 성공한 것은 TV와 결합되었기 때문이다. TV에 비디오를 내장시켜 놓고 거기에 리모콘을 덧붙임으로서 비디오가 확산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 컴퓨터가 성공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컴퓨터를 TV 속에 내장시키면 된다.

컴퓨터는 현재 모든 생활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까지 진척되어 있다. 프랑스에서는 이미 체신부에서 700만 가구에 컴퓨터를 무료로 공급하여 정보를 사용하고 있는 단계에 이르러 있다. 그런데 컴퓨터, TV를 모두 하나로 묶어 놓으면 세상이 하나의 미디어 속에 모두 들어가는 것이다. 그 때는 컴퓨터를 아는 사람만 사용한다는 개념이 없어지게 된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비디오 정책, TV프로그램 정책 등을 거론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때늦은 일인지를 깨달아야 한다. 이것은 전망이라 할 수 없으며, 지금 눈앞에 닥친 일인 것이다. 이렇게 보았을 때 우리는 혼합된 매체 앞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전망을 살펴보아야 한다.

권영민 : 강현두 선생께서는 미디어가 새로운 행동과 사고유형을 가진 인간을 만들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최근에 본인이 북한에서 발간된 잡지들을 검토하면서 발견한 사실이 있다. 아직 명확한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다.

하나는 북한의 소설들이 70년대 이후 철저하게 지킨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절대로 소설속 주인공의 갈등을 과장해서 묘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위대한 수령이 창조해낸 사회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는 공산주의적 인간형이라는 것은 삶에 아무런 갈등이 있을 수 없다.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할 수 있는 인간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소설에서는 그러한 갈등을 그려 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갈등이 개입되면 거의 영감처럼 머리 속에서 위대한 수령이나 지도자의 지침이 떠오른다. 어떠한 문제로 고민하는 와중에 갑자기 어렸을 때 수령이 자기 학교로 찾아와서 학생들을 다독거리며 한 이야기를 생각 해냈다는 것으로 모든 이야기의 갈등이 다 해결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이론이 지난 84년부터 공격당하기 시작했다. 내부에서 논쟁이 일어난 것이다. 그래서 공산주의적 인간형의 참다운 모습을 그려내기 위해서는 무갈등의 이론이 보여주는 고정된 인간으로는 안 된다는 비판이 일기 시작하면

서 거의 맹신적으로 믿어 왔던 창작의 원리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와 동시에 시에서의 서정성의 문제에 관한 논쟁이 엄청나게 확대되어 나타났다. 과거에는 혁명적 이념성만을 강조했는데 개인적 서정을 시에 어떻게 표출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 지난 84년부터 89년 사이에 북한에서 나오는 「조선예술」이나 「조선문학」 같은 잡지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것을 북한의 사회문화적인 개방화의 추세와 연관해서 판단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91년도, 92년도에 들어서 갑자기 매년 초에 소위 90년대 속도전의 창조라고 하는 새로운 문화적 슬로건을 만들어냈고 그러면서 사상강화를 시작했다. 북한의 대중가요 중에 ‘휘파람’이라고 하는 노래가 최근에 갑자기 중단되었다. 이 노래가 개방적인 풍조를 담고 있기 때문에 북한 전역에서 더 이상 방송하지 못하도록 금지시켜 버린 것이다. 그와 동시에 소위대중가요의 이념성에 관련된 논의를 다시 시작했다. 북한사회가 과거에 추구했던 80년대의 개방적인 추세가 독일의 통일, 동구권의 붕괴, 소련의 개방 등 외부정세가 변화한 지금 오히려 한 걸음 뒤로 물러선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폐쇄정책이 언제쯤 변화될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러한 미묘한 변화들이 북한사회, 문화계에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침언하고 싶다.

질문자 1 : 영등포에 사는 현기영이라고 한다. 본인의 질문의 요점은 문제의 원점 즉 문화환경의 변화와 문화전략이라는 문제제기로 돌아가는 것이 될 것 같다.

조금 전에 강현두 선생께서는 미디어 문화와 전파매체 문화가 도래하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남북한이 문화적으로 동질화되는 공동체문화를 추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것은 다시 말해 남북한 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문화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현재의 과도기적 문화현상속에서 일반대중들이 새로운 문화를 접했을 때 생길 수 있는 혼란이나 충격을 어떻게 조화롭게 소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어떠한 문화현상이 남의 것인지 내 것인지—아까 어느 분께서는 외국문화의

산성비라는 표현을 하셨지만—단기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기 때
문이다. 외국어를 여러 개 구사할 수 있고 외국문화에 대한 수용능력이 있는 사
람들에게는 새로운 문화가 거부감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런 자세
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번역을 통해 들어오는 새로운 문화에 대한 수
용의 자세가 나약해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이런 경우 앞으로 다가올 21세기에—백년후인 2099년까지도 21세기가
될 수가 있고 8년 후에 올 2000년대가 21세기가 될 수도 있는, 짧다면 짧고 길
다면 긴 과정 속에서—일반대중들이 새로운 문화를 수용할 때에 받을 수 있
는 충격이나 놀라움을 어떻게 조화롭게 수용할 수 있을까. 서양에서는 우리가
서양문화를 번역하고 받아들이는 것 못지 않게 우리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
으로 알고 있다. 외국 것이라고 해서 황색의 비 혹은 산성비라고 매도하는 것
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길 바란다.

강현두 : 외국 것을 받아들이는데 있어서 준비만 되었다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지
않는가 라고 하셨는데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한다. 외국문물을 유익하게 받아들
이는 문제는 별도의 문제이고 여러 가지도 논의될 수 있겠지만 공통적으로 생
각할 수 있는 부분만을 말씀드리겠다.

대중문화는 상품이다. 따라서 어느 나라이든 간에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사와야 된다. 우리는 백화점이나 시장에 외국물건이 많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
걱정을 한다. 그러나 우리백화점에서 외국물건을 팔 경우, 우리도 물건을 외국
에 팔고 있으므로 서로 교류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 하에 외국물건을 사지 않는
가,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물건을 외국에 하나도 못 팔고 외국물건만 사는 경우
라면 여러분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문화도 이와 마찬가지로이다. 만약
에 우리 문화산업이 없고 외국 문화산업에서 만들어진 것만을 우리가 사다 쓴
다고 생각할 경우 어떠한 형국에 이르겠는가. 문화 산업이 없을 경우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질문자 2 : 본인은 교수신문사에서 온 김상아라고 한다. 세 가지 정도의 질문을 드리겠다.

앞으로 뉴미디어시대가 되고 정보화시대가 되면 거기에 익숙한 새로운 인간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사오십대의 교수들은 전혀 다른 신세대의 인간을 교육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교육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대중매체나 뉴미디어에 대해서 약간의 거부반응까지 갖고 있는 교수사회에서 어떻게 적응해 나갈 것인지 궁금하다.

두 번째로는 정보화시대가 되면 컴퓨터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등이 발달하기 때문에 교수들의 연구시간이 많이 단축되고 그와 더불어 여가시간도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고급문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향수와 집착을 갖고 있는 교수들이 앞으로의 대중문화시대에서 여가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질문하고 싶다.

세 번째로는 강현두 선생께서는 앞으로 고급문화가 점차로 사라질지도 모른다고 말씀하셨는데, 고급문화가 대중 뉴미디어와 만나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길 바란다.

이중환 : 사실 가장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실적으로 이것은 구세대와 신세대의 문제만이 아니다. 문제는 기본적으로 세상을 보고 느끼는 감각이 전혀 다른 세대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데에 있다. 그런데 문화라는 것은 전혀 의사소통이 안 되는 사람들끼리도 함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기는 할 것이다. 현재 문화프로그램들을 보면 재미있는 점이 있는데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고 한방에 몰아넣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대는 가능한 한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을 선택하여 사는 단계에 왔다는 전제하에 창의력을 키워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직접 만드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남녀노소 구분 없이 같이 만들게 함으로써 감각을 통일시

켜 나가고 세대차까지 줄여보고자 하는 목표를 가진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세계 도처에서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지적하신 질문에 대한 문화적 대응도 이미 시작되고 있다고 답변 드리고 싶다.

강현두 : 사실 어려운 질문이다. 앞으로의 여가생활에 있어서 고급문화는 사라지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조금 과장해서 말씀드리자면 고급문화가 결국 대중적 문화로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사실 우리들이 얻은 자유스러운 시간이나 여가는 몇 천년동안 싸워서 얻어낸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얻은 여가를 다시 뺏길 위험성이 많다. 또 문화정책은 여가정책과 밀접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에게서 여가정책이라는 말이 없었다. 그렇지만 국가의 여가정책, 혹은 대중문화라고 바꾸어 말할 수도 있는 여가정책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가령 비디오라는 미디어는 현재 500 - 600만대 보급되어 있는데 이것은 80년대 TV수상기 보급과 맞먹는 엄청난 수치이다. 그 럽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디어에 대한 정책이 없다. 현재 골목마다 비디오 가게가 있다. 비디오는 극장과 같은 아트센터가 되었고 문방구 주인이 극장 주인이 되었고, 교육하는 선생이 되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 다른 매체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결국 여기에 대한 정책이 무정책일 때 어렵게 얻은 여가도 다시 모두 빼앗기는 셈이 된다.

한상복 : 오늘 여기서 논의된 주제인 통일문화, 정보관리, 지적소유권인 저작권, 문화 산업, 여가나 대중문화 등의 주제는 당대에 시작된 문제이다. 남북통일과 통일문화를 이야기한 지도 얼마 되지 않는다. 또 대표적인 대중문화 매체로 다루어지는 TV는 60년대에 우리 나라에 처음 보급되었다. 비디오나 컴퓨터로 정보관리를 한 것도 얼마 되지 않았다. 우리 문화의 역사는 굉장히 길지만 지난 60년대, 70년대, 80년대의 문화의 변화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다. 21세기는 정보화시대일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등 모든 것이 엄청나게 변화

된 시기일 것이다. 21세기는 가까운 미래이다. 이렇게 빨리 변화하는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적응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본다. 지금도 나이든 사람들과 젊은 사람들 사이에는 문화에 대한 적응능력의 차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것이다. 우리가 여기에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를 생각해 볼 때, 오늘 여기에서 행해진 논의를 토대로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러한 문제들이 논의되어 변화하는 미래에 대처해 나가는 지혜가 생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 대토론회를 이것으로써 마치겠다.

□ 부 록

1. 문화발전연구소 개발정책연구보고서 내용요약/217
2. 특수자료실소장 영상자료목록/253
3. 개정 북한 신헌법/289

1. 문화발전연구소 개발정책연구보고서 내용요약

목 차

1. 분단국의 통일과 문화예술 및 문화예술인의 통합에 관한 연구
—독일의 경우를 중심으로—/218
2. 문화예술인 실태조사/220
3. 한국 전통공예의 세계시장화를 위한 연구
—전통공예의 현황과 산업화를 위한 과제—/225
4. 문화유통시장 개방에 따른 대처방안 연구/230
—미술품 시장을 중심으로—/228
5. 도시 문화환경 개선방안 연구/230
6. 사적 복제에 대한 부과금 제도 연구
—문예진흥기금 확보대안으로서의 접근—/235
7. 문화예술 전문기술인 자격인증제도 연구/238
8. CATV를 통한 국민문화 창달 및 진흥방안에 관한 연구/241
9. 국민 독서생활화 방안 연구—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246
10. 한국종합예술학교 연기원 설립·운영방안 연구/248
11. 1992년도 연구 과제/251

1. 분단국의 통일과 문화예술 및 문화예술인의 통합에 관한 연구 - 독일의 경우를 중심으로 -

* 연 도 : 1991년

* 연구진 : 최정호, 이남복, 김진권,
이상복, 김상춘 외 4명

1. 연구 목적

남북한의 통일에 대비한 민족의 문화적 이질화 극복 방안 모색

2. 연구 대상

1972년부터 1991년까지 20년간의 독일 문화예술 및 문화예술인의 통합에 관한
제문제

3. 연구 내용

1) 동독의 문화 정책

- ‘당의 지도적 역할’의 교의를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지식인, 노동자 및 인민
대중의 교화를 요구함(1957년 사회주의 노동당선언)
- 문화정책이 ‘사회주의적 문화혁명’을 수행하기 위한 도구이므로 사회주의 국
가를 건설해 가는 과정에서 사회생활의 포괄적인 과제를 수행해 나가는 일을
포함함
- 정치, 경제, 문화의 통일을 기초로 하고 있음
- 소련과 사회주의 국가와의 우호관계를 돈독히 하여 사회주의와 제국주의 사이
의 끊임없는 투쟁의 일환으로 이용

2) 서독의 문화정책

- 1986년 5월 동서독문화협정 체결 이후 정부, 민간 부문의 문화교류가 증대됨

- 상호간의 문서와 박물관 소장품 반환
- TV, 라디오, 신문 등을 통한 문화적 파급효과 창출(주로 서독측의 동독에 대한 일방적 파급)

—문화정책 목표

- 통일독일의 '문화국가'로서의 위상 정립
- 유럽통합에 기여
- 양 독일간의 동반자적 협력에 기초한 문화교류
- 중앙집권적 문화관리 체계에서 지방자치단체 체계로의 이관

3) 통독 이후 신연방주의 문화적 상황

① 무대예술 부문

- 구동독의 많은 극장들이 개인에게 매각 또는 문화활동을 중지
- 사회주의통일당 정권 하에서 관객 확보에 일익을 담당했던 학습프로그램과 문화활동간의 긴밀한 연계가 사라짐
- 구동독의 보수체계가 재정지원 체계에서 경쟁체제로 전환

② 어문학예술 부문

- 문학분야를 포함한 제반 예술분야에 대한 구동독의 감시 체제가 포면에 드러남에 따라 문학의 도덕성 문제가 대두

③ 영화예술 부문

- 구동독의 영화예술을 독립적으로 제작하던 '데파'(DEFA)의 해체와 함께 구동독의 영화예술이 해체됨
- 신연방주의 국영 TV들이 '데파'의 보전작업을 직접 지원

4) 동서독 통일에 따른 통합문화의 평가

- 동독인의 생활체계 변화
- 전체로서의 독일을 조감하는 새로운 문화적 지도 구성이 요구
- 독일은 통일과 함께 사회주의 사회였던 동독을 현대적 의미의 공동체로 수용

하여 발전시켜나갈 기회를 갖게 되었으나 동독을 역사 속에 매몰시키는 대가를 치름

5) 구서독의 통일정책

- 서독의 동방정책(Ostpolitik)은 예측 가능한 장래에 동서독의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전제로 하고 있었음
- 동독의 존재를 승인하고 두 독일간의 경제적, 문화적, 인간적 교류를 시도하고, '장기적인 접촉을 통한 변화'를 정책목표로 삼음
- '하나의 독일'로 이행하는 '통일정책'이 아니라 '두개의 독일을 전제로 하는 정책(Zweistaatslichkeit)'
- '한 민족, 두 국가'의 이념을 현실화하기 위한 문화정책
공동의 전통을 계승하는 하나의 '문화민족'(Kulturnation)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통로에 의한 문화교류
- 서독이 동독을 국가적 실체로 인정함으로써 양독간에 경제적, 문화적, 인도적 교류를 위한 물적, 인적, 통신의 통로가 열렸기 때문에 폭넓은 접촉이 가능했음
- 양독간의 폭넓은 접촉의 축적이 동독시민으로 하여금 동독정권의 취약성, 허구성, 허위성을 보편적으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밑으로부터의 체제의 붕괴를 가능하게 했음

6) 정책제안

- 남북문화의 이질화 극복을 위한 정책이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 '북한문화'에 대한 이념적, 현실적 차원에서의 전문적인 평가 작업과 함께 그에 대한 국민교육적 차원에서의 계몽
- 통일 후 북한주민을 위한 정치문화교육프로그램의 개발
- 통일 후 북한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통일 후의 고용 문제, 선별 문제, 실업대책 문제, 재교육, 재연수 문제에 대한 대비책 마련

—북한에서 숙청, 말살된 월북 문화예술인들과 그들의 활동 및 업적에 대한 평가문제가 제기되어야 함

—월북 문화예술인들의 해방 전후에 걸친 행적과 활동에 대한 조사작업

2.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 연 도 : 1991년

* 연구진 : 최평길, 강용기 외 7명

1. 조사 목적

—문화예술인에 대한 실태분석을 통해 문화예술인의 상황을 서술하려는 목적

—문화예술에 대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정책자료 제공

2. 조사 대상

—모집단 : 한국 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회원(1990년 12월 31일 현재 44,728명)

—조사표본 : 3,300명

3. 조사 기간

1991년 8월 19일부터 1991년 12월 20일까지

4. 조사 내용

1) 생활환경 및 경제적 여건

—주거형태 : 단독주택과 아파트 84%

—주택소유 유형 : 자가 77%, 무주택 23%

—정규직장 유무 : 정규직장 근무 72.4%

—직업종류 : 교수와 교사 33%, 문화예술단원, 중소기업, 회사원, 공무원 순

—월평균 수입

- 71만원에서 100만원이 가장 많고(25.8%) 150만원 이상도 상당수(19.9%)
이나 40만원 이하도 역시 상당수(20.8%)를 차지하고 있음
- 활동분야별로는 디자인, 무용, 문학, 조형예술, 양악 연예분야가 비교적 수입액이 높은 반면, 연극, 영화, 국악 부문은 저조한 편임
- 예술활동 관련 수입은 월평균 10만원 이하가 대다수

2)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태도

—문화예술인이 인식하는 발전 분야

- 음악(30.5%), 문학(14.5%), 연예(13.6%), 영화(13.3%)순
- 대체로 자기가 속한 분야를 가장 발전된 것으로 생각

—문화예술인에 대한 사회적 대우

- 활동별로 볼 때 디자인, 양악이 긍정적이며 나머지는 부정적
- 가장 부정적인 경우가 국악

—생활수준에 대한 인식

- 대부분의 분야에서 보통이라고 응답하고 있으나 국악의 경우 가난한 편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대다수

—작품발표 기회

- 부족하다고 한 경우가 절반 이상
- 특히 국악 분야는 매우 부족

—직업만족도

- 대부분 만족(87.6%)

—창작활동에 대한 장애 요인

- 정책적·제도적 지원 미비, 사회적 인식 부족, 경제적 여유 부족이 주요인

3) 분야별 예술활동 실태

① 문학분야

- 활동부문 : 시(41.1%), 수필(19.7%), 소설(16.7%) 순
- 첫 활동 방식 : 전문지나 동인지 추천이 가장 많고 문학잡지 및 동인지 발표, 신춘문예에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음
- 통산 발표 작품 수 : 1인당 약121편
- 부문별로는 아동문학이 가장 많고 시, 시조 순

② 조형예술 분야

- 활동부문 : 서양화(31.1%), 사진(28.8%), 한국화(14.4%), 조각(8.9%) 순
- 첫 활동방식 : 공모전 출품이 과반수 이상(52.7%)

단체전 출품 비율이 높은 반면 개인전 발표는 소극적

—통산 작품활동

- 서양화가 가장 빈번(3.8회), 한국화, 판화 등이 비슷한 수준
- 개인적 활동은 매우 소극적
- 평론을 제외한 다른 부분의 간행활동은 극히 미미함

—연간 작품활동

- 한국화, 서양화, 공예 순
- 1인당 평균 발표 작품 수는 18.3점

③ 디자인 분야

- 활동부문 : 건축디자인(37.3%), 시각디자인(30.1%), 산업디자인(25.3%) 순
- 첫 활동방식 : 공모전, 단체전 출품이 대부분

—통산 작품활동

- 한번도 개인전을 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82.6%)
- 시각디자인, 산업디자인을 제외하고는 거의 전시활동이 없음
- 가장 활발한 전시활동을 하는 부문은 산업디자인(1인당 15.3점)

④ 양악 분야

- 활동부문 : 성악(29.8%), 건반악(22.5%), 현악(18.2%), 관악(11.2%), 작

곡(10.2%) 순

—첫 활동방식 : 주로 단체발표 및 단체입단

공개적인 경쟁 방식이 적음

—통산 작품활동

- 개인작품발표회수는 지휘부문이 가장 많고(140회), 관악, 작곡, 건반악 순
- 창작작품활동 수는 작곡이 가장 많은 37.6편을 차지하고 있으나 현악은 4.7편, 평론은 2편을 차지하고 있어 부문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한편의 창작 작품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82.8%)

—연간 작품활동

- 타악 부문 2.8편, 관악 1.8편, 성악 1.1편, 작곡 1.1편
- 전체적으로 개인작품활동이 저조함
- 창작작품은 작곡이 10.6편이고 그 외에는 거의 없음

⑤ 국악 분야

—활동 부문 : 기악이 가장 많고(35.2%), 민요, 농악 순

—첫 활동방식 : 단체발표 및 단체입단이 가장 많고 개인발표와 국내 대회 입상이 그 다음 순

—통산 작품활동

- 부문별로는 기악이 가장 많고(86.9회), 시조(11.1회), 민속극(8.6회) 순이며 국극, 농악 부문은 한 회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 개인발표는 거의 없음
- 단체작품발표는 개인 당 통산 20회 정도
- 창작작품 수는 기타 부문에 가장 많은 27.2회, 시조, 농악, 민요 등은 창작 활동이 거의 없음
- 평균 통산 창작작품 수는 3회 미만으로 저조한 편

—연간 작품활동

- 기악부문 만이 4.6회, 그 외 부문은 거의 없음, 1인당 3회 정도
- 창작작품은 무용(2편)을 제외한 다른 부문은 거의 없음

⑥ 무용분야

—활동부문 : 한국무용이 대부분(60.6%)

—첫 활동방식 : 주로 단체발표 및 단체입단

—통산 작품활동

- 한국무용, 발레, 현대무용이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평균 13.9편
- 개인작품발표회는 1인당 13.9회
- 단체발표회는 1인당 평균 14회
- 전혀 창작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

—연간 작품활동

- 개인작품활동은 거의 모든 부문이 1회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 단체발표회수는 한국무용, 발레, 현대무용이 거의 비슷하게 3회 정도
- 창작작품 수 : 발레가 2.7편, 현대무용이 2.0편, 한국무용은 한편에도 미치지 못함

⑦ 연극 분야

—활동부문 : 연기부문이 61.6%

—첫 활동방식 : 단체입단이 60.7%

—통산 작품활동

- 스텝이 가장 활발하고(54.4편), 연기, 기획 순 이며, 전반적으로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음
- 1인당 평균 37.3편

—연간 작품활동 1인당 평균 4.7편

⑧ 영화 분야

—활동부문 : 연기(50.6%), 스텝(32.2%), 감독, 평론, 기획 순

—첫 활동방식 : 개인 추천을 통한 경우가 대부분

—통산 작품활동

· 스텝 170편, 기타 150편, 감독, 연기 순

· 1인당 평균 80편

—연간 작품활동

· 평균 4편

· 연기, 스텝, 감독 순

⑨ 연예 분야

—활동부문 : 연주(46.6%), 가수(17.0%), 무용(17.0%)

—첫 활동방식 : 악극단, 업소출연이 대부분(74.2%)

—통산 작품활동

· 연기부문이 154.3편으로 가장 많고 창작, 무용 순

· 개인적으로는 창작작품이 거의 없는 경우가 과반수

· 연간 평균 4편 정도 창작

5. 연구결과에 대한 의견과 제언

—문제점

· 분야별 문화예술인 회원 명부가 부정확

· 문화예술인들의 주거 안정도가 낮음

—문화예술인들의 작품발표 및 창작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경제적, 제도적 지원 강화와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사회 일반의 인식고양을 위한 조치가 수반되어야 함

—분야별로 볼 때 국악인들이 다른 예술인들에 비해 제반 예술활동 여건에서 현저히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으므로 국악인들의 예술활동 여건 개선을 위한 정

책 수립이 시급함

3. 한국 전통공예의 세계시장화를 위한 연구 —전통 공예의 현황과 산업화를 위한 과제—

* 연 도 : 1991년

* 연구진 : 정명호, 김도경, 최종현, 이학동 외 3명

1. 연구 목적

- 현대화, 도시화에 따른 생활 양식의 변화에 의해 급속히 사라져가고 있는 전통공예의 보존, 계승을 위한 방안 제시
- 전통문화의 보급 및 전통공예가의 사회 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한 전통공예의 산업화 및 세계시장 진출 방안
- 지역별로 특성 있는 전통민속공방촌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

2. 연구 방법

- 전통 공예품 생산지에 대한 현지 조사 및 문헌 조사

3. 연구 내용

1) 전통공예의 문제점

- 현대화, 도시화에 따른 전통공예에 대한 수요 감소 및 수요 감소에 따른 공급 감소와 고가품화
- 가내 수공업적 형태에 의존하므로 서구의 기계 및 화공공예에 비해 경쟁력 상실
- 기능보유자들의 고령화에 따른 계승인력의 부족

2) 전통공예의 현황

—정부의 문화재보호 정책

- 1962년 문화재 보호법 제정, 1964년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 1973년 전승공예대전 개최
- 30종 42명의 중요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나 후보자 14명, 23종 27명의 지방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등 총 83명의 기능보유자 지원
- 후진양성을 위해 이수자, 조교 강사제도 운영(현 18명)

—전통공예의 분류와 실태 분석

- 138종(경국대전 수록) 중 현재 55종 보존
- 관모공예, 섬유공예, 토도자(土陶磁)공예, 목칠공예, 금속공예, 초고(草沽)공예, 제지공예, 골각공예, 피혁공예, 염색공예로 구분
- 공방은 공예의 특성에 따라 다르나 가내수공업 형태로 유지되고 있음
- 공방은 공예의 특성에 따라 규모상 차이가 있으나 실제 필요로 하는 면적과 인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매우 영세한 실정임
- 각 공예의 역사, 용도, 재료, 현황 등 분석
- 중요 전통공예의 제작 실태, 유통경로 분석(25종)

3) 전통공예 계승의 문제점

—생활양식의 변화에 따른 수요의 감소와 장식, 기호품화

—계승인력의 부족 및 계승체계의 낙후

-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의 평균연령이 68세로 후계자 양성이 절실하며, 이들에 대한 개별적 양성은 한계가 있음
- 계승자의 대부분이 인척, 또는 직계로 구성
- 정규교육 및 특수기술, 이론 등의 전문교육이 없이 직공관계에서 기술습득
- 계승자에 대한 지원이 거의 없어 지원을 기피

—작업공간(공방시설)의 확충이 절실히 필요

4) 전통공예품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활성화 방안

—유망종목 제시 : 옷칠, 도자기, 지물(한지), 유기 직조(삼베, 모시), 금은 입사
공예 등

—전통공예품의 산업화

- 관광상품화 : 전통공방을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및 판매
- 상설전시관 건립 : 홍보, 계몽, 작품의 비교 평가
- 계승인력의 육성 : 계승인력에 대한 정부의 지원 확대
- 대학에 전통공예학과 설치
- 유통체계의 개선 : 주문생산 위주에서 탈피, 시장 유통체계로 전환
- 기술개발 및 품질 향상 : 제작공정의 개선 및 연계공정화
- 수출상품화 : 상대국에 대한 시장 조사, 기호도 조사, 홍보활동, 수출촉진책
등 정부 및 관계기관의 지원이 필요

5) 전통 민속공방촌 설립 방안

—전통민속공방촌 설립의 필요성과 의의

- 전통공예의 기반인 농촌의 붕괴로 인해 발생한 문제점 해소
- 전통공예의 산업화 및 유통체계의 개선
- 전문교육의 시행
- 관광, 홍보를 위한 전시관 건립

—전통공예촌 건립의 장단점

- 전통공예가 농촌을 기반으로 발생, 보존되어 왔고 그 지역의 지리적 여건,
생활환경 등 향토성을 가지고 있어 집단화에 따른 원형훼손의 우려
- 생활근거지를 떠나기 꺼려하는 인간문화재의 성향에 어긋남
- 집단화에 따른 관련공예의 유기적 연결, 공정과정의 개선, 집단 창작으로
인한 공예의 발전 효과
- 유통체제 개선, 관광상품화를 통한 판매 증대

—공방촌 조성 방안

- 공방촌 조성에는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소모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미래의 교통망, 여가지대(관광지), 산업지대, 대도시와의 연계 등을 고려해야 함
- 현재 삼성동 전통공예관 부지에 공방 및 전시관 조성 방안이 단기적으로는 가장 타당
- 각 지역별로 특화하여 소규모 공방단지 조성

4. 문화유통시장 개방에 따른 대처방안 연구 - 미술품 시장을 중심으로 -

* 연 도 : 1992년

* 연구진 : 안병영, 서기훈, 유평준, 배득중

1. 연구 목적

국내의 미술품유통시장 개방에 따라 미술품시장의 건전화를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처방안의 모색

2. 연구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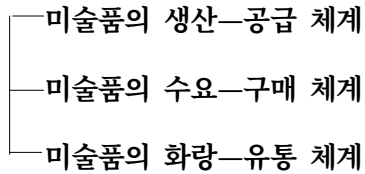
1) 문화유통시장 개방 시나리오

- 경제수준의 향상과 수입개방에 따라 이국정서에 프리미엄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갖추어진 상태
- 미술시장의 규모가 작고 비공개적이므로 외국 화랑의 단독 한국 진출이 불리할 것이며, 따라서 외국 화랑은 기존 화랑과의 제휴 형식을 취할 것임
- 외국작품에 대한 감정능력이 부족하고 보험제도가 미비한 형편이므로 대부분의 명품거래가 외국에서 이루어지는 이중적 구조가 정착되기 쉬움

2) 미술품 유통시장의 작동 메카니즘 파악을 위한 체계적 모형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형

- 미술품 유통시장을 구성하는 세 개의 하위체계



- 이 세 가지 하위 체계는 순환 속도가 다른 각각의 고리를 형성
- 통합체계를 이루고 있는 순환 고리 중에 어느 것이 지배적인가에 따라 미술품 유통시장의 판도가 달라짐

3) 미술품 유통시장 개방의 영향

① 미술시장의 개방이 생산—공급 하위체계의 미치는 영향

- 미술품 수입개방으로 인해 국내 미술품시장의 재고량이 증가
- 미술품의 전반적인 가격 하락
- 국내 작가들의 창작의욕의 활성화
- 투기 위주의 미술품 수요—구매 체계가 건전해질 수 있음

② 미술시장의 개방이 수요—구매 하위체계에 미치는 영향

- 기존 미술애호가들에게 다양한 작품을 접할 기회를 제공
- 미술품 구매의사를 증폭시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음
- 국내작품에 대한 투자수익률을 불확정적이게 만들 수 있음
- 문화소비의 역분배가 증폭될 수 있음

③ 미술시장 개방이 화랑—유통 하위체계에 미치는 영향

- 상업화랑의 이윤추구
- 화랑업계의 문제점들(느슨한 거래, 비공개적 거래, 전근대적 호당가격제 등등)이 증폭됨
- 저질 미술품의 수입
- 위작(偽作) 수입

4) 정부의 대처 방안

① 미술품의 생산—공급 변화에 따른 대처 방안

—교육, 훈련기회의 확대

- 외국 미술교육자의 초빙
- 새로운 미술교육법의 수입
- 기존 공공미술관의 교육기능 강화

—제작기회의 확대

- 공동작업실 설치 또는 작업실 임대료에 대한 쿠폰제 도입
- 정보센터의 설립과 적절한 운영

—등단, 발표기회의 확대

- 전속작가제의 정착 권장

—판매기회의 확대

- 미술시장 부양
- 해외진출 지원

—작품의 질적 확대재생산의 기회 확대

- 평론의 건전화와 활성화

② 미술품의 수요—구매 변화에 따른 대처 방안

—미술관법의 실효성 확보와 공공 미술관의 기능 강화

—미술품 투기 억제

- 양도소득세 실시와 다른 정책을 연계

③ 화랑—유통 체계의 건전화를 위한 대처방안

—미술품 거래의 양성화

- 사회의 건전화
- 경매제도의 정착 지원

—위작 방지와 감정능력 배양

- 단기적으로 외국의 감식가를 활용

- 장기적으로 국내 감정인 양성

- 저질 작품의 수입 방지

- 「미술품 소비자 보호」 잡지 간행

- 그 밖의 사항은 자율적인 시장기능에 위임

- 미술품 유통시장의 전문화

- 전문 큐레이터 양성 방안 : 대학에 해당학과 설치, 특수대학원 설립 지원, 국비 유학, 단기 양성소 운영

5) 정부의 자체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제안

- 정보센터의 설립과 효율적 운영

- 문화부의 위상 정립과 정부 부처간의 협조 강화

- 고급 가용인력의 활용 체계 마련

- 객관적이고 실현 가능한 장기적 비전의 제시

5. 도시 문화환경 개선방안 연구

* 연 도 : 1992년

* 연구진 : 유병림, 황기원 외 4명

1. 연구 목적

- 비계획적이고 급격한 도시화에 따라 획일화되고 비문화적인 도시의 문화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및 표준 지침을 연구

- 도시 문화환경 개선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의 균형적인 성장 및 문화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함

-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도시의 정체성 고양과 지역주민의 애향심 고취

2. 연구 내용

1) 문화환경의 이론적 배경

① 문화환경의 정의

—문화화된 환경

- 문화를 환경과 역사 속에서 축적된 인간사회 생활양식의 총체로 파악하는 불가치판단적인 인류학적 관점
- 인간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만들고 가꾼 환경

—문화를 위한 환경

-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비문화, 반문화를 전제한 가치판단적인 관점
- 일상의 환경과 구별되는 예술적, 지적 활동을 위한 환경

② 도시문화환경 조성계획의 방향

—작동성(Workability), 적주성(Livability)을 벗어나 창의성(Creativity) 측면에서 정책을 시행

—생활환경의 질을 개선하고 양을 확충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환경의 문화화 정책 시행

—정책단계

- 문화를 위한 환경의 단기적 중점 개선
- 문화화된 환경의 양과 질 개선 유도

—정책의 성격

- 급부행정과 환경정비 행정이 혼합된 도시의 복리행정 업무

—정책의 주안점

- 도시환경 중에 문화적 쇄신의 파급효과가 큰 환경요소를 보존 및 정비하고 공공부문이 선도하여 민간부문의 자생적인 환경 노력을 유도

—정책 목적

- 도시의 문화활동의 활성화, 도시의 정체성 고양,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한 도시 전체의 환경 개선과 문화의 성장

—문화환경 개선의 효과

· 정체성 고양을 통한 주민의 자긍심 고취, 공동체 의식의 고양, 명소화에
따른 관광·경제 활성화, 도시의 홍보, 도시의 균형적 성장 및 문화 활
성화, 주민의 삶의 질 향상

③ 도시 문화환경의 과제

—문화기반의 건실화, 도시환경의 인간화, 도시환경의 풍요화, 도시환경의
지역화

2) 한국 도시 문화환경의 현황

① 문화의 적합성 측면

—농촌문화와 서구의 도시문화가 혼재

② 정체성 측면

—전통과 현재, 미래가 혼합된 가치관

—급격한 전통문화와 가치관의 붕괴 및 서구화에 따른 전통에 대한 감상적
회귀 경향

—급격한 도시개발 및 서울 문화 확산에 의한 문화의 획일화

—급격한 도시개발로 인한 자연환경 및 역사적 자원 소실

③ 통합성 측면

—물질문화와 정신문화의 불균형적인 성장

—주도적인 문화의 부재로 인한 계층간, 지역간 문화의 양극화

—가치체계 붕괴에 따른 아노미 현상

3) 도시환경 정체성 연구(CIP, City Identity Program)

① 정의 : 한 도시의 역사적, 자연적, 사회적, 문화적 특성을 구현하여 독특한 실
제장소를 체험하게 하는 도시의 시각적 통일성 계획 방안

② CIP 이론의 이론적 배경

—환경이미지 이론

- 환경이미지는 개인이 보유하는 외부 물적 세계에 대한 정신적 그림이라는 관점 하에 양호한 환경은 정서적 안정감과 주변세계와의 조화로운 관계를 가져온다는 이론

—기업 정체성 계획 이론

- 기업의 이미지를 통일화하여 사원의 의식 개혁 및 단합을 유도하는 한편, 소비자에게 통일된 이미지를 심어 판매를 증대시키려는 계획
- 단순히 시각적 요소의 통일 분 아니라 인적 요소, 제품 품질, 서비스 자세 등 기업 전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표현하려는 기업문화 계획

—경관 정체성 계획기법

- 부분 환경을 대상으로 물적이고 시각적인 차원에서 정체성을 고양하는 방법
- 기업이 업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관의 정체성을 고양하는 방법

③ CIP의 계획 과정

—조사 분석 : 도시의 각종 이미지 자원에 대한 문헌조사, 현장조사 및 시민의 반응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

—목표 이미지의 체계화 : 포용성, 통시성, 차별성, 수월성 충족

—이미지 기획 : 정체성의 구성 요소(내용, 매체, 행위)를 모형화

—실행 : 시민, 공무원, 전문가 집단에 기획 내용을 배포하고 시행, 유지, 확산

—평가와 조정 : 각 단계마다 시민의 민주적 참여와 상황의 변화에 따른 조정

④ 대상 환경 단위의 구성요소

—우세한 자연 요소

—계기경관(繼起景觀)과 집합경관

—도로

—뚜렷한 지표물

—공통요인 형태요인(기후, 토양 등), 행위요인(역사적 사건 등), 상징요인

⑤ CIP 구현을 위한 환경의 조작방법

—강조, 조화, 삭제, 연상 등의 범용적 기법

⑥ 정체성 구현의 실제 문제들

—이벤트 창출, 문화사업, 사회경제적 효과, 공공부문의 역할과 조직, 시민의 참여, 재원 확보 방안 등

4) 문화의 거리 모델 연구

① 개념

—그 도시가 이미 갖고 있는 독자적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문화적 정체성을 지닌 환경이 되도록 공간을 조성하고 발전시키는 도시 가로 환경의 범역

② 문화의 거리 유형

—구성 형식에 의한 분류 : 가로형, 센타형

—거리의 독자성이 형성되는 형태에 의한 분류 : 명소형, 활동형, 복합형

③ 문화의 거리 표준모형의 구성 요소

—문화자원, 정보서비스, 행사와 연출, 체류와 오락, 공공서비스, 가로의 물리적 환경

—문화의 거리 조성 방법론

—대상지의 선정 : 문화적 독자성, 가로 환경의 질적 수준, 행사 및 축제의 가능성 고려

—문화의 거리 자원 조사 : 문화자원의 재고 파악

—문화의 거리 조성추진협의회 운영 : 주민 및 전문가의 참여

—사업의 착수

· 단위 사업별 시행

· 문화산업의 개발과 유치

- 축제와 행사의 기획과 운영
- 문화의 거리 조성기금의 확보

⑤ 가로의 물리적 환경 개선 기법

- 구조적 요소 설계, 가로 정비(시각적 공해 제거, 공공녹지 확보, 가로의 전면 통제)

5) 도시환경문화상 제도 연구

① 시상 의미

- 문화환경의 중요성 및 활동에 대한 공감대 형성
- 도시환경의 창출과 조성을 권장, 홍보

② 외국의 사례

- 독일 니더작센주 도시환경평가상 시상 제도
- 미국 NEA 우수설계작 시상 제도
- 일본 秋田市 시민이 뽑는 도시경관상

③ 도시환경문화상 시상 제도

- 주관 : 문화부, 한국경제신문사 공동
- 시상 부문 : 환경조형물 및 환경시설물
- 심사 : 전문가 11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서류 및 현지답사로 결정
- 시상 내용 : 각 부문별 1점 선정, 소유자와 설계자에게 상패 수여

④ 도시환경문화상 개선 방안

- 개선방향 : 시상 분야의 확대 및 작품에 대한 영예와 기념성의 지속 강조
- 시상 분야 확대 : 단지 계획 및 설계, 문화의 거리, 오픈 스페이스, 환경 구조물, 도시 축제
- 대상의 확대 : 전국 규모로 확대하여 각 시별 예비심사와 본심사로 나누어 시행
- 시상품 확대 대상과 최우수상으로 나누어 시행

—사후 홍보 강화

- 상패와 동판 수여
- 대상에 대해서는 일정액의 유지비 제공
- 각종 언론매체에 집중 홍보
- 문화부 장관 및 시장이 참석하는 축하행사 개최

—효과

- 지역 주민의 자긍심 및 애향심 고취
- 귀중한 문화적 자원의 개발
- 관광명소화에 따른 경제적 효과
- 공감대 확산으로 생활환경 정비 촉진

6. 사적 복제에 대한 부과금 제도 연구

— 문예진흥기금 확보대 안으로서의 접근 —

* 연 도 : 1992년

* 연구진 : 이중한, 안영식, 허희성, 정상기

1. 연구 목적

—사적 복제로 인해 침해당한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부과금제도 실시
방안을 연구하여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및 문예진흥기금 재원확충을 통한 문화예술의 발전 도
모

2. 연구 내용

1) 저작물의 사적 복제와 저작권자의 보호

① 사적 복제의 개념

- 공표된 저작물을 비영리적 목적으로 개인적으로, 또는 사적 장소인 가정이나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복제하는 것(저작권법 제27조)
- 복제가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동시에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통한 문화의 향상발전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있음(저작권법 제1조, 제27조, 베른 협약 제9조 ②)

② 사적 복제에 대한 대응책의 필요성

- 사회, 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 사적 복제의 증가로 인한 저작권의 침해 증대
- 침해당한 저작자의 권리 및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책이 필요

2) 사적 복제에 대한 대응책으로서의 부과금 제도(Levy System)

① 부과금 제도의 개념

- 사적 복제의 수단이 될 수 있는 복사기, 녹음기, 녹화기, 녹음, 녹화용 테이프 등에 일정금액을 부과하여 그 징수된 저작자에게 분배하거나 문화기금으로 활용함으로써 사적 복제로 인한 저작자의 권리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

② 법적 성격

- 사적 복제의 허용이라는 저작재산권의 제한에 대한 보상금 청구권

③ 법적 근거

-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위하여 저작물의 복제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라도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을 방해하거나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됨
- 공익을 이유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라도 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헌법 제37조), 법률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함(헌법 제23조 ③)

④ 외국의 사례

- 독일에서 최초로 실시(1965년), 1991년 현재 15개국에서 채택, 미국과 일본은 현재 실시를 추진 중에 있음
- 부과금을 징수하는 범위는 국가별로 상이하지만 독일,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노르웨이 등은 징수 범위가 넓은 반면, 기타 다른 국가에서는 대개 공테이프를 주된 대상으로 하고 있음

3) 부과금 제도의 입법화 방안

- ① 징수 범위 : 각 분야별 저작권자의 형평을 고려하여 녹음, 녹화기기, 공테이프, 사진복사기까지를 포함하는 가장 넓은 범위의 부과금 제도 채택이 바람직함
- ② 징수액 결정방식 :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정액제 보다는 정률제가 바람직함

③ 징수방식

- 복제기기 등 복제수단의 생산단계에서 일정률을 부과
- 국세 징수방식이 아닌 특정의 법정기관이나 단체를 통해 징수 배분하고 해당기관에 일정의 수수료를 공제(7—10%)

④ 구체적 방안

- 저작권법 제27조 개정
 - 사적 이용을 위하여 복제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이고 제한적으로 명시
- 저작권법 제27조의 2를 신설
 - 사적 이용을 통한 저작자의 권리 침해에 대한 보상내용(부과금 제도) 신설
- 기타 구체적인 사항(대행기관, 징수, 분배업무 및 비율, 수수료 등등)은 대통령령으로 지정
- 예상 보상금 규모 : 연간 약 300억원(독일방식으로 시행할 경우)
- 부과금(보상금)의 활용

- 저작권자 단체들을 통해 저작자에게 분배하되 저작자는 보상금 청구권을 개별적으로 행사할 수 없고 관련단체나 특정기관을 통해서만 행사하도록 함
- 일정 비율을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활용

4) 문예진흥기금으로의 활용

① 활용 사유

- 현재 문예진흥기금의 재원구조가 취약하고 재원도 장래가 불투명하여 항구적인 재원확보가 필요
- 제7차 5개년 계획 및 문화발전 10개년 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한 투자재원 확보가 필요
- 문예진흥기금 3000억원 조성의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신규재원이 필요

② 활용 논리

- 저작자의 권리 침해에 대한 보상금을 저작자에게만 분배하지 않고 공통 문화기금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저작자들의 저항이 있을 수 있으나 문화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다시 저작자인 예술가에게 투자되거나 문화예술의 발전을 가져오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볼 때 저작자에 대한 간접 보상이 됨
- 생산단계에서 복제수단에 대한 보상금을 부과하는 경우, 사적 복제가 공정한 이용(FAIR USE)에 해당하거나 저작자의 권리를 전혀 침해하지 않을 때에는 재산권에 대한 침해라는 의견도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만을 사전에 분리하여 부과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므로 조성된 부과금을 공통의 문화기금(문예진흥기금)으로 활용하여 이를 국민에게 재투자하는 것이 유용함

③ 외국의 사례

- 각 국가별로 활용여부, 범위가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보상금의 일부를 문화기금으로 활용하고 있음

—오스트리아(51%) : 개별 관리자에게 분배, 사회·문화적인 공통목적을

위한 보상금으로 사용

—프랑스(25%) : 창작과 공연활동의 촉진, 예술가 육성

—호주(15%) : 음악산업의 진흥과 지원

—스페인(20%) : 신진작가 및 신진실연자의 양성과 장려

④ 예상 재원조성 규모

—51%공제 경우 : 약 170억원

—25%공제 경우 : 약 80억원

7. 문화예술 전문기술인 자격인증제도 연구

* 연 도 : 1992년

* 연구진 : 조현철, 강석후, 이인숙, 김동영

1. 연구 목적

문화예술 전문기술인의 저변 확대와 현직자의 기능향상 및 자긍심 고취를 통해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함

2. 연구 방법

자료수집 및 분석

분야별 응답자의 인구 통계

3. 연구 내용

1) 자격인증제도 실시의 필요성

—문화예술 직종에 대한 낮은 인식과 열악한 처우 개선

—문화시장 개방에 대비한 국내 문화시장 및 종사자 보호

2) 자격인증제도 실시의 타당성

① 시행시의 고려 사항

—‘문화예술’의 계량화 가능 여부

—‘창조성’ : ‘예술감각’으로 특징 지워지는 문화예술분야이지만 이미 예술 분야 자체 내에서도 계량화에 근거한 평가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문제가 없음

—자격인증제도 실시로 인한 ‘자유 침해’의 여부

· 출판, 언론 분야의 경우 반발이 높음

② 자격인증 시행의 여건조성

—자격인증 취득을 원하는 인력이 충분한가 검토

—자격취득자들을 소화할 수 있는 일자리가 충분한가 검토

—자격증 취득을 원하는 사람들을 교육할 수 있는 기관의 존재 여부

③ 시행 과정상의 문제점

—현재 종사자들에 대한 대우 문제와 경과 규정

—자격취득자의 의무채용에 따른 문화시설 소유주의 반발과 문화단체의 부담증가

3) 문화예술 전문기술인 자격인증 제도 실시 방안

① 대상

—공연예술 분야 : 음향, 조명, 무대미술, 무대기계, 이벤트 기획

—전시예술 분야 : 큐레이터

—출판 분야 : 출판, 기획

—문화재 분야 : 문화재 감정, 문화재 보수, 안내자

② 시행가능 분야 및 단계

—현실여건상 공연예술 분야의 음향, 조명, 무대미술 분야 등 3개 분야에 대해 우선적으로 실시

—2차로 큐레이터 및 공연예술 분야로 확대

—3차로 출판기획, 공연이벤트 분야로 확대

—문화재 분야의 경우는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제외

4) 자격인증 제도의 운영 및 법제화 방안

① 시행분야 : 음향, 조명, 무대미술

② 주관처 : 문화부

—현행 해당 분야에는 민간단체가 없거나 활성화되어 있지 않음

—문화 분야의 특수성 및 전문성을 위해서는 노동부 소관으로서는 곤란

③ 시행시기 : 4—5년간의 유예기간이 필요

—공청회를 통한 여론 수렴

—해당 종사자 및 지망생들의 준비 등

④ 자격등급

—현행 국가기술자격법에 준하여 시행하되 기술이라는 용어에 대한 종사자들의 거부감을 고려하고, 문화예술의 창조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새로운 명칭을 부여

—기술계

· 예술사(예 : 음향예술사)

· 예술기사 1,2급(예 : 음향기술기사 1급)

—기능계

· 예능장(예 : 음향예능사 1급)

· 예능사보(예 : 음향 예능사보)

* 큐레이터의 경우에 기능계는 필요하지 않음

⑤ 응시과목 및 자격

—현행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의 응시자격 기준에 준하여 등급별로 달리함

—응시과목은 기술과 예술성 모두 검정할 수 있도록 균형 있게 선정

⑥ 대우

—해당시설(단체)의 자격증 소지자 의무 채용

—적정한 보수 및 대우를 위한 정부의 시책 필요

⑦ 교육 및 훈련 방안

—정규 학교에 관련분야 학과의 신설, 혹은 증설 필요

—한국예술종합학교의 관련과정 조속 개설

—사설학원 및 관련 기관의 연수교육 프로그램 신설 및 활성화

⑧ 기득권 보호를 위한 경과 규정

—현 종사자들의 학력 및 경력에 따라 단기교육 실시 후 자격시험 실시

⑨ 법안

—현행 국가기술자격법과는 별도로 (가칭)예술전문기술자격법을 제정

8. CATV를 통한 국민문화 창달 및 진흥방안에 관한 연구

* 연 도 : 1992년

* 연구진 : 차 윤, 백진숙, 노혜전, 송용의

1. 연구 목적

—케이블 TV의 다각적인 기능을 이용하여 국민문화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

—창구로서의 문화예술 채널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문예채널의 전반적인

경영방법 모색

2. 연구 방법

—관계문헌 연구

—국내 학계 및 현업 관련인 면담

—국외 관계기관 방문 및 관련인 면담

3. 연구 내용

① 케이블 TV의 개요(기존의 TV와의 비교)

- 공중파를 통한 무선영상정보송신매체인 기존의 TV와는 달리 줄을 통해 영상정보를 전송하는 TV
- 기존의 TV에 비해 조직이 전문화되고 지역적이며 소규모
- 지역별, 내용별로 세분화된 수용자를 갖음

② 케이블 TV시스템의 구성

- 센터계
- 전송로 분배계
- 단말계

③ 케이블 TV수용자의 특성

- 일방적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쌍방적 커뮤니케이션인 사용자 중심의 매체
- 케이블 TV는 소수의 대중을 오디언스로 삼는 협송(narrowcasting)이므로 탈대중화의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음
- 운영의 지역화, 기술의 위성화, 내용상의 전문화 현상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사용자의 개인화 현상
- 뉴 미디어의 비동시성으로 인하여 시간적 선택이 가능

④ 케이블 TV프로그램 편성의 특성

- 전문화된 채널
- 채널간 상호보완적
- 순환, 반복적 편성
- 프로그램별 누적적 시청자의 확대를 추구

⑤ 케이블 TV산업

- 케이블 TV의 발전방향

-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형태에 따른 발전과정

- i) 재송신용 케이블 TV

- ii) 자주방송 케이블 TV

- iii) 종합 케이블 TV

- 단방향 시스템에서 쌍방향 시스템으로 변화

- 방송 설비와 전송로 설비의 소유가 분리됨

—전망

- 경제적 파급 효과

- 전기통신과 방송의 융합화 현상에 의한 양 산업의 경제적 구조 변화

- 산업관련적 수요 및 고용의 파급효과

- 새로운 서비스 출현으로 새로운 부분 시장의 창출

- 기술개발 효과

- 정보활동에 따른 지역간의 격차 해소

2) 외국의 케이블 TV현황

① 미국

—케이블 TV수신 세대수가 기존 TV방송 수신 세대수의 60%

—연간 총 매상고 : 140억불(민간 운영)

—케이블 TV사업자의 가입자 대상 서비스

: Basic 서비스, Pay 서비스, Pay - per - view

—현황

- 소프트웨어 전쟁의 격화

- 홈비디오와의 전쟁

- Basic 케이블 서비스의 인기 회복

② 일본

—케이블 TV사업 발생의 사회·경제적 배경

- 미국에서의 케이블 TV 사업의 발전과 성공이 일본의 케이블TV태동을 자극
- 전기통신사업의 자유화와 위성정책의 확립
- 소비수준의 향상과 함께 TV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전문성에 대한 요구가 출현

—현황

- 다수의 프로그램 공급자가 있으며 대부분이 통신위성(CS)을 통하여 케이블 TV사업자에게 채널 단위로 프로그램을 공급
- 케이블 TV사업자는 프로그램 공급자의 프로그램 외에도 공중파 TV의 채널을 재송신하기도 함
- 대다수의 케이블 TV사업자가 해당지역의 뉴스나 화제거리등을 테마로 한 프로그램, 즉 지방지향적 프로그램을 자체 제작

③ 캐나다

- 1960년도부터 보급되기 시작
- 80%가 케이블 TV에 가입,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음
- Pay - TV 운영
- 「캐나다 특별 프로그램」 (Canadian Specialty Programm Service)의 출현
- 캐나다 정부의 커뮤니케이션 정책의 일환으로 통신위성 경유 프로그램 공급
- 일정 지역의 방송권을 한 사람의 케이블 TV사업자에게 부여하는 프렌차이즈 시스템으로 운영

3) 우리 나라 케이블 TV의 현황

① 현황

- ‘종합유선방송 시범 사업단’에서 목동 3,4,5단지와 상계동 4,5,6단지의 8천

여 가구를 대상으로 시범 방송을 실시

— 1991년 12월 17일 종합유선방송법이 국회에서 통과

② 문제점

— 케이블 TV제도 및 정책상의 측면

- 국민의 필요에 부응하며, 사회각계의 다양한 이익 집단의 합의에 의해

실시되는 정책이 요구됨

- 정부부처 사이의 긴밀한 협조와 협의가 필요

— 케이블 TV프로그램 제작 및 공급상의 측면

- 전문성, 다양성, 정보성 있는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프로그램을 반복 방영하는 공시청 안테나 방송의 역할에 그치고 있음

- 프로그램의 내용이 부실

— 원인

- 시범사업단의 사전 준비 : 선정절차와 근거가 불명확하고 방송내용과 형식에 맞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음

- 기존 지상파 방송에 비해 비교 우위에 있는 다채널성, 지역성, 쌍방향성 등의 종합유선방송 고유의 특성에 대한 인식 부족

- 프로그램 부문 할당 예산의 부족 : 하드웨어 부문 125억원, 프로그램 부문 4억원

- 독립 프로덕션의 비활성화

4) 문예진흥원의 케이블 TV참여의 필요성

① 국민문화적 차원의 필요성

② 양질의 소프트웨어적 측면

③ 공익적 측면

5) 문예진흥원의 「문화예술채널」 프로그램 공급업의 사업성

① 운영주체

—공영체제

- 문화부 산하 기관의 컨소시엄으로 구성되는 것으로서, 자금조달이 용이하며 비상업성 추구로 인한 수용자 확장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

—공민영 혼합체제

- 문화부 산하기관 컨소시엄에 민간기업을 일정 지분 포함시키는 것으로 프로그램 개발에 따른 소요 경비를 절감할 수 있음

—문화부 중심의 문화예술채널 운영의 장점

- 국민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가장 적합한 기구로서 기존의 소프트웨어를 가장 적합하게 이용할 수 있음
- 공연물을 제작할 수 있는 노하우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음

② 프로그램 편성계획

—편성 원칙

- 객관성과 의견의 다원주의
- 중립, 공정성과 등시간 원칙
- 반론권의 보장
- 인간존중, 남녀평등, 어린이·청소년 보호
- 법적으로 위배되는 내용 금지, 공공질서 존중, 미풍양속 존중, 국가안보 존중
- 사기, 명예훼손 금지
- 외국 프로그램의 비율 규제

—소유 프로그램의 수급 방안

- 외주비율의 상향 조정
-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의 확대
- 관련사업 육성

- 제작비의 적정화
- 프로그램 육성기금의 운영
- 공동자료센터의 설치·운영
- 인력 양성
- 저작권에 대한 배려
- 금융·세제상의 지원

③ 영업계획

—광고영업

—방송국 대상 영업

6) 문예진흥원의 「문화예술채널」 및 방송국 운영의 사업성

① 운영주체 : 5)의 ①과 동일함

② 운영계획

- 대전송 채널, 프로그램 공급업자 채널, 지역 액세스 채널을 운영

③ 주요수입원

—시청료 수입(Basic과 Pay방식), 광고 수익, 채널임대료

7) 제언 및 정책 건의

① 후속 연구의 필요성

—문화예술 채널의 실질적인 수입과 투자규모에 대한 경영학적 측면의 연구
와 프로그램의 제작과 공급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함

② 수용성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요청됨

—수용자의 선호 프로그램 조사

—수용자들의 특성을 파악하여 프로그램 편성에 반영

—일정기간 동안 계속되는 수용자 조사가 필요

③ 조직의 확보가 시급

9. 국민 독서생활화 방안 연구 -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

* 연 도 : 1992년

* 연구진 : 김경일, 김효정, 이용남, 김승환, 이정희

1. 연구 목적

- 국민 독서생활화 운동의 배경과 본질 재조명
- 독서생활화 운동의 현황 분석, 공공 도서관이 이 중핵임을 정립
- 국민 독서생활화 운동을 위한 공공도서관 프로그램으로서 독서교실과 새마을 문고와의 연계 방안 제시

2. 연구 방법

- 국내외 문헌 수집과 검토
- 전국 공공도서관에 대한 설문지와 방문 조사

3. 연구 내용

1) 독서생활화를 위한 공공도서관 기반의 조성

① 장서중심의 운영

- 문제점 : ‘장서중심의 운영’이 아닌 ‘열람석 제공 중심’의 운영
- 제안 : 도서구입 예산 증액(현재의 7%에서 15~20%로)

도서관 시설 및 내부구조, 인력배치 등을 관외대출 이용자 위주로
재편

② 관외봉사 활동 강화

- 잠재이용자 독서욕구를 자극할 수 있는 관외봉사 활동의 활성화
- 다수의 소형 분관 설치, 운영

—‘이동도서관’의 양적 보완과 질적 보완

—‘대출문고’의 약점 보완과 활성화

2) 독서활동 관련 프로그램의 제시

① 공공도서관의 ‘독서교실’ 운영

—공공도서관의 독서교육활동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독서교실’을 확대 실시

—‘독서교실실시후’ 독서회를 조직, 운영하여 독서활동이 계속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독서교실’의 시간표 조정

: 현재 실시되고 있는 기간인 10일 정도를 5~7일 정도로 줄여 집중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실시 회수를 늘리는 방안

② 공공도서관의 독서회 조직과 운영

—공공도서관 내에 다양한 형태의 독서회를 조직, 운영

—청소년 중심의 독서회 조직을 위해 여름방학과 겨울 방학에 독서학교를 개최하고 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에도 계속될 수 있는 운영 체제가 요구됨

—계층별로 독서회 운영

—효과적인 독서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표준 프로그램의 개발

—표준 프로그램에 사회교육 및 문화활동 프로그램을 포함시켜 독서회원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회원 외 주민도 참여시켜 독서회 조직과 회원증대의 기회를 늘리는 방안이 필요

—독서회 조직과 지도 및 표준 프로그램의 효과적 실천을 위해 담당사서에 대한 연수교육 실시

③ 공공도서관과 새마을 문고의 연계 활동

—농어촌 마을단위의 독서운동 조직인 새마을문고는 구조적으로 영세성을 면하기 어려운 실정이고 공공도서관은 지역사회에 관외봉사활동을 위한

봉사조직이 필요한 실정이므로 공공도서관과 새마을 문고의 상호협조체제를 갖추어 연계시킴으로서 독서운동의 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음

—공공도서관과 새마을문고의 연계운영 방안

- 새마을문고를 공공도서관의 '스테이션'으로 활용, 또는 이동도서관 정류소로 이용하여 도서관 장서활용을 극대화하는 방안
- 공공도서관의 관내 문고를 관장하여 적극 지도, 지원함으로써 전문적 입장에서 문고를 육성하는 방안

10. 한국종합예술학교 연기원 설립 · 운영방안 연구

* 연 도 : 1992년

* 연구진 : 권오일, 이태주, 김문환, 김윤철

1. 연구 목적

한국종합예술학교에 설치예정인 연기원의 설립방안과 운영방안의 구체적 제시

2. 한국종합예술학교 연기원 설립의 필요성

- 각종 드라마의 확산과 수요 증가
- 국내 대학 내에 드라마에 관한 전문교육이 부족한 실정 - 드라마 진출을 원하는 사람들의 수적 증가
- 한국 드라마의 후진성 탈피 및 민족성 확보
- 기존 교육기관의 배우술 교육의 낙후성 극복
- 배우 양성을 위한 영재교육의 필요

3. 외국연극학교의 사례

—소련 : 국립 연극학교

—폴란드 : 알렉산더 젤베로비츠 국립고등연극학교

루두비크 솔스키 국립 연극아카데미

—미국 : 각 대학 학부의 BFA(Bachelor of Fine Arts) 과정과 대학원의 MFA –
(Master of Fine Arts) 과정 설치

—일본

· 이론중심 교육기관 : 와세다 대학, 세이조 대학, 메이지 대학, 코리츠여자대
학

· 실기중심 교육기관 : 일본대학 연극학과, 오오사카 예술대학, 다마가와(玉
川)대학, 강끼(近畿)대학

· 2년제 단기대학(2년제) : 도호학원대학, 큐슈의 오오타니 단기대학

4. 연기원 설립 · 운영 방안

1) 학교명 : 「한국종합예술학교 연기원」 (‘한국종합예술학교 설치령안’ 제1조, 3조,
5조 1항에 의거)

2) 연기원의 체제

① 설립계획 : 한국종합예술학교 설치령안 제3조에 준함

② 조직 : 한국종합예술학교 설치령안 제6조, 7조, 8조, 9조에 준함

③ 정원 : 예술과정 40명(학년정원)

예술전문사과정과 예술실기연수과정은 연기원 설립 후 자체 조정

④ 학제 : 예술사과정 4년, 예술전문사과정 2년, 예술실기 연수과정 1년

3) 입학시험 전형

① 예술사과정 : 1,2차로 나누어 1차에서는 내신 20%, 면접 20%(추천서 포함)
2차에서는 1차에서 합격한 자료 실기 100%

② 예술전문과정 : 실기 100%

③ 예술실기연수과정 : 설치 후 별도의 학칙으로 정함

4) 수업연한 및 수업료

현행대학의 체제를 그대로 반영

5) 교수요원 구성 및 확보 방안

① 교수 : 교수요원, 정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조교, 필요시 시간강사와 초빙교수를 둠

② 정원 구성

—교수요원 : 이론 3명, 음성 2명, 화술 2명, 동작 2명, 연기 6명, 무대 1명

—조교요원 : 피아니스트 1명, 무대 4명, 조명 1명, 음향 1명, 음성 1명, 동작 1명, 연기 4명, 이론 1명, 행정 2명

③ 자격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은 현행 국 공립대학 채용 및 복무기준에 의거

6) 교과과정

—총 이수학점 140학점(현행 4년제 대학과 동일)

—실기학점 92학점, 이론학점 48학점(2 : 1의 비율)

—필수과정을 제외한 교과과정은 학과장이 각 학생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각자에 알맞은 교육과정을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교양과목 : 국어학 1,2, 영어 1,2, 문학과 예술 1,2, 교양1,2

—전공기초과목 : 공연의 이해 1,2, 극장의 이해 1,2, 연극의 양식사 1,2, 희곡의 이해 1,2,

—전공필수과목 : 연기 1—4, 화술 1—4, 전통연희 1—4, 신체훈련 1—8, 분장, 무대기술, 가창훈련, 연출법, 공연참가 1—4

—전공선택과목 : 판토마임/즉흥연기, 서커스/무대격투, 무지컬, 가면극/인형극, 희곡분석 1—4, 다매체 연기훈련 1—2등

7) 입지조건 및 교육시설 기자제

—예산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예산 확보 후 연차적 계획으로 구체화

5. 문제점 및 제안

- 기존의 4년제 대학들이 실기훈련 교육기관으로서 별다른 불만을 야기시키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연기원의 평가 문제
- 고급 교수요원의 확보
- 개원 순서상 음악원 다음이 되어야 함

11. 1992년도 연구 과제

1)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운영방안 연구

* 연구진 : 박서보(홍익대 미대) 외 7인

* 연구 내용

- 교육이념, 목표, 과정, 편제
- 학사 운영, 입학자격, 전형 방법, 전공구분
- 교수요원 구성 및 확보방안, 교육시설, 기자재, 학비보조방법

2) 도서관 발전정책 및 행정체계 개선방안 연구

* 연구진 : 조석준(서울대 행정대학원) 외 2인

* 연구 내용

- 도서관 행정체계의 발전과정과 목표
- 우리 나라 공공도서관 설립운영 현황
- 운영관리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 지적 문화산업의 수출진흥방안 연구

* 연구진 : 이대희(광운대 행정과) 외 3인

* 연구 내용

- 우리 나라 지적 문화산업의 구조와 현황

—문화산업관련 법규와 정책, 문화욕구 변화 가능성

—지적 문화산업의 육성 및 수출전략의 모색

4) 근세 문화예술사의 주요 사적 및 자료의 효율적 보호관리대책 연구

* 연구진 : 윤재근(한양대 국어국문학과) 외 2명

* 연구 내용

—보호관리대상 사료 현황

—효율적인 보호관리대책

—문화예술사료의 활용방안과 기대효과

5) 사회병리현상 치유를 위한 문예프로그램 개발 연구

* 연구 단체 : 한국임상예술학회(책임연구원 김유광 외 5인)

* 연구 내용

—청소년 병리현상의 문화사회학적 분석

—예술을 통한 심리치료의 역사와 일반이론, 기존 프로그램

—한국형 집단교화용 문예패키지 개발

6) 청소년 문화정서지표 조사 연구

* 연구 단체 :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소(책임연구원 조명한 외 2인)

* 연구 내용

—문화정서의 인지적 차원, 가치 및 태도

—문화예술에 대한 정서, 향수 실태

—문화매체 수용 항목, 정서지표 모델과 정책적 함의

7) 국내 대형 복합문화예술공간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 연구 단체 : 예술의 전당(책임연구원 유민영 외 2인)

* 연구 내용

- 복합문화예술공간의 기본 운영방안
- 예술의 전당 설립, 운영현황과 문제점 분석
- 예술의 전당 효율적 운영방안과 마스터플랜

8)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운영세칙 연구

* 연구진 : 홍연택(한양대 음대) 외 4인

* 연구 내용

- 해외 저명음악원 운영 연구
- 국내 전공별 전문가 의견 수렴
- 음악원 설립을 위한 세칙, 설립 후 후속 추진계획

2. 특수자료실 소장 영상자료 목록

[1] 가야금에 깃든 이야기

조선예술영화촬영소, 대흥단창작단

1 VideoCassette (60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 배역 : 우륵 - 박효진, 송미 - 최희영, 우한치 - 황민(공훈), 주부인 - 남궁련
(인민), 길부인 - 홍순정

[2] 개척자들 1,2

조선예술영화촬영소, 대흥단창작단

2 VideoCassette (총 170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 연출 : 한규복 · 극본 : 조현동

[3] 검사는 말한다

조선 2.8 예술영화촬영소

1 VideoCassette (128분) : VHS, 유성, 흑색 3/4 Inch

· 극본 : 한규복 · 배역 : 문정복, 리미화, 김광익, 조경순

[4] 겨떡과 금덩어리

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지형영화재단, 1974.

1 VideoCassette (15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5] 고마워라 사회주의 조국이어

조선기록영화촬영소

1 VideoCassette (40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 극본 : 김산옥 · 연출 : 김창익 · 촬영 : 박관섭, 김문관 · 해설 : 박왕명

(공훈), 김원주

[6] 곤충

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학교교육영화제작단, 1977.

1 VideoCassette (20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7] 곱등어를 길들이는 소년 외

1 VideoCassette (총60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아동영화창작단

·극본 : 차계옥 ·연출 : 마죽희 ·촬영 : 강기권 ·대사 : 국립연극단

곱등어를 길들이는 소년 (20분)

호랑이를 이긴 고슴도치 (10분)

나비와 수탉 (10분)

너구리와 승냥이 (10분)

용감한 기러기 (10분)

[8] 공화국 창건 40돐 경축 행복의 노래

1 VideoCassette (82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9] 공화국 창건 40돐을 성대히 경축

1 VideoCassette (105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10] 과거를 잊지마라

재일본 조선인 총연합회 제작

1 VideoCassette (60분) : VHS, 유성 : 3/4 Inch

[11] 관개의 나라

조선기록영화촬영소 편집, 1984

1 VideoCassette (20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12] 광주를 부른다

리죽송

1 VideoCassette (70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 연출 : 정건조 · 극본 : 주동인 · 배역 : 김철, 박미화, 최봉식

[13] 교예종합공연

1 VideoCassette (90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14] 국립평양예술단 일본방문공연

조선기록영화촬영소 편집

1 VideoCassette (54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15] 국토건설의 새력사

조선기록영화촬영소 편집, 1988

1 VideoCassette (30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16] 귀국공민 노동일가

조선기록영화촬영소 편집.

1 VideoCassette (25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17] 그림토끼들의 운동회, 용감한 아동단원

1 VideoCassette (총 30분) : VHS, 유성, 흑백 : 3/4 Inch

그림토끼들의 운동회 (20분) 조선과학교육영화 촬영소

용감한 아동단원 (10분)

[18] 금강산으로 가자

조선예술영화촬영소

1 VideoCassette (85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 연출 : 박상복 · 극본 : 리희찬

[19] 금강산 가극단(일본방문공연)

총련영화제작단

1 VideoCassette (58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20] 금강산, 주체사상탑, 인민대학습당

1 VideoCassette (총 40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금강산 (20분)

주체사상탑 (10분) 조선기록영화촬영소 편집, 1982.

인민대학습당 (10분) 조선기록영화촬영소 편집, 1982

[21] 금수강산 내 조국 노래부르자

내나라 비디오제작소, 1990

1 VideoCassette (60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22] 기다려다오

백두산창작단, 조선예술영화촬영소, 하지연창작단

1 VideoCassette (90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 연출 : 박창성 · 극본 : 리춘구, 전창준

· 배역 : 진옥석 – 양혜련(공훈), 어린 옥석 – 류경애

[23] 길

신필립.

1 VideoCassette (96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 연출 : 박상복 · 극본 : 리희찬 · 배역 : 김정화, 조명선, 김학철

[24] 김일성 주석께서 몽골인민 공화국을 공식 방문

1 VideoCassette (70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25] 김일성 주석께서 유고슬라비아 친선방문(4)

1 VideoCassette (30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26] 김일성 주석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친선 방문

1 VideoCassette (90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27] 김일성 주석 소련 및 동구권 나라 방문

1 VideoCassette (70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28] 김정일 동지께서 사회주의 건설들을 현지에서 지도

1 VideoCassette (70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29] 꼬마박사

조선과학영화촬영소

1 VideoCassette (20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 [30] 꽃다발의 소녀는 나다(정희선 평양에서 증언), KAL기 실종사건,
이어가자 민족의 열, 단결의 힘, 국토건설의 새 역사.

1 VideoCassette (총 120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꽃다발의 소녀는 나다(정희선 평양에서 증언) (20분) 총련영화제작소,
1988, 일본어

KAL기 실종사건 (20분)

이어가자 민족의 열, 단결의 힘 (40분) 총련영화제작소, 1988

국토건설의 새 역사 (40분) 조선기록영화촬영소. 1988

· 구성 : 김호송 · 연출 : 김대창 · 촬영 : 리진렬, 리수길 · 해설 : 박왕명, 박경실

- [31] 꽃은 계속 피리라 1,2

총련영화제작소

2 VideoCassette (총 77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 [32] 꽃피는 민족교육

총련영화제작소

1 VideoCassette (50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 [33] 꽃 파는 소녀

조선예술영화촬영소, 백두산영화창작단

1 VideoCassette (120분) : VHS, 유성, 흑백 : 3/4 Inch

· 연출 : 박학 · 배역 : 꽃분이 - 홍영희, 순이 - 박화선, 지주 - 고송암

[34] 나비와 수탉

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만화영화제작단

1 VideoCassette (20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35] 나의 행복(전, 후편)

조선예술영화촬영소, 대흥단창작단

1 VideoCassette (105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 연출 : 김영호 · 촬영 : 최병렬 · 부연출 : 리경환 · 출연 : 홍수정 - 김정화(공
훈), 리재은 - 김옥희, 박영 - 김광렬, 신철우 - 김윤봉, 정영수 - 최정희, 원장
- 최재식, 석용 - 최룡, 정치부원장 - 박태수(인민)

[36] 날바다 우에 솟아난 남포갑문

조선기록영화촬영소 편집, 1986

1 VideoCassette (20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 연출 : 백정성 · 촬영 : 장기순 · 해설 : 피태영, 김원주

[37] 내가 본 나라

조선예술영화촬영소, 삼지연창작단

1 VideoCassette (120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 연출 : 고헌림 · 극본 : 최일심 · 배역 : 다까하시 - 박기주, 류천성 - 김룡권,
상민 - 박성

[38] 내 조국

조선기록영화촬영소 편집.

1 VideoCassette (40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39] 너구리의 겨울차비

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인형영화제작단, 1974.

1 VideoCassette (15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40] 녀교원

조선예술영화촬영소, 왕재산창작단

1 VideoCassette (90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 연출 : 박정주 · 극본 : 박청룡 · 배역 : 향순-김선화, 대활-조명선, 용숙-
정순희, 광억-김광남

[41] 노을 비낀 호수

조선 2.8예술영화촬영소

1 VideoCassette (120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 연출 : 채풍기 · 극본 : 오진홍, 함흥준 · 배역 : 진주-리익승, 연화-김련옥,
부위원장-홍영일

[42] 놀고먹던 꿀꿀이

조선아동영화촬영소, 1969

1 VideoCassette (15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43] 늙은 왕문어

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만화영화제작단, 1976

1 VideoCassette (15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44] 다름이와 고슴도치

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아동영화창작단

1 VideoCassette (95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 극본, 연출 : 김준옥 · 촬영 : 리찬걸 · 대사 : 국립연극단

[45] 달매와 범다리

조선예술영화촬영소

1 VideoCassette (120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 연출 : 윤룡규 · 극본 : 김승구 · 배역 : 달매 - 김영숙, 범다리 - 조민선, 봉선 - 최경숙

[46] 도라지꽃

조선 2.8예술영화촬영소, 대덕산창작단

1 VideoCassette (90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47] 돌아설 수 없다

조선 2.8예술영화촬영소, 대덕산창작단

1 VideoCassette (85분) : VHS, 유성, 흑색 : 3/4 Inch

· 연출 : 최부길 · 극본 : 최부길 · 배역 : 조장 - 최순규, 경찰병 - 김정실, 전재연, 차성철

[48] 돌아오지 않는 밀서(전, 후편)

신필림

2 VideoCassette (총 145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 감독 : 최은희 · 극본 : 신상옥 · 배역 : 김준식, 량해승, 김윤홍, 김정화, 김옥희, 홍순정

[49] 동궁전을 찾아서

1 VideoCassette (15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50] 두 장군 이야기

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만화영화제작단

1VideoCassette (20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51] 두 장수

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인형영화제작단, 1976.

1 VideoCassette (15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52] 뜨거운 혈육의 손길

조선기록영화촬영소, 1984

1 VideoCassette (60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53] 런던장의 옛상관

조선 2.8예술영화촬영소, 월미도창작단

1 VideoCassette (80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 연출 : 채풍기 · 극본 : 리성익 · 배역 : 현철 - 전재연, 정민 - 리의승, 옥금 -
김련옥, 수옥 - 공영렬

[54] 려명 1,2

조선예술영화촬영소

2 VideoCassette (총 151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 연출 : 리재준 · 원작 : 백인준 · 배역 : 조우재, 리학철, 림순복

[55] 령리한 너구리(13편)

1 VideoCassette (총 90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56] 리로운 핑을 보호하자

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 VideoCassette (20분) : VHS, 유성, 천연색 3/4 Inch

[57] 만경대의 노래

1 VideoCassette (25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58] 먼 남쪽 바다에서

조선 2.8예술영화촬영소, 월미도창작단

1 VideoCassette (71분) : VHS, 유성, 흑백 : 3/4 Inch

· 연출 : 남철민 · 극본 : 유정혁 · 배역 : 정민 - 전재연(인민), 전룡주(공훈),
김봉삼, 김순영

[59] 명령 027호.

조선 2.8예술영화촬영소, 월비산 창작단

1 VideoCassette (70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 극본 : 리상욱 · 촬영 : 박진복 · 출현 : 철우 - 김정운, 길남 - 차성철, 우계 -
김하춘, 영근 - 리원복, 은하 - 김혜선, 창현 - 최영철, 봉남 - 한봉호, 천수 -
조광, 정규 - 박근상, 경찰부장 - 김광문(공훈), 장영달 - 전룡주(공훈), 특공
대장 - 윤찬(공훈), 검은잠바 - 최양, 특공대 장교 - 리광용, 조원들 - 리훈, 최
호일, 김명호, 신제국, 찬조출현 - 조선인민국 제 525부대.

〔60〕 모란봉

1 VideoCassette (25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61〕 묘향산

조선기록영화촬영소 편집, 1982

1 VideoCassette (30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62〕 미래를 꽃피운 사랑

조선예술영화촬영소, 백두산창작단

1 VideoCassette (75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 연출 : 박학, 길덕규 · 극본 : 백인준 · 배역 : 식량부장 - 최명관(공훈), 중대
장 - 전룡주(공훈), 조범 - 광명서(공훈)

〔63〕 민족교육을 생각한다, 즐거운 야영생활

1 VideoCassette (총 50분) : VHS, 유성, 흑백, 천연색 : 3/4 Inch

민족교육을 생각한다 (30분) 총련영화제작소, 일본어

즐거운 야영생활 (20분) 조선기록영화촬영소 편집

〔64〕 민족의 염원

총련영화제작소, 1985

1 VideoCassette (60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65〕 바다를 막는 사람들

조선예술영화촬영소, 삼지연창작단

1 VideoCassette (80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 연출 : 리승호 · 극본 : 홍진숙 · 배역 : 익범 - 서경섭(인민), 명민 - 신명욱,
윤수 - 김영식

[66] 백두산

조선기록영화촬영소

1 VideoCassette (30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67] 범민족 대회(1990. 8. 15)

내나라 비데오제작소

1 VideoCassette (50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68] 법타스님 북한영상기행, 북한불교의 오늘

제1부 : 묘향산

제2부 : 금강산

제3부 : 송도의 문물을 찾아

불교영상포교회

3 VideoCassette (총 232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69] 北朝鮮 歷史紀行

NHK

1 VideoCassette (45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70] 봄날의 눈석이

조선예술영화촬영소, 왕재산창작단

1 VideoCassette (105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 연출 : 림창범, 고헌림(공훈) · 극본 : 리춘구 · 배역 : 형철 - 김룡린, 학성 -
김준식, 서경섭, 황민, 김영식

[71] 불타는 모래불

조선 2.8예술영화촬영소, 대덕산창작단

1 VideoCassette (68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 연출 : 신태오 · 극본 : 신태호, 리춘옥 · 배역 : 공영렬, 박효신, 정명순, 최
대현(공훈), 김찬민

[72] 붉은 날개

신필름제작

1 VideoCassette (110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 연출 : 장영복 · 배역 : 김원, 장유성, 김정화

[73] 붉은 화살

조선 2.8예술영화촬영소, 월비산창작단

1 VideoCassette (75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 연출 : 정기모 · 극본 : 리상옥 · 배역 : 이진국, 리역승, 최대현, 정룡주

[74] 비디오 가요 제1집

총련영화제작소, 조선음악사

1 VideoCassette (41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75] 빛나는 아침(전, 후편)

조선예술영화촬영소, 백두산 창작단

1 VideoCassette (70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 원작 : 권정웅 · 극본 : 오진홍 · 연출 : 엄길선(인민) · 촬영 : 정익환(인민)

· 출연 : 김책 - 리근우(공훈), 강병철 - 박진우, 양훈만 - 김철현, 박원식 - 황문
일, 박창술 - 김광남, 원서범 - 남룡우, 안동권 - 리래성, 오기서 - 박기주(공
훈), 정녀 - 문정애, 한월남 - 정순옥, 최준걸 - 황정성, 한명구 - 김광렬(공
훈)

[76] 뼈라

조선과학영화촬영소

1 VideoCassette (15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77] 사계절 아름다운 나라

조선기록영화촬영소

1 VideoCassette (40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78] 사랑사랑 내 사랑(전, 후편)

신필름영화촬영소

2 VideoCassette (총 165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 감독 : 신상옥 · 각색 : 최은희 · 제작 : 리현수, 한동호 · 배역 : 춘향 - 장선
희, 몽룡 - 리학철, 월매 - 김명희, 방자 - 손원주, 향단 - 방복순

[79] 사랑의 노래

조선 2.8예술영화촬영소

1 VideoCassette (85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 연출 : 림창범 · 극본 : 민순실 · 배역 : 옥주 - 리선희, 춘심 - 김선옥, 간호장

- 리성실(공훈), 현주-최영철, 설순-김옥희(공훈)

[80] 사령부를 멀리 떠나서

조선 2.8예술영화촬영소

1 VideoCassette (125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81] 4월의 무대

조선중앙텔레비전

1 VideoCassette (75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 연출 : 김일남, 박연석, 리종택

[82] 새별

조선 2.8예술영화촬영소, 월비산창작단

1 VideoCassette (75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 연출 : 류영미 · 극본 : 리건우 · 배역 : 리석-박효신, 영희-오미란, 숙이-
황석림, 묘향산-곽명서(공훈), 류수영-정춘란

[83] 새로운 경치를 찾아서

조선기록영화촬영소 편집, 1990.

1 VideoCassette (45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 구성 : 김호송 · 연출 : 김대창 · 촬영 : 김만억, 리진렬, 신종호, 김영식, 신
석범(공훈), 리봉희, 문길순, 김영길, 림천직 · 해설 : 리을선

[84] 생의 흔적 1,2

조선 2.8예술영화촬영소, 대덕산창작단

1 VideoCassette (120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 극본 : 리춘구 · 연출 : 조경순(인민) · 촬영 : 박세웅 · 출연 : 서진주-오미란(인민), 강옥심-박영희, 오태성-리원복, 김원도-최순규, 최범석-김충수(공훈), 리당비서-전재연(인민), 오광일-리광오, 유복녀-정소련

[85] 서해갑문을 승리에로 이끄신 탁월한 지도, 전진하는 조국,

승리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세차게 타오르는 개헌투쟁

1 VideoCassette (총100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서해갑문을 승리에서 이끄신 탁월한 지도 (30분)

전진하는 조국 (20분)

승리의 신심과 혁명적 락관에 넘쳐 (30분)

· 구성 : 김호송 · 연출 : 리도경 · 촬영 : 송정열 · 해설 : 박왕명, 바경실

세차게 타오르는 개헌투쟁. (20분). 총련영화제작소, 1986. 일본어.

[86] 세계자주화와 평화를 위한 주체사상국제토론회(86.4),

번영하는 주체조선, 우리의 하루

1 VideoCassette (총 80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세계자주화와 평화를 위한 주체사상 국제토론회 86.4 (25분)

조선기록영화촬영소 편집, 1986.

· 촬영 : 송정열, 김병규

집단체조 : 번영하는 주체조선 (30분) 조선기록영화촬영소 (1987)

우리의 하루(25분) 조선기록영화촬영소, 1985

· 구성 : 최윤구 · 연출 : 리정근 · 촬영 : 박관섭, 김달섭 · 해설 : 박경실.

[87] 설한령의 세 처녀

조선예술영화촬영소, 삼지연창작단

1 VideoCassette (72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 연출 : 고학림 · 극본 : 류부연 · 배역 : 김순화, 리금숙, 유경숙, 강선학

[88] 성장의 길에서 1,2

조선예술영화촬영소

2 VideoCassette (총 222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 연출 : 김영철, 허현식 · 극본 : 백인준 · 배역 : 박진명 - 엄길선(공훈), 영애
- 최부선, 혜정 - 문예봉

[89] 세상에 부럼 없어라, 위대한 어버이품

1 VideoCassette (90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90] 세차게 타오르는 개현투쟁

총련영화제작소, 1986

1 VideoCassette (20분) : VHS, 유성(일본어), 천연색 : 3/4 Inch

[91] 소금

신필름영화촬영소

1 VideoCassette (95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 감독 : 신상옥 · 원작 : 강경애 · 각색 : 김희봉 · 배역 : 봉식 어머니 - 최은
희, 정의검, 오영환, 리인권

[92] 소나무동산의 비상사건, 도적을 쳐부신 소년

1 VideoCassette (총 40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소나무동산의 비상사건 (20분)

· 극본 : 정성희 · 연출 : 류충웅, · 촬영 : 리영호, · 대사 : 국립연극단

도적을 쳐부신 소년 (20분) 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아동영화창작단

· 각색 : 조상철 · 연출: 김광성 · 촬영 : 고병화 · 대사 : 국립연극단

[93] 소년장수 1, 2, 3

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아동영화창작단

1 VideoCassette (총 60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 연출 : 손정권

[94] 소동은 왜 일어났을까요

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인형영화제작단, 1975

1 VideoCassette (15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95] 쇠도끼와 금도끼

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아동영화창작단

1 VideoCassette (15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 극본 : 차계옥 · 연출 : 리찬걸

[96] 시련을 뚫고

조선예술영화촬영소

1 VideoCassette (92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 연출 : 오병호 · 극본 : 한상훈 · 촬영 : 리기원 · 배역 : 룡호-서경심(인민),

설계실장-김룡린(인민), 지배인-주종일(인민), 명희-라도훈

[97] 시인 조기천

조선예술영화 촬영소

1 VideoCassette (70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 극본 : 김순훈 · 연출 : 박상복 · 촬영 : 곽철삼 · 출연 : 조기천 - 김원.

[98] 시한폭탄

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 VideoCassette (15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99] 신앙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

평양출판사, 내나라비디오제작소, 1989

1 VideoCassette (50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 구성 : 김길영 · 연출 : 김동명, 홍우성 · 촬영 : 리연호, 리송, 김호철

[100] 아금랑

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아동영화창작단

1 VideoCassette (20분) : VHS, 유성, 천연색 3/4 Inch

· 극본 : 김용권 · 연출 : 류충웅, 김순희 · 대사 : 국립연극단

[101] 아름다운 기슭

평양연극영화 대학

1 VideoCassette (60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 극본 : 박청룡 · 연출 : 홍광순 · 촬영 : 허연 · 부연출 : 손인준 · 출연 : 정임

- 리경희, 홍순정, 미화 - 정순옥, 김련옥 영운 - 최수호, 덕안 - 최정태, 룡향

- 로성희, 강진 - 리영호, 최도순 - 장기상, 미화모 - 유금환, 달님 - 리원숙,

마을노인 - 류시준, 소대장 - 차종철, 전사 - 김호성, 간호원 - 리명성

[102]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

조선예술영화촬영소, 백두산창작단

1 VideoCassette (53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 연출 : 엄길선 · 배역 : 안중근 - 리인문, 김명국, 오경식 - 정의검

[103] 압록강을 넘나들며

조선예술영화촬영소, 백두산창작단

1 VideoCassette (105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 연출 : 김덕규(인민), 정운모(공훈) · 극본 : 백인준 · 배역 : 황영일(인민),
김춘남(공훈)

[104] 어린 머슴

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지형영화제작단, 1974

1 VideoCassette (15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105] 어머니의 마음

조선예술영화촬영소, 대흥단창작단

1 VideoCassette (88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 연출 : 김룡린 · 극본 : 오진홍 · 배역 : 장길부 - 김선영(공훈), 순애 - 김옥희
(공훈), 박금실, 마성희, 장성희

[106] 어머니의 소원

예술영화 <어머니의 소원> 제작위원회

1 VideoCassette (98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 연출 : 림창범, 려운각 · 극본 : 김수룡 · 원작 : 장대하 · 배역 : 어머니-강
여선, 태령-김철, 김경자, 박금?, 박태수, 김광렬

[107] 언제나 인민들과 함께

1 VideoCassette (20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108] 언제나 한마음 1

조선예술영화촬영소

1 VideoCassette (105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 연출 : 리재 · 극본 : 김희봉 · 촬영 : 정봉추 · 배역 : 정순-정선화(공훈),
김광남, 김태순

[109] 언제나 한마음 2 (그날의 맹세)

조선예술영화촬영소

1 VideoCassette (102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 연출 : 리재 · 극본 : 김희봉 · 배역 : 정순-정성화(공훈), 정식-김철, 관일
- 리광록(공훈)

[110] 언제나 한마음 3 (고결한 삶)

조선예술영화촬영소, 보천보창작단

1 VideoCassette (90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111] 열네번째의 겨울(전, 후편)

조선예술영화촬영소

2 VideoCassette (총 175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 연출 : 김명호(공훈) · 극본 : 리춘구 · 배역 : 유설경 - 홍영희(공훈), 오원
준, 최창수, 서경섭

[112] 열 다섯 소녀에 대한 이야기

조선예술영화촬영소

1 VideoCassette (64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 연출 : 림창범 · 극본 : 김무국, 장광남

[113] 영생

백두산창작단, 조선 2.8예술영화촬영소, 월미도창작단

1 VideoCassette (143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 연출 : 류호손 · 극본 : 송상원 · 배역 : 김철주 - 박철, 박금순 - 김혜선, 장을
화 - 김인철

[114] 영생의 가치

조선예술영화촬영소

1 VideoCassette (26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115] 예술인들의 종합공연 1, 2

1 VideoCassette (120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116] 오랜 문화의 나라

조선기록영화촬영소

1 VideoCassette (30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117] 5월의 노래

1 VideoCassette (100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118] 오천명 대공연 : 행복의 노래

1 VideoCassette (80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119] 요람 1, 2

조선예술영화촬영소, 왕재산창작단

2 VideoCassette (총 160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 극본 : 오혜영 · 연출 : 김덕규(인민) · 촬영 : 정봉추, 최수일 · 출연 : 봉임
- 정선화(인민), 성태 - 김룡린(인민), 장서 - 김선영(인민), 춘서 - 김광남,
철진 - 조명선(공훈), 분이 - 김영숙, 광석 - 리웅관, 분이할머니 - 손병옥(공
훈) · 후원 : 삼천군인민위원회

[120] 용감한 기리기

1 VideoCassette (15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121] 우리가 만나는 곳

조선예술영화촬영소, 대흥단창작단

2 VideoCassette (총 142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 연출 : 김룡인 · 극본 : 오혜연 · 배역 : 류진 - 한창필, 인혜 - 박미화, 박세현,
남룡우, 김태수

[122] 우리가 본 평양

총련영화제작소, 1987

1 VideoCassette (40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123] 우리 나라 노루와 사슴

1 VideoCassette (20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124] 우리는 묘향산에서 만났다

조선예술영화촬영소

1 VideoCassette (80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 연출 : 오병 · 극본 : 리희찬, 윤호진 · 배역 : 성준-김원(인민), 흥영희, 김
룡린

[125] 우리는 빈터우에서 이렇게 자라났다

조선기록영화촬영소 편집, 1983

1 VideoCassette (40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126] 우리 대의원

조선예술영화촬영소, 왕재산창작단

1 VideoCassette (80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 연출 : 김덕규(인민) · 극본 : 오현락 · 배역 : 흥순정, 리병화, 리종건, 박영
희, 리근우, 손원주

[127] 우리의 소원은 통일

조선중앙텔레비전

1 VideoCassette (65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128] 우리 통신원

조선과학영화촬영소, 만화영화제작단

1 VideoCassette (18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129] 원한의 땅 광주를 고발한다

총련영화제작소, 1980

1 VideoCassette (20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130] 월미도

조선 2.8예술영화촬영소

1 VideoCassette (85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 연출 : 조경순(인민) · 극본 : 민순실 · 배역 : 최창수(공훈), 조경훈(인민),
박봉인(공훈), 최대현(공훈), 윤수경

[131] 위대한 수령 김일성 원수님께서 소련과 구라파 나라들을 공식친선 방문

1 VideoCassette (70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132] 위대한 어버이품, 위대한 수령님 탄생 75돐 성대히 경축

1 VideoCassette (총 105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위대한 어버이품 (55분)

위대한 수령님 탄생 75돐 성대히 경축 (50분)

[133] 위대한 어버이품(전, 후편)

조선예술영화촬영소, 왕재산창작단

2 VideoCassette (총 146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 연출 : 오병초(공훈) · 극본 : 김병준 · 배역 : 김구-유원준(인민), 박태수
(인민), 김동식(공훈), 리승만-은성조(공훈), 프란체스카-서옥순

[134] 위대한 조국해방 전쟁

· 1~2부 : 원한의 땅 광주는 고발한다. 원수를 무찔러 남으로
· 3~4부 : 크로마이트작전(인천상륙작전), 후방도 전선이다.
· 5-6부 : 미제 침략자들의 야수적 만행, 불멸의 위훈, 위대한 승리

조선 기록영화촬영소 편집

3 VideoCassette (총 270분) : VHS, 유성, 흑백 : 3/4 Inch

· 연출 : 리태순, 신우철, 리도경 · 해설 : 김창수(공훈)

[135] 유격대의 오형제 1, 2

조선예술영화촬영소

3 VideoCassette (총 367분) : VHS, 유성, 흑백 : 3/4 Inch

· 연출 : 최익규(공훈) · 극본 : 박승수 · 배역 : 준혁-엄길선, 준민-심준철,
준호-김용린, 준식-김승오, 아버지-한진섭, 순애-원정화

[136] 유원지의 하루

조선예술영화촬영소

1 VideoCassette (53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137] 은비녀

총련영화제작소, 조선예술영화촬영소, 삼지연창작단

1 VideoCassette (100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 연출 : 고헌림 외 4인 · 극본 : 김수중(총련)

[138] 은혜로운 품

조선기록영화촬영소 편집, 1984

1 VideoCassette (25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 연출 : 서경수 · 촬영 : 라명선, 최창목 · 해설 : 박왕명(공훈), 김은실

[139] 이름 없는 영웅들

조선예술영화촬영소

11 VideoCassette (총 1411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 연출 : 류호손, 최남선(공훈) · 극본 : 리진우 · 배역 : 유림-김룡린(공훈),

순희-김정화, 박무-정운모(공훈), 클라우스-손대원

〈목차〉 1편 :	(60분)
2편 : 적후에서 또 적후에서	(60분)
3편 : 적후에서 홀로	(82분)
4편 : 옛 성터에서	(61분)
5편 : 금강석	(111분)
6편 : 한밤중에 저격사건	(76분)
7편 : 정적 속에서의 전투	(70분)
8편 : 위험한 대결	(68분)
9편 : 안개작전	(66분)
10편 : 위기	(67분)
11편 : 일요일에 있는 일	(67분)
12편 : 웃음 속에 비낀 그늘	(75분)
13편 : 판문점	(70분)
14편 : 죽음의 섬	(65분)
15편 : 달 없는 그 밤에	(75분)

16편 : 전투는 계속된다	(64분)
17편 : 유인	(65분)
18편 : 운명	(57분)
19편 : 붉은 저녁노을	(85분)
20편 : 우리는 잊지 않는다	(67분)

[140] **이어가자 민족의 열**

총련영화제작소

1 VideoCassette (25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141] **이재환 청년 기자회견**

1 VideoCassette (50분) : VHS, 유성, 흑백 : 3/4 Inch

[142] **인민대학습당, 평양지하철, 주체사상탑**

조선기록영화촬영소

1 VideoCassette (총 30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인민대학습당 (10분) 조선기록영화촬영소, 1982

평양지하철 (10분) 조선기록영화 촬영소, 1981

주체사상탑 (10분) 조선기록영화 촬영소, 1982

[143] **인민의 염원**

조선기록영화촬영소 편집, 1985

1 VideoCassette (40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 구성 : 김상옥 · 연출 : 김창익 · 촬영 : 박성호, 김정주, 송정일 · 해설 : 박

왕명(공훈), 김은실

〔144〕 임꺽정 1, 2

조선예술영화촬영소, 왕재산창작단

2 VideoCassette (총 151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 연출 : 장영복 · 원작 : 홍명희 · 각색 : 김세륜 · 배역 : 최창수, 량해승, 리
룡운, 고종환

〔145〕 잊지 말자 지난날의 처지를, 모두다 조국통일 대행진으로

1 VideoCassette (총 45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잊지말자 지난날의 처지를 (25분) 조선기록영화촬영소, 총련영화제작소.

모두다 조국통일 대행진으로 (20분) 총련영화제작소, 1990

〔146〕 자루 속에 든 승냥이

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지형영화제작단, 1975

1 VideoCassette (15분) : VHS, 유성, 흑백 : 3/4 Inch

〔147〕 장하다 통일의 꽃 임수경 1, 2

(남조선 전대협 대표 평양 축전 참가)

평양출판사 내나라비디오제작소

2 VideoCassette (총 70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148〕 재일동포들의 선물공장 제1호

총련영화제작소, 1987

1 VideoCassette (30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149〕 전사의 숨결

조선 2.8예술영화촬영소, 월미도창작단

1 VideoCassette (72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 연출 : 채풍기(공훈) · 극본 : 최용주 · 배역 : 홍경란, 정훈란, 곽명서, 차성철

[150] 전환의 해

조선예술영화촬영소

1 VideoCassette (103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 연출 : 리재준(공훈) · 극본 : 김희봉 · 촬영 : 정봉추(공훈) · 배역 : 성국 -
최창수(공훈), 성철 - 김원(인민), 지배인 - 김룡림(인민)

[151] 제굴로 돌아가라

1 VideoCassette (20분) : VHS, 유성, 흑백 : 3/4 Inch

[152] 제13차 세계청년학생 축전이 힘있게 준비되고 있다

1 VideoCassette (20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153] 제13차 평양축전 (종합)

1 VideoCassette (120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154] 제13차 평양축전 개막식

내나라 비디오 제작소, 1989

1 VideoCassette (50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155] 제13차 평양축전 유치원어린이 공연

1 VideoCassette (90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156〕 제13차 평양축전 집단체조 (오늘의 조선)

1 VideoCassette (110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157〕 제13차 평양축전 폐막식

1 VideoCassette (70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158〕 조선민속놀이

내나라 비데오제작소, 1989

1 VideoCassette (50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 구성 : 김동명 · 촬영 : 리연호, 리송, 김호철, 김연일

〔159〕 조선아 달려라

신필름영화촬영소

1 VideoCassette (80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160〕 조선의 민요 1~5

1 VideoCassette (50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161〕 조선의 별 I

조선예술영화촬영소, 백두산창작단

1 VideoCassette (90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 연출 : 엄길선 · 극본 : 리종순 · 촬영 : 정익환 · 배역 : 김혁 - 김원, 차광수
- 리정천, 서정애 - 전정희, 문일광 - 박성, 최창걸 - 김선남

〔162〕 조선의 별 II

조선예술영화촬영소, 백두산창작단

1 VideoCassette (105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 연출 : 엄길선 · 극본 : 리종순 · 촬영 : 정익환 · 배역 : 김혁-김원, 차광수
- 이정천, 서정애-전정희, 문일광-박성, 최창걸-김선남

[163] 조선의 별 III

조선예술영화촬영소, 백두산창작단

1 VideoCassette (113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 연출 : 엄길선 · 극본 : 리종순 · 촬영 : 정익환 · 배역 : 김혁-김원, 차광수
- 이정천, 서정애-전정희, 문일광-박성, 최창걸-김선남

[164] 조선의 별 IV(잊을 수 없는 여름)

조선예술영화촬영소, 백두산창작단

1 VideoCassette (72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연출 : 엄길선 · 극본 : 리종순 · 촬영 : 정익환 · 배역 : 김혁-김원, 차광수
- 이정천, 서정애-전정희, 문일광-박성, 최창걸-김선남

[165] 조선의 별 V(눈보라)

조선예술영화촬영소, 백두산창작단

1 VideoCassette (72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 연출 : 엄길선 · 극본 : 리종순 · 촬영 : 정익환 · 배역 : 김혁-김원, 차광수
- 이정천, 서정애-전정희, 문일광-박성, 최창걸-김선남

[166] 조선의 별 VI(불타는 봄)

조선예술영화촬영소, 백두산창작단

1 VideoCassette (70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 연출 : 엄길선 · 극본 : 리종순 · 촬영 : 정익환 · 배역 : 김혁-김원, 차광수
- 이정천, 서정애-전정희, 문일광-박성, 최창걸-김선남

[167] 조선의 별 VII(남만에서)

조선예술영화촬영소, 백두산창작단

1 VideoCassette (100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 연출 : 엄길선 · 극본 : 리종순 · 촬영 : 정익환 · 김혁-김원, 차광수-이정
천, 서정애-전정희, 문일광-박성, 최창걸-김선남

[168] 조선의 별 VIII(저물어 가는 1932)

조선예술영화촬영소, 백두산창작단

1 VideoCassette (105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 연출 : 엄길선 · 극본 : 리종순 · 촬영 : 정익환 · 배역 : 김혁-김원, 차광수
- 이정천, 서정애-전정희, 문일광-박성, 최창걸-김선남

[169] 조선의 별 IX(로혹산의 전설)

조선예술영화촬영소, 대흥단창작단

1 VideoCassette (87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 연출 : 엄길선 · 극본 : 리종순 · 촬영 : 정익환 · 배경 : 김혁-김원, 차광수
- 이정천, 서정애-전정희, 문일광-박성, 최창걸-김선남

[170] 조선의 별 X(불타는 근거지)

조선예술영화촬영소, 보천보창작단

1 VideoCassette (122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 연출 : 엄길선 · 극본 : 리종순 · 배역 : 김혁 - 김원, 차광수 - 이정천, 서정
애 - 전정희, 문일광 - 박성, 최창길 - 김선남

[171] 조선의 태권도

조선기록영화촬영소 편집, 1988

1 VideoCassette (30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 구성 : 김룡 · 연출 : 한광섭, 최창목, 한배근 · 해설 : 박왕명(공훈), 엄순희

[172] 즐거운 야영생활

조선기록영화촬영소 편집

1 VideoCassette (20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173] 즐거운 조국방문

총련영화제작소

1 VideoCassette (40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174] 지하의 명승 석화궁, 창광원, 송도원

1 VideoCassette (총55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지하의 명승 석화궁, (25분) 조선기록영화촬영소 편집, 1983

· 연출 : 리도경 · 촬영 : 신석범(공훈) · 해설 : 박경실.

창광원 (10분)

송도원 (20분) 조선기록영화촬영소 편집, 1980.

· 구성 : 남철훈 · 연출 : 리도경 · 촬영: 박관섭, 김석천 · 해설 : 박왕명(공훈)

[175] 진실한 사람

조선 2.8예술영화촬영소, 대덕산창작단

1 VideoCassette (95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 연출 : 최부길 · 원작 : 모진홍 · 배역 : 김광문, 이정천, 리근우, 전재연

[176] 참된 민주화를 위하여 : 광주 6월 항쟁

1 VideoCassette (20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177] 창광거리

조선기록영화촬영소 편집, 1985

1 VideoCassette (25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178] 철길을 따라 천만리

신필름영화촬영소

1 VideoCassette (110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 연출 : 김길? · 극본 : 김세륜 · 배역 : 순규-곽원우, 정희-오미란, 철수-
최봉식

[179] 철이의 방학숙제

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만화영화제작단

1 VideoCassette (20분) : VHS, 유성, 흑백 : 3/4 Inch

[180] 첫 보안서원들

조선 2.8예술영화촬영소, 월미도창작단

1 VideoCassette (130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 연출 : 류한손 · 극본 : 정명기 · 촬영 : 정규완 · 배역 : 진혁-곽명서, 상준

- 리영남, 원길 - 리상훈, 보안서원 - 최금철, 리응구, 김창식, 한용팔

[181] 청개구리 기상대

조선예술영화촬영소, 지형영화제작자

1 VideoCassette (19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182] 청춘의 심장

조선 2.8예술영화촬영소

1 VideoCassette (98분) : VHS, 유성, 천연색 3/4 Inch

· 연출 : 조경순 · 극본 : 리춘구 · 배역 : 채숙 - 송련옥, 해연 - 리현옥, 명호
- 박효신, 대섭 - 정의겸, 직장장 - 전재연(공훈)

[183] 총련비디오시리즈 1~11(1985~1988)

총련영화제작소

11 VideoCassette (총 445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제 1호 : 1985년

제7호 : 1987년 (35분)

제 2호 : 1985년

제8호 : 1987년 (35분)

제 3호 : 1986년

제9호 : 1987년 (35분)

제 4호 : 1986년

제10호 : 1988년 (35분)

제 5호 : 1986년

제11호 : 1988년 (35분)

제 6호 : 1987년

[184] 최학신 일가 (상, 하)

2 VideoCassette (총 50분) : VHS, 유성, 흑백 : 3/4 Inch

[185] 추억의 노래

조선 2.8예술영화촬영소, 월미도창작단

1 VideoCassette (75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 연출 : 류호손(인민) · 극본 : 리희찬 · 배역 : 라설주-김정화(공훈), 리영희-리설희, 김종남

[186] 춘향전 1, 2

조선예술영화촬영소

2 VideoCassette (총 160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 연출 : 윤원준, 윤룡규 · 각색 : 백인준, 김승구 · 배역 : 춘향-김영숙, 리도령-최순규, 월매-김선영, 향단-김영숙(공훈), 방자-고종한

[187]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평양시 건설을 현지에서 지도

1 VideoCassette (30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188]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중국방문

1 VideoCassette (100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189] 침략자 미제를 고발한다

조선기록영화촬영소편집

1 VideoCassette (90분) : VHS, 유성(일본어), 흑백 : 3/4 Inch

[190] 클락새

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대중과학영화제작단, 1977

1 VideoCassette (20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191] 탈출기

신필림영화촬영소, 1984

1 VideoCassette (100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 연출 : 신상옥 · 극본 : 김희봉 · 원작 : 최서해 · 촬영 : 박관영, 황룡철,
· 출연 : 성렬 - 최창수, 순실 - 최은희, 리씨 - 김련실, 춘보 - 박민, 오득 - 손
원주, 김군 - 김동식, 리가 - 리완삼, 장사군여인 - 김영숙, 성환 - 박영학, 너
주인 - 최청희, 세방주인 - 김찬민, 왕가 - 황순범

[192] 토끼전

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인형제형영화제작단

1 VideoCassette (15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193] 판문점

조선기록영화촬영소 편집

1 VideoCassette (19분) : VHS, 유성, 흑백(B&W) : 3/4 Inch

[194] 평범한 사람

조선예술영화촬영소, 대흥단창작단

1 VideoCassette (75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 연출 : 김영호(공훈) · 극본 : 리덕윤 · 배역 : 원삼 - 유원준(인민), 학민 -
리종건, 세옥 - 김복실, 인철 - 신명옥, 원삼의 처 - 손병옥(공훈)

[195] 평양을 찾아서

평양출판사, 내나라 비데오제작소, 1989.

1 VideoCassette (45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 구성 : 김식 · 연출 : 김동명, 홍우성 · 촬영 : 이정호, 이송, 김호철

[196] 평양의 모습, 조선의 태권도

1 VideoCassette (총 55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평양의 모습 (25분) 조선기록영화촬영소

· 구성 · 연출 : 백정성 · 촬영 : 신석범(공훈), 김명의 · 해설 : 박왕명(공훈)

조선타권도 (30분)

· 구성 : 김룡 · 연출 : 한광성 · 촬영 : 최창욱, 한배근 · 해설 : 박왕명(공훈),
임순희

[197] 평양학생소년예술단

조선기록영화촬영소 편집, 1983

1 VideoCassette (40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 구성 · 촬영 : 송정열, 강종근, 리영식, 오현록 · 협조 : 총련영화제작소

[198] 평양학생소년예술단 제2차 일본공연

총련영화제작단

1 VideoCassette (122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199] 평양학생예술단 일본에서 공연

조선기록영화촬영소 편집, 1983

1 VideoCassette (35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 구성 · 촬영 : 송정열, 강종근, 리영식, 오현록 · 협조 : 총련영화제작소

[200] 평화는 깃들지 않았다

조선 2.8예술영화촬영소, 월비산창작단

1 VideoCassette (77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 연출 : 림영일 · 원작 : 박국태 · 배역 : 리익승, 리설희, 리성일

[201] 푸른 소나무

조선예술영화촬영소, 보천보창작단, 백두산창작단

1 VideoCassette (127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 연출 : 리재? · 원작 : 백인준 · 배역 : 김형직 - 김선남(공훈), 한세광 - 박섭
(인민)

[202] 피바다 1, 2

조선예술영화촬영소, 백두산 창작단, 1969

2 VideoCassette (총 220분) : VHS, 유성, 흑백 : 3/4 Inch

· 각색 : 박승수 · 연출 : 최익규, 안문화 · 촬영 : 박병수 · 미술 : 김혜일 · 작
곡 : 김찬범 · 배역 : 양혜자, 김승오, 리금선, 정래영

[203] 한 건축가에 대한 이야기

조선예술영화촬영소

1 VideoCassette (88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 연출 : 김춘식 · 극본 : 리덕운 · 배역 : 김정훈 - 김준식(인민), 사일 - 박수
영, 리숙 - 김옥희(공훈)

[204] 한마음으로

조선 2.8예술영화촬영소, 월미도 창작단

1 VideoCassette (50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 극본 : 라진우 · 원작 : 송가 · 연출 : 채금기 · 촬영 : 강리조, 조명현 · 출
연 : 윤희 - 흥경란, 윤전수 - 리성일, 역장 - 광명서, 똥부청년 - 이용구, 박사
- 추석봉, 열차원 - 박명옥, 열차장 - 로재혁, 역안내원 - 오명옥, 환자 - 황
석림, 간호원 - 백미향, 역사령원 - 인명철, 통신중위 - 정문찬, 조역 - 리민
철, 의사들 - 리영호, 리두임, 김대홍, 후원 - 강원도 김정수군 철도부

[205] 한 지대장의 이야기

조선예술영화촬영소, 왕재산창작단

1 VideoCassette (147분) : VHS, 유성, 흑백 : 3/4 Inch

· 연출 : 김덕규 · 극본 : 리종순 · 배역 : 허철만 - 최창수, 심혜영 - 홍영희,
박석, 서경섭

[206] 함경남북도(조국기행)

조선기록영화촬영소, 총련영화제작소, 1985

1 VideoCassette (20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207] 해발

백두산창작단, 조선예술영화촬영소, 보천보창작단

1 VideoCassette (120분): VHS, 유성, 천연색 : 3 /4 Inch

· 연출 : 정윤오 · 극본 : 백인준, 송상원 · 배역 : 구장 - 박태수(인민), 탄실
- 김영숙(공훈), 박금실, 정영희(공훈)

[208] 헤어져 언제까지

신필름

1 VideoCassette (95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 연출 : 박창성 · 극본 : 리회찬 · 배역 : 유원준, 박미화, 추석봉, 김광렬, 손
원주

[209] 혁명가(1, 2부)

조선 2.8예술영화촬영소, 대덕산창작단

1 VideoCassette (130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 연출 : 조경? · 극본 : 리춘구 · 촬영 : 최우규 · 배역 : 최현 - 김령조(인민),
박철무 - 김광문, 강철수 - 정의겸, 강태식 - 최순?, 옥선경 - 홍경?

[210] 혁명전사

백두산창작단, 조선 2.8예술영화촬영소, 월미도창작단

1 VideoCassette (125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 연출 : 류호손 · 극본 : 송상원 · 배역 : 김철주 - 박철, 최봉식, 오미란(공
훈), 추석봉(공훈)

[211] 혈육(전, 후)

조선 2.8예술영화촬영소

1 VideoCassette (146분) : VHS, 유성, 흑백 : 3/4 Inch

· 연출 : 민정식 · 극본 : 김세륜 · 배역 : 준도 - 전재연, 명진 - 김광익, 진옥
- 김옥희, 연옥 - 강순정

[212] 흥길동

조선예술영화촬영소

1 VideoCassette (110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 연출 : 김길이 · 원작 : 허균 · 촬영 : 전홍석 · 배역 : 흥길동 - 리영호, 연화
- 박춘희, 춘섬 - 최순복, 특재 - 김윤희, 림정승 - 최계식

3. 개정 북한 신헌법(전문)

제1장 정 치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 국가이다.

【제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국주의 침략자들을 반대하며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에서 이룩한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은 혁명적인 정권이다.

【제3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

【제4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노동자, 농민, 근로인테리와 모든 근로인민에게 있다.

【제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모든 국가기관들은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원칙에 의하여 조직되며 운영된다.

【제6조】 군인민회의로부터 최고인민회의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주권기관은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한다.

【제7조】 각급 주권기관의 대의원은 선거자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자기 사업에 대하여 선거자들 앞에 책임진다. 선거자들은 자기가 선거한 대의원이 신임을 잃은 경우에 언제든지 소환할 수 있다

【제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 것의 주인으로 되고 있으며 사회의 모든 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중심의 사회제도이다.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노동자, 농민, 근로인테리의 리익을 옹호하며 보호한다.

【제9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제10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노동계급이 령도하는 노동동맹에 기초한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 통일에 의거한다.

국가는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노동계급화 하며 온 사회를 통치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집단으로 만든다.

【제11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

【제12조】 국가는 계급로선을 견지하며 인민민주주의 독재를 강화하여 내외적대분자들의 파괴책동으로부터 인민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보위한다.

【제13조】 국가는 균중로선을 구현하며 모든 사업에서 우가 아래를 도와주고 대중 속에 들어가 문제해결의 방도를 찾으며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워 대중의 지각적 열성을 불러일으키는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관철한다.

【제14조】 국가는 3대혁명 붉은기쟁취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 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친다.

【제1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조선동포들의 민주주의적 민족권리와 국제법에 공인된 합법적 권리를 옹호한다.

【제1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기 령역 안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장한다.

【제17조】 자주 평화 친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이며 대외 활동 원칙이다.

국가는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적 또는 정치-경제-문화적 관계를 맺는다.

국가는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과 단결하며 온갖 형태의 침략과 내정간섭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적-계급적 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 성원한다.

【제1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은 근로인민의 의사와 이익의 반영이며 국가관리의 기본무기이다.

법에 대한 존중과 엄격한 준수집행은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있어서 의무적이다.

국가는 사회주의 법률제도를 완비하고 사회주의 법무생활을 강화한다.

제3장 경 제

【제19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와 자립적 민족경제의 토대에 의거한다.

【제2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생산수단은 국가와 협동단체만이 소유한다.

【제21조】 국가 소유는 전체 인민의 소유이다. 국가 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중요공장과 기업소, 항만, 은행, 교통운수와 체신기관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국가는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국가소유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며 장성시킨다.

【제22조】 협동단체 소유는 협동경리에 들어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소유이다.

토지 부림집승 농기구 고기배 건물 같은 것과 중소공장, 기업소는 협동단체가 소유할 수 없다.

국가는 협동단체 소유를 보호한다.

【제23조】 국가는 농민들의 사상의식과 기술문화수준을 높이고 협동적 소유에 대한 전인민적 소유의 지도적 역할을 높이는 방향에서 두 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며 협동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하여 사회주의적 협동경리제도를 공고 발전시키며 협동단체에 들어있는 전체 성원들의 자원적 의사에 따라 협동단체 소유를 점차 전인민적 소유로 전환시킨다.

【제24조】 개인소유는 근로자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이다. 근로자들의 개인소유는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와 국가와 사회의 추가적 혜택으로 이루어진다.

협동농장원들의 터밭경리를 비롯한 주민의 개인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도 개인소유에 속한다. 국가는 근로자들의 개인소유를 보호하며 그에 대한 상속권을 법적으로 보장한다.

【제25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 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는다.

세금이 없어진 우리 나라에서 끊임없이 늘어나는 사회의 물질적 부는 전적으로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에 돌려진다. 국가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먹고 입고 쓰고 살수 있는 온갖 조건을 마련하여 준다.

【제26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마련된 자립적 민족경제는 인민의 행복한 사회주의 생활과 조국의 자주적 발전을 위한 튼튼한 밑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 자립적 민족 경제건설 로선을 틀어쥐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쳐 인민경제를 고도로 발전된 주체적인 경제로 만들며 완전한 사회주의 사회에 맞는 물질-기술적 토대를 쌓기 위하여 투쟁한다.

【제27조】 기술혁명은 사회주의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 고리이다.

국가는 언제나 기술발전문제를 첫자리에 놓고 모든 경제활동을 진행하며 과학기술발전과 인민경제의 기술개조를 다그치고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며 육체로동과 정신로동의 차이를 줄여나간다.

【제28조】 국가는 도시와 농촌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 차이를 없애기 위하여 농촌기술혁명을 다그쳐 농업을 공업화하며 군의 역할을 높이고 농촌에 대한 지도와 방조를 강화한다. 국가는 협동농장의 생산시설과 농촌문화주택을 국가부담으로 건설하여 준다.

【제29조】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근로대중의 창조적 로동에 의하여 건설된다.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로동은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노동이다.

국가는 실업을 모르는 우리 근로자들의 노동이 보다 즐거운 것으로, 사회와 집단과 자신을 위하여 자각적 열성과 창발성을 내어 일하는 보람찬 것으로 되게 한다.

【제30조】 근로자들의 하루 노동시간은 8시간이다.

국가는 노동의 힘든 정도와 특수한 조건에 따라 하루 노동시간을 이보다 짧게 정한다.

국가는 노동조직을 잘하고 노동규율을 강화하여 노동시간을 완전히 리용하도록 한다.

【제3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이 노동하는 나이는 16살부터이다.

국가는 노동하는 나이에 이르지 못한 소년들의 노동을 금지한다

【제32조】 국가는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에서 정치적 지도와 경제기술적 지도, 국가의 통일적 지도와 매개단위의 창발성, 유일적 지휘와 민주주의, 정치도덕적 자극과 물질적 자극을 옹계 결합시키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한다.

【제33조】 국가는 생산자대중의 집체적 힘에 의거하여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사회주의경제관리 형태인 대안의 사업체계와 농촌경리를 기업적 방법으로 지도하는 농업지도체계에 의하여 경제를 지도관리 한다.

【제3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민경제는 계획경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 경제발전법칙에 따라 축적과 소비의 균형을 옹계 잡으며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며 국방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민경제 발전 계획을 세우고 실행한다.

국가는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방침을 관철하여 생산성장의 높은 속도와 인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보장한다.

【제35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인민경제 발전계획에 따르는 국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다.

국가는 모든 부문에서 증산과 절약투쟁을 강화하고 재정통제를 엄격히 실시하여 국가 축적을 체계적으로 높이며 사회주의적 소유를 확대 발전시킨다.

【제36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 대외무역은 국가가 하거나 국가의 감독 밑에서 한다.

국가는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대외무역을 발전시킨다.

【제37조】 국가는 우리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와 다른 나라 법인 또는 개인들과의 기업 합영과 합작을 장려한다.

【제38조】 국가는 자립적 민족경제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세정책을 실시한다.

【제3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개화발전하고 있는 사회주의적 물화는 근로자들의 창조적 능력을 높이며 건전한 문화정서적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40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모든 사람들을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과 높은 문화기술수준을 가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만들며

온 사회를 인테리화한다.

【제41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근로자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문화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적 민족문화건설에서 제국주의의 문화적 침투와 복고주의적 경향을 반대하며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사회주의 현실에 맞게 계승발전시킨다.

【제42조】 국가는 모든 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생활양식을 없애고 새로운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을 전면적으로 확립한다.

【제43조】 국가는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건철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키운다.

【제44조】 국가는 인민교육사업과 민족간부양성 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앞세우며 일반교육과 기술교육, 교육과 생산로동을 밀접히 결합시킨다.

【제45조】 국가는 1년 동안의 학교 전 의무교육을 포함한 전반적 11년제 의무교육을 현대과학기술발전추세와 사회주의 건설의 현실적 요구에 맞게 높은 수준에서 발전시킨다.

【제46조】 국가는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제와 일하면서 공부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교육체제를 발전시키며 기술교육과 사회과학 기초과학교육의 과학리론수준을 높여 유능한 기술자 전문가들을 키워낸다.

【제47조】 국가는 모든 학생들을 무료로 공부시키며 대학과 전문학교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준다.

【제48조】 국가는 사회교육을 강화하며 모든 근로자들이 학습할 수 있는 온갖 조건을 보장한다.

【제49조】 국가는 학령전 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워준다.

【제50조】 국가는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세우며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고 새로

제3장 문 화

은 과학기술분야를 개척하여 나라의 과학기술을 세계적 수준에 올려 세운다.

【제51조】 국가는 과학기술발전계획을 바로 세우고 철저히 수행하는 규율을 세우며 과학자 기술자 생산자들의 창조적 협조를 강화하여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을 촉진시킨다.

【제52조】 국가는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은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문학예술을 발전시킨다.

국가는 창작가 예술인들이 사상예술성이 높은 작품을 많이 창작하며 광범한 대중이 문

예활동에 널리 참가하도록 한다.

【제53조】 국가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사람들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인 문화시설들을 충분히 갖추어주어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주의적 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누리도록 한다.

【제54조】 국가는 우리말을 온갖 형태의 민족어 말살책동으로부터 지켜내며 그것을 현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킨다.

【제55조】 국가는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할데 대한 방침을 관철하여 전체인민을 노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키며 우리 나라 실정과 현대체육 기술발전추세에 맞게 체육기술을 발전시킨다.

【제56조】 국가는 전반적 무상치료제를 공고발전 시키며 의사담당구역제를 강화하고 예방의학적 방침을 관철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제57조】 국가는 생산에 앞서 환경보호대책을 세우며 자연환경을 보존 조성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인민들에게 문화위생적인 생활환경과 노동조건을 마련하여 준다.

제4장 국 방

【제58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전인민적 전국가적 방위체계에 의거한다.

【제59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무장력의 사명은 근로인민의 이익을 옹호하며 외래침략으로부터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보위하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과 평화를 지키는데 있다.

【제60조】 국가는 군대와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우에서全民무장화, 전국요새화,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자위적 군사로선을 관철한다.

【제61조】 국가는 군대안에서 군사규율과 군중규률을 강화하며 관병일치, 군민일치외 고상한 전통적 미풍을 높이 발양하도록 한다.

제5장 공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

【제6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이 되는 조건은 국적에 관한 법으로 규정한다.

공민은 거주지에 관계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보호를 받는다.

【제63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의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라는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한다.

【제64조】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참다운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국민의 권리와 자유는 사회주의제도의 공고발전과 함께 더욱 확대된다.

【제65조】 국민은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 같이 권리를 가진다.

【제66조】 17살 이상의 모든 국민은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과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군대에 복무하는 국민도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할 권리를 빼앗긴자, 정신병자는 선거할 권리와 선거 받을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제67조】 국민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

【제68조】 국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장된다. 누구든지 종교로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 데 리용 할 수 없다.

【제69조】 국민은 신소와 청원을 할 수 있다. 신소와 청원은 법이 정한 절차와 기간 안에 심의처리 하여야 한다.

【제70조】 국민은 노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노동능력 있는 모든 국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안정된 일자리와 노동조건을 보장받는다.

국민은 능력에 따라 일하며 노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를 받는다.

【제71조】 국민은 휴식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노동시간제, 공휴일제, 유급휴가제, 국가비용에 의한 정휴양제, 계속 늘어나는 여러 가지 문화시설들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72조】 국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며 나이 많거나 병 또는 불구로 노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와 어린이는 물질적 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무상치료제, 계속 늘어나는 병원, 료양소를 비롯한 의료시설, 국가 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73조】 국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선진적인 교육제도와 국가의 인민적인 교육정책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74조】 국민은 과학과 문화예술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발명가와 창의고안자에게 배려를 돌린다.

저작권과 발명권은 법 적으로 보호한다.

【제75조】 혁명투사, 혁명렬사가족, 애국렬사가족, 인민군후방가족, 영예군인은 국가와 사회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제76조】 녀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산전산후휴가의 보장, 여러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를 위한 노동시간의 단축, 산원, 탁아소와 유치원망의 확장,

그 밖의 시책을 통하여 어머니와 어린이를 특별히 보호한다.

국가는 녀성들이 사회에 진출할 온갖 조건을 지어 준다.

【제77조】 결혼과 가정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사회의 기층생활단위인 가정을 공고히 하는데 깊은 배려를 돌린다.

【제78조】 공민은 인신과 주택의 불가침, 서신의 비밀을 보장받는다.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공민을 구속하거나 체포 할 수 없으며 살림집을 수색할 수 없다.

【제79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 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과학 문화의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다가 망명하여 온 다른 나라 사람을 보호한다.

【제80조】 공민은 인민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단결을 견결히 수호하여야 한다.

【제81조】 공민은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 생활규범을 지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민된 영예와 존엄을 고수하여야 한다.

【제82조】 집단주의는 사회주의사회생활의 기초이다.

공민은 조직과 집단을 귀중히 여기며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제83조】 노동은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노동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며 노동규률과 노동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제84조】 공민은 국가재산과 공동채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온갖 탐오랑비현상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나라살림살이를 주인답게 알뜰히 하여야 한다.

국가와 사회협동단체 재산은 신성불가침이다.

【제85조】 공민은 언제나 혁명적 경각성을 높이며 국가의 안전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제86조】 조국보위는 공민의 최대의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조국을 보호하여야 하며 법이 정한데 따라 군대에 복무하여야 한다.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는 것은 가장 큰 죄악이며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는 자는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한다.

제6장 국가기구

제1절 최고인민회의

【제87조】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이다. 최고인민회의회의중의 상무기관은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이다.

【제88조】 입법권은 최고인민회의와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가 행사한다.

【제89조】 최고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에 선출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제90조】 최고인민회의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최고인민회의의 새 선거는 최고인민회의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때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91조】 최고인민회의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 ① 헌법을 수정한다.
- ② 법령을 제정 또는 수정한다.
- ③ 최고인민회의의 휴회 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가 채택한 법을 승인한다.
- ④ 국가의 대내외정책의 기본원칙을 세운다.
- 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주석의 제의에 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부주석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⑦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⑧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국방위원회 위원장의 제의에 의하여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⑨ 중앙인민위원회 서기장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⑩ 최고인민회의의 부문별 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⑪ 최고인민회의의 부문별 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⑫ 중앙재판소 소장을 선고 또는 소환한다.
- ⑬ 중앙검찰소 소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 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의 제의에 의하여 정무원 총리를 선거 또는 소환한다.
- ⑮ 상정무원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정무원 부총리, 위원장, 부장 그 밖의 정무원성원들을 임명한다.
- ⑯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 ⑰ 국가예산과 그 집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 ⑱ 필요에 따라 최고인민회의가 조직한 중앙 국가기관의 사업정형을 보고 받고 대책을 세운다.
- ⑲ 최고인민회의에 제기되는 조약의 비준 폐기를 결정한다
- ⑳ 전쟁과 평화에 관한 문제를 결정한다.

【제92조】 최고인민회의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1, 2차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가 소집한다. 임시회의는 최고인민회의의 상설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제93조】 최고인민회의의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제94조】 최고인민회의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한다. 의장은 회의를 집행하며 대외관계에

서 최고인민회의를 대표한다. 부의장은 의장의 사업을 돕는다.

【제95조】 최고인민회의에서 토의할 의안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주석,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중앙인민위원회, 정무원과 최고인민회의 위원회들이 제출한다. 대의원들도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96조】 최고인민회의 제1차 회의는 대의원자격심사위원회를 선거하고 그 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에 근거하여 대의원자격을 확인하는 결정을 채택한다.

【제97조】 최고인민회의는 법령과 결정을 낸다.

최고인민회의가 내는 법령, 결정은 거수가결의 방법으로 그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의 반수 이상이 찬성하여야 채택된다.

헌법은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전원의 3분의2이상이 찬성하여야 수정된다.

【제98조】 최고인민회의는 법제위원회, 예산위원회, 외교위원회, 통일정책위원회 같은 필요한 위원회를 둔다.

최고인민회의의 위원회들은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최고인민회의의 위원회들은 최고인민회의의 사업을 도와 국가의 정책과 법안을 작성하거나 심의하며 그 집행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최고인민회의의 위원회들은 최고인민회의의 휴회 중에 최고 인민회의 상설회의의 지도 밑에 사업한다

【제99조】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은 대의원으로서의 불가침권을 보장받는다.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은 최고인민회의, 그 휴회 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의 승인 없이 체포하거나 처벌할 수 없다.

【제100조】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는 의장, 부의장, 서기장, 의원들로 구성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장, 부의장은 각각 최고인민회의 의장, 부의장이 겸임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01조】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 ① 최고인민회의의 휴회 중에 제기된 법안과 현행법령의 수정안을 심의채택하고 다음 번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 ② 새로운 법안과 법 수정안을 채택한 경우 그와 어긋나는 법규들을 폐지한다.
- ③ 현행법령을 해석한다.
- ④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한다.
- ⑤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한다.
- ⑥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 ⑦ 최고인민회의의 위원회들과의 사업을 한다.
- ⑧ 지방인민회의의 대의원선거 사업을 조직한다.
- ⑨ 중앙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⑩ 다른 나라 국회, 국제회의기구들과의 사업을 비롯한 대외사업을 한다.

【제102조】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는 결정과 지시를 낸다.

【제103조】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난 후에도 새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가 선거될 때까지 자기 임무를 계속 수행한다.

【제104조】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앞에 책임진다.

제2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제10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국가의 수반이며 조심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대표한다.

【제10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07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의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 ① 중앙인민위원회사업을 지도한다.
- ② 필요에 따라 정무원회의를 소집하고 지도한다.
- ③ 최고인민회의 법령,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중앙인민위원회 중요정령과 결정을 공포한다.
- ④ 특사권을 행사한다.
- ⑤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의 비준 또는 폐기를 공포한다.
- ⑥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의 임명 또는 소환을 발표한다
- ⑦ 다른 나라 사신의 신임장, 소환장을 접수한다.

【제108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주석은 명령을 낸다.

【제10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앞에 책임진 진다.

【제11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부주석은 주석의 사업을 돕는다.

제3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11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이다.

【제112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는 위원장,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제113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 한다.

【제114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 ① 국가의 전반적 무력과 국방건설사업을 지도한다.
- ② 중요 군사간부를 임명 또는 해임한다.
- ③ 군사칭호를 제정하며 장령 이상의 군사칭호를 수여한다.

④ 유사시 전시상태와 동원령을 선포한다.

【제11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는 결정과 명령을 낸다.

【제116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는 자기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앞에 책임진다.

제4절 중앙인민위원회

【제117조】 중앙인민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권의 최고지도기관이다.

【제118조】 중앙인민위원회 수위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주석이다.

【제119조】 중앙인민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 중앙인민위원회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중앙인민위원회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20조】 중앙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 ① 국가의 정책과 그 집행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 ② 정무원과 지방 인민회의와 인민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 ③ 사법 - 검찰 기관사업을 지도한다.
- ④ 국가기관들의 법준수집행을 지도하며 법집행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처리한다.
- ⑤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결정, 지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명령,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결정, 명령, 중앙 인민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집행정형을 감독하며 그와 어긋나는 지방인민회의의 결정집행을 정지시키고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 ⑥ 부문별 행정적 집행기관인 정무원 위원회, 부를 내오거나 없앤다.
- ⑦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에 정무원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부총리, 위원장, 부장, 그 밖의 정무원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 ⑧ 중앙인민위원회 부문별 위원회 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 ⑨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한다.
- ⑩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의 임명 또는 소환을 결정한다
- ⑪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 외교직급을 제정하며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를 수여한다.
- ⑫ 대사권을 행사한다.
- ⑬ 행정구역을 새로 내오거나 고친다.

【제121조】 중앙인민위원회는 정령과 결정, 지시를 낸다.

【제122조】 중앙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을 돕는 필요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23조】 중앙인민위원회는 자기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앞에 책임진다.

제5절 정무원

【제124조】 정무원은 최고주권기관의 행정적 집행기관이다.

정무원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주석과 중앙인민위원회의 지도 밑에 사업한다.

【제125조】 정무원은 총리, 부총리, 위원장, 부장들과 그밖에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한다.

정무원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26조】 정무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 ① 각 위원회, 부, 정무원직속기관, 지방행정경제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 ② 정무원직속기관을 내오거나 없앤다.
- ③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 ④ 국가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 ⑤ 공업, 농업, 건설, 운수, 체신, 상업, 무역, 국토관리, 도시경영, 교육, 과학, 문화, 보건, 환경보호, 관광 그 밖의 여러 부문의 사업을 조직집행한다.
- ⑥ 화폐와 은행제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 ⑦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으며 대외사업을 한다.
- ⑧ 사회질서의 유지, 국가 및 협동단체의 소유와 이익의 보호, 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 ⑨ 정무원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행정경제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제127조】 정무원은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정무원전원회의는 정무원성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정무원상무회의는 총리, 부총리와 그 밖에 총리가 임명하는 정무원성원으로 구성한다.

【제128조】 정무원전원회의는 국가관리사업에서 나서는 새롭고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한다. 정무원상무회의는 정무원전원회의에서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한다.

【제129조】 정무원은 결정과 지시를 낸다.

【제130조】 정무원은 자기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중앙인민위원회 앞에 책임진다

【제131조】 새로 선거된 정무원총리는 정무원성원들을 대표하여 최고인민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앞에 선서를 한다.

【제132조】 정무원 위원회와 부는 정무원의 부문별 집행기관이 정무원 위원회, 부는 지시를 낸다

제6절 지방인민회의와 인민위원회

【제133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 인민회의는 지방주권기관이다.

【제134조】 지방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출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제 135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 인민회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 136조】 지방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 ①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 ② 지방예산과 그 집행정형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 ③ 해당지역에서 국가의 법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 ④ 해당 인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⑤ 해당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⑥ 해당 행정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 ⑦ 해당 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⑧ 해당 인민위원회와 하급인민회의, 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제 137조】 지방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 해당 인민위원회가 소집한다.

임시회의는 해당 인민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 138조】 지방인민회의는 대의원 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제 139조】 지방인민회의는 의장을 선거한다.

【제 140조】 지방인민회의는 결정을 낸다.

지방인민회의 결정은 해당인민위원회가 공포한다.

【제 141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 인민위원회는 해당인민회의 휴회중의 지방주권 기관이다.

【제 142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지방인민위원회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 143조】 지방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 ① 인민회의를 소집한다.
- ②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한다.
- ③ 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 ④ 해당 인민회의와 상급 인민회의, 인민위원회 결정집행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 ⑤ 해당 행정경제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 ⑥ 하급 인민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 ⑦ 해당 지역 안의 기관, 기업소, 단체들의 사업을 지도한다.
- ⑧ 해당 행정경제위원회와 하급 인민위원회, 행정경제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폐지하며 하급 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킨다
- ⑨ 인민회의 휴회 중에 해당행정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제 144조】 지방인민위원회는 결정과 지시를 낸다.

【제 145조】 지방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가 끝난 후에도 새인민위원회가 선거될 때까지 자기 임무를 계속 수행한다.

【제 146조】 지방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와 상급 인민회의, 인민위원회의 지도를 받으며 자기 사업에 대하여 그 앞에 책임진다.

제7절 지방행정경제위원

【제 147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 행정경제위원회는 지방주권기관의 행정적 집행기관이다.

【제 148조】 지방행정경제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지방행정경제위원회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 149조】 지방행정경제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 ① 해당 지방의 모든 행정경제사업을 조직집행한다.
- ② 해당 인민회의, 인민위원회와 상급 인민회의, 인민위원회, 행정경제위원회와 정부원의 결정, 지시를 집행한다.
- ③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 ④ 지방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 ⑤ 해당지방의 사회질서와 유지, 국가 및 협동 단체의 소유와 이익의 보호, 공민의 권리 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 ⑥ 하급 행정경제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 ⑦ 하급 행정경제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제 150조】 지방행정경제위원회는 결정과 지시를 낸다.

【제 151조】 지방행정경제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와 인민위원회 앞에 책임진다.

지방행정경제위원회는 상급행정경제위원회와 정부원에 복종한다.

제8절 재판소와 검찰소

【제 152조】 재판은 중앙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인민재판소와 특별재판소가 한다.

판결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이름으로 선고한다.

【제 153조】 중앙재판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중앙재판소, 도(직할시), 재판소, 인민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의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 154조】 특별재판소의 소장과 판사는 중앙재판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특별재판소의 인민참심원은 해당 군무자회의 또는 종업원회의에서 선거한다.

【제 155조】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 ① 재판활동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와 사회활동단체 재산, 인민의 헌법적 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 ②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고 계급적 원수들과 온갖 범위반자들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한다.
- ③ 재산에 대한 판결, 판정을 집행하며 공중사업을 한다.

【제 156조】 재판은 판사 1명과 인민참심원 2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구성하여 할 수 있다.

【제 157조】 재판은 공개하며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한다. 법이 정한데 따라 재판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 159조】 재판소는 재판에서 독자적이며 재판활동을 법에 의거하여 수행한다.

【제 160조】 중앙재판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재판기관이다.

중앙재판소는 모든 재판소의 재판사업을 감독한다. 중앙재판소는 중앙인민위원회의 지도를 받는다.

【제 161조】 중앙재판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주석, 중앙인민위원회 앞에 책임진다.

도(직할시)재판소, 인민재판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 앞에 책임진다.

【제 162조】 검찰사업은 중앙검찰소, 도(직할시), 시(구역), 군검찰소와 특별검찰소가 한다.

【제 163조】 중앙검찰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 164조】 검사는 중앙검찰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제 165조】 검찰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 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는가를 감시한다.
- ②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가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지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명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결정, 명령, 중앙인민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정무원 결정, 지시에 어긋나지 않는가를 감시한다.
- ③ 범죄자를 비롯한 범위반자를 적발하고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것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 재산, 인민의 헌법적 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제 166조】 검찰사업은 중앙검찰소가 통일적으로 지도하며 모든 검찰소는 상급 검찰소와 중앙검찰소에 복종한다. 중앙검찰소는 중앙인민위원회의 지도를 받는다.

【제 167조】 중앙검찰소는 자기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

석, 중앙인민위원회 앞에 책임진다.

제7장 국장, 국기, 국가, 수도

【제16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장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쓴 붉은 띠로 뿔아 올려 감은 벼이삭의 타원형 테두리 안에 웅장한 수력발전소가 있고 그 위에 혁명의 성산 백두산과 찬연히 빛나는 붉은 오각별이 있다.

【제16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기는 기발의 가운데에 넓은 붉은 폭이 있고 그 아래 우는 가는 흰 폭이 있으며 그 다음에 푸른 폭이 있고 붉은 폭의 기대달린쪽 흰 동그라미 안에 붉은 오각별이 있다.

기발의 세로와 가로의 비는 1대2이다.

【제170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국가는 「애국가」이다.

【제17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는 평양이다.